

비특혜 원산지기준과 원산지 판정사례 분석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연구진

<연구주관>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 권민경

<참여연구자>

연구원 김민준

연구원 박현혁

연구원 김혜량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법 제3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반덤핑·상계관세, IEEPA에 따른 관세 등 관세정책을 통한 강력한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여러 법령에 기반한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는 해당 조치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원산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국 법령에 규정된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활용하고 있음
 - 19 C.F.R. Part 134에 따르면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상품 또는 재료를 생산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
 - 문제는 실질적 변형 기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여러 관례 및 CBP 사전심사 결정문을 통해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임
- 미국은 물품의 원산지별로 차등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따라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는 특정 국가산 물품으로 판정받을 경우, 수출 품목의 경쟁력 약화, 영업이익 축소 등 기업 무역 활동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수출기업의 미국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적법한 원산지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비특혜 원산지 기준 관련 법령 및 사례를 분석하여 일관된 해석 기준을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2 연구 내용

- 미국은 실질적 변형 기준에 기초하여 비특혜 원산지 판정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객관적 지표가 아닌 정성적 해석을 통해 판단되므로, 관련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CBP가 발행하는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문을 번역·분석하여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시각화·분석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고자 함
- 본 과제는 미국 CBP의 원산지 사전심사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특정 물품에 대한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CBP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을 번역·분석한 **Origin Case** 정기 발행물 발간(월간)
 - 제232조 대상 물품, 우리 기업 수출 물품 등 시의성 있는 품목 선정
 - 특정 품목군에 대한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발간(비정기)
 -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 주요 미 관세 조치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소개
 - 세미나, 기업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한 정보 제공
 - KOTRA,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정보 제공**



3 연구 결과

1. Origin Case 발간(월간)

□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법적 기준 및 실무 사례를 정리한 정기 발행물(「Origin Case」)을 발간하였으며, 본 발행물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CBP의 사전심사 결정문의 법리 구조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됨

[Origin Case 제공 정보]

| 구분 | 제공 정보 |
|-------|---------------------------------------|
| 품목 개요 | 품목 정보(HS Code, 세율 등), 시장 정보(대미 수출액 등) |
| 판정사례 | 사례명, 사실관계, 쟁점사항, 법과 해석, 관련 규정 등 |
| 시사점 | 품목, 제조공정, 원재료 등에 기반한 판정 기준 시사점 |

- o (발간 형태) 정보원 홈페이지 내 원산지 판정 사례 게시판 신설
- o (발간 시기) 2025.03.~2025.12. 매월 말일 정기 발행(총 10회)

[`25년 Origin Case 사례 예시]

The preview shows a sample 'Origin Case' document. The left page is a summary page titled 'case 1 SE 케이블 (제8544.49호)' with a '요약' (Summary) section. The right page is a detailed analysis page with sections for '판정 사실' (Facts), '쟁점' (Issues), and '판정 이유' (Reasons for determination), including charts and legal references.

KIOI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Origin Case 발간 내역]



[Origin Case 세부 품목 리스트]

| No. | 구분 | 사례번호 | 물품 | 연도 |
|-----|-----|------------------------|--------------------|------|
| 1 | 제1호 | HQ H329104 | SE 케이블 | 2024 |
| 2 | | HQ H331430 | 냉동 어류 | 2023 |
| 3 | | HQ H301619 | 전동 모터 | 2018 |
| 4 | | NY N340493 | Top Mount Assembly | 2025 |
| 5 | | NY N344861 | 스프레이 용기 | 2025 |
| 6 | | NY N332258, NY N332515 | 파이프 렌치 | 2023 |
| 7 | 제2호 | HQ H308207 | 강철 금속 봉 | 2021 |
| 8 | | NY N317203 | 스테인리스강 튜브 | 2021 |
| 9 | | HQ H319601 |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 어셈블리 | 2021 |
| 10 | | NY N333889 | 스테인리스 강관 | 2023 |

[Origin Case 세부 품목 리스트]

| No. | 구분 | 사례번호 | 물품 | 연도 |
|-----|-----|------------|----------------------|------|
| 11 | | NY N334299 | 스테인리스 강관 | 2023 |
| 12 | | NY N340514 |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어셈블리 | 2024 |
| 13 | | HQ H337102 | 방향성 전기강관 | 2024 |
| 14 | | NY N343543 |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 2024 |
| 15 | | NY N343290 | 자동차용 전면유리 | 2024 |
| 16 | | NY N345836 | 벌크헤드 어셈블리 | 2025 |
| 17 | 제3호 | HQ H303866 | 자동차 전면 유리 세정 펌프 | 2020 |
| 18 | | NY N311655 | 시즈닝 솔트 | 2020 |
| 19 | | NY N312216 | 냉동 비건 베이컨 | 2020 |
| 20 | | NY N316778 | 참치 대용 식물성 단백질 | 2021 |
| 21 | | HQ H315291 | 대추야자 설탕 분말 | 2021 |
| 22 | | NY N320603 | 가공된 황다랑어 | 2021 |
| 23 | | NY N323535 | 크릴오일 구미 | 2022 |
| 24 | | NY N325562 |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 2022 |
| 25 | | NY N328304 | 껌 | 2022 |
| 26 | | NY N329440 | 혼합 감미료 | 2022 |
| 27 | 제4호 | HQ H304910 | 차량용 LED 램프 | 2020 |
| 28 | | NY N312079 | 코코넛 밀크 | 2020 |
| 29 | | HQ H311331 | 냉동 구운 장어 | 2020 |
| 30 | | HQ H315290 | 인스턴트 누들 | 2021 |
| 31 | | HQ H313371 | 전기차 모터용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 2021 |
| 32 | | NY N320677 |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 2021 |
| 33 | | NY N324853 | 철강 코일 | 2022 |
| 34 | | NY N326044 | 흑마늘 시즈닝 | 2022 |
| 35 | | NY N328989 | Pipe-in-Pipe 어셈블리 | 2022 |
| 36 | | NY N333285 | 김치 소스 | 2023 |
| 37 | 제5호 | HQ H314180 | 일체형 냉장·냉동고 | 2020 |
| 38 | | HQ H318255 | 팬 블로어 어셈블리 | 2021 |
| 39 | | NY N334681 | 알루미늄 울타리 키트 | 2023 |
| 40 | | NY N335300 | 주방용 스테인리스강 싱크 키트 | 2023 |
| 41 | | NY N336183 |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 | 2023 |



KIOI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Origin Case 세부 품목 리스트]

| No. | 구분 | 사례번호 | 물품 | 연도 |
|-----|-----|------------|-------------------|------|
| 42 | | NY N335545 | 절임 마늘 | 2024 |
| 43 | | NY N340819 | 합금강판 | 2024 |
| 44 | | NY N341003 | 호스 클램프 | 2024 |
| 45 | | NY N342353 | 화분 받침용 이동대 | 2024 |
| 46 | | NY N350768 | 배추김치 | 2025 |
| 47 | 제6호 | HQ 561986 | 가솔린 | 2001 |
| 48 | | HQ H303529 | 미완성 우편 요금기 | 2019 |
| 49 | | HQ H302358 | 자전거 | 2020 |
| 50 | | NY N310250 | 낚시대-릴 세트 | 2020 |
| 51 | | HQ H305966 | 스크루·너트 드라이버 | 2020 |
| 52 | | HQ H303177 | 공기청정기 | 2020 |
| 53 | | NY N311705 | 식료품용 저울 | 2020 |
| 54 | | NY N313137 | 차량용 충전기 | 2020 |
| 55 | | NY N350517 | 파인애플 및 바나나 껍데 | 2025 |
| 56 | | NY N350643 | 피부용 연고 | 2025 |
| 57 | 제7호 | H302201 | 알루미늄 포일 | 2020 |
| 58 | | H313089 | 수직펌프의 펌프 엔드 | 2021 |
| 59 | | H312674 | F-클램프 | 2021 |
| 60 | | H312432 | 가솔린 구동 수평축 엔진 | 2021 |
| 61 | | N318162 | 변속기용 볼 베어링 | 2021 |
| 62 | | N344131 | 자동차용 선쉐이드 & 시트커버 | 2024 |
| 63 | | N351810 | 펌프 부분품-Fluid ends | 2025 |
| 64 | | N352477 | 에어컨 실외기 | 2025 |
| 65 | | N352216 | 물티슈 | 2025 |
| 66 | | N352543 | 자동차 에어백 시스템 | 2025 |
| 67 | 제8호 | H311606 | 드로잉 태블릿 | 2021 |
| 68 | | H314566 | 와이퍼 블레이드 | 2021 |
| 69 | | H318838 | 캐놀라에 삽입된 봉합사 | 2021 |
| 70 | | N320557 | TFT-LCD 모듈 | 2021 |



[Origin Case 세부 품목 리스트]

| No. | 구분 | 사례번호 | 물품 | 연도 |
|-----|------|---------|------------------|------|
| 71 | | N321429 | 고압 세척기 | 2021 |
| 72 | | N329847 | 리튬이온 배터리 팩 | 2023 |
| 73 | | N333361 | 망치 | 2023 |
| 74 | | N335575 | 정수기 필터 | 2023 |
| 75 | | N352561 | 집적 회로 | 2025 |
| 76 | | N352538 | 소형 드론 세트 | 2025 |
| 77 | 제9호 | N322263 | 이동식 에어컨 | 2021 |
| 78 | | H322417 | 스마트 워치 | 2022 |
| 79 | | H327997 | 영상 관리·감시 시스템 | 2023 |
| 80 | | H304677 | 프린터 | 2023 |
| 81 | | N335242 | 블라인드 | 2023 |
| 82 | | H332638 | 합금 알루미늄 빌렛 | 2024 |
| 83 | | H333319 | 음식물 처리기 | 2024 |
| 84 | | N353597 | 금속 머리띠 | 2025 |
| 85 | | N354280 | 대나무 선반 패널 | 2025 |
| 86 | | N354160 |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 | 2025 |
| 87 | 제10호 | 735086 | 툽날 | 1993 |
| 88 | | 560613 | 임신 진단키트 | 1997 |
| 89 | | H302821 | 승용차 | 2019 |
| 90 | | N341500 | PBAT 컴파운드 | 2024 |
| 91 | | N340424 | 클리신 | 2024 |
| 92 | | N345246 | 회전의자 | 2025 |
| 93 | | N352841 | 가습기 | 2025 |
| 94 | | N353664 | 저전압 케이블 | 2025 |
| 95 | | N355135 | 베어링 셀 | 2025 |
| 96 | | N355742 | 래칫 타이 다운 | 2025 |

2.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발간

□ 2025년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특정 품목군에 대한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총 5회 공동 발간

- 각 발간물은 제232조 주요 대상 품목, 우리 기업 수출 물품 등 미 관세 정책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및 품목군을 대상으로 제작됨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발간 정보]

| 구분 | 발간일 |
|------------------|-----------|
| 제1편 철강제품 | 2025년 4월 |
| 제2편 자동차 부품 | 2025년 5월 |
| 제3편 식품류 | 2025년 5월 |
| 제4편 철강·알루미늄 과생제품 | 2025년 6월 |
| 제5편 우리기업 수출물품 | 2025년 10월 |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제1편 철강제품]

CONTENTS

1. 미국 관세청의 현황 및 비특혜원산지 기준

2.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3. 품목

미국 관세청 주요 품목군 대상 품목군

| Case | 품목번호 | 분류 | 사명명 |
|------|------------|------------|---------------|
| 01 | HG10081001 | 2025.03.01 | 강철 코어 시트 및 시트 |
| 02 | NY10112001 | 2025.02.16 | 강철 코어 시트 및 시트 |
| 03 | NY1020017 | 2025.08.25 | 강철 코어 시트 및 시트 |
| 04 | NY1020013 | 2025.04.01 | 강철 코어 시트 및 시트 |
| 05 | NY1020000 | 2025.10.26 | 강철 코어 시트 및 시트 |
| 06 | NY1020009 | 2025.07.20 | 강철 코어 시트 및 시트 |
| 07 | NY1020029 | 2025.08.22 | 강철 코어 시트 및 시트 |
| 08 | NY1020063 | 2025.08.12 | 강철 코어 시트 및 시트 |
| 09 | NY1020030 | 2025.08.28 | 강철 코어 시트 및 시트 |
| 10 | NY1020019 | 2024.08.26 | 강철 코어 시트 및 시트 |
| 11 | NY1020003 | 2024.07.16 | 강철 코어 시트 및 시트 |
| 12 | HG1021102 | 2024.08.03 | 강철 코어 시트 및 시트 |
| 13 | NY1020000 | 2024.11.26 | 강철 코어 시트 및 시트 |
| 14 | NY1020016 | 2025.02.26 | 강철 코어 시트 및 시트 |

Case 01. 강철 코어 시트

사명명: Nippon Steel Co.

분류: 철강

품목: 강철 코어 시트 및 시트

대상 품목: 강철 코어 시트 및 시트

대상 품목: 강철 코어 시트 및 시트

대상 품목: 강철 코어 시트 및 시트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제2편 자동차 부품]

CONTENTS

1. 미국 관세청의 현황 및 비특혜원산지 기준

2.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3. 품목

미국 관세청 주요 품목군 대상 품목군

| Case | 품목번호 | 분류 | 사명명 |
|------|-----------|------------|--------|
| 01 | HG1008086 | 2025.02.13 | 자동차 부품 |
| 02 | HG1008091 | 2025.04.21 | 자동차 부품 |
| 03 | NY1021201 | 2025.03.08 | 자동차 부품 |
| 04 | HG1019601 | 2025.07.16 | 자동차 부품 |
| 05 | NY1020292 | 2022.05.05 | 자동차 부품 |
| 06 | NY1020181 | 2023.11.22 | 자동차 부품 |
| 07 | NY1020209 | 2024.02.02 | 자동차 부품 |
| 08 | NY1020014 | 2024.07.03 | 자동차 부품 |
| 09 | NY1020243 | 2024.10.31 | 자동차 부품 |
| 10 | NY1020296 | 2024.11.04 | 자동차 부품 |
| 11 | NY1020172 | 2025.01.13 | 자동차 부품 |
| 12 | NY1020401 | 2025.02.26 | 자동차 부품 |
| 13 | NY1020420 | 2025.03.13 | 자동차 부품 |

Case 01.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펌프

사명명: Nippon Steel Co.

분류: 자동차 부품

대상 품목: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펌프

대상 품목: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펌프

대상 품목: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펌프

KIOI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제3편 식품류]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정보와 사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3편 식품류

CONTENTS

I. 미국 관세청형 현황 및 비특혜원산지 기준

II.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부록

미국 관세청에 대한 CPB 조사에 대한 List

| Case | 관세번호 | 날짜 | 사명명 |
|------|-------------|------------|--------|
| 01 | NY N311655 | 2020.03.22 | 다국적 식품 |
| 02 | NY N312079 | 2020.06.25 | 다국적 식품 |
| 03 | NY N312216 | 2020.06.15 | 다국적 식품 |
| 04 | NY N311331 | 2020.12.16 | 다국적 식품 |
| 05 | NY N315178 | 2021.02.03 | 다국적 식품 |
| 06 | NY N315190 | 2021.02.08 | 다국적 식품 |
| 07 | NY N3151291 | 2021.03.08 | 다국적 식품 |
| 08 | NY N320303 | 2021.08.16 | 다국적 식품 |
| 09 | NY N320326 | 2022.02.02 | 다국적 식품 |
| 10 | NY N320364 | 2022.06.08 | 다국적 식품 |
| 11 | NY N320364 | 2022.10.14 | 다국적 식품 |
| 12 | NY N320460 | 2022.12.18 | 다국적 식품 |
| 13 | NY N321385 | 2023.06.29 | 다국적 식품 |
| 14 | NY N322545 | 2024.01.11 | 다국적 식품 |
| 15 | NY N324266 | 2024.08.11 | 다국적 식품 |
| 16 | NY N340404 | 2024.12.10 | 다국적 식품 |
| 17 | NY N340469 | 2025.02.19 | 다국적 식품 |

Case 01. 시즈닝 슬트

국세청

사명명

주요 내용

관련 법령

판정 결과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제4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정보와 사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4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CONTENTS

I. 미국 관세청형 현황 및 비특혜원산지 기준

II.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부록

미국 관세청에 대한 CPB 조사에 대한 List

| Case | 관세번호 | 날짜 | 사명명 |
|------|------------|------------|--------|
| 01 | NY N301917 | 2020.03.11 | 다국적 식품 |
| 02 | NY N302554 | 2020.03.17 | 다국적 식품 |
| 03 | NY N314180 | 2021.01.22 | 다국적 식품 |
| 04 | NY N318138 | 2021.04.01 | 다국적 식품 |
| 05 | NY N318205 | 2021.01.03 | 다국적 식품 |
| 06 | NY N320853 | 2023.01.12 | 다국적 식품 |
| 07 | NY N324869 | 2023.09.26 | 다국적 식품 |
| 08 | NY N325711 | 2023.10.31 | 다국적 식품 |
| 09 | NY N327390 | 2024.01.26 | 다국적 식품 |
| 10 | NY N328139 | 2024.05.01 | 다국적 식품 |
| 11 | NY N329371 | 2024.07.12 | 다국적 식품 |
| 12 | NY N329353 | 2024.08.11 | 다국적 식품 |
| 13 | NY N329565 | 2025.03.25 | 다국적 식품 |

Case 01. 펜 블로어 어셈블리

국세청

사명명

주요 내용

관련 법령

판정 결과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제5편 우리기업 수출물품]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정보와 사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우리기업 수출물품

CONTENTS

I. 미국 관세청형 현황 및 비특혜원산지 기준

II.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부록

우리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CPB 조사에 대한 List

| Case | 관세번호 | 날짜 | 사명명 | Page |
|------|------------|------------|--------|------|
| 01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18 |
| 02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20 |
| 03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22 |
| 04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24 |
| 05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26 |
| 06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28 |
| 07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30 |
| 08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32 |
| 09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34 |
| 10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36 |
| 11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38 |
| 12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40 |
| 13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42 |
| 14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44 |
| 15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46 |
| 16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48 |
| 17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50 |
| 18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52 |
| 19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54 |
| 20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56 |
| 21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58 |
| 22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60 |
| 23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62 |
| 24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64 |
| 25 | NY N320316 | 2020.03.16 | 다국적 식품 | 66 |

Case 01. 예탈 락테이트

국세청

사명명

주요 내용

관련 법령

판정 결과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발간 내역]

| No. | 구분 | 사례번호 | 물품 | 연도 |
|-----|------------|------------|------------------------|------|
| 1 | 제1편 철강 | HQ H308207 | 강철 금속 봉 | 2021 |
| 2 | | NY N317203 | 스테인리스강 튜브 | 2021 |
| 3 | | NY N320677 |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 2021 |
| 4 | | NY N324853 | 비합금 강판 | 2022 |
| 5 | | NY N328989 | Pipe-in-Pipe(PIP) 어셈블리 | 2023 |
| 6 | | NY N333889 | 스테인리스 강판 | 2023 |
| 7 | | NY N334299 | 스테인리스 강판 | 2023 |
| 8 | | NY N335063 | 페로실리콘 분말 | 2023 |
| 9 | | NY N335300 | 주방용 스테인리스 싱크 키트 | 2023 |
| 10 | | NY N340819 | 합금강판 | 2024 |
| 11 | | NY N341003 | 호스클램프 | 2024 |
| 12 | | HQ H337102 | 방향성 전기강판 | 2024 |
| 13 | | NY N343690 | 아연도금 앵글형 철강 시트 | 2024 |
| 14 | | NY N345836 | 벌크헤드 어셈블리 | 2025 |
| 15 | 제2편 자동차 | HQ H303866 |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펌프 | 2020 |
| 16 | | HQ H304910 | 차량용 LED 램프 | 2020 |
| 17 | | HQ H313371 | 전기차 모터용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 2021 |
| 18 | | HQ H319601 |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 어셈블리 | 2021 |
| 19 | | NY N325562 |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 2022 |
| 20 | | NY N336183 |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 | 2023 |
| 21 | | NY N337769 | 자동차 충전 케이블 | 2024 |
| 22 | | NY N340514 |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어셈블리 | 2024 |
| 23 | | NY N343543 |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 2024 |
| 24 | | NY N343290 | 자동차용 전면유리 | 2024 |
| 25 | | NY N344712 | 자동차용 PVC 바닥 매트 | 2025 |
| 26 | | NY N345401 | 자동차 시트 커버 | 2025 |
| 27 | | NY N346250 | 연료 분사기 어셈블리 | 2025 |
| 28 | 제3편 식품 | NY N311655 | 시즈닝 솔트 | 2020 |
| 29 | | NY N312079 | 코코넛 밀크 | 2020 |
| 30 | | NY N312216 | 냉동 비건 베이컨 | 2020 |



KIOI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발간 내역]

| No. | 구분 | 사례번호 | 물품 | 연도 | |
|-----|---------------------|--------------------|---------------|------------------|------|
| 31 | | HQ H311331 | 냉동 구운 장어 | 2020 | |
| 32 | | NY N316778 | 참치 대용 식물성 단백질 | 2021 | |
| 33 | | HQ H315290 | 인스턴트 누들 | 2021 | |
| 34 | | HQ H315291 | 대추야자 설탕 분말 | 2021 | |
| 35 | | NY N320603 | 가공된 황다랑어 | 2021 | |
| 36 | | NY N323535 | 크릴오일 구미 | 2022 | |
| 37 | | NY N326044 | 흑마늘 시즈닝 | 2022 | |
| 38 | | NY N328304 | 껌 | 2022 | |
| 39 | | NY N329440 | 혼합 조미료 | 2022 | |
| 40 | | NY N333285 | 김치소스 | 2023 | |
| 41 | | NY N335545 | 절임마늘 | 2024 | |
| 42 | | NY N342266 | BCAA 분말 | 2024 | |
| 43 | | NY N344204 | 계살 통조림 | 2024 | |
| 44 | | NY N345699 | 조제 닭고기 제품 | 2025 | |
| 45 | | 제4편 철·알 과생상품 | NY N309707 | 팬 블로어 어셈블리 | 2020 |
| 46 | | | NY N310250 | 낚시대-릴 세트 | 2020 |
| 47 | | | HQ H314180 | 일체형 냉장·냉동고 | 2020 |
| 48 | | | NY N318138 | 오븐 | 2020 |
| 49 | | | HQ H318255 | 팬 블로어 어셈블리 | 2021 |
| 50 | | | NY N329853 | 알루미늄 모니터 암 | 2021 |
| 51 | | | NY N334681 | 알루미늄 울타리 키트 | 2023 |
| 52 | | | NY N335711 | 스피커 스탠드 | 2023 |
| 53 | | | NY N337260 | CPU 열 모듈 | 2024 |
| 54 | | | HQ H335139 | 자동차용 충격 흡수 크래시박스 | 2024 |
| 55 | HQ H305371 | | 컴퓨터 캐비닛 | 2024 | |
| 56 | NY N342353 | | 화분 받침용 이동대 | 2024 | |
| 57 | HQ H327665 | | 굴착기 커버 어셈블리 | 2025 | |
| 58 | 제5편 우리기업 신청사례 | NY N342865 | 에틸 락테이트 | 2025 | |
| 59 | | NY N344861 | 스프레이 용기 | 2025 | |
| 60 | | NY N345329 | OLED 모듈 | 2025 | |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발간 내역]

| No. | 구분 | 사례번호 | 물품 | 연도 | |
|-----|----|-------------------|---------------------|-----------------|------|
| 61 | | NY N347172 | 리튬 인산철 파우치형 전지 | 2025 | |
| 62 | | NY N348231 | 직접식 감지 컨트롤러 | 2025 | |
| 63 | | NY N347634 | 범용 조인트 어셈블리 | 2025 | |
| 64 | | NY N347808 | 인조 흑연 음극 활성 물질 | 2025 | |
| 65 | | NY N348029 | 파워 어댑터 세트 | 2025 | |
| 66 | | NY N348185 | 파노라마 선루프 어셈블리 | 2025 | |
| 67 | | NY N348403 | 화장용 브러쉬(1) | 2025 | |
| 68 | | NY N348412 | 화장용 브러쉬(2) | 2025 | |
| 69 | | NY N348301 | 골프공 | 2025 | |
| 70 | | NY N349313 |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 2025 | |
| 71 | | NY N349668 | 버터플라이 밸브 | 2025 | |
| 72 | | NY N350063 | 배기 매니폴드 촉매 변환기 어셈블리 | 2025 | |
| 73 | | NY N350112 | 레코드판 | 2025 | |
| 74 | | NY N350711 | 집적회로 | 2025 | |
| 75 | | NY N350178 | 인스턴트 라면 | 2025 | |
| 76 | | NY N350773 | 히트펌프 | 2025 | |
| 77 | | NY N350620 | 전자식 공압 요추 지지 시스템 | 2025 | |
| 78 | | NY N350768 | 배추김치 | 2025 | |
| 79 | | NY N351234 | 기계 장비용 유압 실린더 | 2025 | |
| 80 | | NY N350938 | 정맥 주사용 주사제 | 2025 | |
| 81 | | NY N352190 |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스템 | 2025 | |
| 82 | | NY N352536 | 자동차용 에어백 모듈 | 2025 | |
| 83 | | 제5편 한국 연결공정 | NY N346168 | 메인 빔 모듈 어셈블리 | 2025 |
| 84 | | | NY N346278 | C형 락킹 플라이어 | 2025 |
| 85 | | | NY N346582 | STP 바지선 | 2025 |
| 86 | | | NY N346963 | 싱크대 하부설치 정수기 세트 | 2025 |
| 87 | | | NY N346907 | 플라스틱 운송 박스 | 2025 |
| 88 | | | NY N347193 | 리튬이온 배터리 팩 | 2025 |
| 89 | | | NY N345393 | 천연 흑연 음극 활성 물질 | 2025 |
| 90 | | | NY N347101 | 전기식 정수기 교체용 필터 | 20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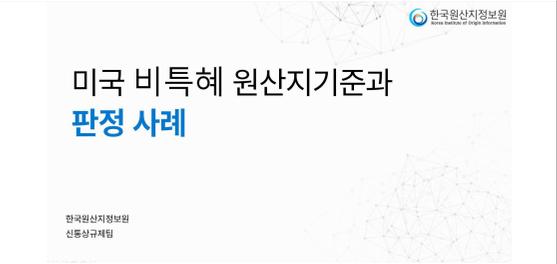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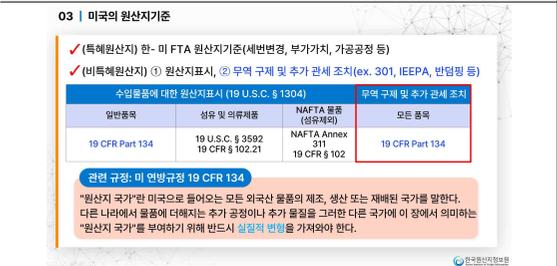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발간 내역]

| No. | 구분 | 사례번호 | 물품 | 연도 |
|-----|----|------------|----------------------|------|
| 91 | | NY N347190 | 구리 파이프 | 2025 |
| 92 | | NY N347698 | 정수 필터 탱크 및 교체용 정수 필터 | 2025 |
| 93 | | NY N347638 | 전기 커플러 | 2025 |
| 94 | | NY N348081 | 정맥주사 투여 세트 | 2025 |
| 95 | | NY N348710 | 가정용 정수 시스템 필터 카트리지 | 2025 |
| 96 | | NY N348209 | (일회용, 비멸균) 플라스틱 컵 | 2025 |
| 97 | | NY N348322 | 자동차 서스펜션용 코일 스프링 | 2025 |
| 98 | | NY N348298 | 가정용 전기 정수기 | 2025 |
| 99 | | NY N348790 | 유리섬유 줄자 | 2025 |
| 100 | | NY N349144 | 스마트 타겟 | 2025 |
| 101 | | NY N349688 | 아기 인형 세트 | 2025 |
| 102 | | NY N349742 | 특수 카메라 | 2025 |
| 103 | | NY N350041 | 혈당 측정기 | 2025 |
| 104 | | NY N350106 | 하드라인 케이블 | 2025 |
| 105 | | NY N350325 | LED 조명기구 | 2025 |
| 106 | | NY N349992 | 모니터 | 2025 |
| 107 | | NY N350085 | 세탁기/건조기용 조명 | 2025 |
| 108 | | NY N350571 | 반려동물용 물티슈 | 2025 |
| 109 | | NY N351335 | 스퍼터링 타겟 | 2025 |
| 110 | | NY N351552 | 아기용 물티슈 | 2025 |
| 111 | | NY N351810 | 유체 단 | 2025 |
| 112 | | NY N352562 | 자동차용 에어컨 필터 | 2025 |

3. 정보 공유 및 홍보

- 미국 관세·무역 정책 및 원산지 규제 변화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 제고와 대응 전략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세미나 및 기업 설명회·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관련 정보 제공
 - ①2025년 미국의 관세 정책에 관한 개요, ②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차이, ③실질적 변형 기준에 대한 판단 기준, ④기업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수행

[관련 제공 정보 자료]

|  <p>미국 비특혜 원산지기준과 판정 사례</p> <p>한국원산지정보원 신동상규제팀</p> |  <p>01 미국 관세부와 현황</p> <p>미국 관세부와 현황</p> <p>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관세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관세부과 조치 (무역확장법 제232조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 반가공 구리 제품 및 파생상품 - 목재 및 파생상품 - 완상차 - 자동차 부품 • 국가별 관세부과 조치 (IEEPA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 중 국 마 약 - 이 민 관 세 - 환 개 - 예 마 약 - 이 민 관 세 - 국 가 별 상 모 관 세 • 제301조, 소액관세제도 폐지, 반덤핑 - 상계관세 등 <p>2025년 미국당 원산지 판정부의 현황표</p>  <p>한국원산지정보원</p> | | | | | | | | | | | | |
|---|--|---------------------------------|------------------|--|------|-----------|------------------|-------|-----------------|-------------------------------------|---------------------------------|-----------------|---|
|  <p>03 미국의 원산지기준</p> <p>(특혜원산지) 한-미 FTA 원산지기준(세번변경, 부가가치, 가공과정 등)</p> <p>(비특혜원산지) ① 원산지표시, ② 무역 규제 및 추가 관세 조치(ex. 301, IEEPA, 반덤핑 등)</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19 U.S.C. § 1304)</th> <th colspan="2">무역 규제 및 추가 관세 조치</th> </tr> <tr> <th>일반품목</th> <th>선유 및 의류제품</th> <th>NAFTA 원산지 (선유제품)</th> <th>모든 품목</th> </tr> </thead> <tbody> <tr> <td>19 CFR Part 134</td> <td>19 U.S.C. § 3592 19 CFR § 102.21</td> <td>NAFTA Annex 311 19 CFR § 102</td> <td>19 CFR Part 134</td> </tr> </tbody> </table> <p>관련 규정: 미 연방규정 19 CFR 134</p> <p>"원산지 국가"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 물품에 더해지는 추가 공정이나 추가 물질을 그러한 다른 국가에 이 장에서 의미하는 "원산지 국가"를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실질적 변형을 가져와야 한다.</p> <p>한국원산지정보원</p> |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19 U.S.C. § 1304) | | 무역 규제 및 추가 관세 조치 | | 일반품목 | 선유 및 의류제품 | NAFTA 원산지 (선유제품) | 모든 품목 | 19 CFR Part 134 | 19 U.S.C. § 3592 19 CFR § 102.21 | NAFTA Annex 311 19 CFR § 102 | 19 CFR Part 134 |  <p>06 실질적 변형기준 원산지 판정사례</p> <p>1. NY N350768 사례 (미국 관세청(CBP), 2025)</p> <p>양념 배추김치</p> <p>[사실관계] 중국산 절인 배추, 고춧가루, 냉동 마늘을 한국으로 수입한 후 양념 배추김치 제조</p> <p>[쟁 점] 최종 제품에 대한 실질적 변형은 어느 국가에서 발생하였는가?</p> <p>참고: <i>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2)</i></p> <p>성질(character)이던 구조, 형태, 재료, 기능 등에서 개체를 구별 짓는 본질적인 요소를 의미</p> <p>[판정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념 배추김치 HS Code: 2005.99 • 미국 기원율(평균관세율): 11.2% (0%) • 한-미 FTA 적용: 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 (양념 배추) • 중국 기원: 비특혜 원산지 기준 적용 (고춧가루, 냉동 마늘의 HS Code가 0707, 0909에 해당하므로 CC 조항 적용) <p>[비특혜 (결론)] • 중국산 배추는 한국으로 수입될 시 양념 및 가공을 거친 이후에도 여전히 배추이므로 한국에서의 가공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p> <p>한국원산지정보원</p> |
|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19 U.S.C. § 1304) | | 무역 규제 및 추가 관세 조치 | | | | | | | | | | | |
| 일반품목 | 선유 및 의류제품 | NAFTA 원산지 (선유제품) | 모든 품목 | | | | | | | | | | |
| 19 CFR Part 134 | 19 U.S.C. § 3592 19 CFR § 102.21 | NAFTA Annex 311 19 CFR § 102 | 19 CFR Part 134 | | | | | | | | | | |

Origin Case

Vol. 1

- Case 1 - SE 케이블 (제8544.49호)
- Case 2 - 냉동 어류 (제0303호)
- Case 3 - 전동 모터 (제8501.10호)
- Case 4 - Top Mount Assembly
- Case 5 - 스프레이 용기 (제8424.89호)
- Case 6 - 파이프 렌치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Case 1. SE 케이블 (제8544.49호)

[요약]

| | |
|---------|--|
| 사례명 | [SE 케이블] 한-미 FTA 적용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
| 사례번호 | HQ H329104 (2024.03.28.) |
| 사실관계 | 원재료인 중국산 알루미늄 로드/와이어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복합 공정 수행 후 완성된 SE 케이블을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한-미 FTA 적용 여부</p> <p>중국산 알루미늄 로드/와이어의 HS Code(제7604.29호)가 완제품의 HS Code (제8544.49호)와 4단위 수준에서 상이하므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p> <p>②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p>드로잉(Drawing), 스트랜딩(stranding), 캡슐화(encapsulating) 등 여러 공정이 결합된 한국에서의 복합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정하여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p>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SUS(19 U.S.C. § 1202) General Note(GN) 33(o)/chapter 85/92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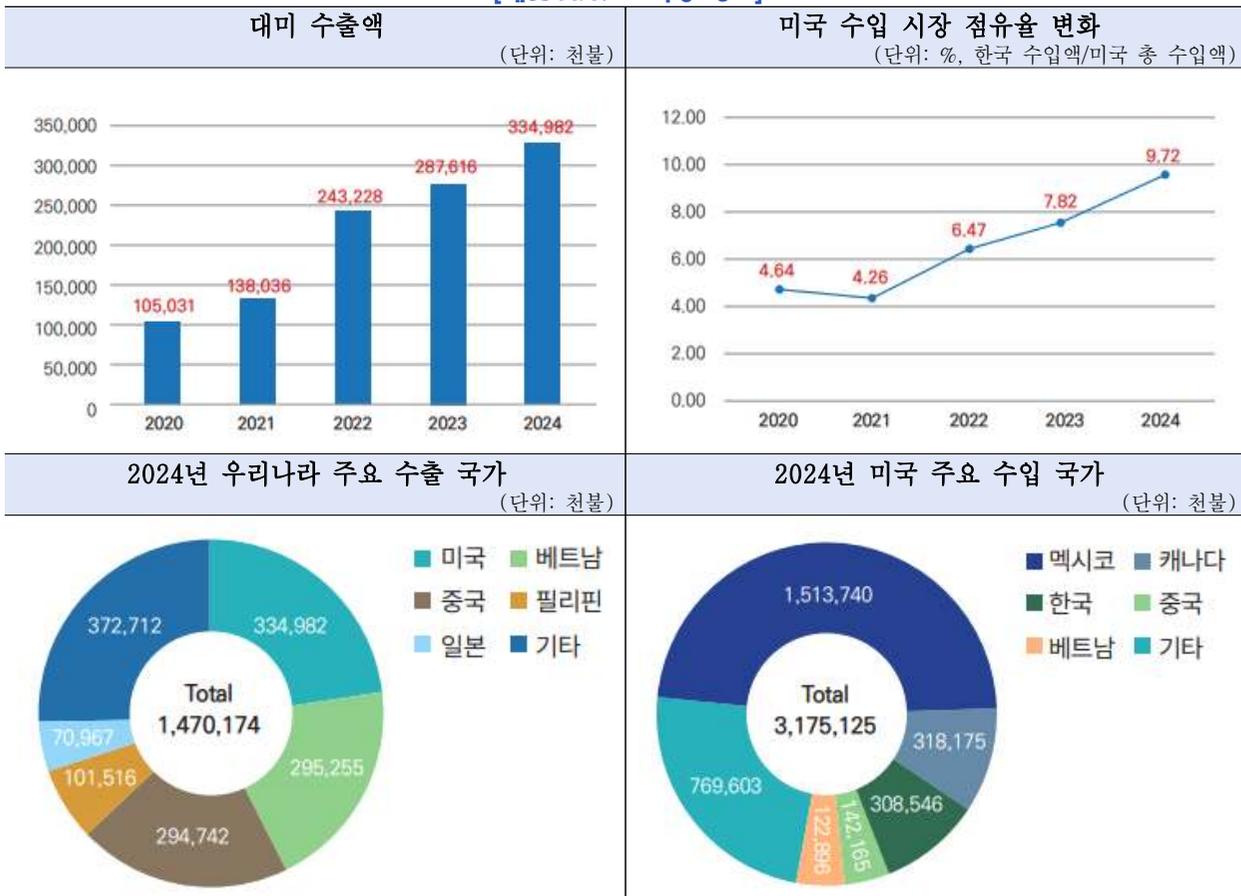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8544.49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5.3%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시장 정보

[제8544.49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SE 케이블] 한-미 FTA 적용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 **사례번호:** HQ H329104 (2024.03.28.)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Imperium Cables LLC | |
| 제품 | 제품명 | • SE 케이블 (Service Entry Cables) |
| | 구성 | • AA-800 시리즈 알루미늄 로드/와이어(중국산) • 폴리에틸렌 절연층 등 기타 원재료(한국산) |
| | 용도 | • 전력 공급용 케이블 |
| | 원재료 HS Code | • 알루미늄 로드/와이어(제7604.29호) |
| | 완제품 HS Code | • SE 케이블(제8544.49호) |
| 제조 공정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알루미늄 로드/와이어를 한국으로 수입 알루미늄 로드를 가공하여 특정 직경의 와이어로 가공 (Drawing) 와이어를 꼬아 압축 연선도체 제작 (Stranding) 가고 폴리에틸렌 등 열가소성(또는 열경화성) 화합물로 피복 압출 (Extrusion) 절연 도체를 가열 처리 (Heat Treatment) 조립을 위해 가공 보빈 처리 절연 코어에 스파크 테스트 수행 여러 개의 절연 코어를 꼬아 하나의 SE 케이블 유닛으로 조립 PVC 외피를 입혀 최종 SE 케이블 완성 품질 검사 및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제8544.49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경우, 『HTSUS(19 U.S.C § 1202) GN 33(o)/chapter 85/92』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4.30호 내지 제854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4.30호 내지 제854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으로 직접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판정 결과

- SE 케이블(제8544.49호) 생산을 위해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는 중국산 알루미늄 로드/와이어 1개로, 해당 원재료의 HS Code(제7604.29호)가 완제품의 HS Code(제8544.49호)와 4단위 수준에서 상이하므로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

②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USTR¹⁾은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중국산 특정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제301조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사용
 - 실질적 변형: 제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 부품이 원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적 부분이 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단순한 와이어 드로잉(Drawing) 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음

◆ 참고 판례: *Superior Wire v. United States*, 669 F. Supp. 472 (CIT 1987), *aff'd*, 867 F.2d 1409 (Fed. Cir. 1989)

(사례) 스페인산 와이어 로드(코일 형태)가 캐나다로 선적된 후 드로잉(Drawing) 공정을 거쳐 와이어로 가공되어 미국으로 수입

(판결) 와이어 로드(코일 형태)가 와이어를 제조하는 것 외에는 용도가 거의 없으며, 이미 와이어 로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구성이 변화하여 최종제품의 성질 및 용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다만, CBP는 개별적인 드로잉(Drawing), 스트랜딩(stranding), 캡슐화(encapsulating)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러한 여러 공정이 결합될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인정될 수 있음을 결정한 바 있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56301 및 HQ 562581*

1) USTR: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판정 결과

- 한국에서의 공정은 드로잉, 스트랜딩, 조립, PVC 코팅 등 여러 공정이 결합된 복합 공정으로, 최종 SE 케이블은 관련 산업 표준과 사양을 충족하여 상업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전력 공급용 전선으로 변환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결론

- ✓ 한-미 FTA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중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므로 미국 수입 시 무관세 혜택이 가능함
- ✓ 실질적 변형기준을 충족하므로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제301조 무역제재가 적용되지 않음

Ⅲ. 시사점

- 케이블 등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수출할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을 고도화하여 여러 공정을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판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존 CBP 사례 탐색 및 적극적인 사전 심사 제도 활용이 요구됨

Ⅳ. 참고자료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CBP Ruling HQ 556301 (1992.05.04.), <https://rulings.cbp.gov/ruling/556301>
- CBP Ruling HQ 562581 (2003.02.13.), <https://rulings.cbp.gov/ruling/562581>
- CBP Ruling HQ H329104 (2024. 03.28.), <https://rulings.cbp.gov/ruling/H329104>
- HTSUS(19 U.S.C § 1202) GN 33(o)/chapter 85/92(A), <https://hts.usitc.gov/>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Superior Wire v. United States, 669 F. Supp. 472 (CIT 1987), aff'd, 867 F.2d 1409 (Fed. Cir.1989),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70325/superior-wire-a-div-of-superiorproducts-co-v-united-states/?q=Superior+Wire+v.+United+States>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Case 2. 냉동 어류 (제0303호)

[요약]

| | |
|---------|--|
| 사례명 | [냉동 어류] 원산지표시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
| 사례번호 | HQ H331430 (2023.09.27.) |
| 사실관계 | 캐나다 국적 어선에 의해 캐나다 알래스카만에서 포획한 어류를 냉동하여 중국 FTZ으로 수출한 후, 5가지 제품(A,B,C,D,E)으로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제품 A,B,C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캐나다산으로 판정하며, 제품 D,E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중국산으로 판정 |
| | ②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중국산으로 판정된 제품 D,E는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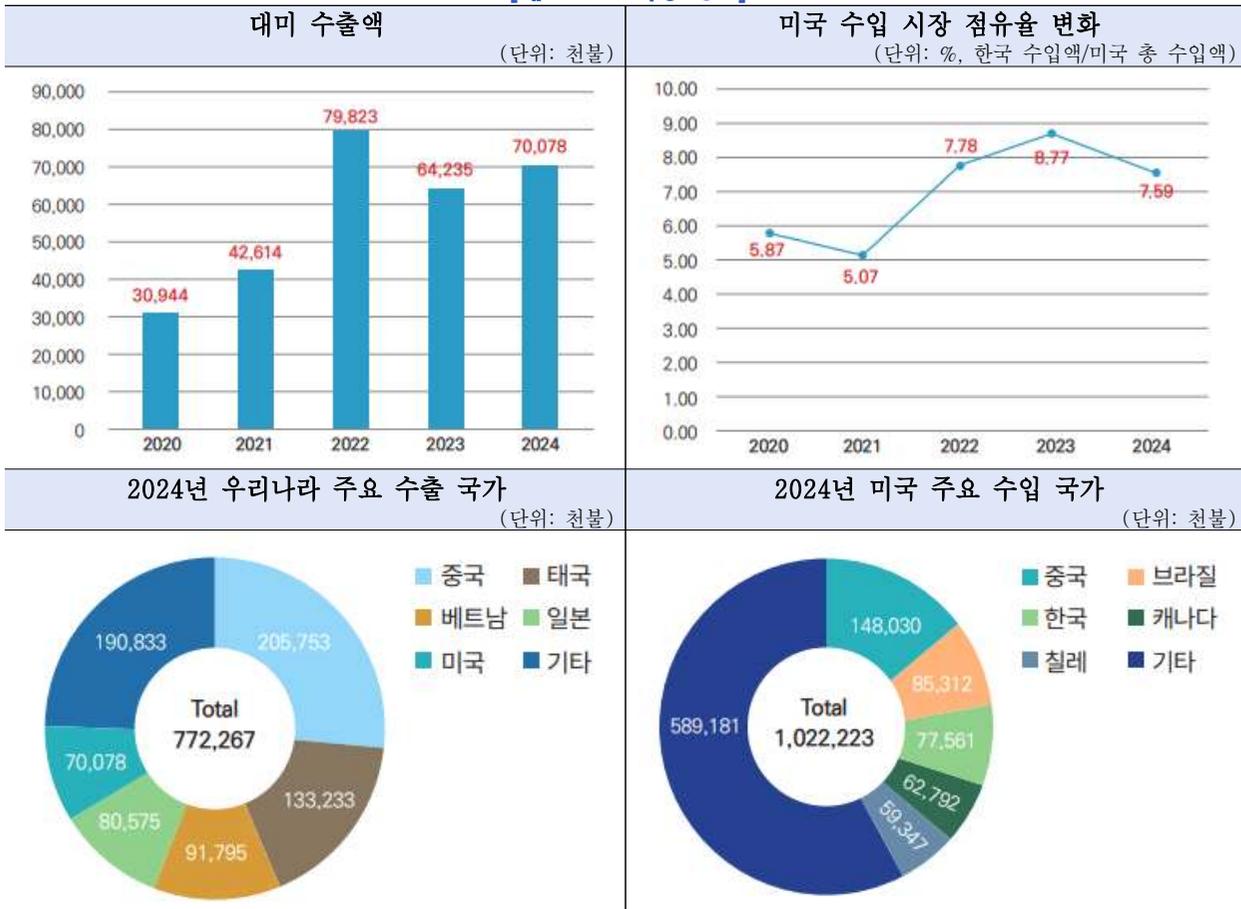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0303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10% |
| | 미국 기본세율 | 0% or 15% or 1.1¢/kg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참고] 제3류 주: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은 비원산지 치어 또는 자어로부터 양식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된다. | |

□ 시장 정보

[제0303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냉동 어류] 원산지표시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 **사례번호:** HQ H331430 (2023.09.27.)

□ 사실관계

| 요청자 | • West Sea Family Fishery Group Co. | | | | | | | | | | | | | | | | | | | |
|----------|---|--|----|-------|---|-----------------|---|---|---|---------------------|---|--------------------|---|-------------------|----|-------|-------|-------------------|-----|---------------|
| 제품 | 제품명 | • 제품 A,B,C,D,E | | | | | | | | | | | | | | | | | | |
| | 구성 | • Pacific Ocean Perch (Sebastes Alutus)(캐나다산) • Black Cod (Anoplopoma Fimbria)(캐나다산) • Pacific Cod (Gadus Macrocephalus)(캐나다산) | | | | | | | | | | | | | | | | | | |
| | 원재료 HS Code | • 냉동 어류(제0303호) | | | | | | | | | | | | | | | | | | |
| | 완제품 HS Code | • 제품 A, B, C(제0303.89호) • 제품 D, E(제0304.95호) | | | | | | | | | | | | | | | | | | |
| 제조 공정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 알래스카만(Gulf of Alaska)에서 캐나다 국적 어선에 의해 포획 캐나다에서 냉동 처리 중국 자유무역지대(FTZ)로 운송 냉동 어류를 다음과 같은 5가지 제품으로 가공 <table border="1" data-bbox="316 1366 1356 1572"> <thead> <tr> <th>제품</th> <th>가공 공정</th> </tr> </thead> <tbody> <tr> <td>A</td> <td>비늘, 아가미 및 내장 제거</td> </tr> <tr> <td>B</td> <td>비늘, 아가미 및 내장 제거 후 생선을 펼치는 작업 수행(뼈와 눈은 그대로 유지)</td> </tr> <tr> <td>C</td> <td>비늘, 아가미, 내장 및 머리 제거</td> </tr> <tr> <td>D</td> <td>필레(fillet) 조각으로 절단</td> </tr> <tr> <td>E</td> <td>다르네(darne) 형태로 절단</td> </tr> </tbody>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제품을 다음의 방식으로 포장 <table border="1" data-bbox="316 1641 1356 1756"> <thead> <tr> <th>제품</th> <th>포장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A,B,C</td> <td>진공 포장된 플라스틱 백에 포장</td> </tr> <tr> <td>D,E</td> <td>소매용 종이 상자에 포장</td> </tr> </tbody>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으로 수출 | | 제품 | 가공 공정 | A | 비늘, 아가미 및 내장 제거 | B | 비늘, 아가미 및 내장 제거 후 생선을 펼치는 작업 수행(뼈와 눈은 그대로 유지) | C | 비늘, 아가미, 내장 및 머리 제거 | D | 필레(fillet) 조각으로 절단 | E | 다르네(darne) 형태로 절단 | 제품 | 포장 방식 | A,B,C | 진공 포장된 플라스틱 백에 포장 | D,E | 소매용 종이 상자에 포장 |
| | 제품 | 가공 공정 | | | | | | | | | | | | | | | | | | |
| A | 비늘, 아가미 및 내장 제거 | | | | | | | | | | | | | | | | | | | |
| B | 비늘, 아가미 및 내장 제거 후 생선을 펼치는 작업 수행(뼈와 눈은 그대로 유지) | | | | | | | | | | | | | | | | | | | |
| C | 비늘, 아가미, 내장 및 머리 제거 | | | | | | | | | | | | | | | | | | | |
| D | 필레(fillet) 조각으로 절단 | | | | | | | | | | | | | | | | | | | |
| E | 다르네(darne) 형태로 절단 | | | | | | | | | | | | | | | | | | | |
| 제품 | 포장 방식 | | | | | | | | | | | | | | | | | | | |
| A,B,C | 진공 포장된 플라스틱 백에 포장 | | | | | | | | | | | | | | | | | | | |
| D,E | 소매용 종이 상자에 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CBP 『19 C.F.R. § 134』 규정은 『19 U.S.C. § 1304』의 원산지표시 요구사항과 예외를 규정하며,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의 결정은 실질적 변형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① 어류가 필레(fillet)로 가공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물고기의 본래 형태(essential shape)를 상실한 별개의 상업적 제품(discrete commercial good)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인정됨

◆ 참고 판례: *Koru North America v. United States*, 701 F. Supp. 229, 232 (Ct. Int'l Trade 1988)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20603, NY N284246 및 HQ H311331*

- ② 어류의 단순 가공(해동, 내장 제거, 비늘 제거, 냉동 등)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4050 및 NY R04129*

제품 A,B,C 판정 결과

- 내장, 비늘, 머리 제거 등의 공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제품이 여전히 물고기의 본래 형태(essential shape)를 유지하고 있고, 해당 공정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name)이나 성질(character)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

제품 D,E 판정 결과

- 최종제품이 필레(fillet) 및 다르네(darne) 형태로 절단된 경우, 물고기 본래 형태(essential shape)와는 다른 별개의 상업적 제품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②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USTR은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중국산 특정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제301조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사용

판정 결과

- 제품 D, E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여 중국산으로 판정하며, 해당 물품은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함

□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제품 A,B,C는 캐나다산으로 표시하며, 변형이 발생한 제품 D,E는 중국산으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임

Ⅲ. 시사점

- 포획 후 그대로 냉동한 어류를 가공한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물고기 본래 형태(essential shape)와는 다른 별개의 상업적 제품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IV.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1331 (2020.12.16.), <https://rulings.cbp.gov/ruling/H311331>
- CBP Ruling HQ H331430 (2023.09.27.), <https://rulings.cbp.gov/ruling/H331430>
- CBP Ruling NY N284246 (2017.04.06.), <https://rulings.cbp.gov/ruling/N284246>
- CBP Ruling NY N304050 (2019.05.28.), <https://rulings.cbp.gov/ruling/N304050>
- CBP Ruling NY N320603 (2021.08.16.), <https://rulings.cbp.gov/ruling/N320603>
- CBP Ruling NY R04129 (2006.06.15.), <https://rulings.cbp.gov/ruling/R0412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Koru North America v. United States, 701 F. Supp. 229, 232 (Ct. Int'l Trade 198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474459/koru-north-america-v-united-states/?q=Koru+North+America+v.+United+States>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19+USC+1304&f=treesort&fq=true&num=47&hl=true&edition=prelim&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

Case 3. 전동 모터 (제8501.10호)

[요약]

| | |
|---------|--|
| 사례명 | [전동 모터] NAFTA 물품 원산지표시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
| 사례번호 | HQ H301619 (2018.11.06.) |
| 사실관계 | 멕시코에서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된 전동 모터를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① NAFT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제8503호)와 완제품의 HS Code(제8501호)가 4단위 수준에서 상이하므로 멕시코산으로 판정 |
| | ②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멕시코에서 행해진 조립 공정은 3개의 하위 어셈블리(중국산)를 단순 조립(simple assembly)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국산으로 판정(제 301조 무역제재 대상)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02(19 C.F.R. § 102)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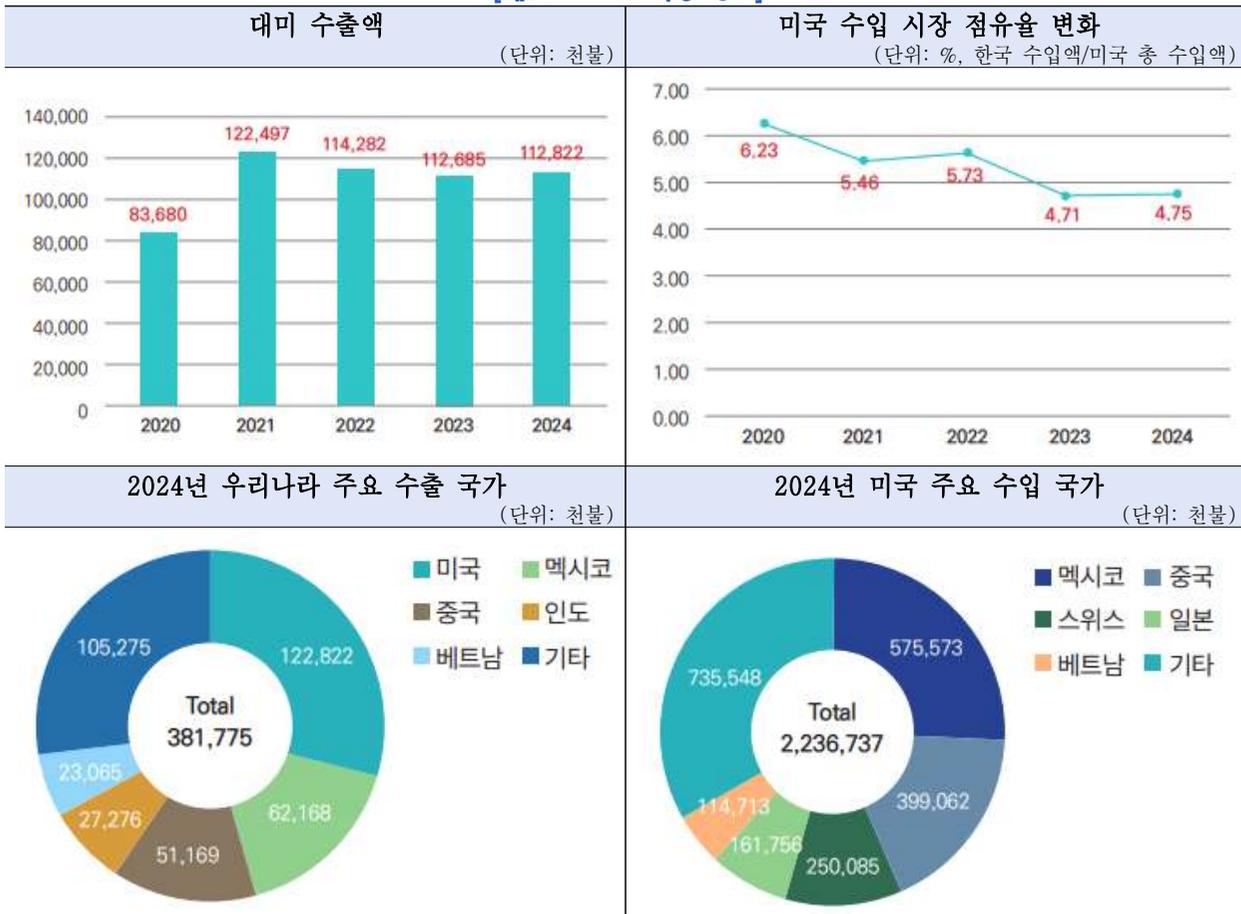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8501.1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2.8 ~ 6.7%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03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시장 정보

[제8501.1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전동 모터] NAFTA 물품 원산지표시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 **사례번호:** HQ H301619 (2018.11.06.)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Johnson Electric | |
| 제품 | 제품명 | • 직류(DC) 전동 모터(1999-1020656EP) |
| | 구성 | • 스테이터(Stator) 또는 후면 하우징 (중국산) • 로터(Roter) 또는 아마추어 어셈블리 (중국산) • 엔드캡 어셈블리(End Cap Assembly) (중국산) |
| | 용도 | • 전자식 도어록 작동을 위한 전동 모터 |
| | 원재료 HS Code | • 개별 부품(제8503호) |
| | 완제품 HS Code | • 전동 모터(제8501.10호) |
| 제조 공정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스테이터 또는 후면 하우징(stator or rear housing), 로터 또는 아마추어 어셈블리(rotor or armature assembly), 엔드 캡 어셈블리(end cap assembly)를 멕시코로 수입 멕시코에서 조립(assembly) 공정을 거쳐 전동모터를 생산 최종 완제품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NAFT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NAFT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CBP 『19 C.F.R. § 134.1(b)』에 따르면, NAFTA(혹은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CBP 『19 C.F.R. § 102』에 정의된 별도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 19 C.F.R. § 134.1(b)

“Country of origin” means the country of manufacture, production, or growth of any article of foreign origin entering the United States. Further work or material added to an article in another country must effect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 order to render such other country the “country of origin”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t; **however, for a good of a NAFTA or USMCA country, the marking rules set forth in part 102 of this chap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 102 Rules) will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 CBP 『19 C.F.R. § 102.11(a)』에 따르면, NAFTA(혹은 USMCA)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에 따라 결정함
 - (1)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그 국가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2)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자국산 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
 - (3) 해당 물품에 포함된 모든 외국산 재료가 Part 102.20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고, 모든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 ☐ 전동 모터의 경우,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어 (3)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CBP 『19 C.F.R. § 102.20』에 명시된 제8501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판정 결과

- ☐ 외국산 재료의 HS Code(제8503호)와 완성품의 HS Code(제8501호)가 4단위 기준에서 상이하므로 멕시코산으로 판정

②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 USTR은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중국산 특정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제301조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사용
 - 실질적 변형: 제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681 F.2d 778 (1982)

- 최종제품 생산을 위해 조립(assembly) 공정이 행해진 경우, 수입된 부품들이 물리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질(character)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226, 542 F. Supp. 1026, 1031,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원재료의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도(use)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조립과 관련하여 단순 조립인지 또는 보다 복잡한 조립인지 여부를 평가하며, 개별 부품들이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는지를 검토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 (판결) 수입된 구성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판정 결과

- ☐ 중국산 부품들은 이미 사전에 용도가 결정되어 있었으며, 멕시코에서의 조립 공정은 중국산 3개 하위 어셈블리들을 큰 복잡성 없이 단순 조립(simple assembly)한 것에 해당함
 - 그러므로, 멕시코에서의 공정이 용도의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 조립(simple assembly)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

□ 결론

- ✓ NAFTA(혹은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른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멕시코산으로 판정함
- ✓ 실질적 변형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멕시코에서의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아 단순 조립인 것으로 판단하여 중국산으로 판정(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함)

Ⅲ. 시사점

- CBP Ruling HQ H301619는 2018년 7월 25일 NY N299096을 수정한 것으로, 대중 무역제재 조치인 제301조가 시행된 2018년 7월 6일 이후, 제301조 적용을 위한 CBP의 원산지판정 기준이 실질적 변형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사례임
- ① NY N299096에서 CBP는 원산지표시 및 제301조 적용을 위해 NAFT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인 CBP 『19 CFR § 102.11(d) 및 102.14(o)』에 근거하여 전동 모터의 원산지가 중국산인 것으로 판정함
- ② 이후, HQ H301619를 통해 원산지표시는 NAFT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 『19 CFR § 102.11(a) 및 102.20』에 의해 멕시코산으로 기재해야 하며,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중국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 비원산지재료를 조립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조립 공정의 복잡성 및 원재료와 최종제품 사이의 명칭, 성질, 용도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CBP Ruling NY N299096 (2018.07.25.), <https://rulings.cbp.gov/ruling/N299096>
- CBP 19 C.F.R. § 120,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02>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4. Top Mount Assembly

[요약]

| | |
|---------|--|
| 사례명 | [Top Mount Assembly]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40493 (2024.07.01.) |
| 사실관계 | 한국에서 중국산 PS 베어링과 한국산 인슐레이터를 조립(press-fitting)하여 완성된 Top Mount Assembly를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여부</p> <p>자동차 서스펜션 부품에 사용되는 중국산 PS 베어링과 한국산 인슐레이터는 각각 완전히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수행한 공정(인슐레이터에 PS 베어링을 fitting한 공정)은 단순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인슐레이터) 및 중국(PS 베어링)으로 표시해야 함</p>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판정사례2)

□ 사례명: [Top Mount Assembly]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40493 (2024.07.01.)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Onestop Customs Corporation | |
| 제품 | 제품명 | • Top Mount Assembly |
| | 구성 | • PS 베어링(Plain Sliding Bearing) (중국산) • 인슐레이터(Insulator Assembly) (한국산) - 메인 플레이트, 베어링 플레이트, 고무, 상부 컵, 하부 컵, 볼트 3개로 구성 |
| | 용도 | • 차량 차체와 Suspension Strut 상단을 연결하는 역할 • 서스펜션 회전 시 원활한 움직임을 지원하는 PS 베어링 포함 |
| 제조 공정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메인 플레이트와 베어링 플레이트를 고무 사출(Injection) 방식으로 고정 2. 상단 컵 및 하부 컵 용접 3. 볼트를 삽입하여 인슐레이터 완성 4. 프레스 장비를 사용하여 중국산 PS 베어링을 인슐레이터에 삽입(press-fitting) 5. 조립 후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은 CBP 『19 C.F.R. § 134』에 따라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판정

- 실질적 변형: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 실질적 변형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해야 한다고 명시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제조 또는 조립 과정이 단순한 공정(minor process)으로서 원재료가 공정 후에도 본질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내용) 신발 갑피를 밀창에 부착하는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갑피는 완성된 신발의 본질적 요소(the very essence of the completed shoe)라고 판시함

판정 결과

- Ⅴ CBP는 중국산 PS 베어링을 인슐레이터에 프레스 장비로 삽입하는 과정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다고 판단. 또한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PS 베어링과 인슐레이터가 각각 완전히 다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부품이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한국과 중국으로 나누어 구분해야 한다고 판정함

* Strut Mounts 판매 기업인 KYB의 홈페이지 제품 소개 내용³⁾을 참고하여 PS 베어링과 인슐레이터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검토

기타 의견

- Ⅴ 요청자는 제301조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았으나, PS 베어링의 원산지가 중국이므로 무역법 제301조 적용 대상에 해당함
- Ⅴ 해당 물품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CBP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판정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에서 발행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하길 권고함

□ 결론

- ✓ 최종제품은 한국(인슐레이터)과 중국(PS 베어링)이 함께 원산지로 간주되며, 중국산 PS 베어링의 경우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임

II. 시사점

- 최종제품과 관련하여, 단순한 프레스 조립(press-fitting) 과정만으로는 부품이 새로운 제품으로 변형될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완제품의 구성 부품들이 가공 후에도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완제품에 복수의 원산지가 부여될 수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CBP Ruling NY N340493 (2024.07.01.), <https://rulings.cbp.gov/ruling/N340493>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3) KYB, [https://www.kyb.com/resources/shock-strut-basics/all-about-strut-mounts/#:~:text=As%20the%20name%20\(strut%20mount,mount%20is%20like%20a%20sandwich.](https://www.kyb.com/resources/shock-strut-basics/all-about-strut-mounts/#:~:text=As%20the%20name%20(strut%20mount,mount%20is%20like%20a%20sandwich.)

Case 5. 스프레이 용기 (제8424.89호)

[요약]

| | |
|---------|---|
| 사례명 | [스프레이 용기] 한-미 FTA 적용 및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
| 사례번호 | NY N344861 (2025.01.14.) |
| 사실관계 | 중국에서 생산된 튜브형 슬리브를 한국에서 한국산 버튼, 캡, 펌프 등과 함께 조립하여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 튜브형 슬리브의 HS Code(제39류)가 완제품의 HS Code(제8424.89호)와 상이하므로 특혜관세대우 적용 가능</p> <p>② 실질적 변형 여부 기본적으로 액체를 담는 데 사용되는 중국산 용기에 필수 구성요소인 펌프와 버튼이 결합됨으로써 스프레이 용기로 변형되었으므로, 개별 부품들이 상업적으로 명칭·성질·용도 면에서 구별되는 새로운 물품으로 변화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p> |
| 근거법령 | - HTSUS(19 U.S.C § 1202) General Note(GN) 33(o)/chapter 84/5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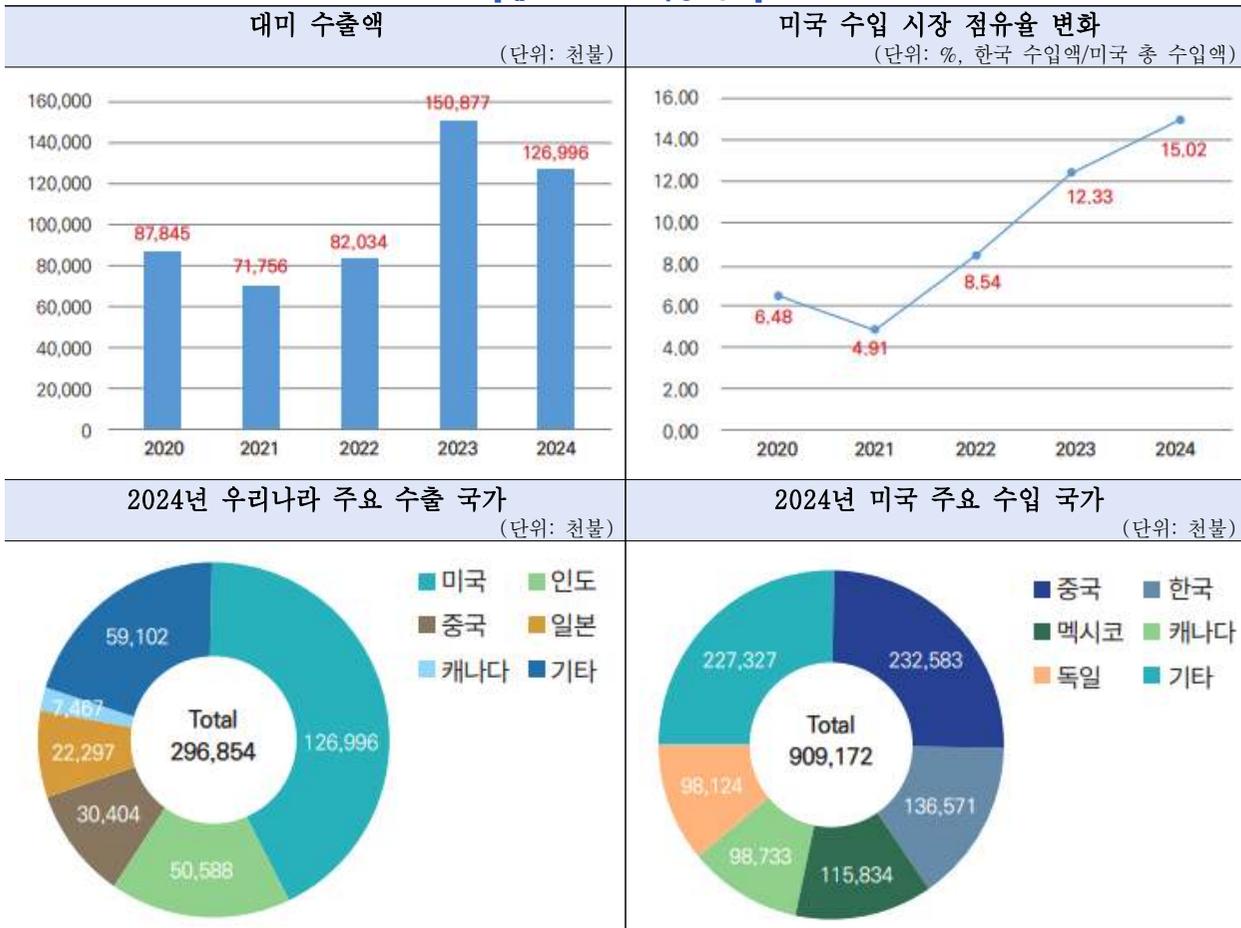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8424.89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1.8%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8424.89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스프레이 용기] 한-미 FTA 적용 및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 **사례번호:** NY N344861 (2025.01.14.)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Union Customs Brokerage Office | |
| 제품 | 제품명 | • 화장품용 진공 펌프(스프레이) 용기(모델 번호 KANG0017S) |
| | 구성 | • 튜브형 슬리브(중국산) • 버튼, 스냅온 캡, 오버캡, 펌프(한국산) |
| | 용도 | • 화장품(크림, 로션 등)을 분사/배출하는 용도 |
| | 원재료 HS Code | • 튜브형 슬리브(제39류) |
| | 완제품 HS Code | • 화장품용 진공 펌프(스프레이) 용기(제8424.89호) |
| 제조 공정 |  <p>01 resin 중국 수출</p> <p>02 튜브 슬리브 제작</p> <p>03 한국으로 수출</p> <p>04 최종 제품 조립</p> <p>05 미국으로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산 resin 중국으로 수출 2. 중국에서 슬리브 본체 압출, 코팅 및 도장 3. 튜브형 슬리브 한국으로 수출 4. 한국에서 튜브형 슬리브에 버튼, 펌프, 캡 등을 조립하여 최종제품 완성 5.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 실질적 변형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ⅴ 제8424.89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경우, 『HTSUS(19 U.S.C § 1202) GN 33(o)/chapter 84/54』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함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4.10호 내지 제8430.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판정 결과

-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 튜브형 슬리브의 HS Code(제39류)가 완제품의 HS Code (제8424.89호)와 상이하므로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적용이 가능함

② 실질적 변형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제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여부를 총체적 상황(totality of the evidence)에 근거하여 결정

- ◆ 참고 판례 1: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681 F.2d 778 (1982)
- ◆ 참고 판례 2: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기본적으로 액체를 담는 데 사용되는 중국산 용기에 필수 구성요소인 펌프와 버튼이 결합됨으로써 스프레이 용기로 변형되었으므로, 개별 부품들이 상업적으로 명칭·성질·용도 면에서 구별되는 새로운 물품으로 변화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 진공펌프 용기의 조립 공정은 매우 간단하지만 개별 품목의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변형을 인정함

□ 결론

- ✓ 화장품용 진공 펌프 용기는 한-미 FTA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므로 미국 수입 시 무관세 혜택이 가능함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의한 비특혜원산지기준에 따라서도 한국산으로 판정 가능함

III. 시사점

- 최종제품 생산을 위해 수행된 공정이 단순하더라도, 해당 공정으로 인해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가 상업적으로 달라지는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 제301조, 제232조, 미국 정부 조달 물품의 원산지판정 등 여러 무역정책 실행을 위해 실질적 변형 기준이 활용되고 있는 바, 사전에 CBP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수출 물품이 실질적 변형 기준에 의해 한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4861 (2025.01.14.), <https://rulings.cbp.gov/ruling/N344861>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HTSUS(19 U.S.C § 1202) General Note(GN) 33(o)/chapter 84/54, <https://hts.usitc.gov/>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6. 파이프 렌치

[요약]

| | | |
|---------|--|---|
| 사례명 | [파이프 렌치]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 |
| 사례번호 | NY N332258 (2023.04.21.) 및 NY N332515 (2023.05.08.) | |
| 사실관계 | [공통사항] 한국 및 중국에서 생산된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조절 너트, 기타 부품을 중국에서 추가 가공 및 조립하여 미국에 수출 | |
| | ① NY N332258 | ② NY N332515 |
| |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잡이, 조절 조 생산 후 중국 수출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 조, 조절 너트 생산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추가 가공 상기 4개 부품과 기타 부품 결합 조립 미국으로 수출 |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조절 너트 생산 후 중국 수출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추가 가공 상기 4개 부품과 기타 부품 결합 조립 미국으로 수출 |
| | [공통사항]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조절 너트는 기능적 측면에서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임 | |
| 쟁점 및 판정 | ① [NY N332258] 실질적 변형 여부 | ② [NY N332515] 실질적 변형 여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 부품의 용도는 이미 정해져 있으나 완성품 상태는 아니었고, 중국에서 추가적 가공과 다른 핵심 부품의 결합을 통해 완성품의 기능을 다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 (중국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들이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었고, 해당 부품들은 중국으로 수입될 당시 파이프 렌치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한국산)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

I. 판정사례4)

- **사례명:** [파이프 렌치]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 **사례번호:** NY N332258 (2023.04.21.) 및 NY N332515 (2023.05.08.)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Weihai Maxpower Advanced Tool Co., Ltd. | |
| 제품 | 제품명 | • 파이프 렌치 (Pipe Wrench) |
| | 구성 | • 손잡이 / 조절 조 / 고정 조 / 조절 너트 / 핀, 스프링 등 • 톱니가 있는 두 개의 조를 가지고 있으며, 조절 너트를 이용해 파이프에 밀착하여 고정 및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
| | 용도 | • 배관 부품의 조립 또는 해체 시 공구로 사용 |
| 제조 공정 | ① NY N332258 | |
| |  | |
| | [상세 공정] | |
| | 한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산 알루미늄 원재료로 손잡이 생산 2. 중국산 강철봉을 가공하여 조절 조 생산 3. 손잡이 및 조절 조 중국으로 수출 |
| 중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중국산 강철봉을 가공하여 고정 조 생산 5. 중국산 강철튜브를 가공하여 조절 너트 생산 6.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추가 가공(밀링, 열처리, 드릴링, 코팅) 7. 중국산 핀, 스프링 등과 함께 최종 조립 8. 작동 테스트 및 포장 후 미국 수출 | |
| ② NY N332515 | | |
|  | | |
| [상세 공정] | | |
| 한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산 알루미늄 원재료로 손잡이 생산 2. 중국산 강철봉을 가공하여 조절 조 및 고정 조 생산 3. 중국산 강철튜브를 가공하여 조절 너트 생산 4.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및 조절 너트 중국으로 수출 | |
| 중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추가 가공(밀링, 열처리, 드릴링, 코팅) 6. 중국산 핀, 스프링 등과 함께 최종 조립 7. 작동 테스트 및 포장 후 미국 수출 | |

4)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쟁점사항

- 실질적 변형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실질적 변형: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해야 한다고 명시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이러한 평가는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립 작업이 단순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되지 않음

NY N332258 판정 결과

- 파이프 렌치는 크게 손잡이, 고정 조, 조절 조, 조절 너트로 구성되며, 고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절 너트를 조작하여 두 개의 조를 조여야 하므로 기능적 측면에서 상기 부품들은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 생산된 손잡이와 조절 조가 파이프 렌치에 사용될 용도로 제작된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중국으로 수입될 당시 파이프 렌치의 일부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 대략적인 형태만 갖춘 손잡이와 조절 조가 중국으로 운송되어 추가 가공 후, 중국산 고정 조, 조절 너트, 기타 부품과 조립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이프 렌치의 원산지는 중국산이라고 판정함

NY N332515 판정 결과

- 한국에서 생산된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및 조절 너트는 파이프 렌치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부품들임
- 해당 부품들은 한국에서 파이프 렌치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산지는 한국이라고 판정함

□ 결론

- ✓ (NY N332258 사례) 파이프 렌치의 원산지는 중국임
- ✓ (NY N332515 사례) 파이프 렌치의 원산지는 한국임

II. 시사점

- 공구류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된 여러 부품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모든 부품들이 동등하게 중요할 경우, 각각의 부품이 생산된 국가, 기능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다만, CBP는 동일 물품이라 할지라도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상이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Ⅲ.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2258 (2023.04.21.), <https://rulings.cbp.gov/ruling/N332258>
- CBP Ruling NY N332515 (2023.05.08.), <https://rulings.cbp.gov/ruling/N332515>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Origin Case

Vol. 2

- Case 1 - 강철 금속 봉
- Case 2 - 스테인리스강 튜브 (제7304.41호 or 제7306.40호)
- Case 3 -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 어셈블리 (제8414.59호)
- Case 4 - 스테인리스 강판 (제7219.90호)
- Case 5 - 스테인리스 강판 (제7219.90호)
- Case 6 -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어셈블리 (제8708.99호)
- Case 7 - 방향성 전기강판 (제7225.11호)
- Case 8 -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제8544.30호)
- Case 9 - 자동차용 전면유리 (제8708.22호)
- Case 10 - 벌크헤드 어셈블리 (제7305.31호)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Case 1. 강철 금속 봉

[요약]

| | |
|---------|--|
| 사례명 | [강철 금속 봉]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08207 (2021.02.02.) |
| 사실관계 | 대만산 S45C 탄소강 봉을 미국으로 수입 후 절단, 나사 가공, 오목 스탬핑, 산화 처리하여 코깅 건용 부품으로 사용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금속 가공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수행된 절단, 나사 가공, 스탬핑, 산화 처리 등의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에 따라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으로 유지됨</p>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5)

□ **사례명:** [강철 금속 봉]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08207 (2021.02.02.)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Newborn Bros. Co. (대리인: Michael K. Tomenga) | |
| 제품 | 제품명 | • 코킹 건용 강철 금속 봉(S45C, JIS G4061 기준) |
| | 구성 | • 원형/사각형/육각형 탄소강 봉(대만산) |
| | 용도 | • 코킹 건 내 실란트/접착제 등 재료 압출용 |
| 제조 공정 |  <p>01 대만산 탄소강 봉 미국으로 수입</p> <p>02 절단</p> <p>03 나사 가공</p> <p>04 스탬핑</p> <p>05 산화처리</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만에서 열처리된 탄소강 봉 미국으로 수입 미국 내 후속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24인치 길이로 절단(cutting) 양 끝 나사산 가공 오목한 자국 스탬핑으로 로드 제한 기능 부여 흑색 산화처리로 부식 방지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ⅴ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ⅴ CBP 『19 C.F.R. § 134』 규정은 『19 U.S.C. § 1304』의 원산지표시 요구사항과 예외를 규정하며,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의 결정은 실질적 변형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실질적 변형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기준을 적용하며, 이때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야 함

5)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사례) 플렉스 소켓(flex sockets), 스피더 핸들(speeder handles), 플렉스 핸들(flex handles) 제작용 특정 수공구 부품들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열처리, 표면 세척, 녹 및 부식 방지 처리 등 수행

(판결) 해당 부품들이 대부분 수입 전에 냉간성형(cold-formed) 또는 열간단조(hot-forged) 방식으로 최종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었으며, 미국으로 수입 후에 수행된 가공(강도를 높이기 위한 열처리, 표면 세척을 위한 샌드블라스트 처리, 녹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전기 도금 처리 등)은 수입 부품의 명칭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가공 후 물품의 성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해당 물품의 용도는 수입 시점에 이미 정해졌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 CBP는 금속 가공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단순히 길이나 폭으로 절단하는 행위가 물품을 특정 용도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지 않는 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284041*

(사례) 중국에서 한국산 강관을 수입하여 절단, 나사 가공, 세척, 방청 처리 후 미국으로 수출

(판정) 한국에서 제조된 수입품은 파이프이고, 중국에서 가공을 거친 최종제품 역시 파이프이므로, 원재료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4186*

(사례) 멕시코에서 한국산 강철 파이프를 수입하여 절단, 나사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

(판정) 강철 파이프를 절단, 나사 가공하는 수준의 작업은 한국산 강철 파이프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318*

(사정) 불가리아산 황동 스트립을 독일에서 한 차례 냉간 압연하여 두께를 감소시키고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함

(판정) 독일에서의 가공은 스트립의 화학적 또는 금속학적 성질에 변화를 주지 않으며, 두께를 감소시키고 표면을 매끄럽고 윤이 나게 만드는 것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4716*

(사례) 일본산 스테인리스 시트를 싱가포르로 수입하여 부식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No.8 미러 마감 폴리싱 작업을 수행한 후 미국으로 수출

(판정) 싱가포르에서의 폴리싱 작업은 강관의 특성 중 하나를 변화시킨 것일 뿐, 전체적인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 변형이 아닌 것으로 판정

판정 결과

ⅴ 위에 열거된 CBP의 판정 사례와 같이 금속 가공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수행된 절단, 나사 가공, 스탬핑, 산화 처리 등의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에 따라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으로 유지됨

□ 결론

✓ 미국에서의 후속 가공 공정(절단, 나사 가공, 스탬핑, 산화처리)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임

II. 시사점

- CBP는 금속 가공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단순히 절단하거나 표면 처리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정체성을 상실시키고 새로운 명칭, 용도, 성질로 변화시킬 만한 광범위하거나 전문적인 공정이 수행되어야 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8207 (2021.02.02.), <https://rulings.cbp.gov/ruling/H308207>
- CBP Ruling NY N284041 (2017.03.31.), <https://rulings.cbp.gov/ruling/N284041>
- CBP Ruling HQ 734186 (1991.10.24.), <https://rulings.cbp.gov/ruling/734186>
- CBP Ruling HQ W968318 (2006.10.02.), <https://rulings.cbp.gov/ruling/W968318>
- CBP Ruling HQ 734716 (1992.11.27.), <https://rulings.cbp.gov/ruling/734716>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2. 스테인리스강 튜브

[요약]

| | |
|---------|--|
| 사례명 | [스테인리스강 튜브]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
| 사례번호 | NY N317203 (2021.02.16.) |
| 사실관계 | 독일, 한국 또는 미국에서 제조된 스테인리스강 튜브가 독일에서 전해연마 및 세정 작업을 거쳐 미국으로 수입 |
| 쟁점 및 판정 |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스테인리스강 튜브는 독일에서의 공정이 수행되기 전에도 튜브였고, 미국으로 수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튜브로 남아있으므로, 독일에서 수행된 전해연마 및 세척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
| | ②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독일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튜브가 제조된 국가(독일, 한국 또는 미국)이며, 원산지가 독일이나 한국일 경우, 제232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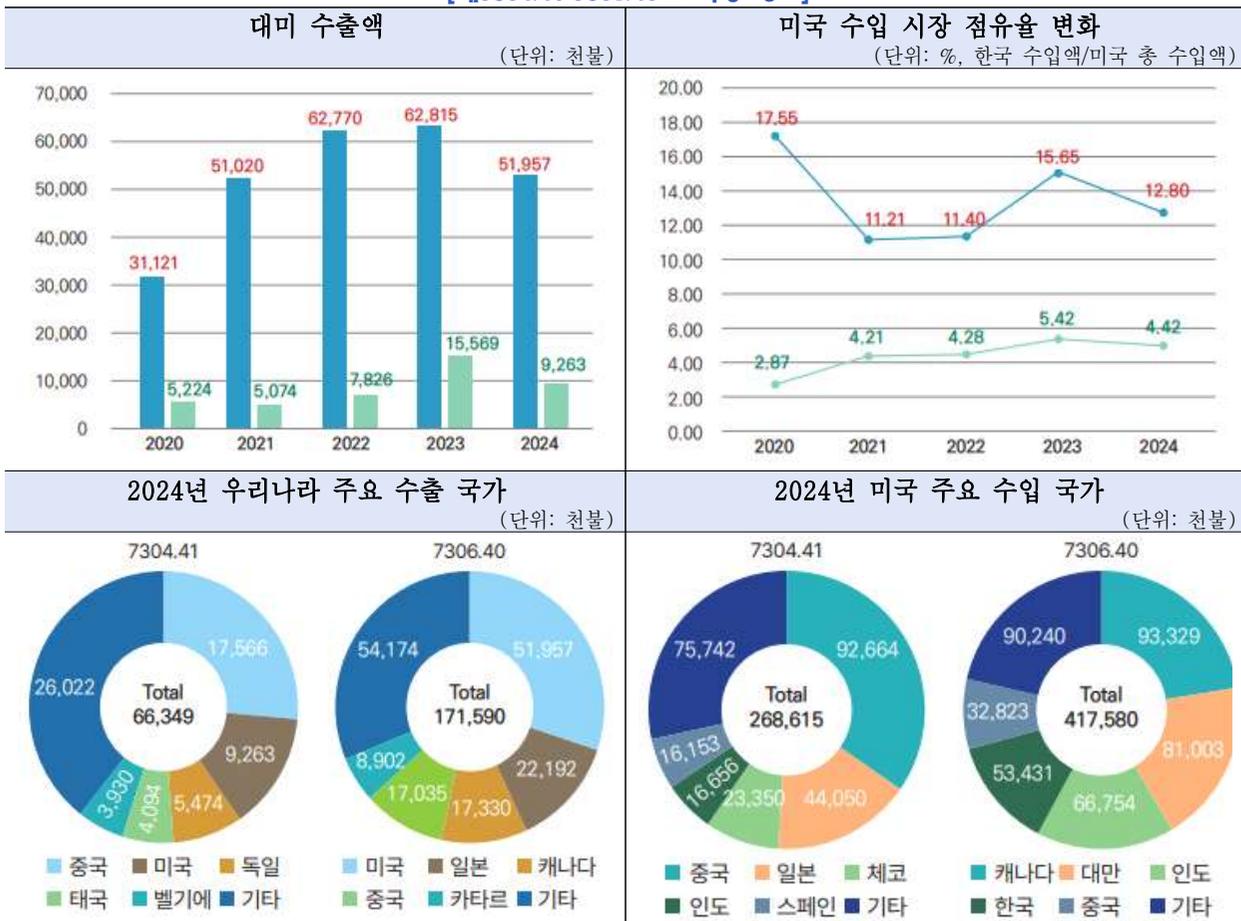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7304.41호 및 제7306.4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304.4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서 외경이 19밀리미터 미만인 제7304.41호의 것 | |

□ 시장 정보

[제7304.41·7306.4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스테인리스강 튜브]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 **사례번호:** NY N317203 (2021.02.16.)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Banner Industries of Northeast (N.E.), Inc. (대리인: Dorsey & Whitney) | |
| 제품 | 제품명 | • 스테인리스강 튜브 (Stainless Steel Tubes) |
| | 용도 | • 반도체 제조 공정용 |
| | 원재료 HS Code | • 7304.41.30 / 7304.41.60 / 7306.40.5040 |
| | 완제품 HS Code | • 7304.41.30 / 7304.41.60 / 7306.40.5040 |
| 제조 공정 | <p>01 독일 / 한국 / 미국 튜브 제조</p> <p>02 독일 표면처리 및 세척</p> <p>03 미국 수입</p> <p>[상세 공정] 1. 독일, 한국 또는 미국에서 스테인리스강 튜브 제조 2. 독일로 이동하여 전기화학 표면 처리(electro-polishing) 및 세척(cleaning) 수행 - 이때,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 동일 3. 미국으로 수입</p>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가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적용될 수 있음
- ㉡ 제301조, 제232조 및 2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판정 시에도 이와 같은 실질적 변형 기준 적용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741 F.2d 1368 (1984)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HQ 563205*

- 실질적 변형의 요건: 물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확연한 변화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Supp. 1026, *aff'd* 1 Fed. Cir. 21, 702 F.2d 1022 (1983)

- 기계 가공 작업이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는지를 판단할 때, CBP는 가공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특정한 형태를 달성하기 위한 가공과 외형상 미관이나 경미한 처리를 위한 가공을 구분하여 판단함
- CBP는 연마(polishing), 유약 처리(enameling), 세척(cleaning)과 같은 장식 또는 마감 작업(embellishment and finishing operation)은 일반적으로 다른 상업적 물품을 만들어내는 새롭고 광범위한 공정으로 보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54689*

(사례) 금속 제품에 대해 미국에서 연마(polishing) 및 세척(cleaning) 작업을 수행

(판정) 해당 공정은 외관 개선에 불과하므로 명칭·성질·용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결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071314*

(사례) 금속 부품에 대해 미국에서 에나멜 도장(enameling) 등 마감 작업을 수행

(판정) 마감 작업은 외형을 변화시킨 것에 불과하고 그 기능은 동일하므로 본질적 변형이 아님

판정 결과

- 스테인리스강 튜브는 독일에서의 공정이 수행되기 전에도 튜브였고, 미국으로 수입된 이 후에도 여전히 튜브로 남아있으므로, 독일에서의 전해연마 및 세척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2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대통령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됨

판정 결과

- 해당 제품(HTSUS 7304.41.30, 7304.41.60, 7306.40.5040)은 무역확장법 제232조 상 추가 관세 또는 쿼터(HTSUS Chapter 99에 포함된 별도 세번 해당) 대상일 수 있으며, 수입 시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기본 분류에 더해 Chapter 99(추가 관세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 결론

- ✓ 독일에서 수행된 전해연마 및 세척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 원산지는 튜브가 제조된 국가(독일, 한국 또는 미국)로 결정됨
- ✓ 해당 튜브가 한국 또는 독일에서 제조된 경우, 미국 수입 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될 수 있음

III. 시사점

- CBP는 일반적으로 연마, 유약 처리 등의 표면 처리 작업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 변경 여부 또한 실질적 변형의 판단 요소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음
- 제232조 등 미국의 무역규제 적용 여부는 원산지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CBP 사전심사를 통해 자사 제품의 원산지를 사전에 판정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17203 (2021.02.16.), <https://rulings.cbp.gov/ruling/N317203>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862&num=0&edition=prelim>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3.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 어셈블리

[요약]

| 사례명 |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 어셈블리]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 | | | | | | | | | | |
|------------|--|--|---------------------------|---------|-------------|---|------|---|---|-----|---|-----|
| 사례번호 | HQ H319601 (2021.07.16.) | | | | | | | | | | | |
| 사실관계 | 여러 국가에서 제작된 스테이터 코어 및 로터 요크를 중국으로 수입하여 스테이터 어셈블리 및 로터 어셈블리를 생산한 후, 중국 혹은 멕시코에서 최종제품으로 조립 | | | | | | | | | | | |
| | 시나리오 | 스테이터 코어 및 로터 요크 생산 | 스테이터 어셈블리 및 로터 어셈블리 생산 | 최종제품 생산 | | | | | | | | |
| | 1 | 베트남 | 중국 | 멕시코 | | | | | | | | |
| | 2 | 일본 | 중국 | 멕시코 | | | | | | | | |
| | 3 | 한국 | 중국 | 멕시코 | | | | | | | | |
| | 4 | 태국 | 중국 | 멕시코 | | | | | | | | |
| 5 | 베트남 | 중국 | 중국 | | | | | | | | | |
| 쟁점 및 판정 | 시나리오 1~4 | 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CBP는 최종제품인 증발기 어셈블리의 원산지는 스테이터 및 로터 어셈블리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다시 해당 어셈블리들의 핵심 부품인 스테이터의 코어와 로터의 코어가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게 되므로, 각 시나리오별로 스테이터의 코어와 로터의 코어를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인 것으로 판정함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시나리오</th> <th>판정 결과</th> <th>제301조 대상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베트남산</td> <td rowspan="4">X</td> </tr> <tr> <td>2</td> <td>일본산</td> </tr> <tr> <td>3</td> <td>한국산</td> </tr> <tr> <td>4</td> <td>태국산</td> </tr> </tbody> </table> | 시나리오 | 판정 결과 | 제301조 대상 여부 | 1 | 베트남산 | X | 2 | 일본산 | 3 | 한국산 |
| 시나리오 | 판정 결과 | 제301조 대상 여부 | | | | | | | | | | |
| 1 | 베트남산 | X | | | | | | | | | | |
| 2 | 일본산 | | | | | | | | | | | |
| 3 | 한국산 | | | | | | | | | | | |
| 4 | 태국산 | | | | | | | | | | | |
| | 시나리오 5 | 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핵심 부품인 스테이터의 코어와 로터의 코어가 베트남에서 생산되었지만, 중국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대부분의 부품이 중국산이므로, 최종제품인 증발기 어셈블리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하여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 | | | | | | | | | |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 | | | | | | | | |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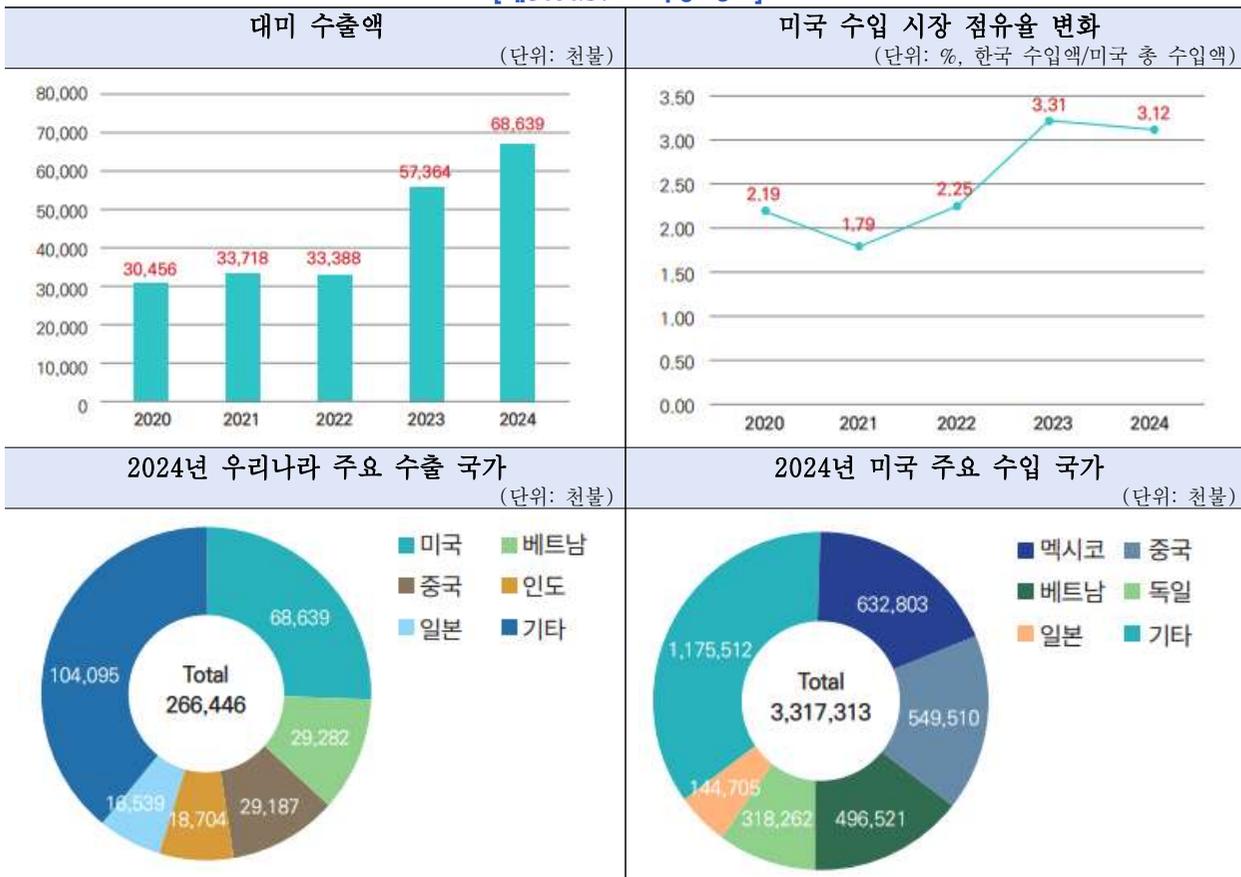
□ 품목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8414.59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2.3%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4.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시장정보

[제8414.59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 어셈블리]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 **사례번호:** HQ H319601 (2021.07.16.)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Valeo North America (대리인: Crowell & Moring, LLP) | |
| 제품 | 제품명 | • 자동차 에어컨용 증발기 어셈블리 (부품 번호: T456490) |
| | 구성 | • 스테이터 어셈블리, 로터 어셈블리, PWB 어셈블리, 임펠러, 플랜지, 기타 부품 등 |
| | 용도 | • 미국으로 수입된 후 자동차 공조기(HVAC)로 조립될 예정 |
| | 완제품 HTSUS | • 8414.59.6500 |

| | | | | |
|-------|--|--|--|--|
| 제조 공정 | | | | |
| | <p>[상세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베트남에서 강판을 가공하여 스테이터 코어 및 로터 요크 생산 2. 스테이터 코어 및 로터 요크 중국으로 수출 3. 중국산 플라스틱 커버, 전기 단자, 마그넷 와이어와 스테이터 코어를 조립하여 스테이터 어셈블리 생산 4. 중국산 샤프트, 자석, 스냅 링과 로터 요크를 조립하여 로터 어셈블리 생산 5. 스테이터 어셈블리 및 로터 어셈블리를 멕시코로 수출 6. 멕시코에서 태국산(볼 베어링), 중국산(PWB 어셈블리, 앤드 스톱퍼, 나사, 알루미늄 커버 등), 멕시코산(임펠러, 플랜지, 모터 홀더) 부품과 로터 어셈블리 및 스테이터 어셈블리를 가공·조립하여 증발기 어셈블리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때, 용접, 자화, 프레스 가공, 인쇄 회로 기판 제어, 테스트 등의 공정 수행 7. 미국 수출 • 시나리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터 요크 및 스테이터 코어를 일본에서 생산 (나머지는 시나리오 1과 동일) • 시나리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터 요크 및 스테이터 코어를 한국에서 생산 (나머지는 시나리오 1과 동일) • 시나리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터 요크 및 스테이터 코어를 태국에서 생산 (나머지는 시나리오 1과 동일) • 시나리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발기 어셈블리의 조립·생산도 중국에서 수행 (나머지는 시나리오 1과 동일) | | | |

□ 쟁점사항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USTR은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중국산 특정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제301조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사용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 부품이 원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적 부분이 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573 F. Supp. 1149 (Ct. Int'l Trade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만약,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사소한 수준이며,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본질에 변화가 없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 법원은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기준을 검토
 - 수입 후 공정이 조립에 불과한 경우, 특히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성질(character)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음
 - 수입 시점에서 최종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도(use)의 변화가 없다고 봄
 - 조립 공정의 성격 또한 고려(조립이 단순한 수준인지, 아니면 복잡하여 개별 부품이 독립된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물품의 구성요소로 전환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
- CBP는 팬이나 펌프 부품을 모터에 단순히 프레스 장착하거나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수준의 조립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함
 - 즉, 팬 또는 펌프 어셈블리의 원산지는 모터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는 해당 어셈블리에서 모터가 핵심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임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4126*

(사례) 대부분의 중국산 개별 부품이 세르비아로 운송된 후, 로터 서브어셈블리 및 스테이터 서브어셈블리로 제조되었고, 모터로 결합되어 최종 원심식 식기세척기용 펌프 완성

(판정) CBP는 모터가 최종제품인 식기세척기용 펌프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면서, 대부분의 부품을 중국산으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로터의 자화(magnetization), 다수 부품의 공압 프레스, 자외선 접착제 경화, 유도 납땜 등의 복잡한 공정을 통해 세르비아에서 모터가 생산되었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세르비아로 판정함

- 또한, CBP는 일반적으로 전기모터의 원산지는 해당 모터의 두 가지 핵심 구성요소인 로터와 스테이터가 제작된 국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나아가, 스테이터와 로터의 원산지 역시 각 부품의 코어가 제조된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옴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5251*

(사례) 일본에서 강철 코일로 생산한 스테이터 스택 및 로터 스택을 중국으로 수입하여 중국산 부품(폴리, 베어링, 샤프트, 엔드 캡 등)과 조립해 전기 스테퍼 모터를 생산하였으며, 이때 중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스테이터 및 로터 스택 기계 가공, 도장, 코일 감기, 샤프트 및 베어링 부착, 와이어 납땜, 하우징 및 엔드 캡 결합 등임

(판정) 완성된 스테퍼 모터의 본질은 스테이터와 로터에 있으며, 나머지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은 로터와 스테이터를 새로운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킬 만큼 복잡한 공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스테이터 및 로터 스택이 제조된 일본을 원산로 판정

- 더불어, CBP는 조립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할 만큼 충분히 복잡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국가에서 수행되는 서브어셈블리 공정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529*

(사례) 미완성 우편 요금계기 생산을 위한 주요 서브어셈블리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었으나, 나머지 서브어셈블리들은 중국에서 제조되었고, 이들 서브어셈블리를 연결하여 최종 조립하는 과정 역시 중국에서 이루어짐

(판정) 중국에서 조립 공정뿐만 아니라 일부 서브어셈블리 또한 제조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에서 행해진 공정이 충분히 광범위하며 복잡한 것으로 판정하여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함

- CBP는 모터와 관련하여 스테이터 및 로터 코어가 생성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가공의 범위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9707*

(사례) 대부분 중국산 부품(스테이터 코어, 로터 요크, 마그넷 와이어, 절연 시트, 하우징, 리드 와이어 하네스 등)을 사용하여 멕시코에서 최종제품인 팬 블로어를 생산하였으며, 이때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스테이터 어셈블리 및 로터 어셈블리 제작, 리드 와이어 하네스를 PCBA에 납땜, 임펠러 및 하우징 부착 등 광범위한 공정이 수행됨

(판정) CBP는 이러한 공정을 통해 기존 부품들이 개별 정체성을 상실하고, 공기 순환 기능을 갖춘 새로운 상업적 물품인 팬 블로어 어셈블리로 탈바꿈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멕시코로 판정

판정 결과

- Ⅴ (시나리오 1~4) CBP는 최종제품인 증발기 어셈블리의 원산지는 스테이터 및 로터 어셈블리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다시 해당 어셈블리들의 핵심 부품인 스테이터 코어와 로터 코어가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게 되므로, 각 시나리오별로 스테이터 코어와 로터 코어를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인 것으로 판정함
- Ⅴ (시나리오 5) 시나리오 5의 경우, 핵심 부품인 스테이터 코어와 로터 코어가 베트남에서 생산되었지만, CBP는 HQ H303529, NY N309707 사례를 인용하여 중국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대부분의 부품이 중국산이므로, 최종제품인 증발기 어셈블리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함

□ 결론

- ✓ (시나리오 1~4)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원산지는 아래와 같으며, 최종적으로 중국산이 아니므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 시나리오 | 판정 결과 | 제301조 대상 여부 |
|------|-------|-------------|
| 1 | 베트남산 | X |
| 2 | 일본산 | |
| 3 | 한국산 | |
| 4 | 태국산 | |

- ✓ (시나리오 5) 원산지는 중국이며,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임

Ⅲ. 시사점

- CBP는 실질적 변형에 기초하여 전기모터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모터의 핵심 구성요소인 로터와 스테이터가 제작된 국가를 기준으로 하나, 이는 다시 세부적으로 로터와 스테이터의 코어가 제조된 국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

- 다만, 시나리오 5와 같이 핵심 부품인 로터 및 스테이터 코어가 일정 국가에서 제조되었다고 할지라도 최종제품 생산을 위한 공정이 타국에서 광범위하고 복잡할 정도로 수행된 경우에는, 해당 공정이 수행된 국가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IV.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9601 (2021.07.16.), <https://rulings.cbp.gov/ruling/H319601>
- CBP Ruling HQ H304126 (2020.02.13.), <https://rulings.cbp.gov/ruling/H304126>
- CBP Ruling NY N305251 (2019.08.01.), <https://rulings.cbp.gov/ruling/N305251>
-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529>
- CBP Ruling NY N309707 (2020.03.11.), <https://rulings.cbp.gov/ruling/N309707>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4. 스테인리스 강판

[요약]

| | |
|---------|---|
| 사례명 | [스테인리스 강판]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33889 (2023.07.20.) |
| 사실관계 | 인도네시아에서 용해·열간압연·냉간압연하여 코일 형태로 제조한 스테인리스강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표면 연마, 절단, 코팅 등의 공정을 수행한 후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중국에서 수행된 후공정(연마, 절단, 코팅 등)은 해당 강판의 명칭, 성질 또는 용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질적 제조는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되었으므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임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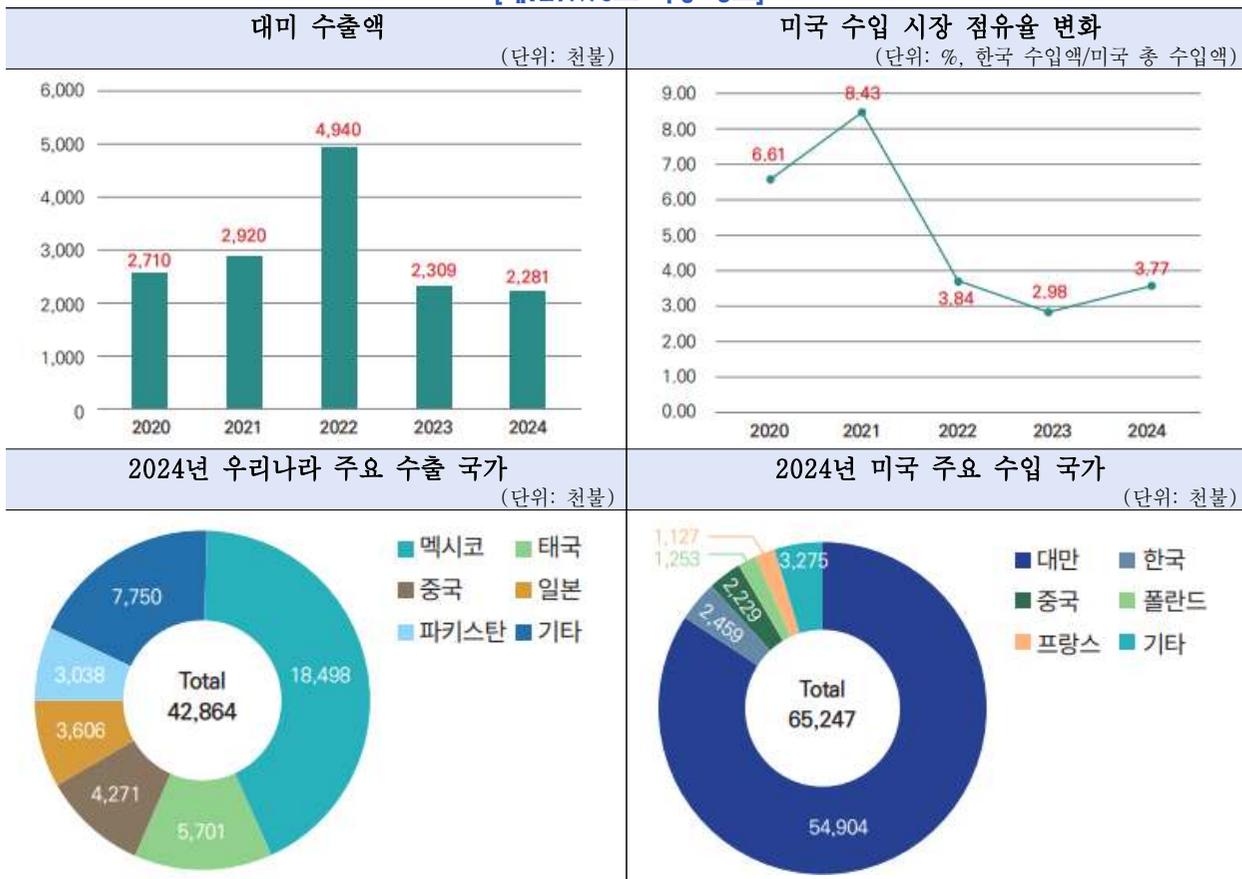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7219.9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7219.9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스테인리스 강판]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33889 (2023.07.20.)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Millennia Stainless Inc. | |
| 제품 | 제품명 | • 연마 및 코팅 처리된 스테인리스 강판(Polished and Coated Stainless Steel Sheet) |
| | 구성 | • Grade 304 또는 430 스테인리스강 - 두께: 0.45mm ~ 3.42mm - 폭: 최대 1,524 mm - 니켈 함량: 0.75% ~ 10.5% - 기준 규격: ASTM A240/A480 |
| | 용도 | • 가전제품, 실외용 그릴 등 최종제품 생산용 |
| | 완제품 HS Code | • 7219.90.0025 |
| 제조 공정 |  <p>01 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강을 코일 형태로 제조</p> <p>02 인도네시아 중국 수출</p> <p>03 중국 연마, 절단, 코팅</p> <p>04 중국 포장 후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테인리스강 용해 및 주조를 통해 슬래브 제조 - 열간압연(hot-rolling) - 피클링(pickling) 및 어닐링(annealing) - 냉간압연(cold-rolling) - 코일 형태로 중국으로 수출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마(polishing) - 시트 형태로 절단(slitting) - 한쪽 면 PVC 코팅 및 반대쪽 면 지문 방지(anti-fingerprint) 코팅 - 길이 절단(cut-to-length) -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거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원산지는 해당 물품이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거친 국가이며, 이는 물품의 명칭, 성질 또는 용도에 변화를 초래하는 가공을 의미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5009*

판정 결과

- 중국에서 수행된 후공정(연마, 절단, 코팅 등)은 해당 강판의 명칭, 성질 또는 용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질적 제조는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되었으므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임

기타 의견

- 해당 제품(HTSUS 7219.90.0025)은 『대통령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및 9705)』에 따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무역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입 시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기본 분류에 더해 Chapter 99(추가 관세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 결론

- ✓ 연마, 코팅, 절단 등의 중국 내 후가공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 ✓ 최종 스테인리스 강판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로 판정됨
- ✓ 해당 제품(HTSUS 7219.90.0025)은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일 수 있음

Ⅲ. 시사점

- CBP는 표면 처리·절단 등 원자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마감 공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함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3889 (2023.07.20.), <https://rulings.cbp.gov/ruling/N333889>
- CBP Ruling HQ 735009 (1993.07.30.), <https://rulings.cbp.gov/ruling/73500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862&num=0&edition=prelim>

Case 5. 스테인리스 강판

[요약]

| | |
|---------|---|
| 사례명 | [스테인리스 강판]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34299 (2023.08.22.) |
| 사실관계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 슬래브를 중국으로 보내어 열간압연·냉간압연, 열처리, 폴리싱, 코팅 등의 공정을 거쳐 시트로 완성 후 미국으로 수입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CBP는 중국에서 수행된 열간압연, 피클링, 어닐링, 냉간압연 등의 공정이 슬래브 형태의 스테인리스강을 강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제품인 스테인리스 강판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p>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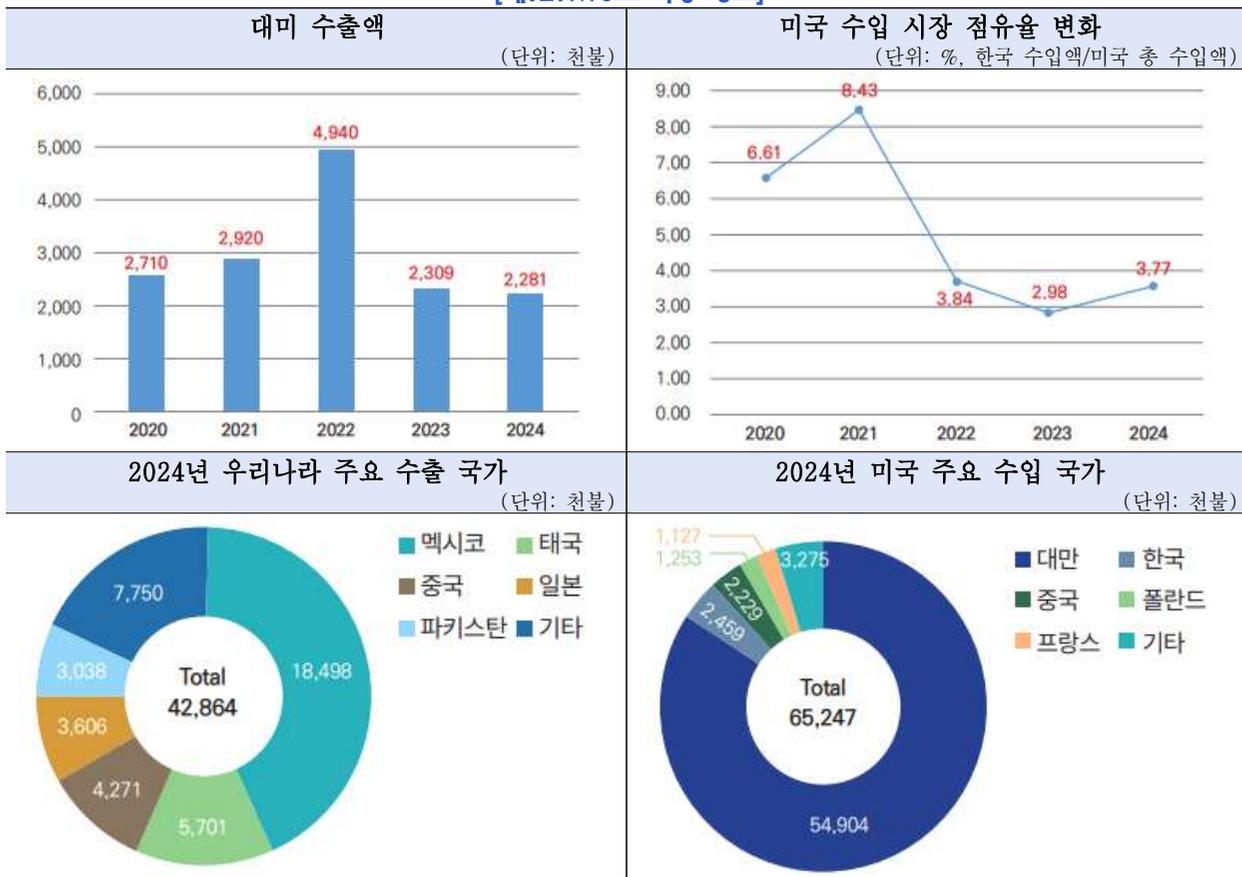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7219.9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7219.9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스테인리스 강판]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34299 (2023.08.22.)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Millennia Stainless Inc. | |
| 제품 | 제품명 | • 연마 및 코팅 처리된 스테인리스 강판(Polished and Coated Stainless Steel Sheet) |
| | 구성 | • Grade 304 또는 430 스테인리스강 - 두께: 0.45mm ~ 3.42mm - 폭: 최대 1,524mm - 니켈 함량: 0.21% ~ 8.02% - 기준 규격: ASTM A240/480 |
| | 용도 | • 가전제품, 실외용 그릴 등 최종제품 생산용 |
| | 완제품 HS Code | • 7219.90.0025(니켈 함량 0.5% 초과) • 7219.90.0080(니켈 함량 0.5% 이하) |
| 제조 공정 | <p>01 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강용 슬래브 형태로 제조</p> <p>02 인도네시아 중국으로 수출</p> <p>03 중국 압연, 피클링, 어닐링, 연마, 절단, 코팅</p> <p>04 중국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테인리스강 용해 및 주조를 통해 슬래브 제조 - 중국으로 수출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간압연(hot-rolling) - 피클링(pickling) 및 어닐링(annealing) - 냉간압연(cold-rolling)하여 코일 형태로 성형 - 연마(polishing) - 시트 형태로 절단(slitting) - 한쪽 면 PVC 코팅 및 반대쪽 면 지문 방지(anti-fingerprint) 코팅 - 길이 절단(cut-to-length) -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거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원산지는 해당 물품이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거친 국가이며, 이는 물품의 명칭, 성질 또는 용도에 변화를 초래하는 가공을 의미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5009*

판정 결과

- CBP는 중국에서 수행된 열간압연, 피클링, 어닐링, 냉간압연 등의 공정이 슬래브 형태의 스테인리스강을 강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제품인 스테인리스 강판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

기타 의견

- 해당 물품(HTSUS 7219.90.0025 및 7219.90.0080)은 『대통령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및 9705)』에 따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무역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입 시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기본 분류에 더해 Chapter 99(추가 관세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 U.S. Note 20 to Subchapter III, Chapter 99, HTSUS에 따라 HTSUS 7219.90.0025 및 7219.90.0080에 분류되는 중국산 물품은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일 수 있으며, 수입 시 HTSUS 7219.90.0025 및 7219.90.0080 세번과 함께 9903.88.15도 함께 신고해야 함
- 해당 물품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CBP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판정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에서 발행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하길 권고함

□ 결론

- ✓ 중국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열간·냉간 압연, 피클링, 어닐링 연마 및 코팅 등)은 실질적 변형을 초래함
- ✓ 따라서 본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됨
- ✓ 중국산의 경우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III. 시사점

- 슬래브는 중간재로 최종제품 형태와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국에서의 압연 및 표면 처리 공정이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될 수 있음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4299 (2023.08.22.), <https://rulings.cbp.gov/ruling/N334299>
- CBP Ruling HQ 735009 (1993.07.30.), <https://rulings.cbp.gov/ruling/73500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862&num=0&edition=prelim>

Case 6.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어셈블리

[요약]

| | |
|---------|--|
| 사례명 |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어셈블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40514 (2024.07.03.) |
| 사실관계 | 중국산 이너 링(inner ring), 강구(steel ball), ABS 센서 등의 부품을 수입한 후, 이너 링에는 레이스웨이 가공을 수행하고 동일하게 레이스웨이 가공이 수행된 태국산 내·외부 플랜지를 결합하여 최종제품 생산 및 미국 수출 |
| 쟁점 및 판정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여러 부품이 결합되는 조립 공정은 단순 조립에 해당하며,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이너 링 및 내·외부 플랜지에 정밀한 레이스웨이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로 결정되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태국인 것으로 판정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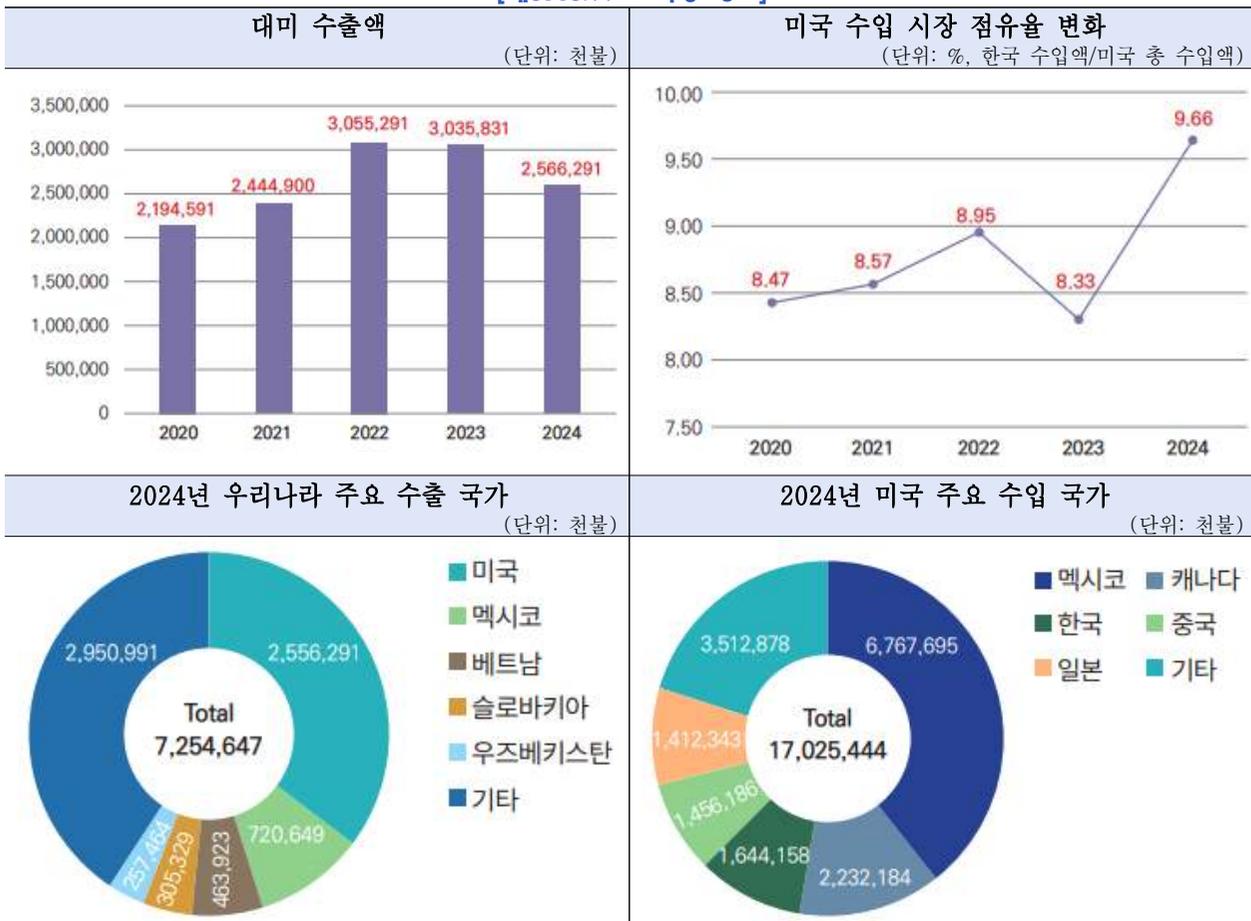
□ 품목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8708.99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2.5%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시장정보

[제8708.99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어셈블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40514 (2024.07.03.)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New Torch Technology Thailand Company Limited (대리인: Autolin Inc.) | |
| 제품 | 제품명 | • 이중 플랜지 휠 허브 어셈블리 (제품번호 G3-350A) |
| | 구성 | • 내·외부 플랜지 (태국산) • 이너 링(inner ring), 강구(steel balls), 스피 링, 케이지, 기어 링, ABS 센서, 볼트, 그리스, 포장재 (중국산) |
| | 용도 | • 자동차 앞바퀴 구동계에 직접적으로 통합되어 회전 및 제동 제어를 지원 |
| | 완제품 HTSUS | • 8708.99.5800 |
| 제조 공정 | <p>01 중국산 부품 태국으로 수입 → 02 중국산 이너 링 가공 → 03 태국산 내·외부 플랜지 가공 → 04 최종조립 → 05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부품을 태국으로 수입 중국산 이너 링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밀연삭을 통해 레이스웨이, 내경, 외경, 측벽 가공 초정밀연삭을 통해 레이스웨이 가공 태국산 내/외부 플랜지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밀선삭, 천공, 챔버링, 탭 가공, 열처리 등 수행 정밀선삭을 통해 레이스웨이, 단면, 내경, 외경 가공 정밀연삭을 통해 내경, 외경, 레이스웨이 가공 초정밀연삭을 통해 레이스웨이 가공 최종 조립 공정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음파 세척기로 모든 부품 탈자 및 세척 부품 결합 ABS 센서 장착 신호 감지기로 유효 전압값 측정 최종제품에 레이저 마킹 및 방청유 수작업 도포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ⅴ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㉔ CBP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실질적 변형 여부에 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CBP는 해당 사례에서 최종 조립 과정을 단순 조립으로 간주하면서, 실질적 변형 여부는 이너 링과 내·외부 플랜지에 수행된 정밀한 레이스웨이 가공이 제품의 본질을 형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다음의 사례를 인용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62528*

(내용) 베어링의 기본적인 성질(character)과 용도(use)는 강재 링(steel rings)이 정밀한 레이스웨이를 갖춘 레이스로 연삭 및 마감 처리된 후에 결정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1968* 및 *HQ 731969*

(내용) 강재 링이 한 국가에서 열처리 및 연마되고 다른 국가에서 레이스가 형성되고 정밀 마감이 이루어진 경우 레이스가 형성된 국가가 원산지인 것으로 판정

판정 결과

- ㉔ CBP는 CBP Ruling HQ 562528, HQ 731968, HQ 731969를 통해 정밀한 레이스웨이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가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로 인정됨을 밝힘
- ㉔ 이에 따라, 본 사례에서는 이너 링과 내·외부 플랜지에 정밀한 레이스웨이 가공이 이루어진 태국을 원산지로 판정

기타 의견

- ㉔ 완제품의 원산지가 태국산으로 인정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제재를 위한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제품에 본질을 부여하는 공정인 정밀한 레이스웨이 가공이 태국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태국임
- ✓ 실질적 변형에 기초한 원산지가 태국이므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Ⅲ. 시사점

- 실질적 변형에 기초하여 베어링, 플랜지 등의 자동차 부품 원산지를 판단할 경우, 정밀한 레이스웨이 가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
- CBP는 사안별로 판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본 사례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다른 판정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0514 (2024.07.03.), <https://rulings.cbp.gov/ruling/N340514>
- CBP Ruling HQ 562528 (2002.12.10.), <https://rulings.cbp.gov/ruling/562528>
- CBP Ruling HQ 731968 (1990.03.01.), <https://rulings.cbp.gov/ruling/731968>
- CBP Ruling HQ 731969 (1990.03.19.), <https://rulings.cbp.gov/ruling/73196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7. 방향성 전기강판

[요약]

| | |
|---------|---|
| 사례명 | [방향성 전기강판]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37102 (2024.09.03.) |
| 사실관계 | A국에서 방향성 전기강판 생산을 위한 GOES 기재(HTSUS 7225.11.00)를 제조하여 B국으로 수출한 후, 절연코팅, 열평탄화 열처리, 레이저 깎기, 절단 등의 공정을 통해 만든 최종제품 GOES(HTSUS 7225.11.00)를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p> <p>B국의 공정을 통해 최종제품의 명칭이 GOES 기관에서 GOES로 변경되기는 하나, 성질 및 용도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A국과 B국에서 행해진 공정의 범위 및 HS code의 변경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도 B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A국임</p>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HTSUS(19 U.S.C. § 1202) Chapter 72 Note 1(jj)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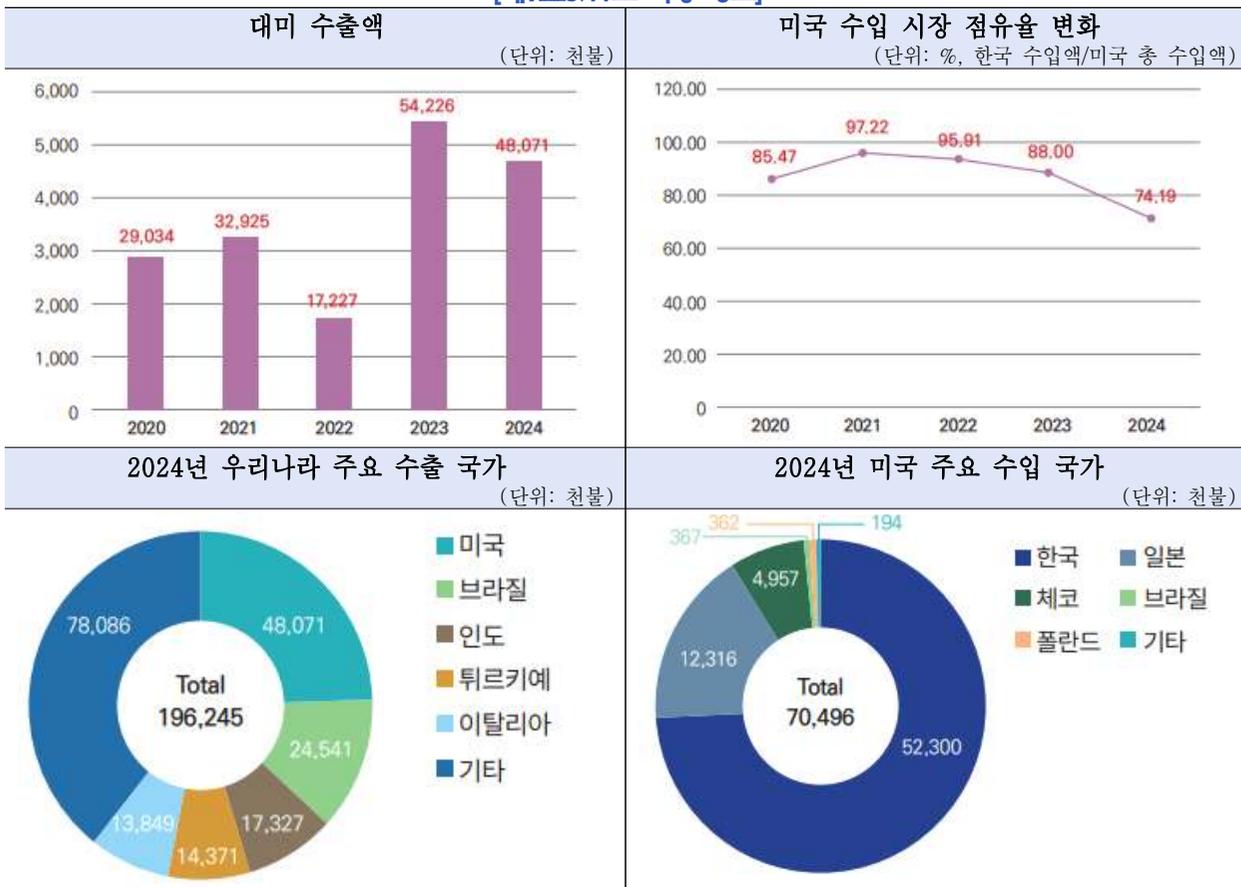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7225.11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5% |
| | 미국 기본세율 | 0%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7225.11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방향성 전기강판]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37102 (2024.09.03.)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비공개 (대리인: ArentFox Schiff LLP) | |
| 제품 | 제품명 | • 방향성 전기강판 (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 GOES) |
| | 용도 | • 전력 변압기 제조용 |
| | 완제품 | |
| | HS Code | • 7225.11.00 |
| 제조 공정 | | |
| | <p>[상세 공정]</p> <p>(1) A국 - GOES 기판 제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선(Iron-making): 코크스 제조, 철광석 준비, 선철 생산 ② 제강, 정련 및 연속주조: 산소로에서 강철 생산, 금속 결정화 및 연속주조, 주조된 스트랜드를 절단하여 개별 슬래브로 분리 ③ 열간압연: 슬래브를 특정 온도로 가열한 후 압연기를 통해 250mm에서 2.5mm 또는 2.3mm까지 두께 감소, 압연 후 목표 코일링 온도로 냉각 ④ 열간압연 코일 준비: 열간압연된 코일의 불량 구간 제거 및 재권취 ⑤ 피클링: 열간압연 스트립 표면의 산화 스케일 제거를 위해 염산 용액에 담금 ⑥ 1차 냉간압연: 두께를 2.5mm에서 0.60~0.70mm로 감축 ⑦ 코일 준비: 파손 부분 제거, 스트립 연결을 위한 용접, 권취 등 작업 수행 ⑧ 재결정 및 탈탄 어닐링: 850~880°C에서 연속 어닐링, 냉간압연강의 재결정 유도 및 탄소 제거 ⑨ 코일 준비: 스트립 가장자리 결함 제거를 위한 엣지 트리밍 ⑩ 2차 냉간압연: 두께를 0.60~0.70mm에서 최종 두께인 0.23mm, 0.27mm, 0.3mm 또는 0.35mm로 압연 ⑪ 코일 준비: 재권취 작업 수행 ⑫ 탈지 및 MgO 코팅: 스트립을 탈지한 후 산화마그네슘 기반 코팅 적용 ⑬ 고온 어닐링: 1150~1200°C에서 어닐링하여 전기 절연 코팅을 위한 Mg₂SiO₄ 기저층 형성 <p>→ [GOES 기판] 방향성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절연 코팅은 없는 상태이고, 완전히 평탄하지 않으며, 가장자리에 결함이 있는 상태의 코일 형태의 기판 생성(HTSUS 7225.11.00)</p> <p>(2) B국 - GOES 최종 가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절연코팅: Mg₂SiO₄ 층은 남긴 채로 수분과 브러시로 MgO 코팅 제거 후 경화로에서 건조 및 경화 처리 ② 열평탄화 어닐링: 800~860°C에서 가열 ③ 레이저 스크라이빙: 레이저로 기판 일부를 가열 및 냉각하여 자기적 성능 향상 ④ 가공 및 코일화: 스트립 가장자리 및 끝단 절단, 코일 형태로 성형 ⑤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CBP 『19 C.F.R. § 134』 규정은 『19 U.S.C. § 1304』의 원산지표시 요구사항과 예외를 규정하며, 134.1(b)에서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의 결정은 실질적 변형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실질적 변형: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경미한 공정(minor process)에 불과하여 해당 물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신청자는 Ferrostaal Metals 사례 및 CBP Ruling HQ H242034, HQ H302201를 근거로 B국에서 실시한 어닐링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였음
- 특히, H242034 및 H302201에 근거하여 A국에서 수출된 GOES 기관은 반가공품이며, B국에서 최종 상태로 변형된다고 주장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664 F. Supp. 535 (Ct. Intl. Trade 1987)

- 어닐링 공정이란 강철 제품의 냉간압연 후 연성(ductility)을 복원하기 위해 고온으로 가열한 후, 물 또는 기타 수단으로 급속 냉각하는 공정임
- CIT는 어닐링 공정이 실제 화학적 조성이나 물리적 치수를 변화시키지는 않으나, 강철 내 탄소와 질소의 분포에 영향을 미쳐 냉간압연된 강철의 변형 에너지를 제거하고, 강도는 낮추는 대신 연성과 성형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
- CIT는 연성과 강도가 강철의 중요한 특성이며, 어닐링 공정은 강철의 성질(character)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다고 판단하였고, 이 공정을 통해 새롭게 부여된 강도와 연성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용도가 전용되었다고 판단
- 비슷한 맥락에서 CIT는 판유리를 가열한 뒤 급속 냉각하여 강도를 증가시키는[일반적으로 템퍼링(tempering) 이라 불림] 공정 또한 새로운 상업적 제품을 창출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Guardian Industries Corp. v. United States*, 3 CIT 9, 16 (1982) 인용]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42034*

- 중국과 일본에서 제조된 냉간 가공 무계목 강관(cold finished seamless pipe)의 원산지 검토
- 중국에서 최초 제조자가 그린 파이프를 냉간 인발 공정을 통해 생산
- 해당 그린 파이프는 특정 최종 용도에 적합하지 않고 어떠한 산업 성능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반가공 제품으로 간주됨
- 일본에서 그린 파이프를 1차 어닐링, 냉간 인발, 2차 어닐링, 교정을 포함한 여러 단계의 공정 수행
- CBP는 반가공 제품이 ASTM A312 규격 요건을 충족하는 완제품으로 전환되었기에, 일본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Ferrostaal 판례에 부합하게 어닐링 공정이 초기 그린 파이프에 새로운 명칭, 특성, 용도를 부여한다고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2201*

- 독일에서 알루미늄 호일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스톡의 원산지 검토
- 해당 사례에서 중국산 호일스톡은 소비자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반가공 재료로 간주
- 독일에서 1차 어닐링, 압연, 코일 형태로 권취, 최종 어닐링 수행
- CBP는 최종 어닐링 공정이 압연 공정으로 인해 변형되거나 수정된 결정 구조의 재결정화를 유도하였으며, 소재의 연성과 연화를 복원하고 호일의 원자 구조를 재구성하여 기계적 특성을 변화시켰다고 판정

- 그러나, 위와 대조적으로 어닐링 공정이 광범위하거나 복잡하지 않고 물품의 용도를 변화시키거나 제한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변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도 존재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17502*

- 비방향성 전기강으로 된 합금강 코일의 원산지 검토
- 미국산 풀 하드(full-hard) 전기강 코일(HTSUS 7225.19.00)이 독일로 수출되어 기계적, 전자기적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 어닐링 공정이 이루어지고 절연 바니시가 코팅됨
- CBP는 “ASTM A677 규격은 바람직한 코어 손실(core-loss) 값 및 투자율(permeability)과 같은 특성이 압연 공정(mill processing) 중에 이미 형성된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언급
- CBP는 “미국에서의 압연 공정은 특정 특성을 부여하며, 수출 시점에서 해당 코일은 어닐링 및 코팅 공정에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명시
- 따라서, 해당 강재는 독일 수출 당시 이미 전기용으로 사용될 의도가 있었으며 “어닐링 및 코팅 공정은 그러한 용도를 단지 진전시키는 데 그친다.”고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5103*

- 스테인리스강 봉재 및 와이어 로드에 대한 용액 담금질 및 어닐링 공정이 강재의 연성, 연화성, 내식성 등을 극대화하더라도, 강재가 다기능적 용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54592*

- 강재의 연성을 단순히 복원하기 위해 설계된 어닐링 공정은 원래 제품의 인장 강도 및 항복 강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여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어닐링 공정과 구별되며, 후자의 경우에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단

- CBP는 HTSUS Chapter 72 Note 1(jj)에서 ‘반가공품(GOES 기관)에는 이미 코팅이 완료되어 코일 형태로 가공된 제품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은 반가공품이 아님을 밝힘
- 또한 Ferrostaal 사례에서 사건의 공정은 두 단계(어닐링, 아연도금 공정)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사례에서 법원은 어닐링 공정이나 도금 공정 중 어느 하나만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Ferrostaal 사례를 인용하기 어려움을 명시
- Ferrostaal 사례 이후 CBP는 일반적으로 어닐링에 따른 실질적 변형 여부를 처리 시간, 공정의 복잡성, 강재의 기계적 성질과 용도에 미치는 영향, 투입된 설비 비용 및 공정으로 인한 부가가치 등에 따라 판단함

판정 결과

- B국의 공정은 GOES 기관의 실질적 변형(명칭, 성질, 용도)을 초래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 (명칭) B국의 공정을 거친 후 GOES 기관에서 GOES로 명칭이 변경되기는 하나 명칭 기준은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도가 낮은 요소임
 - (성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GOES 기관은 코일 형태로 B국으로 수출되며, 최종 완성된 GOES의 화학적 조성은 GOES 기관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최종 가공 공정은 GOES의 물리적 두께에도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음. 더불어, 신청자는 국가 B에서의 최종 어닐링 공정이 GOES 기관의

자기적 특성과 연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A국에서 수출되는 GOES 기관 자체가 이미 비전기강 보다 훨씬 우수한 자기 특성을 갖춘 전기강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A국의 GOES 기관이 반가공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HTSUS Chapter 72 Note 1(jj)에 따라 해당 제품은 반가공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 (용도) GOES 기관은 국가 A에서 출하 시 이미 전기적 용도를 목적으로 설계된 전기강임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국가 B에서의 가공 이전부터 이미 정해진 최종 용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 B에서의 공정은 기존 용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를 단순히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용도의 변경이 없음

□ 이 외에도 법원이 실질적 변형을 판단할 때는 부수적 또는 추가적 요소들을 고려하는데,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성격, 가공 중 발생한 부가가치, 생산재에서 소비재로의 전환, 관세 분류의 변경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부수적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공정 범위·설비·부가가치 측면에서 역시 A국에서의 공정이 압도적이고, GOES 기관과 최종 GOES의 HS code 또한 동일하므로 B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B국의 공정을 통해 최종제품의 명칭이 GOES 기관에서 GOES로 변경되기는 하나, 성질 및 용도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A국과 B국에서 행해진 공정의 범위 및 HS code의 변경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도 B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A국임

III. 시사점

- 전기강관과 같은 고기능성 금속 소재의 경우, 소재 자체의 완성도와 산업적 특성을 이미 갖췄다면 이후 용도와 기능을 돕는 후처리만으로는 실질적 변형 인정이 어려움
- CBP에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자사 제품의 원산지 사전판정을 신청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판례 및 사전심사 사례를 참고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음

IV.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37102 (2024.09.03.), <https://rulings.cbp.gov/ruling/H337102>
- CBP Ruling HQ H242034 (2013.08.12.), <https://rulings.cbp.gov/ruling/H242034>
- CBP Ruling HQ H302201 (2020.04.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2201>
- CBP Ruling HQ H317502 (2021.03.26.), <https://rulings.cbp.gov/ruling/H317502>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HTSUS(19 U.S.C. § 1202) Chapter 72 Note 1(jj), <https://hts.usitc.gov/>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_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8.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요약]

| | |
|---------|--|
| 사례명 |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43543 (2024.10.31.) |
| 사실관계 | 한국에서 제조된 절연 케이블 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절단, 테이핑, 단자 연결 등의 조립 공정을 거쳐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완제품으로 제작한 후, 다시 한국으로 수출하여 테스트 및 포장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의 경우 절연 케이블 도체의 기능이 제품의 본질을 구성하며, 중국에서의 공정은 단순 조립으로 실질적 변형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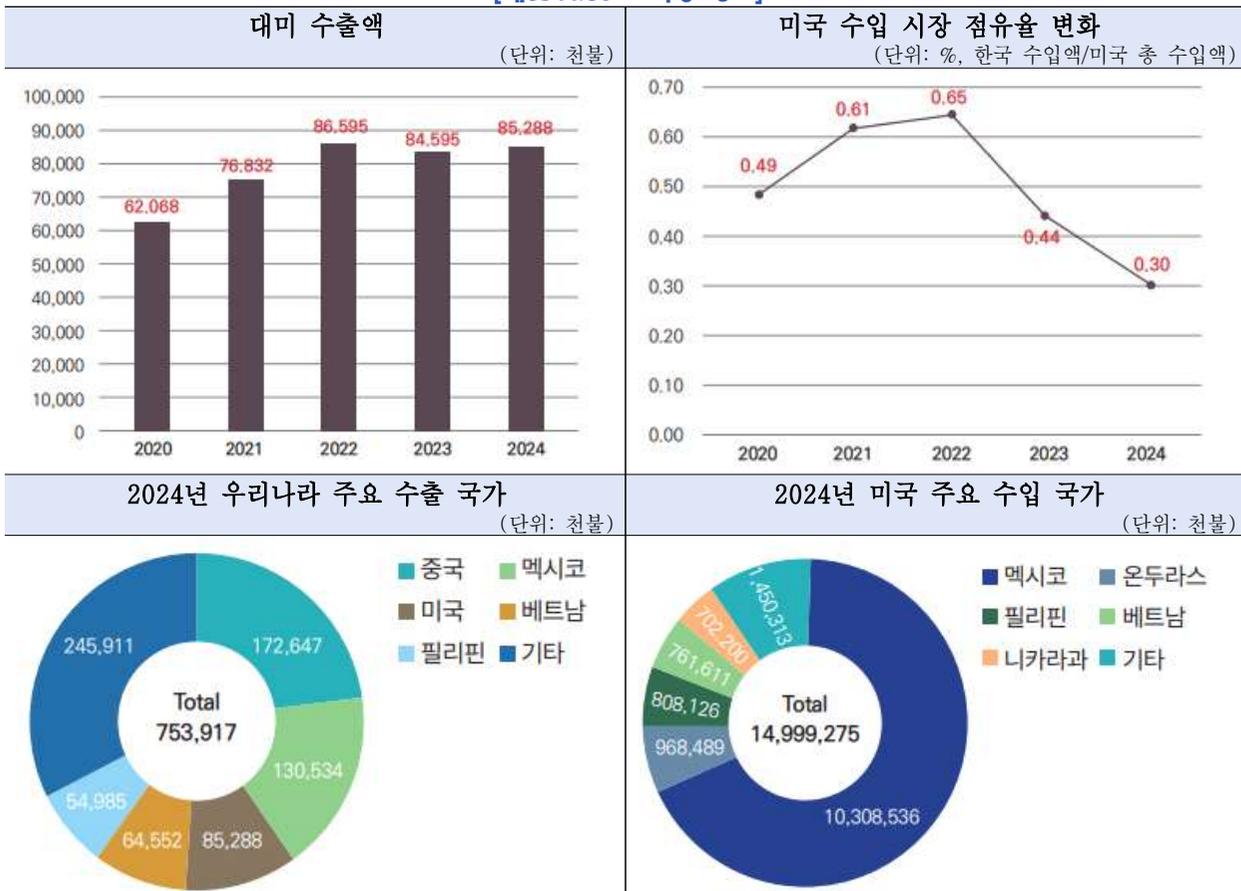
□ 품목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8544.3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5%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시장정보

[제8544.3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43543 (2024.10.31.)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Hyundai Motor Company(대리인: SEIN Customs & Auditing Corp) | |
| 제품 | 제품명 | •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부품번호 39222-2S000) |
| | 구성 | • 절연 케이블 도체 • 커넥터 • 단자 • 테이프 등 |
| | 용도 | • 자동차 엔진룸 내 냉각 시스템을 통한 전기 신호 전달용 |
| | 완제품 HTSUS | • 8544.30.0000 |
| 제조 공정 | | |
|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에서 절연된 케이블 도체 제조 2. 중국으로 수출 3. 중국에서 아래 공정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단 및 테이프 고정 - 커넥터 및 단자 조립 4. 조립 완료된 하네스를 한국으로 수출 5. 한국에서 최종 검사 및 포장 6.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의 판단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에 기초하며,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사례) 단순 라벨 부착이나 경미한 작업 후 미국에 수입된 향수 케이스

(판결) 제품의 본질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은 발생하지 않음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사례) 대만산 금속 부품이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었으나, 부품 자체는 완성된 형태로 수입됨

(판결) 미국에서의 조립이 새로운 기능, 구조를 창출하지 않았으며 실질적 변형은 아님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사례) 맥주 원액이 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에서 병입 및 포장됨

(판결) 제품의 정체성은 원액에 의해 결정되며, 미국 내 공정은 본질적 특성에 변화를 주지 않음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사례) 여러 신발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조립

(판결) 완제품인 신발의 본질적 기능이 외국산 부품(갑피)에 의해 결정되므로 미국에서의 실질적 변형은 인정되지 않음

판정 결과

- 본 사안에서 한국산 절연 케이블 도체는 완제품의 기능적 구성요소(functional components)로서 제품의 본질적 성격을 부여하는 주요 부품임
 - 반면, 중국에서 수행된 커넥터 부착, 단자 조립 등의 작업은 단순 조립으로 해당 케이블을 별도의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으로 변형시키지 않음
 - 따라서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이 한국산 부품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최종 원산지는 '한국'으로 결정됨

□ 결론

- ✓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의 경우 절연 케이블 도체의 기능이 제품의 본질을 구성하며, 중국에서의 공정은 단순 조립으로 실질적 변형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III. 시사점

- 커넥터 부착, 단자 조립 등은 단순 조립으로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며, 제품의 핵심 기능인 접속 및 전류 전도 기능을 담당하는 절연 케이블 도체가 어느 국가에서 제조되었는지가 원산지판정의 주요 기준임

IV. 참고자료

- CBP NY N343543 (2024.10.31.), <https://rulings.cbp.gov/ruling/N343543>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 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9. 자동차용 전면유리

[요약]

| | |
|---------|---|
| 사례명 | [자동차용 전면유리] 원산지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
| 사례번호 | NY N343290 (2024.11.04.) |
| 사실관계 | 중국산 평판 유리를 멕시코로 수입한 후, 고온 가열 및 프레스 공정을 통해 곡면 형상을 부여하고, 센서·브래킷·핀 등을 장착하여 최종제품인 자동차 전면유리로 완성한 뒤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 | NAFTA 혹은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준(19 C.F.R. § 102.11)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멕시코임 |
| 쟁점 및 판정 | ②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 | 중국산 평판 유리는 멕시코에서 고온 가열, 성형, 냉각, 라미네이션 등의 공정을 거쳐 자동차용 전면유리라는 식별 가능한 새로운 상업적 상품으로 변형되었으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02.11(19 C.F.R. § 102.11)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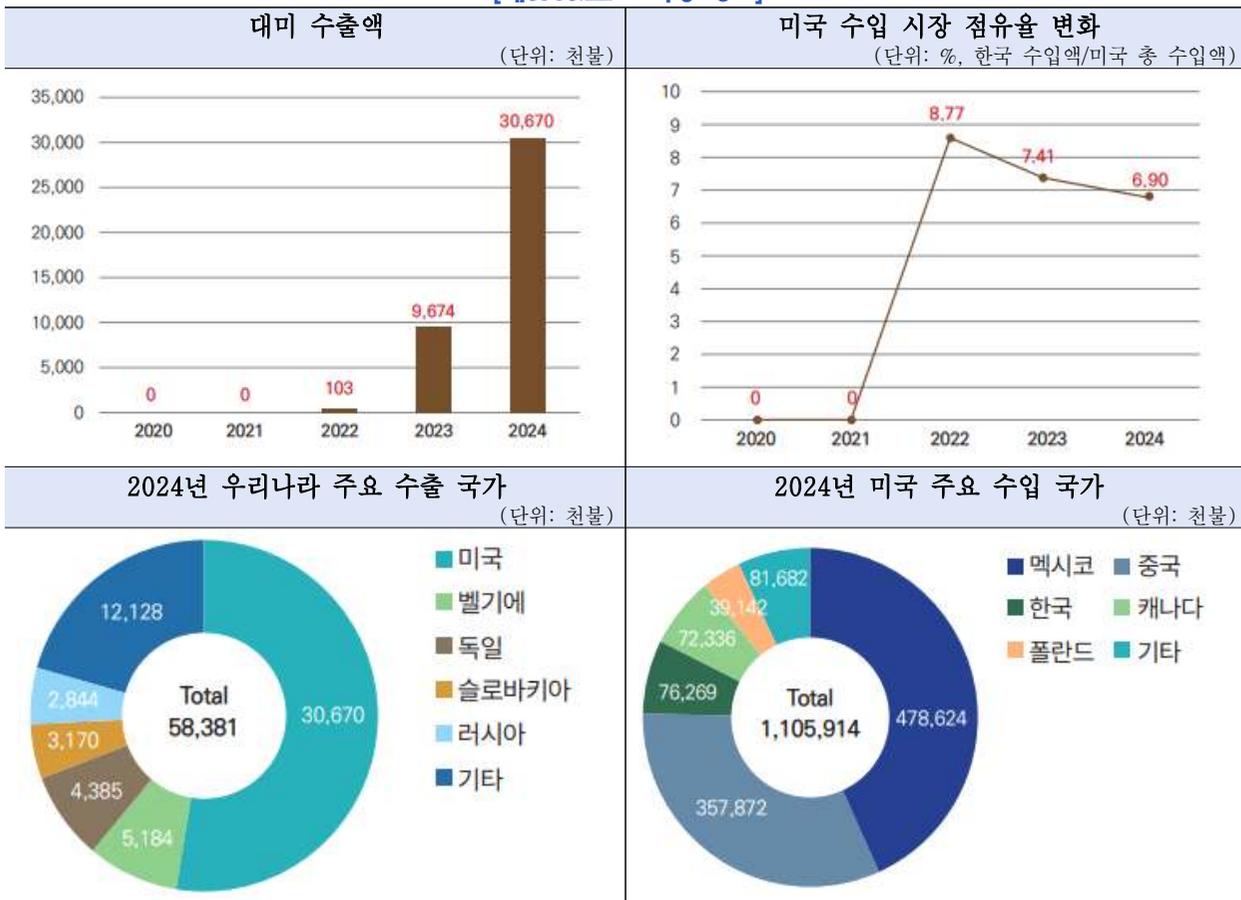
□ 품목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8708.22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2.5%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시장정보

[제8708.22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자동차용 전면유리] 원산지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 **사례번호:** NY N343290 (2024.11.04.)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Cristales Inastillables De México SA de CV (대리인: Uni-Trade Brokers LC) | |
| 제품 | 제품명 | • 자동차용 전면유리 (부품번호 2000124977, 폭스바겐 ID Crozz SUV용 OEM 제품) |
| | 구성 | • 평판 유리 (중국산) • 접착제, 프라이머, 페인트 및 기타 부자재 (미국산) • 커넥터 및 기타 부속품 (멕시코 및 기타 국가) |
| | 용도 | • 폭스바겐 ID Crozz SUV 트럭용 전면유리 |
| | 완제품 HTSUS | • 8708.22.0000 |
| 제조 공정 |  <p>01 중국산 평판 유리 멕시코로 수입</p> <p>02 벤딩 가공</p> <p>03 후공정 수행</p> <p>04 테스트 및 포장</p> <p>05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평판 유리를 멕시코로 수입 벤딩 가공 (자동차용 곡면 유리로 성형하는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온(634°C) 가열 → 380개 세라믹 롤러 통과 - 프레스 성형 - 냉각 및 후공정을 위해 이송 후공정: 라미네이션, 센서, 브래킷, 핀 등 부품 조립(기능적 완성도 제고) 최종 자동차 전면유리 완성 후 테스트 및 포장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검토

- ⅴ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ⅴ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단, NAFTA 또는 USMCA 물품에 대해서는 『19 C.F.R. § 102』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원산지표시 규정이 적용됨
- 『19 C.F.R. § 102.11(a)』에 따르면,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판정은 다음에 따름
 - ①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그 국가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②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자국산 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
 - ③ 해당 물품에 포함된 모든 외국산 재료가 『19 C.F.R. § 102.20』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모든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Ⅴ 자동차용 전면유리의 경우,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어 ③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19 C.F.R. § 102.20』에 명시된 제8708.22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판정 결과

- Ⅴ 제공된 자재명세서(BOM)에 따르면 중국산 평판 유리를 포함한 모든 외국산 부품은 제8708호 이외의 호에 분류되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멕시코임

②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Ⅴ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실질적 변형의 판단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에 기초하며,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사례) 단순 라벨 부착이나 경미한 작업 후 미국에 수입된 향수 케이스

(판결) 제품의 본질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은 발생하지 않음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사례) 대만산 금속 부품이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었으나, 부품 자체는 완성된 형태로 수입됨

(판결) 미국에서의 조립이 새로운 기능, 구조를 창출하지 않았으며 실질적 변형은 아님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사례) 맥주 원액이 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에서 병입 및 포장됨

(판결) 제품의 정체성은 원액에 의해 결정되며, 미국 내 공정은 본질적 특성에 변화를 주지 않음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사례) 여러 신발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조립

(판결) 완제품인 신발의 본질적 기능이 외국산 부품(갑피)에 의해 결정되므로 미국에서의 실질적 변형은 인정되지 않음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판정 결과

- 중국산 평판 유리는 멕시코에서 고온 가열, 성형, 냉각, 라미네이션 등의 공정을 거쳐 자동차용 전면유리라는 식별 가능한 새로운 상업적 상품으로 변형되었으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USMCA 원산지표시 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정
- ✓ 제301조 무역제재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멕시코이며, 제301조 무역제재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III. 시사점

- 평판 유리에 가열, 성형 등의 복합 공정을 수행하여 식별 가능한 새로운 상업적 상품으로 가공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인정됨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3290 (2024.11.04.), <https://rulings.cbp.gov/ruling/N343290>
-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CBP 19 C.F.R. § 102.11,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02>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_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10. 벌크헤드 어셈블리

[요약]

| | |
|---------|--|
| 사례명 | [벌크헤드 어셈블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45836 (2025.02.28.) |
| 사실관계 | 독일산 니켈합금강관 및 영국산 비합금강관 등 다양한 국가의 부품을 이탈리아로 수입하여 용접, 코팅, 결합 등의 공정을 통해 최종제품인 벌크헤드 어셈블리 생산 |
| 쟁점 및 판정 |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 | 이탈리아에서 수행된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는 단순 공정이며, 전체 구성요소 중 중량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관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고 판단하여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다음과 같이 판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NiFe Bulkhead Assembly: 최종제품의 본질적 특성은 중량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산 니켈 합금강관에 의해 부여되므로, 원산지는 독일임 - LTCS Bulkhead Assembly: 최종제품의 본질적 특성은 중량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국산 비합금강관에 의해 부여되므로, 원산지는 영국임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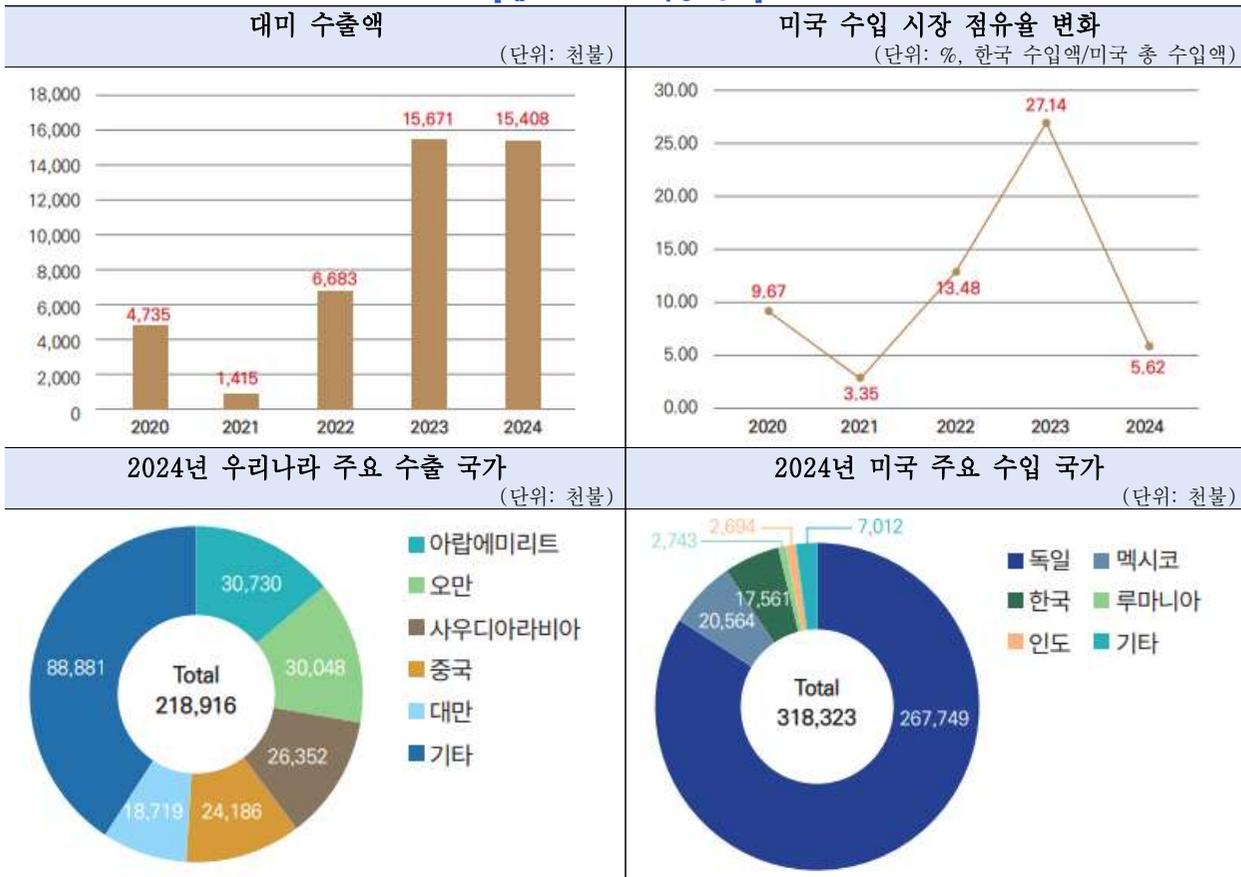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7305.31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304.4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외경이 19밀리미터 미만인 제7304.41호의 것 | |

□ 시장 정보

[제7305.31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벌크헤드 어셈블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45836 (2025.02.28.)

□ **사실관계**

| | | | | | | |
|-------------|---|--|---|---|--------------------------|---|
| 요청자 | • ITP SA (대리인: Roberts & Kehagiaras LLP) | | | | | |
| 제품 |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 니켈합금 벌크헤드 어셈블리 (36NiFe Bulkhead Assembly) • 저온 탄소강 벌크헤드 어셈블리 (LTCS Bulkhead Assembly) | | | | |
| | 구성 | <table border="1">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NiFe Bulkhead Assembly - 내관(Invar 36% 니켈합금강) - 외관(Invar 36% 니켈합금강) - 외부 슬리브(Invar 36% 니켈합금강) - concentric reducer(Invar 36% 니켈합금강) - steel transition pieces - Izoflex® 파이프 - 스테인리스강 Inline Bulkhead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TCS Bulkhead Assembly - 내관(Invar 36% 니켈합금강) - 외관(비합금 탄소강) - 외부 슬리브(비합금 탄소강) - concentric reducer(비합금 탄소강) - steel transition pieces - Izoflex® 파이프 - 스테인리스강 Inline Bulkhead </td> </tr> <tr> <td>전체 중량 기준 니켈합금강관이 대부분을 차지</td> <td>전체 중량 기준으로 비합금강 부품(외관, 외부 슬리브, concentric reducer)이 52% 이상 차지</td> </tr> </tabl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NiFe Bulkhead Assembly - 내관(Invar 36% 니켈합금강) - 외관(Invar 36% 니켈합금강) - 외부 슬리브(Invar 36% 니켈합금강) - concentric reducer(Invar 36% 니켈합금강) - steel transition pieces - Izoflex® 파이프 - 스테인리스강 Inline Bulkhea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TCS Bulkhead Assembly - 내관(Invar 36% 니켈합금강) - 외관(비합금 탄소강) - 외부 슬리브(비합금 탄소강) - concentric reducer(비합금 탄소강) - steel transition pieces - Izoflex® 파이프 - 스테인리스강 Inline Bulkhead | 전체 중량 기준 니켈합금강관이 대부분을 차지 | 전체 중량 기준으로 비합금강 부품(외관, 외부 슬리브, concentric reducer)이 52% 이상 차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NiFe Bulkhead Assembly - 내관(Invar 36% 니켈합금강) - 외관(Invar 36% 니켈합금강) - 외부 슬리브(Invar 36% 니켈합금강) - concentric reducer(Invar 36% 니켈합금강) - steel transition pieces - Izoflex® 파이프 - 스테인리스강 Inline Bulkhea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TCS Bulkhead Assembly - 내관(Invar 36% 니켈합금강) - 외관(비합금 탄소강) - 외부 슬리브(비합금 탄소강) - concentric reducer(비합금 탄소강) - steel transition pieces - Izoflex® 파이프 - 스테인리스강 Inline Bulkhead | | | |
| | 전체 중량 기준 니켈합금강관이 대부분을 차지 | 전체 중량 기준으로 비합금강 부품(외관, 외부 슬리브, concentric reducer)이 52% 이상 차지 | | | | |
| 용도 | • 극저온 파이프라인 시스템(Cryogenic Pipe-in-Pipe System) | | | | | |
| 완제품 HS Cod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NiFe Bulkhead Assembly: 7305.31.6090 • LTCS Bulkhead Assembly: 7305.31.4000 | | | | | |
| 제조 공정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일산 니켈합금강관 및 영국산 비합금강관 등의 여러 부품을 이탈리아로 수입 2. 내관 및 내측 transition pieces를 벌크헤드 단조 부품에 용접 후 Izoflex® 및 스테인리스강 시트로 절연 처리 3. 외관 및 외측 transition pieces를 벌크헤드 단조 부품에 용접 4. 위 구성품들을 외부 슬리브 파이프 내부에 삽입 5. concentric reducer를 슬리브 양 끝단에 용접 5. 전체 조립품에 외부 코팅 처리 6. 미국으로 수출 | | | |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㉔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㉔ CBP 『19 C.F.R. § 134』 규정은 『19 U.S.C. § 1304』의 원산지표시 요구사항과 예외를 규정하며,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의 결정은 실질적 변형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실질적 변형: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1940)

판정 결과

- ㉔ CBP는 본 사례에서 이탈리아에서 수행된 작업을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는 단순 조립으로 판단하였으며, 전체 구성요소 중 중량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관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고 판단하여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다음과 같이 판정함
 - 36NiFe Bulkhead Assembly: 최종제품의 본질적 특성은 중량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산 니켈 합금강관에 의해 부여되므로, 원산지는 독일임
 - LTCS Bulkhead Assembly: 최종제품의 본질적 특성은 중량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국산 비합금강관에 의해 부여되므로, 원산지는 영국임

□ 결론

- ✓ 36NiFe Bulkhead Assembly: 원산지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독일
- ✓ LTCS Bulkhead Assembly: 원산지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영국

III. 시사점

- 여러 부품을 단순 용접, 절연 처리, 결합하는 공정은 단순 조립에 해당하여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주요 원재료의 중량 기준이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5836 (2025.02.28.), <https://rulings.cbp.gov/ruling/N345836>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862&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Origin Case

Vol. 3

- Case 1 - 자동차용 전면유리 세정 펌프 (제8413.70호)
- Case 2 - 시즈닝 슬트 (제2103.90호)
- Case 3 - 냉동 비건 베이컨 (제2106.90호)
- Case 4 - 참치 대응 식물성 단백질 (제2106.90호)
- Case 5 - 대추야자 설탕 분말 (제1106.30호)
- Case 6 - 가공된 황다랑어
- Case 7 - 크릴오일 구미 (제2106.90호)
- Case 8 -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 Case 9 - 펴 (제2106.90호)
- Case 10 - 혼합감미료 (제2106.90호)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Case 1.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펌프

[요약]

| | |
|---------|--|
| 사례명 | [자동차용 전면유리 세정 펌프]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 사례번호 | HQ H303866 (2020.02.13.) |
| 사실관계 |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부품을 멕시코에서 가공·조립(모터 하우징, 아마추어, 모터 엔드캡 제작, 조립 및 최종제품 생산)하여 생산된 자동차용 전면유리 세정 펌프를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p>다양한 국가에서 부품이 수입되었으나,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사출성형, 납땀, 기계 가공, 압착 고정 등 다양하고 복잡한 공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 부품은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되었다고 판정하여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멕시코산으로 판정함(제301조 미적용)</p>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품목개요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8413.7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8413.7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자동차용 전면유리 세정 펌프]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사례번호:** HQ H303866 (2020.02.13.)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Thomas M.Keating (대리인: Rock Trade Law LLC) | |
| 제품 | 제품명 | •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펌프 (제품번호: 1999-1WP0055EP) |
| | 구성 | • 멕시코산(약 50%), 중국산(약 33%), 일본/미국 등 기타 국가산(나머지) |
| | 용도 | • 자동차 전면유리 세정 시스템용 원심 펌프 장치 |
| | 완제품 HTSUS | • 8413.70.20 |



[멕시코 상세 공정]

□ 모터 하우징(스테이터) 생산

1. 일본산 강판 스트립을 가공하여 모터 하우징 형태로 성형
2. 하우징에 중국산 부싱을 공압 프레스로 삽입
3. 중국산 페라이트 바와 스프링을 하우징에 고정 배치
4. 모터 하우징 세척
5. 자계 형성 기계에 모터 하우징 서브어셈블리를 넣어 페라이트 바 자화

□ 아마추어(로터, 회전자) 생산

1. 일본산 강판을 가공하여 라미네이션 시트(적층판) 제작
2. 중국산 샤프트 표면 미끄럼 방지 가공 처리
3. 라미네이션 시트 쌓은 후 공압 프레스로 샤프트를 적층된 라미네이션 중앙에 삽입
4. 에폭시 분말 분사 후 가열하여 경화를 통한 절연 처리 수행
5. 중국산 정류자(Commutator) 장착 및 에폭시 접착 후 경화
6. 멕시코산 절연 구리 와이어를 적층체 주위에 감고 정류자에 영구적으로 용착
7. 전기 저항 테스트 및 밸런싱 조정, 정류자 표면 가공 등 정밀 공정 수행
8. 세척 및 중국산 플라스틱 슬링거, 와셔 장착
9. 최종 전기 테스트

□ 모터 엔드캡 제작

1. 미국산 열가소성 수지를 사출 성형하여 플라스틱 캡 제작
2. 여러 부품(부싱, 리테이너 링, 브러시, 단자 등)을 가공 조립하여 엔드캡 제작
3. 진공 청소로 이물질 제거 및 육안 검사

□ 모터 어셈블리 최종 조립

1. 위 세 가지 하위 조립체를 정렬·삽입하여 모터 완성
2. 부하 등 성능·시각·작동 테스트 수행

□ 펌프 최종 조립

1. 중국산 열가소성 수지로 펌프 하우징, 중국산 황동 단자로 커넥터 성형, 일본산 수지로 임펠러 사출성형
2. 모터와 펌프 부품 결합 조립(커넥터에 모터 압입, 중국산 고무 씰 부착, 임펠러 압입 등)
3. 최종 성능 및 누수 테스트, 육안 검사 및 라벨링 후 완제품 완성

□ **쟁점사항**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USTR은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중국산 특정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제301조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을 사용
 - 실질적 변형: 제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CBP는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 정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고려해 사례별(case-by-case)로 판정을 내리며, 이때 핵심 판단 요소는 수행된 작업의 범위, 원재료가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573 F. Supp. 1149 (Ct. Int'l Trade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경미하거나 간단한 조립 작업은 복잡하고 의미 있는 조립 작업과 달리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때 관련되는 요소들로는 ❶ 작업의 성격(조립되는 부품의 수 포함), ❷ 작업 단계의 다양성, ❸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❹ 숙련된 기술, ❺ 작업의 디테일, ❻ 품질 관리 등이 있음

◆ 참고 판례: *C.S.D. 80-111, 85-25, 89-110, 89-118, 90-51, 90-97*

-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CBP는 해당 사례에서 실질적 변형의 판단을 위해 HQ H282391 및 HQ H303529 사례를 인용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82391 (2017.03.16.)*

(사례) 여러 국가에서 200개 이상의 부품을 수입한 후 27개 이상의 복잡한 공정을 수행하여 기어박스과 모터 서브어셈블리를 조립하고 최종 기어 모터를 생산함. 이때, 전체 공정은 약 2시간이 소요되며, 관련 노동자들은 조립 숙련도 향상을 위한 추가 훈련을 이수함

(판정) 조립 공정이 복잡하고 외국산 부품들이 정체성을 상실했으므로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사례) 미완성 우편 요금계기 생산을 위한 주요 서브어셈블리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었으나, 나머지 서브어셈블리들은 중국에서 제조되었고, 이들 서브어셈블리를 연결하여 최종 조립하는 과정 역시 중국에서 이루어짐

(판정) 중국에서 조립 공정뿐만 아니라 일부 서브어셈블리 또한 제조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에서 행해진 공정이 충분히 광범위하며 복잡한 것으로 판정하여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함

판정 결과

- 본 제품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부품이 멕시코에서 복잡한 가공 및 조립 공정을 거쳐 완성됨
 - 가공에는 사출성형, 납땜, 열·압력으로 결합, 기계 가공, 압착 고정 등 복합적인 공정이 수행됨

- 전체 조립은 단순한 부품 조합을 넘어 다단계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로 인해 각 부품은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새로운 상품(펌프)으로 전환됨
- 따라서 멕시코 내 조립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함

□ 결론

- ✓ 멕시코에서 내 조립 공정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세정 펌프의 원산지는 멕시코임
- ✓ 따라서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Ⅲ. 시사점

- 수입된 여러 부품들은 멕시코에서 부품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구성요소로 통합되어,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었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간주됨
- 따라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301조 무역제재조치는 적용되지 않음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3866 (2020.02.13.), <https://rulings.cbp.gov/ruling/H303866>
- CBP Ruling HQ H282391 (2017.03.16.), <https://rulings.cbp.gov/ruling/H282391>
-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52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2C+69+CPA+151+%281982%29>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2. 시즈닝 솔트

[요약]

| | |
|---------|--|
| 사례명 | [시즈닝 솔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11655 (2020.05.22.) |
| 사실관계 | 후추, 강황, 마늘 등 여러 국가의 원재료가 인도로 수입되어 인도산 소금, 설탕 등과 함께 혼합 및 포장된 후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인도에서의 혼합 과정으로 인해 각 원재료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새로운 단일 제품으로 변형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하며, 이에 따라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인도임</p>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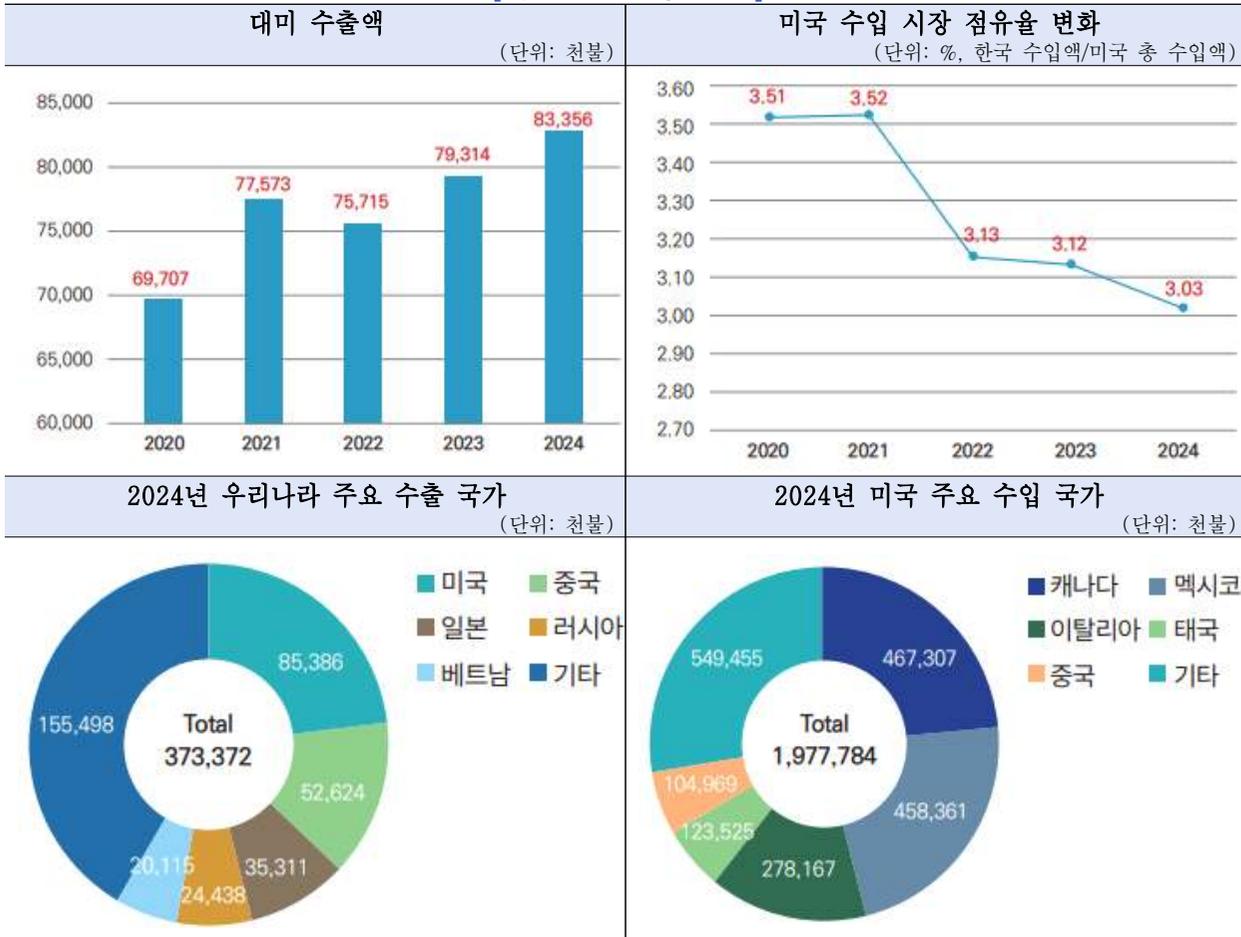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2103.9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7.5% or 30.5¢/kg + 6.4%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3%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2103.9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시즈닝 솔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11655 (2020.05.22.)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Dollar General | |
| 제품 |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즈닝 솔트 (조미 소금)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금 (62%) - 인도산 • 설탕 (16%) - 인도산 • 파프리카 (7%) - 인도, 중국, 스페인, 멕시코산 • 양파 (4%) - 인도, 이집트산 • 강황 (4%) - 인도, 미얀마, 에티오피아산 • 마늘 (3%) - 인도, 중국산 • 흑후추 (2%) -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브라질,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에콰도르산 • 옥수수 전분 (2%) - 인도산 • 이산화규소 (1%) - 인도산 |
| | 완제품 HTSU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03.90.7400 (HTSUS chapter 21 note 4에 규정된 수량 한도 내 수입 시) • 2103.90.7800 (수량 한도 초과 시) |
| 제조 공정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양한 원산지의 원재료를 인도로 수입 2. 인도에서 모든 재료를 혼합 3. 혼합물을 8온스 용기에 소매 포장 4. 완제품 상태로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ⅴ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ⅴ CBP 『19 C.F.R. § 134』 규정은 『19 U.S.C. § 1304』의 원산지표시 요구사항과 예외를 규정하며,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의 결정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2, 681 F. 2d 778 (1982)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007)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판정 결과

-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원료들이 인도에서 혼합되어 최종제품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각각의 성분은 정체성을 잃고, 단일 조미 소금이라는 새로운 제품으로 변형됨
 - 따라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으며, 이 제품의 원산지는 인도로 판정됨
 - 또한, 신청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개별 포장에 “Manufactured in the state of Tamilnadu in India”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표시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됨

기타 의견

- 해당 제품은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42 U.S.C. § 262)』의 적용 대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길 권함

□ 결론

- ✓ 인도에서 수행된 혼합 및 소매 포장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인도로 판정됨

Ⅲ. 시사점

- 조미 소금은 인도에서의 혼합 및 가공 과정을 통해 별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단일한 식품으로의 실질적 변형을 거친 제품으로 판단되므로, 원산지를 인도로 판정함
- 여러 원재료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식품류의 경우, 개별 원재료들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새로운 제품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가 원산지판정에 중요한 요소임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11655 (2020.05.22.), <https://rulings.cbp.gov/ruling/N311655>
- CBP Ruling (HQ) W968434 (2007),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2C+69+C+CPA+151+%281982%29>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3. 냉동 비건 베이컨

[요약]

| | |
|---------|--|
| 사례명 | [냉동 비건 베이컨]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12216 (2020.06.15.) |
| 사실관계 | 대두 단백질, 옥수수 전분, 효모 추출물 등 여러 국가의 원재료가 대만으로 수입되어 대만산 대두 단백질, 대두유 등과 함께 혼합, 가열, 절단, 냉동 및 포장된 후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대만에서의 공정(혼합, 가열, 절단, 냉동 등)으로 인해 각 원재료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새로운 단일 제품으로 변형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하며, 이에 따라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임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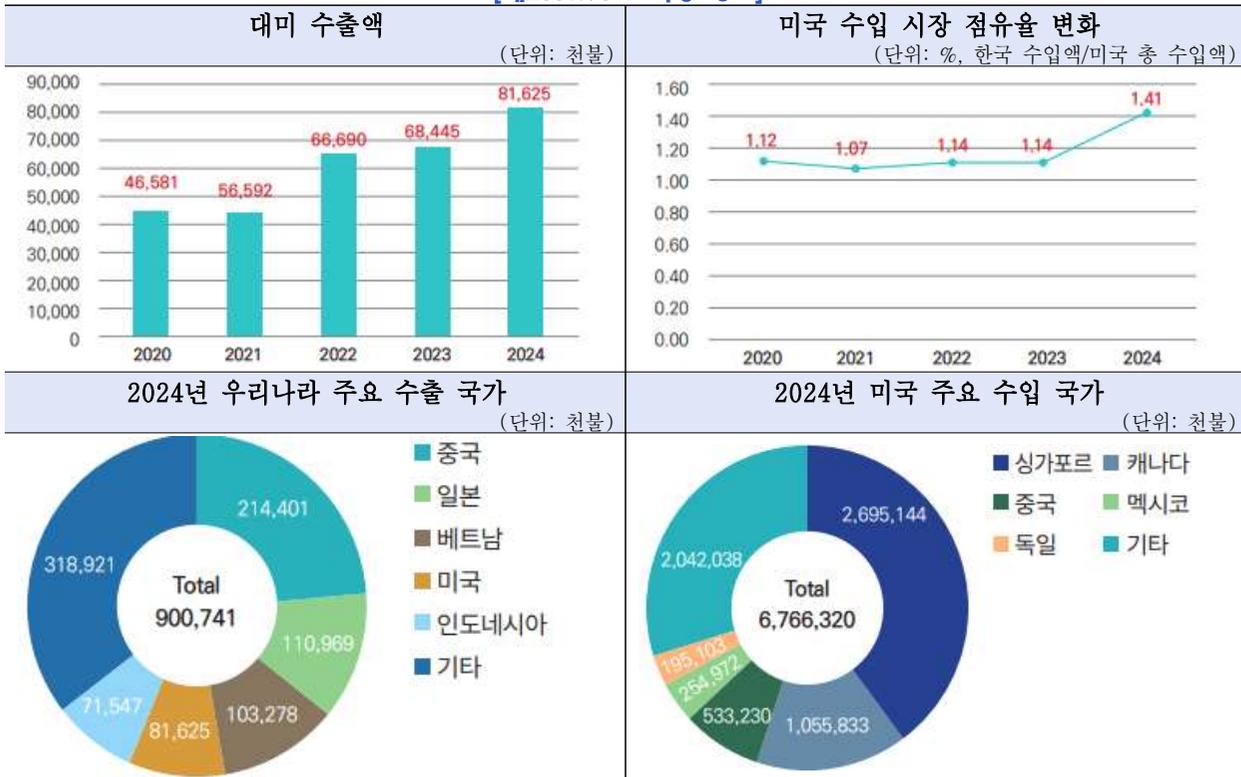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2106.9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30% |
| | 미국 기본세율 | 0~10% or 종량세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일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제2009호 및 제22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및 제2009호의 것 및 제2202.90호의 혼합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류 내의 다른 소호와 제2009호에 해당하는 재료, 제2202.90호의 혼합주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과일·채소 주스 또는 단일 비당사구의 여러 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strength) 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6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2106.90호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3호부터 제220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당시럽: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것으로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젤라틴으로 포장한 과실로 과실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인삼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2106.9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냉동 비건 베이컨]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12216 (2020.06.15.)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Ice Box Foods Inc., CA. (대리인: John A. Steer Company) | |
| 제품 | 제품명 | • 냉동 비건 베이컨 (Frozen Vegan Bacon)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약 54% • 대두 단백질: 19% (대만 및 중국산) • 대두유: 17% (대만산) • 옥수수 전분: 3% (이탈리아산) • 소금: 1% (대만산) •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 1% (스위스산) • 기타 극소량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모 추출물 (프랑스산) - 설탕 (대만산) - 천연 고기향 및 훈제 향료 (독일, 미국, 프랑스산) - 식물 추출물 (캐나다산) - 프로테아제 (독일산) - 착색료 (일본, 독일, 인도산) |
| | 완제품 HTSUS | • 2106.90.9895 |
| 제조 공정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만에서 대두 단백질 세척, 여과 및 탈수 2. 기타 성분(대두유, 옥수수 전분, 식물성 단백질 및 기타 첨가물)과 함께 혼합 3. 모양 성형 및 90°C에서 3.5시간 조리 4. 절단(슬라이스) 및 소비자 요청 사양에 따라 유닛 포장 5. -18°C에서 급속냉동 6. 소매용 플라스틱 백(2.59kg x 12개)에 포장돼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ⅴ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CBP 『19 C.F.R. § 134』 규정은 『19 U.S.C. § 1304』의 원산지표시 요구사항과 예외를 규정하며,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의 결정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2, 681 F. 2d 778 (1982)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007)*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판정 결과

- ▽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원료들이 대만에서 혼합, 성형, 조리, 절단, 포장 등을 통해 최종제품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각각의 성분은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조제품으로 변형됨
 - 다양한 성분이 단순 혼합된 것이 아니라, 열처리 및 성형을 거쳐 일관된 형태와 용도(베이컨 대체 식품)를 가진 새로운 제품으로 재구성됨
 - 이에 따라 본 제품은 대만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원산지는 대만임

기타 의견

- ▽ 해당 제품은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42 U.S.C. § 262)』의 적용 대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길 권함

□ 결론

- ✓ CBP는 최종제품이 대만에서 다양한 외국산 원재료를 혼합·가공하여 제조되었으며, 제조과정 중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정함

Ⅲ. 시사점

- 여러 원재료를 혼합하여 만들어진 식품류의 경우, 개별 원재료들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새로운 제품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가 원산지판정에 중요한 요소임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12216 (2020.06.15.), <https://rulings.cbp.gov/ruling/N312216>
- CBP Ruling (HQ) W968434 (2007),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

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2C+69+C
CPA+151+%281982%29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

Case 4. 참치 대응 식물성 단백질

[요약]

| | |
|---------|---|
| 사례명 | [참치 대응 식물성 단백질]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16778 (2021.02.03.) |
| 사실관계 | 미국산 대두 단백질 농축물을 태국으로 수입한 후 함침, 압착, 절단, 혼합 등의 공정을 거쳐 완성된 참치 대응 식물성 단백질을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태국에서 수행된 공정(함침, 압착, 절단, 혼합 등) 이후에도 원재료인 미국산 대두 단백질 농축물의 본질적 성질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태국에서의 실질적 변형은 인정되지 않으며,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미국으로 간주됨</p>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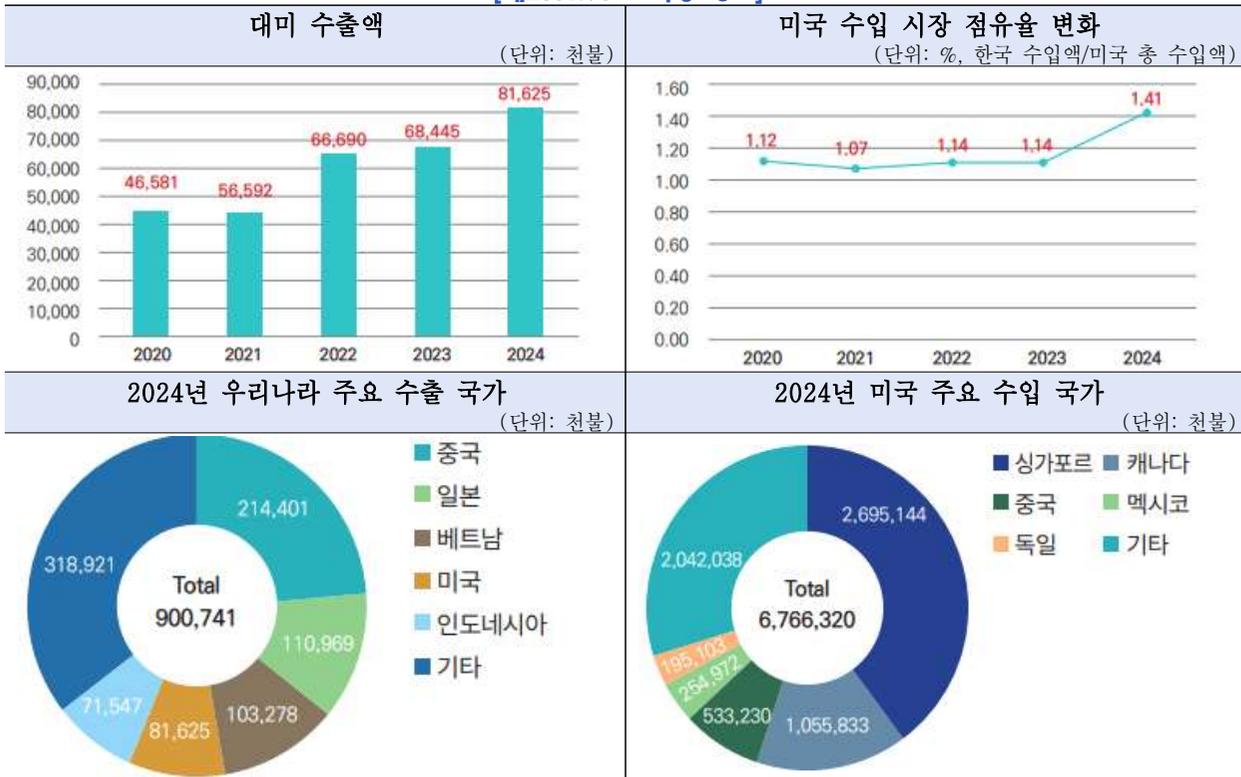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2106.9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30% |
| | 미국 기본세율 | 0~10% or 종량세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일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제2009호 및 제22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및 제2009호의 것 및 제2202.90호의 혼합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류 내의 다른 소호와 제2009호에 해당하는 재료, 제2202.90호의 혼합주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과일·채소 주스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 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strength) 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6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2106.90호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3호부터 제220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당시럽: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것으로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젤라틴으로 포장한 과실로 과실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인삼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2106.9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참치 대응 식물성 단백질]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16778 (2021.02.03.)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Tri-Union Seafoods LLC (대리인: American Shipping Co. Inc.) | |
| 제품 |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몬 & 페퍼 식물성 단백질 • 스프링워터 식물성 단백질 • 칠리 & 갈릭 식물성 단백질 → 각 제품은 수화(hydrated)된 대두 단백질 농축물이 약 65~66%를 차지하며, 해당 농축물의 건조 기준 단백질 함량은 약 22%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화(hydrated)된 대두 단백질 농축물 • 기타: 물, 해바라기유, 소금, 레몬 농축액, 후추, 발효 야채 분말, 레몬 오일 향료, 스프링 워터, 발효 야채당 분말, 해바라기유, 레드 칠리, 레드 스피 페퍼, 마늘, 파프리카 올레오레진 등 |
| | 용도 | • 샐러드, 샌드위치, 샐러드 토핑 등에 활용되는 참치 대체식품 |
| | 완제품 HTSUS | • 2106.90.9898 |
| 제조 공정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두를 추출 가공하여 대두 단백질 농축물(textured soy protein concentrate) 제조 - 대두 단백질, 밀 글루텐, 밀 전분 등 원재료를 적절한 비율로 계량하여 균질한 혼합물로 혼합 - 조각 형태로 절단 및 건조한 후 태국으로 수출 2.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침(soaking), 압착(pressing), 절단(cutting) 후 조미료 및 향료(flavoring)와 혼합 - 통조림 캔에 포장(142g 단위 소매용) 후 완제품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Ct. Int’l Trade 1986)

- 본 사례의 판정을 위해 CBP는 HQ 967925 및 NY I89834를 인용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967925 (2006)*

(사례) 스페인에서 미국산 쌀을 수입하여 스페인산 쌀, 물, 해바라기유, 소금, 대두 레시틴 등과 혼합한 후 최종제품인 쌀 혼합물을 미국으로 수출

(판정) 스페인에서의 공정으로 인해 미국산 쌀의 본질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았으며, 스페인으로 수입될 시점과 미국으로 수출되는 시점에서 여전히 모두 쌀이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I89834 (2003)*

(사례) 미국에서 버섯(중국, 조지아, 캐나다 또는 미국산), 허브 및 건조 채소(터키, 모로코,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이집트, 스페인 또는 미국산) 등을 수입하여 건조 버섯과 여러 원재료가 혼합된 조제 식료품을 생산함. 이 과정에서 혼합 및 소매 포장 외에 별도의 가공은 수행되지 않음

(판정) 단순 혼합 및 소매 포장만으로는 수입된 버섯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결과

□ 태국에서 수행된 공정(함침, 압착, 절단, 혼합 등) 이후에도 원재료인 미국산 대두 단백질 농축물의 본질적 성질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태국에서의 실질적 변형은 인정되지 않으며,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미국으로 간주 됨

기타 의견

□ 해당 제품은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42 U.S.C. § 262)』의 적용 대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길 권함

□ 결론

- ✓ 판정서에서는 본 제품이 태국에서 수분 함침, 압착, 조미 및 통조림 가공을 거쳤더라도, 이러한 공정이 제품의 본질적인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 따라서 CBP는 이 제품의 원산지를 여전히 미국으로 판정함

III. 시사점

- 원재료의 정체성을 변형시키지 않는 단순한 압착, 절단, 혼합 등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판정됨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16778 (2021.02.03.), <https://rulings.cbp.gov/ruling/N316778>
- CBP Ruling HQ 967925 (2006), <https://rulings.cbp.gov/ruling/967925>
- CBP Ruling NY I89834 (2003), <https://rulings.cbp.gov/ruling/I898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5. 대추야자 설탕 분말

[요약]

| | |
|---------|--|
| 사례명 | [대추야자 설탕 분말]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15291 (2021.03.09.) |
| 사실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1: 튀니지에서 재배한 생대추야자를 미국으로 수입하여 분쇄, 체질, 금속검사, 포장 등의 공정을 통해 대추야자 설탕 분말을 생산하고, 이후 벌크 포장하여 캐나다로 수출한 뒤 소매 포장하여 일부를 미국으로 수입 - 시나리오 2: 튀니지에서 재배한 생대추야자를 튀니지에서 대추야자 설탕 분말로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고, 이후 그대로 캐나다로 수출하여 소매 포장한 뒤 일부를 미국으로 수입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1: 미국에서의 분쇄, 체질, 금속검사, 포장은 대추야자를 상업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인 대추야자 설탕 분말로 전환시키므로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 시나리오 2: 튀니지에서 대추야자 설탕 분말로 완전히 가공되므로 튀니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6)

□ **사례명:** [대추야자 설탕 분말]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15291 (2021.03.09.)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Liva Foods, Inc. (대리인: Welke Customs Brokers) | |
| 제품 | 제품명 | • 대추야자 설탕 분말 (Ground Date Sugar Powder) |
| | 구성 | • 100% 유기농 생대추야자(튀니지산) |
| | 용도 | • 일반 감미료 또는 설탕 대체제 |
| | 원재료 HTSUS | • 생대추야자(0804.10.40) |
| 완제품 HTSUS | • 대추야자 설탕 분말(1106.30.40) | |
| 제조 공정 | □ 시나리오 1 | <p>01 튀니지에서 재배 → 02 씨 제거·세척·자연건조 → 03 미국 수출 (HTSUS 0804.10.40) → 04 대추야자 설탕 분말로 가공 → 05 캐나다 수출 (HTSUS 1106.30.40) → 06 소매 포장 후 미국 수출</p> |
| | □ 시나리오 2 | <p>01 튀니지에서 재배 → 02 대추야자 설탕 분말로 가공 → 03 미국 수출 (HTSUS 1106.30.40) → 04 캐나다 수출 (HTSUS 1106.30.40) → 06 소매 포장 후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p>□ 시나리오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튀니지에서 생대추야자 재배 2. 검사, 씨 제거, 세척, 자연건조 후 HTSUS 0804.10.40으로 미국 수입 3. 미국에서 미세 분말로 분쇄, 마이크론 체를 통한 체질, 금속검출기 통과 실시 4. 22kg 벌크 폴리프로필렌 백으로 포장 5. 캐나다로 수출 6. 캐나다에서 캐나다산 포장 자재를 사용해 소매용 재포장 수행 7. 일부 제품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재수입 <p>□ 시나리오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1의 1~4를 튀니지에서 수행하여 HTSUS 1106.30.40으로 미국 수입 -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그대로 캐나다로 수출하여 캐나다산 자재로 소매용 포장 - 일부 제품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재수입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6)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품목개요 정보 미제공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741 F.2d 1368, 1372 (Fed. Cir. 1984)

- 반면,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순한 제조 또는 결합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per curiam*, 702 F.2d 1022 (Fed. Cir. 1983)

- 완성된 신발 갑피(upper)를 신발의 밑창(sole)에 부착하는 것은 갑피 자체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참고 판례: *Nat'l Juice Prods. Ass'n v. United States*, 10 CIT 48, 628 F. Supp. 978 (1986)

-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을 가공하여 냉동 오렌지 농축액 및 재구성 오렌지 주스를 생산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음

- CBP는 본 사안의 판정을 위해 *Koru North Am*(1988) 사건과 HQ 733814를 인용함

◆ 참고 판례: *Koru North Am. v. United States*, 12 CIT 1120, 701 F. Supp. 229 (1988)

(사례) 뉴질랜드산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생선이 한국으로 수입되어 해동, 껍질 제거, 뼈 제거, 다듬기, 유약 처리, 재냉동,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냉동 생선 필레로 가공됨

(판결) 생선이 한국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전체 생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한국에서 수출될 시점에는 더 이상 원형의 특성을 지니지 않았으며, 추가적으로 지방층과 불순물이 제거되고 저장성 향상 및 부패 방지 처리 등이 수행되었으므로, 상업적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물품으로 변형된 것으로 판결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3814 (1991)*

(사례) 생두를 가공하여 인스턴트 커피를 제조

(판정) 생두를 가공하여 인스턴트 커피를 제조하는 것은 생두의 본질적 형태와 성질을 변화시키고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인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어내므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됨

판정 결과

- 시나리오 1: 미국에서의 분쇄, 체질, 금속검사, 포장은 대추야자를 상업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인 대추야자 설탕 분말로 전환시키므로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 시나리오 2: 튀니지에서 대추야자 설탕 분말로 완전히 가공되므로 튀니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 캐나다에서의 소매 포장은 단순 공정에 불과하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음

□ 결론

✓ 시나리오 1에 따른 원산지는 미국, 시나리오 2는 튀니지임

II. 시사점

-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5291 (2021.03.09.), <https://rulings.cbp.gov/ruling/H315291>
- CBP Ruling HQ 733814 (1991), <https://rulings.cbp.gov/ruling/73381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l Juice Prods. Ass'n v. United States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Koru North Am. v. United States (198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474459/koru-north-america-v-united-states/?q=Koru+North+Am.+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6. 가공된 황다랑어

[요약]

| | |
|---------|---|
| 사례명 | [가공된 황다랑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20603 (2021.08.16) |
| 사실관계 | 중국 국적 선박에 의해 어획된 황다랑어가 일본으로 수출되어, 꼬리 및 머리 제거, 반으로 절단, 지느러미 뼈 및 척추 제거, 껍질 및 검은 살 제거, 뼈와 혈관 제거 등의 공정을 거쳐 스시용 참치로 가공된 후 미국에 수입 |
| 쟁점 및 판정 |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중국 국적 선박에 의해 어획된 황다랑어는 일본에서 총 18단계의 가공 공정을 거쳐 별도의 새로운 상업적 제품인 스시용 참치로 전환되었으므로 일본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7)

□ **사례명:** [가공된 황다랑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20603 (2021.08.16.)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Sojitz Corporation of America | |
| 제품 | 제품명 | • 가공된 황다랑어 |
| | 구성 | • 황다랑어 |
| | 용도 | • 스시용 |
| 제조 공정 | <p>01 중국 국적 선박 어획 및 간단 손질</p> <p>02 일본으로 수출</p> <p>03 스시용 참치로 가공</p> <p>03 포장 후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 국적 선박(Chinese-flagged vessels)에 의해 어획 2. 어획된 황다랑어는 선상에서 아가미 및 내장 제거 3. 일본으로 수출 4. 일본 내 제조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꼬리 및 머리 제거 - 생선을 절단하여 두 조각으로 분리 - 지느러미 뼈와 척추 제거 - 껍질 및 피부 아래에 남아 있는 어두운 살코기 제거 - 뱃살 부위를 잘라낸 후 잔여 가지, 혈관, 혈흔 제거 - 플라스틱 백에 포장 후, 스티로폼 또는 종이 상자에 담겨 스시용 참치로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ⅴ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7)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Uniroyal*)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007)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 CBP는 해당 사례의 원산지판정을 위해 *Koru North Am*(1988) 사건을 인용

◆ 참고 판례: *Koru North Am. v. United States*, 12 CIT 1120, 701 F. Supp. 229 (1988)

(사례) 뉴질랜드산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생선이 한국으로 수입되어 해동, 껍질 제거, 뼈 제거, 다듬기, 유약 처리, 재냉동,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냉동 생선 필레로 가공됨

(판결) 생선이 한국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전체 생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한국에서 수출될 시점에는 더 이상 원형의 특성을 지니지 않았으며, 추가적으로 지방층과 불순물이 제거되고 저장성 향상 및 부패 방지 처리 등이 수행되었으므로, 상업적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물품으로 변형된 것으로 판결함

판정 결과

- Ⅳ 중국 국적 선박에 의해 어획된 황다랑어는 일본에서 총 18단계의 가공 공정을 거쳐 별도의 새로운 상업적 제품인 스시용 참치로 전환되었으므로 일본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기타 의견

- Ⅳ 해당 제품은 USDA AMS(Agriculture Marketing Service)이 시행하는 의무적 원산지표시 제도(COOL: Mandatory Country of Origin Labeling)의 적용 대상이므로 해당 기관에서 관련 추가 지침을 확인해야함

□ 결론

- ✓ 일본에서 수행된 18개 가공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제품인 스시용 참치의 원산지는 일본으로 판정됨

II. 시사점

- 해당 건에서 ‘일본산’으로 판정된 핵심은 제품이 최종적으로 ‘스시용 참치’라는 독립적 상업상품으로 변해 정체성이 명확히 달라졌다는 점에 있음
- CBP는 판정 시 부수적으로 USDA와 같은 유관기관의 규제, 추가적인 의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0603 (2021.08.16.), <https://rulings.cbp.gov/ruling/N320603>
- CBP Ruling HQ W968434 (2007),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

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ig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
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Koru North Am. v. United States (198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474459/koru-north-america-v-united-states/?q=Koru+North+Am.+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7. 크릴오일 구미

[요약]

| | |
|---------|--|
| 사례명 | [크릴오일 구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23535 (2022.02.02) |
| 사실관계 | 중국에서 여러 국가에서 수입한 원재료(크릴오일, 감미료, 향료 등)를 혼합, 가열, 성형, 건조, 코팅하여 생산한 크릴오일 구미를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중국에서 수행된 제조공정은 원재료(크릴오일)의 명칭·성질·용도를 변경하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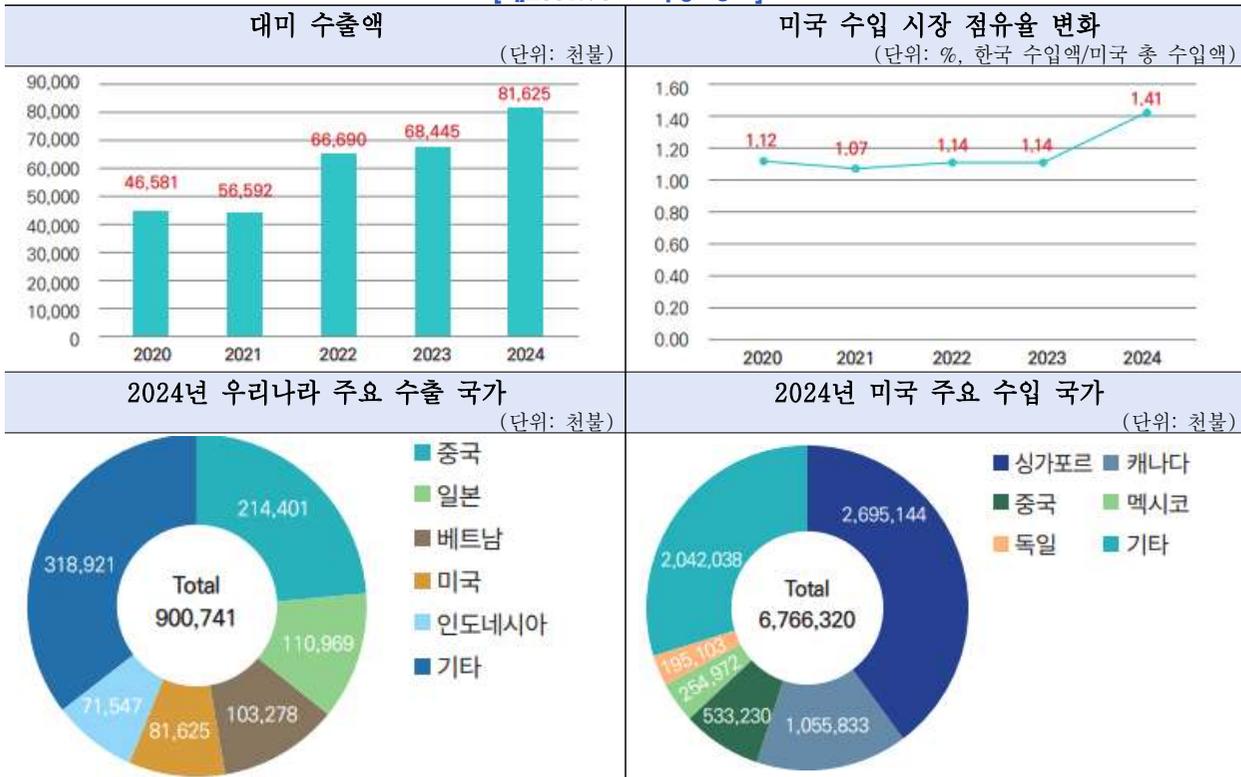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2106.9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30% |
| | 미국 기본세율 | 0~10% or 종량세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일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제2009호 및 제22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및 제2009호의 것 및 제2202.90호의 혼합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류 내의 다른 소호와 제2009호에 해당하는 재료, 제2202.90호의 혼합주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과일·채소 주스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 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strength) 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6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2106.90호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3호부터 제220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당시럽: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것으로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젤라틴으로 포장한 과실로 과실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인삼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2106.9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크릴오일 구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23535 (2022.02.02.)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Sirio Nutrition Co., Ltd. | |
| 제품 | 제품명 | • Krill Oil Gummy (Sugar Coated) |
| | 구성 | • 크릴오일, 천연 레몬향, 천연 자몽향 (미국산) • 포도당 시럽, 자당, 물, 캐스터 설탕, 젤라틴, 오렌지 주스 농축액, 사과 주스 농축액, 구연산, 비타민 C, 젯산, 천연 오렌지 향 2종, 레시틴 등 (중국산) • 밀 전분, 아카시아 검 (프랑스산) • 흑당근 주스 농축액 (덴마크산) |
| | 용도 | • 브랜드/도매업체 판매용 건강기능식품 |
| | 완제품 HTSUS | • 2106.90.9500(HTSUS Chapter 17 note 8에 명시된 한도 수량 이내) • 2106.90.9700(HTSUS Chapter 17 note 8에 명시된 한도 수량 초과) • 2106.90.9897 (소매용 포장으로 수입되는 경우) |
| 제조 공정 |  <p>[중국 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젤라틴을 액화하여 시럽에 첨가 2. 크릴 오일 및 나머지 원료들과 함께 혼합 3. 액상 혼합물을 몰드에 부어 적정 수분 함량에 도달할 때까지 건조 4. 건조된 구미를 캐스터 설탕으로 코팅 5. 밀봉된 용기(비소매용)에 포장 6.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Ⅳ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Ct. Int'l Trade 1986)

판정 결과

- ㉔ 미국산 크릴오일은 중국에서의 가공을 통해 '크릴오일 구미'라는 명칭·성질·용도가 변화된 전혀 다른 형태의 상업적 제품으로 생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크릴오일의 본질적 특성이 변경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기타 의견

- ㉕ 해당 제품은 HTSUS, Chapter 99, Subchapter III, Note 20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므로 수입 시 기본 세번 외에 Chapter 99에 따른 세 번인 9903.88.15도 함께 신고해야함
- ㉖ 해당 제품은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42 U.S.C. § 262)』의 적용 대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길 권함

□ 결론

- ✓ 크릴오일을 포함한 여러 재료가 중국에서 가공되어 상업적 완제품으로 제조되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됨

Ⅲ. 시사점

-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3535 (2022.02.02.), <https://rulings.cbp.gov/ruling/N323535>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

on+v.+The+United+States%2C+207+U.S.+556+%281908%29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q=Uniroyal+Inc.+v.+United+States%2C+542+F.+Supp.+1026+%281982%29>
-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8.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요약]

| | |
|---------|--|
| 사례명 |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25562 (2022.5.5) |
| 사실관계 | 말레이시아산 PCBA, 중국산 유리 패널 서브어셈블리, 기타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테코급 A 플라스틱을 일본으로 수입하여 일본산 BLU 서브 어셈블리와 조립해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를 생산 |
| 쟁점 및 판정 |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해당 최종제품의 판정에 있어 CBP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PCBA가 완제품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구성요소라고 판단하였으며, PCBA에 의해 제품의 최종 용도가 사실상 사전에 결정되므로 말레이시아가 원산지인 것으로 판정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8)

- **사례명:**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25562 (2022.05.05.)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Tianma America, Inc. (대리인: Miller, Canfield, Paddock and Stone, PLC) | |
| 제품 | 제품명 | • 자동차용 통합 센터 스택 어셈블리 |
| | 구성 | • PCBA(말레이시아산) • BLU 서브 어셈블리(일본산) • 유리 패널 서브어셈블리(중국산) • 데코급 A 플라스틱(기타 국가산) |
| | 용도 | •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공조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
| 제조 공정 | <p>01 부품 수입 및 조달</p> <p>02 조립</p> <p>03 외형 및 기능 검사</p> <p>04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CBA, 유리 패널 서브어셈블리, 데코급 A 플라스틱을 일본으로 수입 2. 일본산 BLU 서브 어셈블리와 수입 부품을 반자동 공정을 통해 조립 3. 외형·기능 검사 4. 완성품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ⅴ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 참고 판례: *Unirov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수입 후 가공이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 물리적 변형(physical change)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성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8)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226, 542 F. Supp. 1026, 1031,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제품의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서 이미 사전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나아가 조립의 성격을 고려할 경우, 조립이 단순한지 아니면 각 부품이 개별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불가분한 구성요소가 될 만큼 복잡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됨

판정 결과

- 해당 최종제품의 판정에 있어 CBP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PCBA가 완제품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구성요소라고 판단하였으며, PCBA에 의해 제품의 최종 용도가 사실상 사전에 결정되므로 말레이시아가 원산지인 것으로 판정
 - 일본에서 수행된 조립 공정이 제품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추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 조립 공정이 PCBA를 상업적으로 명칭, 성질, 용도 면에서 새롭고 다른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

□ 결론

- ✓ 일본에서의 조립은 추가적 기능만을 부여할 뿐 실질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자동차용 센터 스택 어셈블리의 최종 원산지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PCBA가 제조된 말레이시아임

II. 시사점

- 특정 부품이 최종제품의 기능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부품이 생산된 국가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5562 (2022.05.05.), <https://rulings.cbp.gov/ruling/N325562>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2C+207+U.S.+556+%281908%29>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q=Uniroyal+Inc.+v.+United+States%2C+542+F.+Supp.+1026+%281982%29>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9. 껌

[요약]

| | |
|---------|--|
| 사례명 | [껌]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28304 (2022.10.14) |
| 사실관계 | 중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스페인, 수단, 브라질산 원료를 이탈리아로 수입하여 혼합, 압출, 적층, 성형, 안정화 등 일련의 가공을 거쳐 껌 제품으로 제조한 후 영국에서 소매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된 원재료(자일리톨, 향료 등)는 이탈리아에서 혼합, 압출, 냉각, 성형, 안정화, 코팅,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기존 원재료와는 명칭, 성질, 용도가 다른 ‘껌’이라는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며, 원산지는 이탈리아로 판단됨</p>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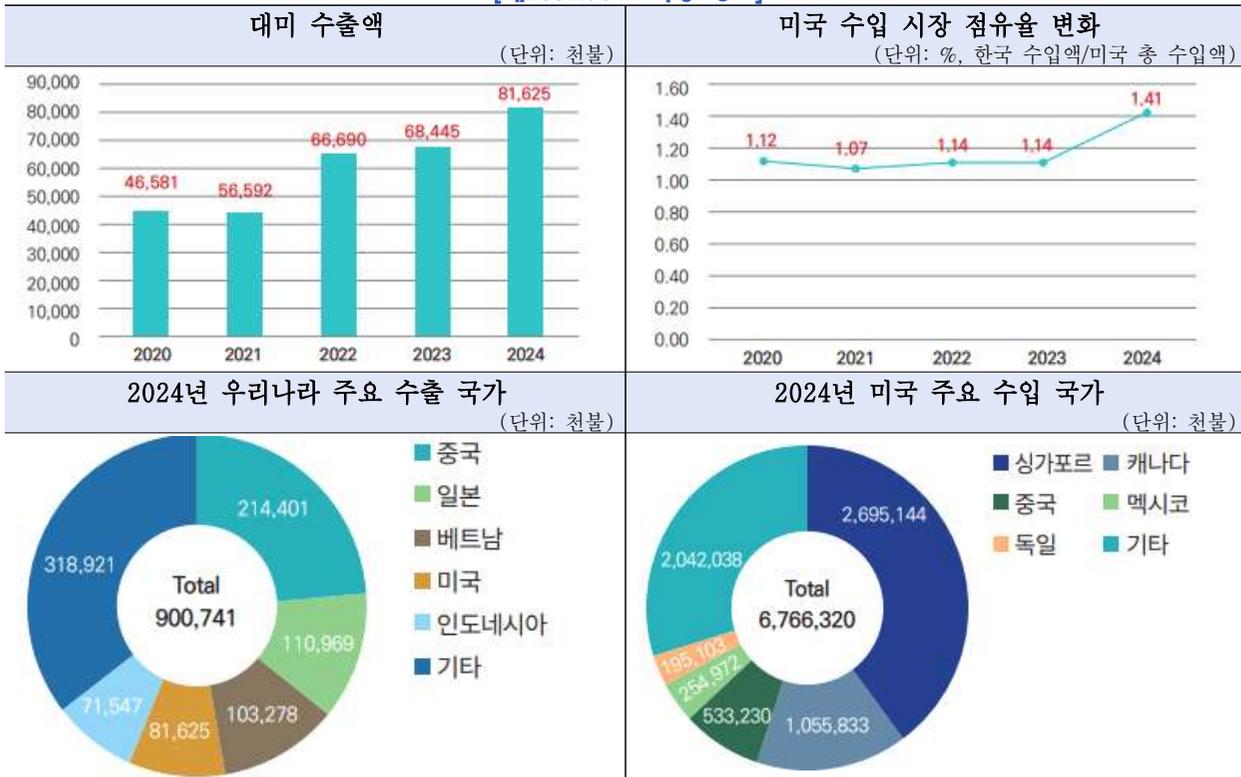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2106.9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30% |
| | 미국 기본세율 | 0~10% or 종량세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일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제2009호 및 제22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및 제2009호의 것 및 제2202.90호의 혼합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류 내의 다른 소호와 제2009호에 해당하는 재료, 제2202.90호의 혼합주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과일·채소 주스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 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strength) 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6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2106.90호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3호부터 제220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당시럽: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것으로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젤라틴으로 포장한 과실로 과실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인삼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2106.9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검]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28304 (2022.10.14.)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Foodcareplus Logistics NV (대리인: Russell A. Farrow (U.S.) Inc.) | |
| 제품 |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ppermint Flavor Gum ("Peppermint Power") Watermelon Flavor Gum ("Watermelon Wonder") Mint Flavor Gum ("Mighty Mint")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일리톨: 72~75% (중국산) 천연 치클 베이스: 20~21% (멕시코산) 글리세롤: 2% (인도네시아산) 천연 향료: 1~4% (이탈리아산) 기타 극소량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스페인산) - 아라비아 검 (수단산) - 스테비아 (중국산) - 카나우바 왁스 (브라질산) |
| | 완제품 HTSUS | • 2106.90.9985 |
| 제조 공정 |  <p>01 여러 국가로부터 원재료 이탈리아로 수입</p> <p>02 혼합</p> <p>03 냉각, 적층, 성형 등 공정 수행</p> <p>04 벌크 포장</p> <p>05 영국으로 운송</p> <p>06 소매용 포장 후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국가산 원재료를 이탈리아로 수입 모든 성분을 55°C에서 혼합 1차 압출 후, 컨베이어 벨트에서 냉각 2차 압출 후, 적층(lamination), 성형(molding) 공정 수행 온도 20°C, 습도 50%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셀 안정화(cell stabilization) 코팅, 벌크 포장 및 금속 탐지 공정 수행 벌크 상태로 영국 소재의 소매 포장업체인 Holland & Barrett으로 운송 소매용 포장으로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ⅴ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반면,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Ct. Int'l Trade 1986)

판정 결과

-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된 원재료(자일리톨, 향료 등)는 이탈리아에서 혼합, 압출, 냉각, 성형, 안정화, 코팅,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기존 원재료와는 명칭, 성질, 용도가 다른 ‘껌’이라는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며, 원산지는 이탈리아로 판단됨

□ 결론

- ✓ 다국적 원재료는 이탈리아에서 복합적 공정을 거쳐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이탈리아로 판정됨

기타 의견

- 해당 제품은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42 U.S.C. § 262)』의 적용 대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길 권함

III. 시사점

-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8304 (2022.10.14.), <https://rulings.cbp.gov/ruling/N32830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10. 혼합 감미료

[요약]

| | |
|---------|--|
| 사례명 | [혼합 감미료]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29440 (2022.12.19) |
| 사실관계 | 미국산 에리트리톨, 중국산 스테비아 등의 원재료를 브라질에서 혼합 및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미국 및 중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브라질에서 계량, 혼합, 건조한 뒤 포장하는 공정만으로 제품의 명칭·성질·용도가 본래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기존 판례 및 판정에서와 같이 단순 작업에 해당하므로 브라질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p>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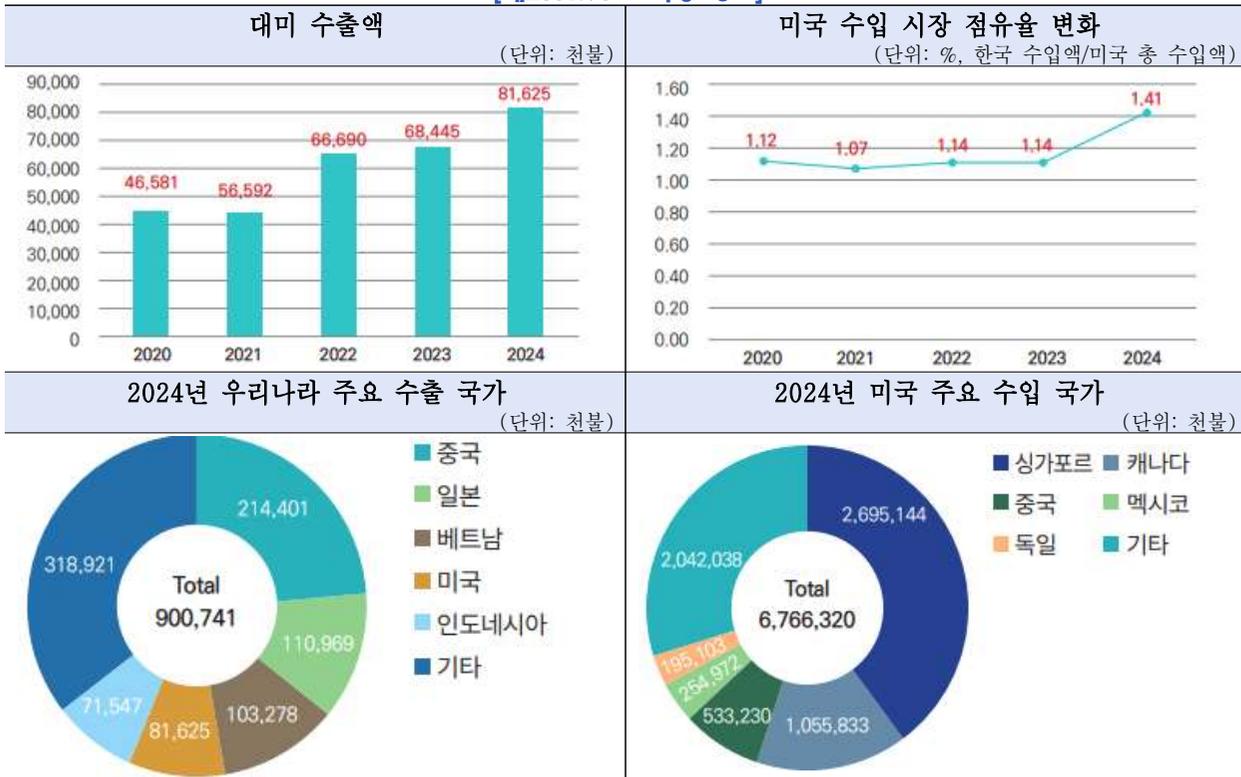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2106.9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30% |
| | 미국 기본세율 | 0~10% or 종량세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일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제2009호 및 제22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및 제2009호의 것 및 제2202.90호의 혼합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류 내의 다른 소호와 제2009호에 해당하는 재료, 제2202.90호의 혼합주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과일·채소 주스 또는 단일 비당사국의 여러 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strength) 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6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2106.90호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3호부터 제220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당시럽: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것으로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젤라틴으로 포장한 과실로 과실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인삼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2106.9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혼합 감미료]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29440 (2022.12.19.)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Univar Solutions USA Inc. | |
| 제품 | 제품명 | • 혼합 감미료 (blended sweeteners) |
| | 구성 | • BED0123 - Sweetener Blend Natural - 미국산 에리트리톨, 중국산 스테비아 혼합물 • BED0094 - Sweetener Blend Performance - 중국산 수크랄로스, 중국산 아세설팜-K 혼합물 |
| | 용도 | • 미국 내 식품 또는 음료 제조업체용 원료 |
| | 완제품 HTSUS | • 2106.90.9998 |
| 제조 공정 |  <p>01 미국 및 중국산 원재료 브라질 수입</p> <p>02 원재료 계량 및 균일 혼합</p> <p>03 포장 및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및 중국산 원재료를 브라질로 수입 브라질에서 다음의 공정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원재료 계량 건식 블렌더(dry blender)를 이용하여 원료를 균일하게 혼합 폴리에틸렌 백(25kg)에 포장하여 미국 수출 (미국 식품 제조업체에 판매)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ⅴ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ⅴ CBP 『19 C.F.R. § 134』 규정은 『19 U.S.C. § 1304』의 원산지표시 요구사항과 예외를 규정하며,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의 결정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Ct. Int'l Trade 1986)

- CBP는 혼합(mixing)은 단순 작업에 해당하며, 혼합된 성분이 원재료와 다른 명칭, 성질, 및 용도를 갖는

새로운 상업적 물품을 생성하지 않는 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유지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34949 (2013)*

(사례) 브라질산 사탕수수 설탕과 미국산 옥수수 시럽을 혼합하여 혼합 시럽 생산

(판정) 원재료와 최종제품이 여전히 감미료로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아님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088799 (1991)*

(사례) 미국산 코코아 파우더와 외국산 설탕을 캐나다에서 혼합

(판정) 단순 혼합으로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 불인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746 (2019)*

(사례) 튀니지와 스페인산 올리브유를 스페인에서 혼합 및 정제

(판정) 단순 혼합으로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 불인정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1986)*

(사례) 수입 오렌지 농축액과 미국산 농축액을 혼합

(판결) 단순 혼합으로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 불인정

판정 결과

- Ⅳ 미국 및 중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브라질에서 계량, 혼합, 건조한 뒤 포장하는 공정만으로 제품의 명칭·성질·용도가 본래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기존 판례 및 판정에서와 같이 단순 작업에 해당하므로 브라질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결론

- ✓ 브라질에서의 혼합 공정은 단순 작업에 해당하며, 실질적 변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 따라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원재료 각 성분의 원산지인 미국 및 중국으로 표시

Ⅲ. 시사점

- 원재료를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혼합 공정은 단순 작업으로 판단되어 실질적 변형을 충족할 수 없음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9440 (2022.12.19.), <https://rulings.cbp.gov/ruling/N329440>
- CBP Ruling HQ H234949 (2013.04.19.), <https://rulings.cbp.gov/ruling/H234949>
- CBP Ruling HQ 088799 (1991.11.20.), <https://rulings.cbp.gov/ruling/08879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Origin Case

Vol. 4

- Case 1 - 차량용 LED 램프 (제8512.20호)
- Case 2 - 코코넛 밀크 (제2106.90호)
- Case 3 - 냉동 구운 장어
- Case 4 - 인스턴트 누들
- Case 5 - 전기차 모터용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제8413.70호)
- Case 6 -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제7223.00호)
- Case 7 - 철강 코일 (제7212.40호)
- Case 8 - 흑마늘 시즈닝 (제2005.99호)
- Case 9 - Pipe-in-Pipe 어셈블리 (제7306.90호)
- Case 10 - 김치 소스 (제2103.90호)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Case 1. 차량용 LED 램프

[요약]

| | |
|---------|--|
| 사례명 | [차량용 LED 램프]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 사례번호 | HQ H304910 (2020.04.21.) |
| 사실관계 | 일본 또는 미국산 LED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하여 SMT 또는 웨이브 솔더링 공정을 통해 PCBA를 생산한 후,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나사 및 커넥터 부착 등을 통해 최종제품을 생산하고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P는 SMT 및 웨이브 솔더링 공정이 다수의 개별 부품들을 인쇄회로기판에 조립하는 복잡하고 의미 있는 작업으로서, 회로기판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부품들의 실질적 변형을 초래한다고 판정 - 중국에서 수행되는 조립 공정은 나사 체결, 커넥터 연결, 일부 납땜 등에 국한되어 있어 공정의 복잡성이 부족하므로 해당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정(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아님)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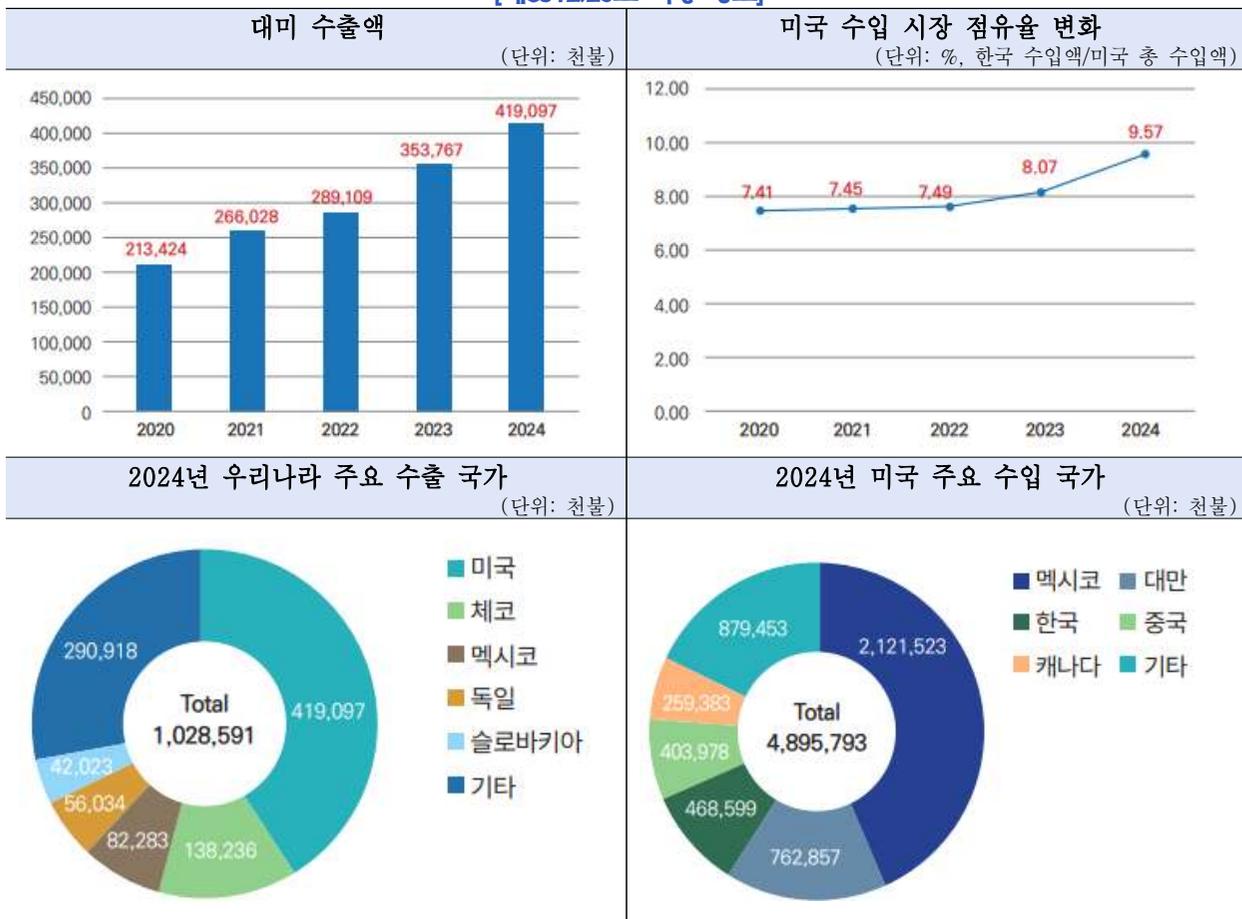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8512.2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2.5%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제8512.10호부터 제8512.2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8512.2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차량용 LED 램프]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사례번호:** HQ H304910 (2020.04.21.)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Grakon LLC (대리인: Heather Jacobson) | |
| 제품 | 제품명 | • 차량용 LED 램프 (부품번호 2082-003, 4289-001, 2000-007) |
| | 구성 | • LED (일본 또는 미국산) • PCBA (멕시코산) • 플라스틱 사출 성형물 및 기타 부품 (중국 및 기타 국가산) |
| | 용도 | • 차량용 LED 램프 |
| | 완제품 HTSUS | • 8512.20.20 |
| 제조 공정 |  <p>01 여러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p> <p>02 PCBA 제조</p> <p>03 중국 수출</p> <p>04 나사 및 커넥터 부착, 납땜 등</p> <p>05 검사 및 포장</p> <p>06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 또는 미국산 LED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하여 PCBA 제조-SMT 또는 웨이브 솔더링 공정 수행 2. 중국으로 수출 3. 중국에서 나사 및 커넥터 부착, 납땜 등의 공정 수행 4. 검사 및 포장 5.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핵심 판단 요소: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복잡성과 기술 수준, 부품이 원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핵심 구성요소로 기능하는지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이 결합되어 완성품이 생산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 발생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되며, 이때, 각 구성 부품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공 정도, 해당 가공이 새로운 명칭, 성질 또는 용도를 가진 제품을 만들어 내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사례) 대만에서 제조된 다양한 정비공구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한 후, 미국 내에서 열처리, 도금, 최종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완제품 정비공구 생산

(판결) 각 물품이 수입 당시와 완제품이 된 후에도 동일한 명칭을 유지하였고, 이미 대만에서 열간단조 또는 냉간성형을 통해 최종 형태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공정은 해당 물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도 않았으며, 각 부품은 이미 수입 시점에 정비용 수공구로 조립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므로 용도의 변화 역시 없다고 판결함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조립 또는 가공을 통해 물품의 정체성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물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 역시 고려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 수입된 신발의 갑피가 미국 내에서 밀창과 결합하는 공정을 거칠 경우, 해당 갑피가 완성된 신발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제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0 C.I.T. 48, 61, 628 F. Supp. 978, 991 (1986)

•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으로 미국 내에서 완제품 오렌지 주스를 생산하는 경우, 완제품 오렌지 주스의 본질적 특성은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에 있으므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고 판결

- CBP는 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광원(light source)의 원산지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017620*

(사례) 다양한 수입 부품(개별 부품 및 하위 조립체)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미국산 LED와 결합해 렌즈 헤드 하위 조립체 및 손전등 완제품으로 제조함

(판정) 미국산 LED가 손전등의 주요 광원을 생성함으로써 렌즈 헤드 하위조립체 및 손전등 전체에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한다고 언급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15657*

- 한편, CBP는 다수의 부품을 인쇄회로기판(PCBA)에 제조·조립하는 공정이 상당한 시간과 숙련도를 요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 참고: *Customs Service Decision(C.S.D.) 85-25*, 『Customs Bulletin』 제19호 844쪽(1985)

(사례) 저항기, 다이오드, 직접회로, 소켓 등 50개 이상의 개별 가공 부품들이 하나의 PCB에 조립됨

(판정) CBP는 이 PCBA 조립 과정이 매우 많은 수의 부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작업 공정이 포함되며, 상당한 시간과 숙련도가 필요하고, 세심한 주의 및 품질 관리가 요구되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114395*

(사례)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부품으로 광엔진(light engine)과 PCBA 메인보드를 생산한 후 최종적으로 디지털 광학 프로젝터 생산

(판정) CBP는 광엔진과 PCBA 메인보드가 프로젝터의 본질적 요소이며, 이들이 생산된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 CBP는 SMT 및 웨이브 솔더링 공정이 다수의 개별 부품을 PCB에 조립하는 것으로,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는 공정(complex and meaningful)으로 보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해당 PCBA가 조립된 국가를 제품의 원산지로 간주함
- 이 경우, LED 또한 PCBA에 조립되는 개별 부품 중 하나이므로, 멕시코에서 이루어진 조립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공정에 해당한다고 봄

판정 결과

- CBP는 SMT 및 웨이브 솔더링 공정이 다수의 개별 부품들을 인쇄회로기판에 조립하는 복잡하고 의미 있는 작업으로서, 회로기판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부품들의 실질적 변형을 초래한다고 판단
- 중국에서 수행되는 조립 공정은 나사 체결, 커넥터 연결, 일부 납땜 등에 국한되어 있어 공정의 복잡성이 부족하므로, 해당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차량용 LED 램프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정

□ 결론

- ✓ 멕시코에서 수행된 SMT 및 웨이브 솔더링 기반의 PCBA 조립은 높은 복잡성과 기능적 통합성을 수반하므로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됨
- ✓ 이에 따라 최종 차량용 LED 램프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간주되며, 중국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III. 시사점

- 광원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광원이 생산된 곳이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이때, 광원을 만들기 위해 인쇄회로기판이 제작되고, 이를 위해 SMT, 웨이브 솔더링과 같은 공정이 수행된다면 이러한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킬만한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있는 공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IV.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4910 (2020.04.21.), <https://rulings.cbp.gov/ruling/H304910>
- CBP Ruling HQ H017620 (2008.02.05.), <https://rulings.cbp.gov/ruling/H017620>
- CBP Ruling HQ H215657 (2013.04.29.), <https://rulings.cbp.gov/ruling/H215657>
- CBP Ruling HQ H114395 (2011.05.18.), <https://rulings.cbp.gov/ruling/H114395>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ional Juice Products Ass'n v. United States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

Case 2. 코코넛 밀크

[요약]

| | |
|---------|--|
| 사례명 | [코코넛 밀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12079 (2020.06.05.) |
| 사실관계 | 코코넛 밀크 원액, 구아검, 물 등 원재료를 모두 스리랑카 내에서 조달하여 최종제품인 코코넛 밀크로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CBP 『19 C.F.R. § 134』에 따라, 일국에서 모든 재료가 조달되어 생산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아닌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가 원산지이므로 코코넛 밀크의 원산지는 스리랑카임</p>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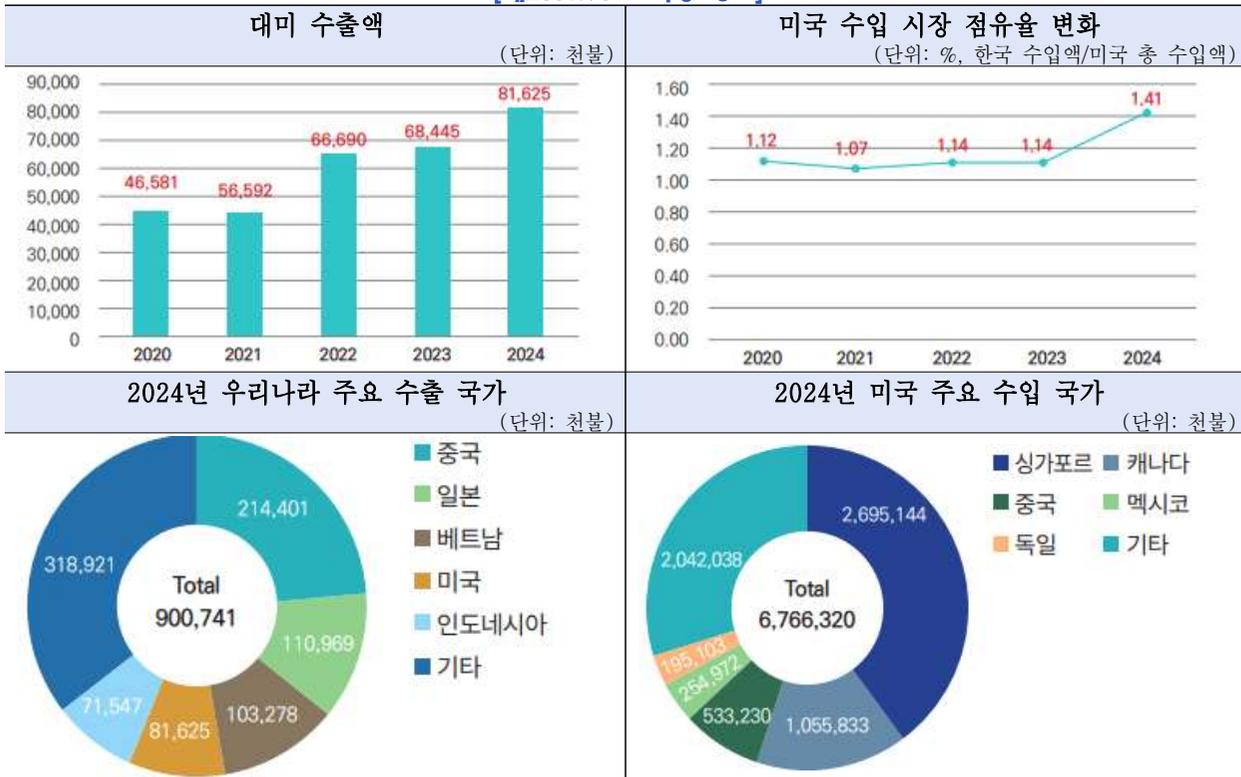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2106.9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30% |
| | 미국 기본세율 | 0~10% or 종량세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일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제2009호 및 제2202.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주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805호 및 제2009호의 것 및 제2202.90호의 혼합주스는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류 내의 다른 소호와 제2009호에 해당하는 재료, 제2202.90호의 혼합주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단일 과일·채소 주스 또는 단일 비당사구의 여러 가지 주스 성분이 원액(single strength) 상태로 그 물품의 전용량의 60%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2106.90호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3호부터 제220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당시럽: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7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것으로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의 것 및 우유 고형분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젤라틴으로 포장한 과실로 과실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0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2106.90호의 인삼 조제품: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2106.9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코코넛 밀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12079 (2020.06.05.)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Brad's Organic, LLC (대리인: Joint Agri Products Ceylon (Pvt) Ltd) | |
| 제품 | 제품명 | • 코코넛 밀크 제품 (지방함량 11% 및 18% 두 종류) |
| | 구성 | • 코코넛 밀크 원액 49% • 물 49% • 구아검(guar gum) 2% |
| | 용도 | • 식품 제조시 사용되는 원재료용 |
| | 완제품 HTSUS | • 2106.90.9890 |
| 제조 공정 | [상세 공정] | |
| |  <p>01 02 03 04 스리랑카 내에서 원재료 조달 스리랑카 내에서 가공 및 제조 소매용 포장 미국 수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재료 모두 스리랑카 내에서 조달 2. 스리랑카 내에서 가공 및 제조 3. 소매용 용기에 포장 4.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CBP 『19 C.F.R. § 134』 규정은 『19 U.S.C. § 1304』의 원산지표시 요구사항과 예외를 규정함
 - CBP 『19 C.F.R. § 134』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2, 681 F. 2d 778 (1982)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2007)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판정 결과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외국산 물품이 미국에 수입될 때, 자국산 재료만으로 해당 국가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그 국가가 원산지로 간주되므로, 완제품 코코넛 밀크 제품의 원산지는 스리랑카임

기타 의견

□ 해당 제품은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42 U.S.C. § 262)』의 적용 대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길 권함

□ 결론

✓ 모든 재료가 스리랑카 내에서 조달되어 생산되었으므로 원산지는 스리랑카임

Ⅲ. 시사점

• 실질적 변형 기준은 2개국 이상의 재료가 생산에 사용되거나 공정이 진행되는 경우에 적용됨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12079 (2020.06.05.), <https://rulings.cbp.gov/ruling/N312079>
-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3. 냉동 구운 장어

[요약]

| | |
|---------|--|
| 사례명 | [냉동 구운 장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11331 (2020.12.16.) |
| 사실관계 | 미국 또는 유럽산 생물 장어 치어를 중국으로 수입하여 양식한 후, 등뼈를 따라 중양을 절개하고 머리, 뼈, 내장, 지느러미 제거(껍질은 유지), 세척, 굽기, 찜, 냉동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냉동 구운 장어를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중국에서의 가공을 통해 뼈와 골격 구조가 제거되었고 더 이상 물고기 본연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으며, 가공을 통해 원통형 구조를 지닌 장어가 납작하게 펼쳐진 생선 살의 형태가 되므로 중국에서의 공정을 통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정함</p>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9)

□ **사례명:** [냉동 구운 장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11331 (2020.12.16.)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American Eel Depot, Corp. (대리인: Grunfeld, Desiderio, Lebowitz, Silverman & Klestadt, LLP) | |
| 제품 | 제품명 | • 냉동 구운 장어 (Frozen Roasted/Broiled Eel) |
| | 구성 | • 미국산 장어 치어[American eel(Anguilla rostrata)] • 유럽산 장어 치어[European eel(Anguilla anguilla)] |
| 제조 공정 | <p>[상세 공정]</p>  <p>01 장어 치어 중국으로 수입</p> <p>02 양식</p> <p>03 냉동 구운 장어로 가공</p> <p>04 미국 수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 또는 유럽산 생물 장어 치어를 중국으로 수입 2. 중국에서 양식 3. 상업용 크기까지 양식한 후, 아래 공정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뼈를 따라 중앙을 절개하고 머리, 뼈, 내장, 지느러미 제거(껍질은 유지) - 껍질과 살이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세척 후 구움 - 증기로 찜 처리 - 소스를 더해 한 번 더 직화로 구움 - 검사, 등급 분류, 포장 후 냉동하여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ⅴ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1982)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다음의 사례들을 참고함

9)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참고 판례: *Koru North America v. United States, 701 F.Supp. 229, 235 (C.I.T. 1988)*

(사례) 뉴질랜드산 생선(머리와 내장이 제거된 상태)이 한국으로 수입되어 해동, 껍질 제거, 뼈 제거, 다듬기, 재냉동 및 포장하는 공정을 거침

(판결) 해당 생선이 한국에서의 공정을 통해 필레 형태로 가공되었으며, 가공된 이후 더 이상 생선 본연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필레 자체가 원래의 생선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상업용 제품이 되었다고 판시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R04129 (2006)*

(사례) 미국산 메기 치어(catfish fingerlings)가 중국에서 양식, 사육, 수확, 내장 제거, 껍질 제거, 냉동 및 포장되었으나 필레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판정) CBP는 껍질 제거 및 절단과 같은 공정은 기본적인 수준의 가공에 해당하며, 여전히 '통메기(whole catfish)'라는 상업적 성질을 유지한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을 불인정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R04074 (2006)*

(사례) 미국산 메기 치어(catfish fingerlings)가 중국에서 양식, 사육, 수확, 내장 제거, 껍질 제거, 냉동, 포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레 작업까지 수행됨

(판정) 중국에서 이루어진 필레 작업을 통해 새로운 제품이 창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7962 (2019)*

(사례) 장어는 중국에서 양식되고, 머리 제거, 지느러미 정리, 필레 작업까지 수행된 후, 인도네시아로 수출되어 구이 및 소스 처리 과정을 거쳐 냉동 구운 장어로 가공

(판정) 필레 작업을 통해 장어는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실질적 변형되므로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

판정 결과

- ㉠ 청구인은 필레 가공된 생선이란 '등뼈에 평행하게 절단되어 잘라낸 불규칙한 크기와 형태의 생선 살 조각으로 전체 생선과 닮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 사안의 경우 등뼈를 따라 절단되었을 뿐 막에 의해 전체 장어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함
- ㉡ 하지만 CBP는 필레 방식과 본 사안의 방식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함



- ㉢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경우 모두 뼈나 골격 구조는 제거되어 있고 더 이상 물고기 본연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가공을 통해 원통형 구조를 지닌 장어는 납작하게 펼쳐진 생선 살의 형태가 되므로 중국에서의 공정을 통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정함

□ 결론

- ✓ 중국에서 수행된 중앙 절개, 뼈 제거, 굽기 등의 복합 가공 공정은 장어의 성질, 형태, 상업적 정체성을 변경함
- ✓ 따라서 미국산 또는 유럽산 장어가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되어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됨

II. 시사점

- 가공된 어류의 실질적 변형 판단은 최종제품이 어류의 기존 형태를 유지하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1331 (2020.12.16.), <https://rulings.cbp.gov/ruling/H311331>
- CBP Ruling NY R04129 (2006.06.15), <https://rulings.cbp.gov/ruling/R04129>
- CBP Ruling NY R04074 (2006.06.13), <https://rulings.cbp.gov/ruling/R04074>
- CBP Ruling NY N307962 (2020.12.16.), <https://rulings.cbp.gov/ruling/N307962>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Koru North America v. United States (198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474459/koru-north-america-v-united-states/?q=Koru+North+America+v.+United+States>

Case 4. 인스턴트 누들

[요약]

| | |
|---------|--|
| 사례명 | [인스턴트 누들]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15290 (2021.02.08.) |
| 사실관계 | 태국에서 제조된 면, 중국에서 제조된 동결건조 채소, 일본에서 제조된 수프 농축액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단순 키트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인스턴트 누들 제품은 베트남에서 단순히 포장되었을 뿐, 그 구성 성분들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각 구성 성분은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원래의 국가를 원산지로 유지해야 함</p>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¹⁰⁾

- **사례명:** [인스턴트 누들]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15290 (2021.02.08.)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Noodle Goods (대리인: Noodle Foods) | |
| 제품 | 제품명 | • 인스턴트 누들 제품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 (태국산) • 동결건조 채소 (중국산) • 수프 농축액 (일본산) |
| 제조 공정 |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면, 동결건조 채소, 수프 농축액을 베트남으로 수입</p> <p>02 단순 포장</p> <p>03 미국 수출</p> </div> <p>[상세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제조공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재료 혼합 및 반죽 2. 절단 후 찢 3. 건조 4. 포장하여 베트남으로 수출 • 중국 제조공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에서 채소 재배 2. 절단 후 찢 3. 동결 건조 4. 포장하여 베트남으로 수출 • 일본 제조공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러 원재료를 끓여서 수프 농축액 제조 2. 포장하여 베트남 수출 • 베트남 최종 공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 구성품을 수입하여 하나의 박스에 단순 포장(추가 가공 없음) 2.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10)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거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1 (1992)

-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단순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참고 판례: *Uniroyal Inc. United States*, 3 C.I.T. 220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CBP는 본 사안의 판정을 위해 아래 판정을 인용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200617 (2012)*

(사례) 루마니아산, 미국산 구성 성분을 수입하여 단순히 함께 포장 및 밀봉하여 디너 밀키트를 생산
(판정) 실질적 변형은 인정되지 않으며, 각 구성 성분의 원산지를 유지해야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054086 (2009)*

(사례) 미국 또는 멕시코산 채소, 코스타리카산 파인애플 등을 단순히 함께 포장하여 볶음 요리 키트 생산
(판정) 실질적 변형은 인정되지 않으며, 각 구성 성분의 원산지를 유지해야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052803 (2009)*

(사례) 여러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 및 수확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급속 냉동한 후 중국 또는 프랑스로 수출하여 동결건조하고 이후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판정) 동결건조 과일 및 채소는 해당 동결건조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래 재배된 국가의 원산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정

판정 결과

- 인스턴트 누들 제품은 베트남에서 단순히 포장되었을 뿐, 그 구성 성분들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각 구성 성분은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원래의 국가를 원산지로 유지해야 함
 - (면) 다양한 원재료가 태국에서 혼합, 반죽, 절단, 찜, 건조 과정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제품인 면으로 재탄생했으므로 태국이 원산지임
 - (수프 농축액) 원재료들을 끓이는 공정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명칭, 성질, 용도를 지닌 수프 농축액이 생산되었으므로 일본이 원산지임
 - (동결건조 채소) 동결건조 자체는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지 않으나, 채소가 처음 재배된 국가 역시 중국이므로 동결건조 채소의 원산지는 중국임

□ 결론

- ✓ 베트남에서 수행된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품 전체를 베트남산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구성품별로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유지해야 함(면: 태국, 수프 농축액: 일본, 동결건조 채소: 중국)

II. 시사점

- 밀키트,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단순히 구성요소를 수입해서 포장만 하는 것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5290 (2021.02.08.), <https://rulings.cbp.gov/ruling/H315290>
- CBP Ruling NY N200617 (2012.02.10), <https://rulings.cbp.gov/ruling/N200617>
- CBP Ruling NY N054086 (2009.03.26), <https://rulings.cbp.gov/ruling/N054086>
- CBP Ruling NY N052803 (2009.03.10), <https://rulings.cbp.gov/ruling/N052803>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5. 전기차 모터용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요약]

| | |
|---------|--|
| 사례명 | [전기차 모터용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 사례번호 | HQ H313371 (2021.03.30.) |
| 사실관계 | 중국, 멕시코 혹은 한국을 최종 제조국으로 가정한 4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수입한 부품을 조립·가공해 생산한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를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p>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의 원산지는 스테이터 코어와 로터 코어가 생산되는 국가에 따라 결정됨</p>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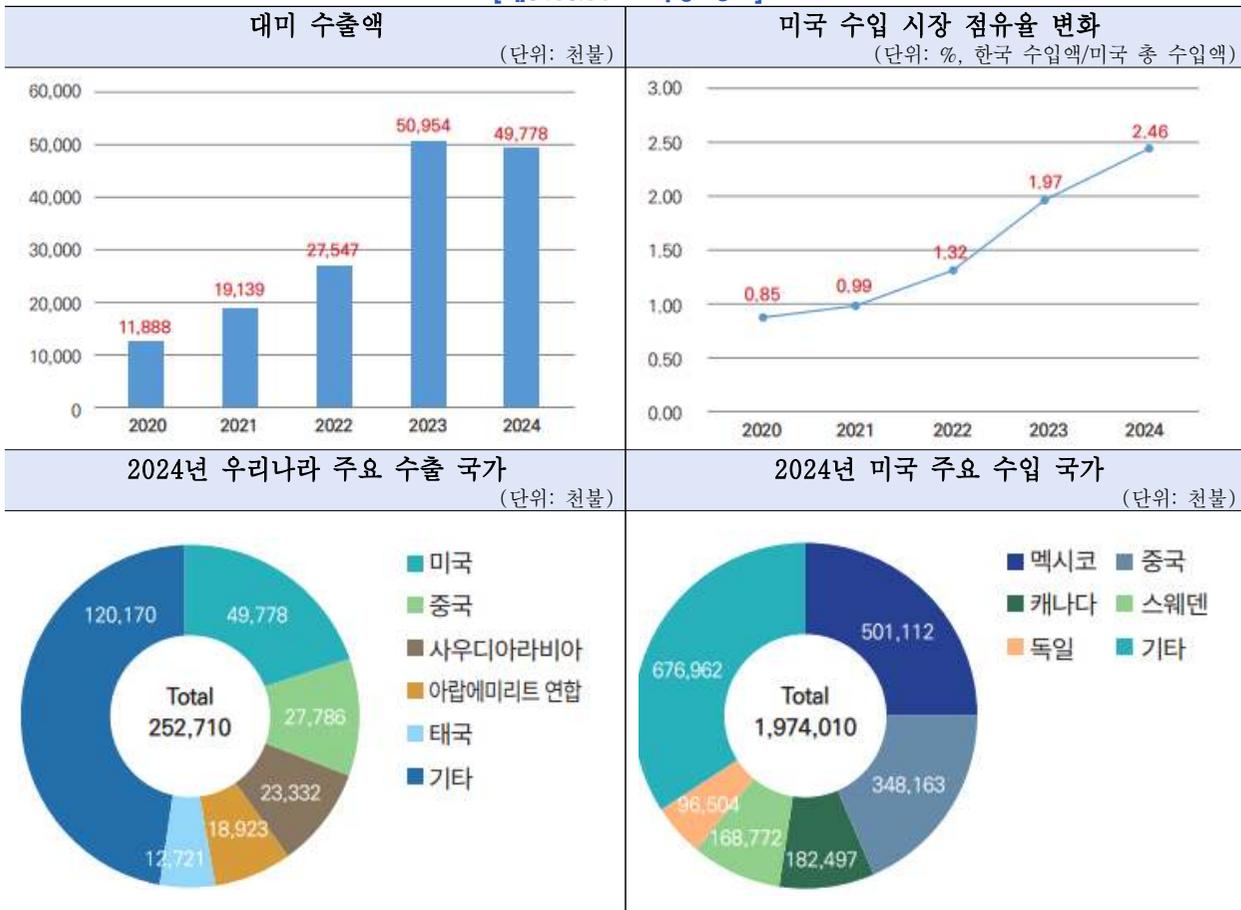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8413.7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8413.7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전기차 모터용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사례번호:** HQ H313371 (2021.03.30.)
- **사실관계**

| | | | | | |
|----------|---|------------------------|---------|-----------|-----------|
| 요청자 | • LG Electronics, Inc. | | | | |
| 제품 | 제품명 | • 전기차 모터용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 | | |
| | 구성 | •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된 부품으로 구성 | | | |
| | 용도 | • 전기차 모터에 사용 | | | |
| | 완제품 HTSUS | • 8413.70.20 | | | |
| 제조 공정 | <p style="text-align: center;"> 01 여러 부품을 중국, 멕시코 또는 한국으로 수입 02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생산 03 미국 수출 </p> <p style="text-align: center;">[상세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가지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 생산 시나리오 1 | | | | |
| | 제품 | | 부품 | | |
| | 제조국 | 제품 | 부품 | 원산지 | 원재료 비용 비율 |
| | 중국 | 로터 | 샤프트 | 멕시코 | 22.3% |
| | | | 자석 | 중국 | 22.6% |
| | | | 링(끝부분) | 중국 | 1.3% |
| | | | 가이드 링 | 중국 | 0.2% |
| | | | 로터용 리졸버 | 중국 | 0.4% |
| | | | 로터 코어 | 중국 | 15.3% |
| | | 스테이터 | 스테이터 코어 | 중국 | 15.3% |
| 자석 와이어 | | | 중국 | 15.0% | |
| 절연 필름 | | | 중국 | 2.6% | |
| 커넥터 링 | | | 중국 | 2.9% | |
| | | 파우더, 바니시 | 중국 | 2.1% | |
| 시나리오 2 | | | | | |
| 제품 | | 부품 | | | |
| 제조국 | 제품 | 부품 | 원산지 | 원재료 비용 비율 | |
| 멕시코 | 로터 | 샤프트 | 멕시코 | 22.3% | |
| | | 자석 | 중국 | 22.6% | |
| | | 링(끝부분) | 중국 | 1.3% | |
| | | 가이드 링 | 멕시코 | 0.2% | |
| | | 로터용 리졸버 | 일본 | 0.4% | |
| | | 로터 코어 | 한국 | 15.3% | |
| | 스테이터 | 스테이터 코어 | 한국 | 15.3% | |
| | | 자석 와이어 | 중국 | 15.0% | |
| | | 절연 필름 | 중국 | 2.6% | |
| | | 커넥터 링 | 멕시코 | 2.9% | |
| | | 파우더, 바니시 | 미국 | 2.1% | |

시나리오 3

| 제품 | | 부품 | | |
|----------|-------|---------|-------|-----------|
| 제조국 | 제품 | 부품 | 원산지 | 원재료 비용 비율 |
| 멕시코 | 로터 | 샤프트 | 멕시코 | 22.3% |
| | | 자석 | 중국 | 22.6% |
| | | 링(끝부분) | 중국 | 1.3% |
| | | 가이드 링 | 중국 | 0.2% |
| | | 로터용 리졸버 | 중국 | 0.4% |
| | 로터 코어 | 중국 | 15.3% | |
| | 스테이터 | 스테이터 코어 | 중국 | 15.3% |
| | | 자석 와이어 | 중국 | 15.0% |
| | | 절연 필름 | 중국 | 2.6% |
| | | 커넥터 링 | 중국 | 2.9% |
| 파우더, 바니시 | | 중국 | 2.1% | |

시나리오 4

| 제품 | | 부품 | | |
|----------|-------|---------|-------|-----------|
| 제조국 | 제품 | 부품 | 원산지 | 원재료 비용 비율 |
| 한국 | 로터 | 샤프트 | 멕시코 | 22.3% |
| | | 자석 | 중국 | 22.6% |
| | | 링(끝부분) | 중국 | 1.3% |
| | | 가이드 링 | 중국 | 0.2% |
| | | 로터용 리졸버 | 일본 | 0.4% |
| | 로터 코어 | 한국 | 15.3% | |
| | 스테이터 | 스테이터 코어 | 한국 | 15.3% |
| | | 자석 와이어 | 중국 | 15.0% |
| | | 절연 필름 | 중국 | 2.6% |
| | | 커넥터 링 | 중국 | 2.9% |
| 파우더, 바니시 | | 중국 | 2.1% | |

□ 쟁점사항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USTR은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중국산 특정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제301조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사용
 - 실질적 변형: 제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는지를 판단할 때의 핵심 기준은 수행된 작업의 정도와 해당 부품이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통합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573 F. Supp. 1149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경미하거나 간단한 조립 작업은 복잡하고 의미 있는 조립 작업과 달리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때 관련되는 요소들로는 ①작업의 성격(조립되는 부품의 수 포함), ②작업 단계의 다양성, ③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④숙련된 기술, ⑤작업의 디테일, ⑥품질 관리 등이 있음

◆ 참고 판례: *C.S.D. 80-111, 85-25, 89-110, 89-118, 90-51, 90-97*

- CBP는 해당 사례에서 실질적 변형의 판단을 위해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판례 및 CBP 기존 판정 사례를 인용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8827, NY N316151, NY N305251*

판정 결과

- 사례에서 최종 물품 생산을 위해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다양한 주요 부품들이 사용되기는 하나,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성품은 스테이터 코어와 로터 코어로 판단됨
-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조립 과정 자체는 단순히 부품을 삽입하고 부착하는 것 이상의 작업이라고 판단되나,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의 원산지는 스테이터 코어와 로터 코어가 생산되는 국가에 따라 결정됨

□ 결론

- ✓ 로터-스테이터 어셈블리의 주요 부품으로 판단되는 스테이터 코어와 로터 코어가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며, 중국산으로 판정되는 경우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함
- ✓ 이에 따라, 시나리오 1, 3의 원산지는 중국, 2, 4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시나리오 1, 3의 경우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함

III. 시사점

- CBP는 모터와 같은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 주요 부품인 스테이터와 로터가 생산된 국가를 기준으로 하며, 나아가 스테이터와 로터의 원산지 또한 스테이터 코어와 로터 코어가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IV.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3371 (2021.03.30.), <https://rulings.cbp.gov/ruling/H313371>
- CBP Ruling NY N308827 (2020.01.31), <https://rulings.cbp.gov/ruling/N308827>
- CBP Ruling NY N316151 (2020.12.18), <https://rulings.cbp.gov/ruling/N316151>
- CBP Ruling NY N305251 (2019.08.01), <https://rulings.cbp.gov/ruling/N305251>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6.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요약]

| | |
|---------|--|
| 사례명 |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20677 (2021.08.25.) |
| 사실관계 | 한국, 대만 또는 인도산 와이어 로드(5.5mm 또는 7.5mm)를 호주로 수입하여 세척, 건조, 신장, 냉간 인발, 어닐링 등의 공정을 통해 1.8~5.4mm 스테인리스강 와이어로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신청자는 어닐링 공정이 기계적 특성을 변화시킨다고 주장(연성 증가, 경도 완화)하였으나, 본 사안에서 행해진 어닐링 공정은 와이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하거나 뛰어난 특성을 부여하지도 않고 특정 용도로 직접 사용될 준비가 된 제품으로 만들지도 않으며, 이러한 공정에 대한 처리 시간, 비용, 부가가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음</p>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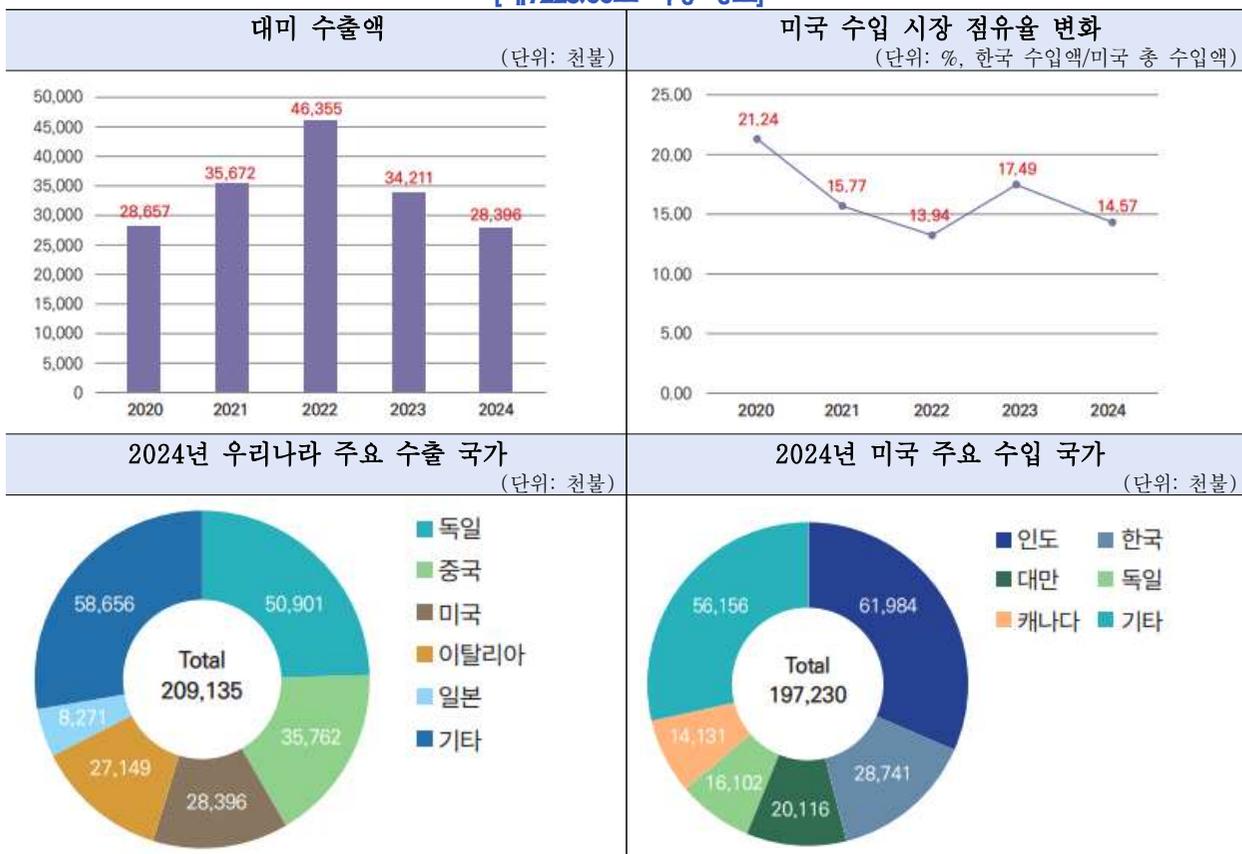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7223.0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7223.0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20677 (2021.08.25.)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Aqseptence Group, Inc. | |
| 제품 | 제품명 | •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
| | 구성 | • Grade 304 또는 316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로드(한국, 대만, 인도산) |
| | 용도 | • 여과, 분리 및 수처리 기술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 |
| | 원재료 HS Code | • 7223.00.1061 또는 7223.00.1076 |
| | 완제품 HS Code | • 7223.00.1061 또는 7223.00.1076 |
| 제조 공정 | <p>01 와이어 로드를 호주로 수입</p> <p>02 세척 및 건조</p> <p>03 신장</p> <p>04 냉간 인발</p> <p>05 어닐링</p> <p>06 재권취</p> <p>06 미국 수출</p> | |
|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경 5.5 또는 7.5mm의 와이어 로드를 한국, 대만 또는 인도에서 호주로 수입 2. 세척(Cleaning) 3. 건조(Drying) 4. 신장(Stretching) 5. 냉간 인발(Cold-drawing) 6. 어닐링(Annealing) 7. 재권취(re-spooling) 8. 완제품(직경 1.8288~5.4888mm에 해당하는 각 다른 사이즈의 6개 종류)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Ⅴ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의 요건: 물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가공 또는 결합 공정이 단순하여 물품의 본질적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단순한 와이어 드로잉(Drawing) 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음

◆ 참고 판례: *Superior Wire v. United States*, 669 F. Supp. 472 (CIT 1987), *aff'd*, 867 F.2d 1409 (Fed. Cir. 1989)

(사례) 스페인산 와이어 로드(코일 형태)가 캐나다로 선적된 후 드로잉(Drawing) 공정을 거쳐 와이어로 가공되어 미국으로 수입

(판결) 와이어 로드(코일 형태)가 와이어를 제조하는 것 외에는 용도가 거의 없으며, 이미 와이어 로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구성이 변화하여 최종제품의 성질 및 용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Ferrostaal 판결에서 법원은 냉간압연 강관에 대한 ‘용융 아연 도금(hot-dip galvanizing)’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했는데, 해당 공정은 압연 과정에서 딱딱해진 강관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어닐링 공정과, 이를 녹은 아연에 담가 표면에 녹이 슬지 않도록 하는 성질을 부여하는 도금 공정의 두 단계를 포함
- 법원은 해당 사례에서 어닐링이나 도금 단독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
- CBP는 어닐링이 복잡하거나 광범위하지 않으며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시,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어닐링은 일반적으로 와이어 신장 공정 이후 수행되어 단독으로는 제한된 용도의 고유한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판단
- CBP는 어닐링을 통한 실질적 변형 판단은 열처리의 범위(가공 시간, 비용, 복잡성 등), 해당 처리로 인한 부가가치, 강재의 기계적 특성과 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시

판정 결과

- Ⅴ 신청자는 어닐링 공정이 기계적 특성을 변화시킨다고 주장(연성 증가, 경도 완화)하였으나, 이는 와이어의 본질적인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판정
- 해당 공정은 와이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고유하거나 뛰어난 특성을 부여하거나 특정 용도로 직접 사용될 준비가 된 제품으로 만들지도 않으며, 이러한 공정에 대한 처리 시간, 비용, 부가가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음

기타 의견

- Ⅴ 『대통령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되며, 해당 제품(HTSUS 7223.00.1061, 7223.00.1076)은 해당 포고령에 따라 관세 또는 쿼터 대상일 수 있으므로, 수입 시 Chapter 99(추가 관세 분류)와 함께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본래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 결론

- ✓ 호주에서의 세척, 신장, 어닐링 등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초기 제조국인 한국, 대만 또는 인도임
- ✓ 완제품은 제232조 철강 제재 품목에 해당하여, 무역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Ⅲ. 시사점

- 어닐링 공정으로 인한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경우, 열처리의 범위, 생성된 부가가치, 강재의 기계적 특성과 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함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0677 (2021.08.25.), <https://rulings.cbp.gov/ruling/N320677>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Superior Wire v. The United States, William Von Raab, Commissioner of Customs, and District Director of Customs at Port of Detroit, Michigan (1989),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518523/superior-wire-v-the-united-states-william-von-raab-commissioner-of/?q=Superior+Wire+v.+United+States>

Case 7. 철강 코일

[요약]

| | |
|---------|--|
| 사례명 | [철강 코일]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24853 (2022.04.07.) |
| 사실관계 | 프랑스에서 용융 아연도금, 프라이머 도포 및 폴리에스터 코팅 처리된 냉간압연 비합금강 코일을 네덜란드로 보내 절단, 천공, 재권취 후 캐나다로 수출하고 캐나다에서는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해당 물품은 프랑스에서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에서 출발하였고, 네덜란드에서의 추가 가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판압연 제품으로 남아있으므로 네덜란드에서 수행된 절단 및 천공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야기하지 않아 철강 코일의 원산지는 프랑스임</p>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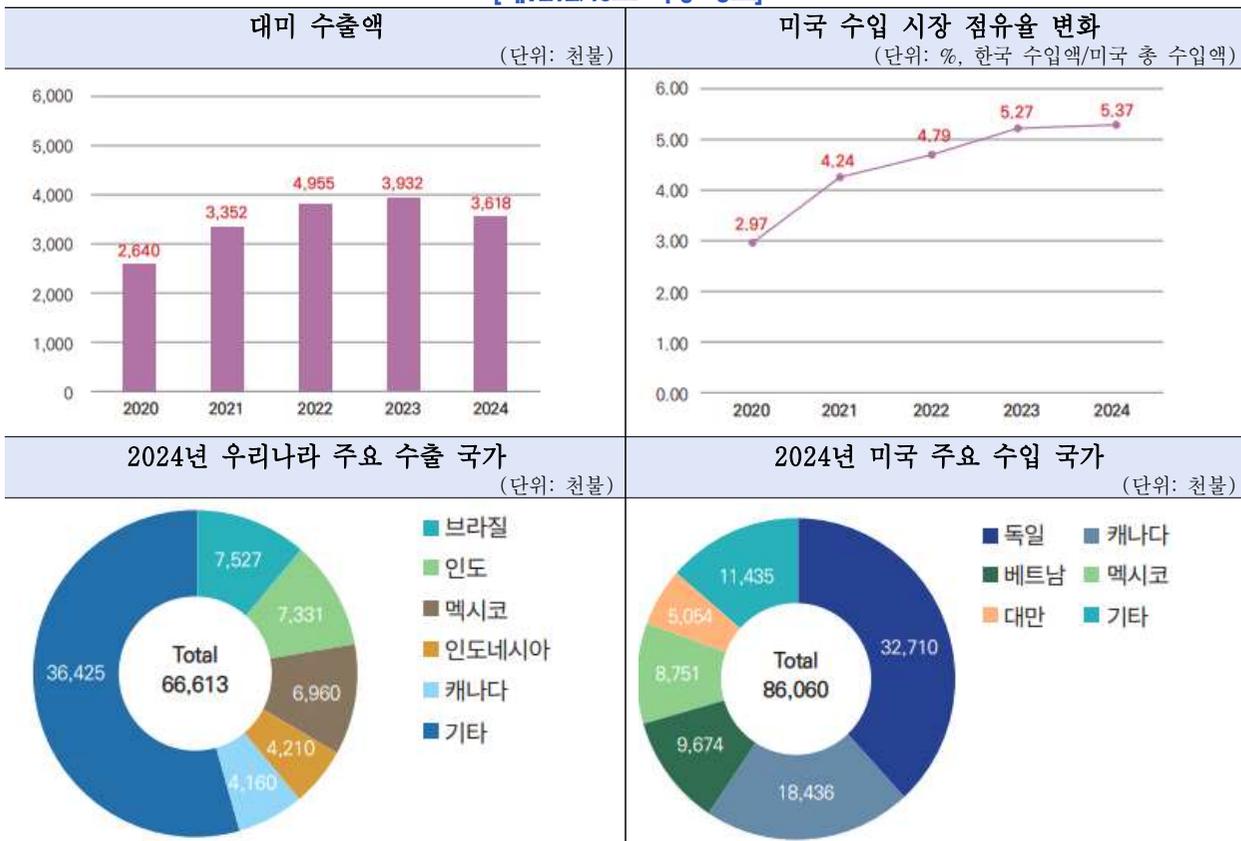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7212.4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7212.4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철강 코일]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24853 (2022.04.07.)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Meteor Horticulture Systems Inc. (대리인: Pacific Customs Brokers Inc.) | |
| 제품 | 제품명 | • 철강 코일 |
| | 구성 | • 용융 아연도금, 프라이머 도포 및 폴리에스터 코팅 처리한 냉간압연 비합금강 코일(프랑스산, 폭 1,120mm~2,000m, 두께 0.6mm) |
| | 용도 | • 온실 배수 시스템(gutter systems) 제조용 |
| | 완제품 HS Code | • 7212.40.5000 |
| 제조 공정 | | |
| | <p>[상세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랑스산 냉간압연 비합금강 코일 수입 2. 언코일(uncoiling) 3. 폭 312mm 또는 375mm 슬레이트 형태 절단 4. 일정 간격으로 두 개의 구멍을 타공 또는 천공 5. 다시 코일 형태로 감기(recoiling) 6. 캐나다로 수출 •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에서 가공된 코일을 수입하여 가공 없이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의 요건: 물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가공 또는 결합 공정이 단순하여 물품의 본질적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판정 결과

- 해당 물품은 프랑스에서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에서 출발하였고, 네덜란드에서의 추가 가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판압연 제품으로 남아있으므로 네덜란드에서 수행된 절단 및 천공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야기하지 않아 철강 코일의 원산지는 프랑스임

기타 의견

- 요청자가 캐나다에서 수입된 것을 근거로 『19 C.F.R. § 102』에 따른 원산지판정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코일은 캐나다에서 단순히 반입 및 반출만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USMCA 국가의 제품으로 간주될 수 없어 해당 기준을 근거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없음
- 『대통령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되며, 해당 제품(HTSUS 7212.40.5000)은 관세 또는 쿼터 대상일 수 있으므로, 수입 시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본래 분류와 함께 Chapter 99(추가 관세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 결론

- ✓ 네덜란드에서의 공정(절단, 편칭)은 단순 가공으로, 원재료의 정체성 및 사용 목적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프랑스로 간주

Ⅲ. 시사점

- 철강 제품의 경우, 단순 절단, 편칭과 같은 가공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4853 (2022.04.07.), <https://rulings.cbp.gov/ruling/N324853>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8. 흑마늘 시즈닝

[요약]

| | |
|---------|---|
| 사례명 | [흑마늘 시즈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26044 (2022.06.08.) |
| 사실관계 | 스페인산 생마늘(껍질 포함)을 남아프리카로 수입하여 발효, 로스팅, 냉장, 혼합, 분쇄, 체질 등의 공정을 거쳐 흑마늘 시즈닝을 생산한 후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남아프리카에서 수행된 공정은 원재료의 정체성을 상실시키지 않으며, 최종제품 역시 여전히 '흑마늘'로 간주되므로 성분, 명칭, 용도 측면에서의 변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p>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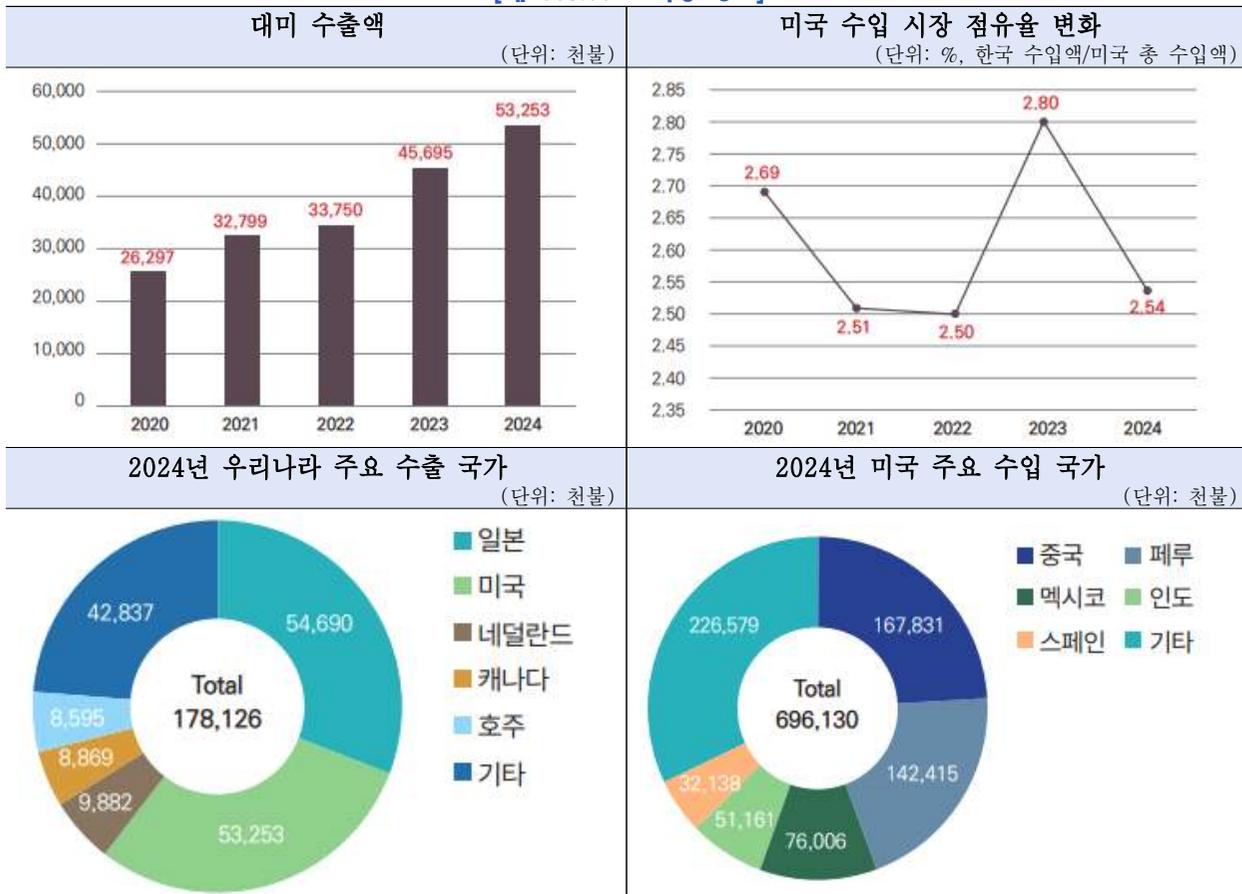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2005.99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20% |
| | 미국 기본세율 | 0~14.9% or 0.8¢/kg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0류의 주석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시장 정보

[제2005.99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흑마늘 시즈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26044 (2022.06.08.)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Cape Herb & Spice | |
| 제품 | 제품명 | • 흑마늘 시즈닝 |
| | 구성 | • 건조 분쇄 흑마늘 (약 98%) • 쌀겨 (약 2%) |
| | 용도 | • 식료품점 소매 판매용 |
| | 완제품 HTSUS | • 2005.99.9700 |
| 제조 공정 |  <p>01 스페인산 생마늘 남아프리카로 수입</p> <p>02 발효 후 냉각</p> <p>03 로스팅 (가열)</p> <p>04 껍질 제거 및 냉장보관</p> <p>05 쌀겨 혼합 후 분쇄, 체질</p> <p>06 소매 포장</p> <p>06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페인산 생마늘(껍질 포함)을 남아프리카로 수입 2. 온도 60~70°C의 발효기에서 14일간 발효 3. 발효 후, 실온에서 1일간 냉각 4. 70~80°C 열 교환 오븐에서 1~2일간 추가 로스팅(가열) 5. 껍질 제거 후 0~10°C에서 1~2일간 냉장 보관 6. 쌀겨를 혼합 후 분쇄, 체질 7. 유리병에 소매 포장 8.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ⅴ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Ct. Int'l Trade 1986)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K81363 (2003)*

(사례) 중국, 스페인,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재배된 마늘을 콜롬비아에서 마늘 쪽으로 분리한 후 껍질을 제거하고 소매용으로 포장 가공

(판정)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 CBP는 커피 제조를 위한 로스팅(roasting)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로스팅 및 이와 유사한 가공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008056 (2007)*

(사례) 껍질을 제거한 캐슈넛을 볶은 뒤 통조림 처리

(판정) 실질적 변형 불인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G89921 (2001)*

(사례) 건조된 콩과 병아리콩을 재수화, 통조림 처리, 180°F의 뜨거운 소금물에 담금, 밀봉, 260°F의 회전식 조리기에서 15분 이상 조리, 냉각, 라벨링, 포장함

(판정) 실질적 변형 불인정

판정 결과

- 남아프리카에서 수행된 공정은 원재료의 정체성을 상실시키지 않으며, 최종제품 역시 여전히 '흑마늘'로 간주되므로 성분, 명칭, 용도 측면에서의 변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

□ 결론

- ✓ 스페인산 생마늘이 남아프리카에서 일부 가공되었으나,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스페인으로 판정됨

III. 시사점

- 발효, 냉각, 로스팅, 혼합, 분쇄 등의 공정은 식품 특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원재료의 정체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6044 (2022.06.08.), <https://rulings.cbp.gov/ruling/N326044>
- CBP Ruling NY K81363 (2003.11.28), <https://rulings.cbp.gov/ruling/K81363>
- CBP Ruling NY N008056 (2007.03.16), <https://rulings.cbp.gov/ruling/N008056>
- CBP Ruling NY G89921 (2001.06.12), <https://rulings.cbp.gov/ruling/G89921>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Juice Products Ass'n v. United States(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

Case 9. Pipe-in-Pipe(PIP) 어셈블리

[요약]

| | |
|---------|---|
| 사례명 | [Pipe-in-Pipe(PIP) 어셈블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28989 (2022.10.28.) |
| 사실관계 | 이탈리아 또는 독일산 Invar 36 니켈 합금강 내부 파이프와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 슬리브, 단열재 패널, 스테인리스강 시트, 보호캡 등을 프랑스에서 가공하여 PIP 어셈블리를 생산한 후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프랑스에서 수행된 조립 작업은 새로운 용도를 가진 제품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며, 어셈블리의 본질적인 특성은 중량 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탈리아산 외부 파이프에 기인하므로 PIP 어셈블리의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이탈리아임</p>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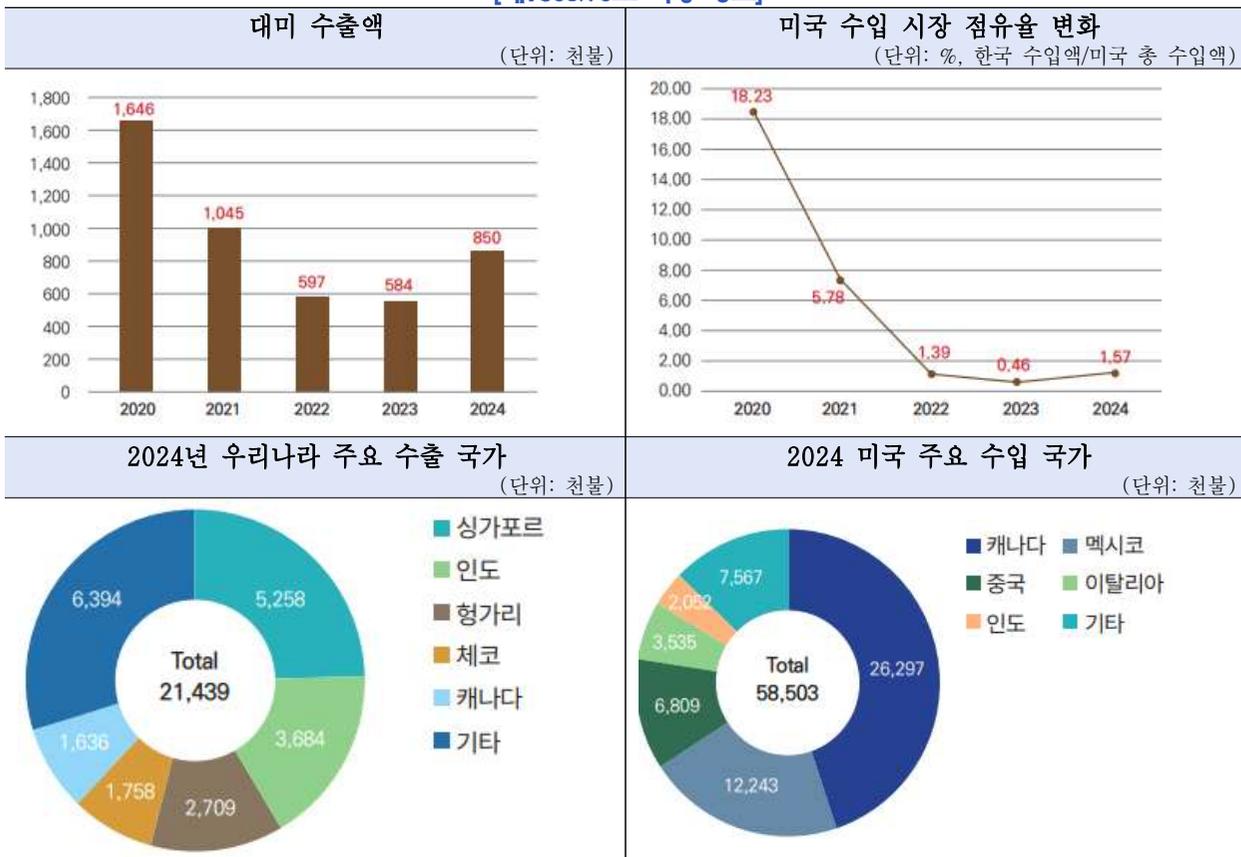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7306.9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7304.49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외경이 19밀리미터 미만인 제7304.41호의 것 | |

□ 시장 정보

[제7306.9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Pipe-in-Pipe(PIP) 어셈블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28989 (2022.10.28.)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Venture Global LNG, Inc. | |
| 제품 |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NG 액화플랜트용 이중관(Pipe-in-Pipe, PIP) 조립체 3종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NG 저장 탱크에서 로딩 암까지 LNG를 이송하는 세 개의 파이프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라인: 직경 914.44mm의 Invar 36% 니켈 합금강 내부 파이프, 직경 1066.8mm의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 슬리브, 단열재 및 스테인리스강 시트 - 오프로딩라인: 직경 609.9mm의 ASME B31.3 규격 Invar 36% 니켈 합금강 내부 파이프, 직경 762mm의 ASTM A358 규격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 슬리브, 단열재 및 스테인리스강 시트 - 순환라인: 직경 168.27mm의 ASME B31.3 규격 Invar 36% 니켈 합금강 내부 파이프, 직경 323.9mm의 ASTM A358 규격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 단열재 및 스테인리스강 시트 |
|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액화천연가스를 저장 탱크에서 로딩 암으로 전달하는 용도(이중 배관 구조로 외부충격·누출 방지 및 극저온 상태 유지) |
| | 완제품 HS Cod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7306.90.5000 |
| 제조 공정 |  <p>01 이탈리아산, 독일산 재료 프랑스로 운송 → 02 가공 공정 수행 → 03 포장 → 04 미국 수출</p> | |
|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탈리아산 또는 독일산 Invar 36 니켈 합금강 내부 파이프와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 슬리브, 단열재 패널, 스테인리스강 시트, 보호캡 등을 프랑스로 운송 프랑스 내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var 36 니켈 합금강 내부 파이프 절단 및 끝부분 베벨 가공 -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 샌드블라스트 처리, 절단 및 베벨 가공 - Invar 36 니켈 합금강 내부 파이프에 단열재를 감싸고 스테인리스강 시트를 이용해 고정 -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에 백킹 링 용접 - Invar 36 니켈 합금강 내부 파이프를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 안에 삽입 - 스테인리스강 외부 파이프에 용접 보호 캡 임시 고정 - PIP 어셈블리 완성 PIP 어셈블리 포장 및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이란 가공을 거쳐 물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제품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물품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유지되는 단순 제조 또는 조립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되지 않음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CBP는 부품이 다양한 원산지를 가질 경우, 완성품으로 조립되었을 때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판단하며, 한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정도, 해당 가공이 구성품에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부여했는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음
- 이 외에도,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후 검사 및 테스트 절차의 범위, 제조에 요구되는 작업자의 기술 수준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명시하며 단순 조립 및 기능 보조 수준 가공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고 : C.S.D. 80-111, 85-25, 89-110, 89-118, 90-51, 90-97

판정 결과

- ▣ 프랑스에서 수행된 조립 작업은 새로운 용도를 가진 제품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 조립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중량 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탈리아산 외부 파이프에 기인하므로 PIP 어셈블리의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이탈리아임

기타 의견

- ▣ 『대통령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되며, 해당 제품(HTSUS 7306.90.5000)은 관세 또는 쿼터 대상일 수 있으므로, 수입 시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본래 분류와 함께 Chapter 99(추가 관세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 결론

- ✓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이탈리아임

Ⅲ. 시사점

- CBP는 최종제품의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중량 기준을 활용하기도 함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8989 (2022.10.28.), <https://rulings.cbp.gov/ruling/N32898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10. 김치 소스

[요약]

| | |
|---------|--|
| 사례명 | [김치 소스]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33285 (2023.06.29.) |
| 사실관계 | 여러 국가의 원재료를 일본으로 수입하여 혼합, 조미, 금속 이물질 제거,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 김치 소스를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사전 배합된 원재료들을 혼합하여 최종 소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개별 원재료들은 독립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김치 소스라는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하므로 실질적 변형 요건을 충족함</p>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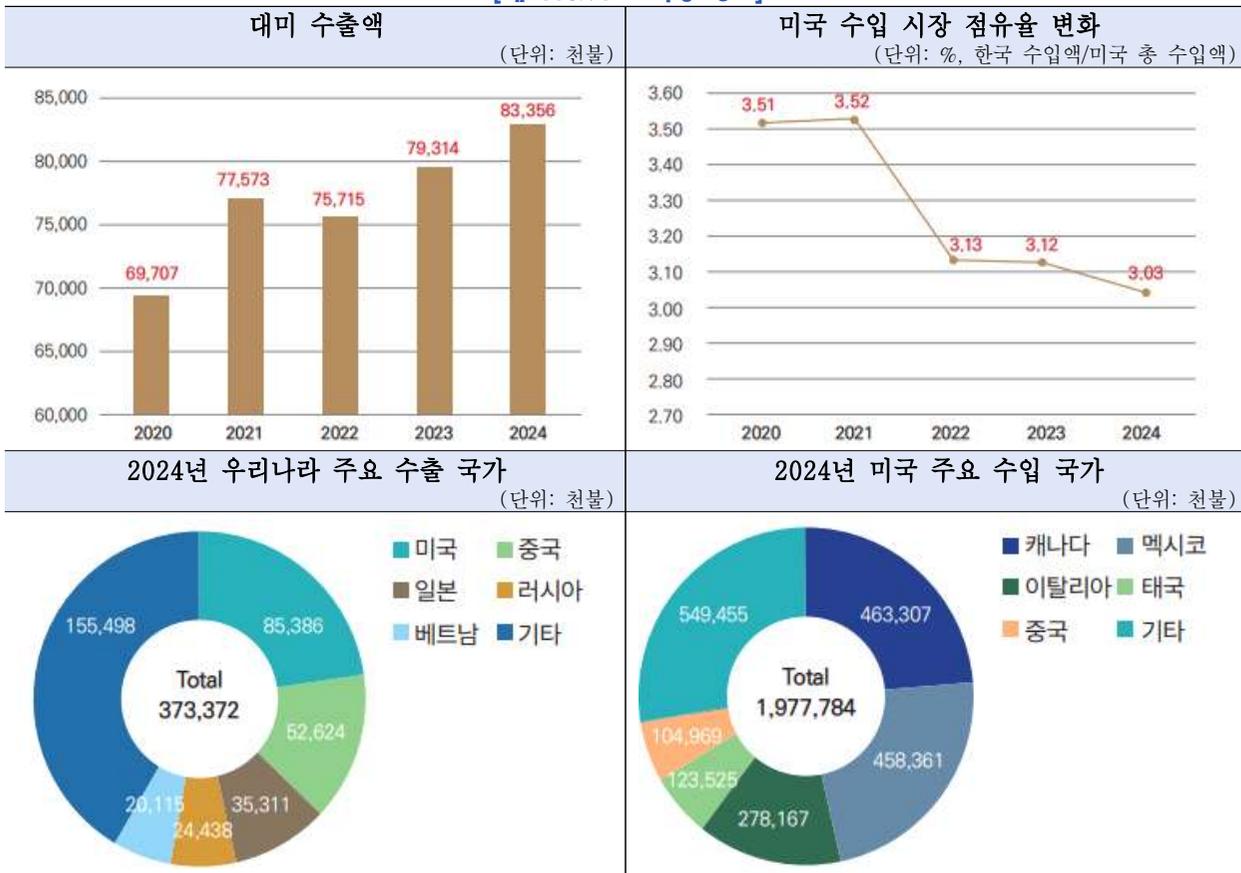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2103.9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7.5% or 30.5¢/kg + 6.4%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3%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2103.9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김치 소스]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33285 (2023.06.29.)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Wismettac Asian Foods, Inc. | |
| 제품 | 제품명 | • 김치 소스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수돗물, 고과당 액상당, 소금, 사과 펄프, 균류 식초, 굴 펄프, 가다랑어 추출물, 오징어 추출물, 구연산, 다시마, 파프리카 색소 • 중국: 마늘, 발효 채소, 고추, 생강 • 브라질: L-글루타민산나트륨, 양조식초 • 스페인: 파프리카 • 미국: 가수분해 대두단백, 잔탄검 • 인도네시아: 가다랑어포 • 태국: 5-이노신산나트륨 |
| | 용도 | • 식품 서비스 업계 대상 판매용 |
| | 완제품 HTSUS | • 2103.90.9091 |
| 제조 공정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러 국가의 물품을 일본으로 수입 2. 일본에서 원료 혼합 및 조미 3. 금속 이물질 제거 4. 1,200g 플라스틱 용기에 충전, 밀봉, 라벨 부착, 포장 5.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Ⅳ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Ct. Int'l Trade 1986)

판정 결과

- ☐ 사전 배합된 원재료들을 혼합하여 최종 소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개별 원재료들은 독립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김치 소스라는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하므로 실질적 변형 요건을 충족함

기타 의견

- ☐ 해당 제품은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42 U.S.C. § 262)』의 적용 대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길 권함

□ 결론

- ✓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일본임

Ⅲ. 시사점

-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전히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3285 (2023.06.29.), <https://rulings.cbp.gov/ruling/N333285>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Juice Products Ass'n v. United States*(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

Origin Case

Vol. 5

- Case 1 - 일체형 냉장·냉동고 (제8418.10호)
- Case 2 - 팬 블로어 어셈블리 (제8414.59호)
- Case 3 - 알루미늄 올타리 키트 (제7610.90호)
- Case 4 - 주방용 스테인리스강 싱크 키트 (제7324.10호)
- Case 5 -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 (제8708.29호)
- Case 6 - 절임 마늘 (제2005.99호)
- Case 7 - 합금강판 (제7226.91호)
- Case 8 - 호스 클램프 (제7326.90호)
- Case 9 - 화분 받침용 이동대 (제9403.20호)
- Case 10 - 배추김치 (제2005.99호)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Case 1. 일체형 냉장·냉동고

[요약]

| | |
|---------|---|
| 사례명 | [일체형 냉장·냉동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 사례번호 | HQ H314180 (2021.01.22.) |
| 사실관계 | 미국, 중국, 멕시코, 폴란드, 스웨덴, 인도네시아, 대만에서 생산된 부품을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생산한 일체형 냉장·냉동고를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1) 냉각 유닛 어셈블리, 통합 제어 배선 어셈블리, 핀 팩 어셈블리,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등 일체형 냉장·냉동고의 구조적·기능적 주요 요소들이 중국에서 제조되므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중국산) - (시나리오 2) 냉각 유닛 어셈블리는 여전히 중국에서 제조되지만, 통합 제어 배선 어셈블리, 핀 팩 어셈블리,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등 일체형 냉장·냉동고의 전반적인 기능을 보조하는 일부 구성품의 제조가 멕시코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멕시코에서의 공정이 최종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압도적으로 높은 바,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멕시코산)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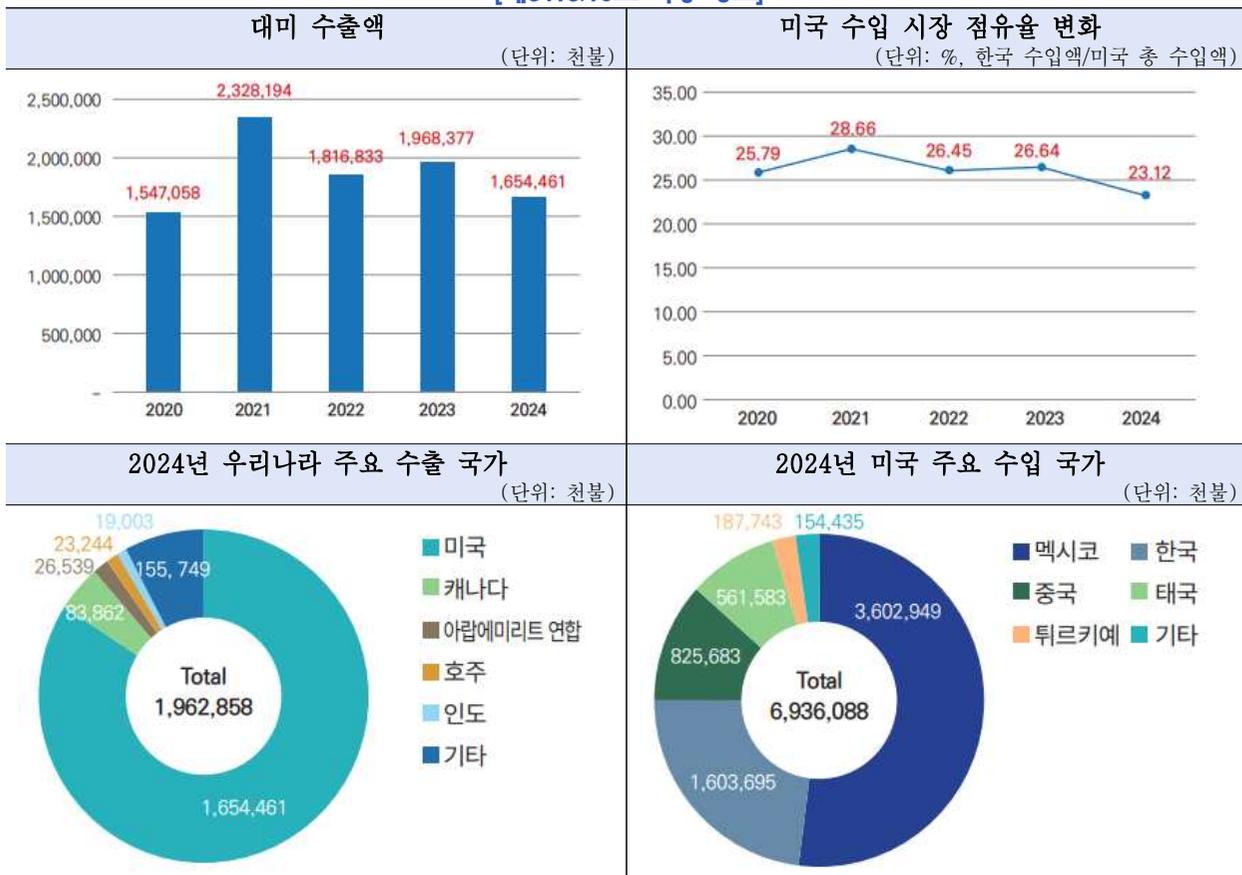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8418.1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제8418.10호부터 제8418.69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18.9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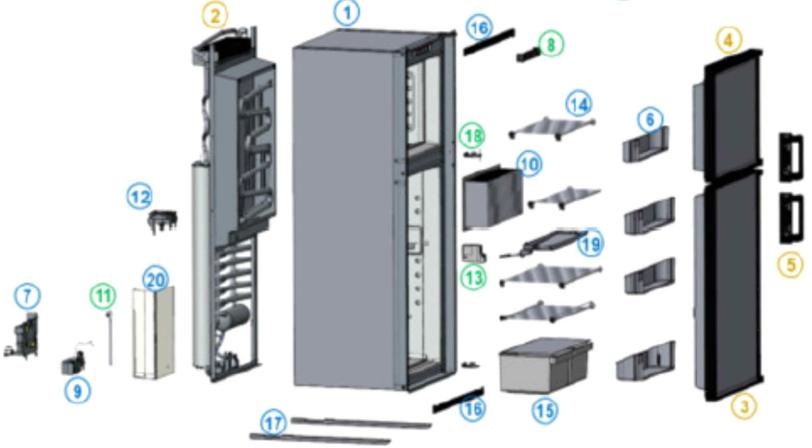
[제8418.1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일체형 냉장·냉동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사례번호:** HQ H314180 (2021.01.22.)
- **사실관계**

| 요청자 | • Dometic North America (대리인: Expeditors Tradewin, LL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품 |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체형 냉장·냉동고 (모델명: DM2672) • 190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45%;">명칭</th>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35%;">명칭</th> </tr> </thead> <tbody> <tr><td>1</td><td>캐비닛 어셈블리</td><td>11</td><td>히터 어셈블리</td></tr> <tr><td>2</td><td>냉각 유닛 어셈블리</td><td>12</td><td>팬 어셈블리</td></tr> <tr><td>3</td><td>냉장실 도어 어셈블리</td><td>13</td><td>LED 조명 어셈블리</td></tr> <tr><td>4</td><td>냉동실 도어 어셈블리</td><td>14</td><td>철제 선반</td></tr> <tr><td>5</td><td>도어 손잡이 어셈블리</td><td>15</td><td>야채 보관 서랍 및 덮개</td></tr> <tr><td>6</td><td>도어용 플라스틱 선반</td><td>16</td><td>아이브로우 및 킥플레이트</td></tr> <tr><td>7</td><td>전원 제어 모듈 어셈블리</td><td>17</td><td>캐비닛 지지대</td></tr> <tr><td>8</td><td>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td><td>18</td><td>도어 경첩</td></tr> <tr><td>9</td><td>가스 밸브 버너 어셈블리</td><td>19</td><td>응결수 받이</td></tr> <tr><td>10</td><td>핀 팩 어셈블리</td><td>20</td><td>하부 플레이트 어셈블리</td></tr> </tbody> </table> | 구분 | 명칭 | 구분 | 명칭 | 1 | 캐비닛 어셈블리 | 11 | 히터 어셈블리 | 2 | 냉각 유닛 어셈블리 | 12 | 팬 어셈블리 | 3 | 냉장실 도어 어셈블리 | 13 | LED 조명 어셈블리 | 4 | 냉동실 도어 어셈블리 | 14 | 철제 선반 | 5 | 도어 손잡이 어셈블리 | 15 | 야채 보관 서랍 및 덮개 | 6 | 도어용 플라스틱 선반 | 16 | 아이브로우 및 킥플레이트 | 7 | 전원 제어 모듈 어셈블리 | 17 | 캐비닛 지지대 | 8 |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 18 | 도어 경첩 | 9 | 가스 밸브 버너 어셈블리 | 19 | 응결수 받이 | 10 | 핀 팩 어셈블리 | 20 | 하부 플레이트 어셈블리 | |
| | 구분 | 명칭 | 구분 |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캐비닛 어셈블리 | 11 | 히터 어셈블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냉각 유닛 어셈블리 | 12 | 팬 어셈블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냉장실 도어 어셈블리 | 13 | LED 조명 어셈블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냉동실 도어 어셈블리 | 14 | 철제 선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도어 손잡이 어셈블리 | 15 | 야채 보관 서랍 및 덮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도어용 플라스틱 선반 | 16 | 아이브로우 및 킥플레이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전원 제어 모듈 어셈블리 | 17 | 캐비닛 지지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 18 | 도어 경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가스 밸브 버너 어셈블리 | 19 | 응결수 받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핀 팩 어셈블리 | 20 | 하부 플레이트 어셈블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도 | • 냉장 및 냉동 기능을 모두 갖춘 일체형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완제품 HTSUS | • 8418.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조 공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상세 공정] 시나리오 1</p> <p>1. 여러 구성품을 멕시코로 수입 및 조달(멕시코산 46%, 중국산 44%, 미국산 8%, 기타 2%)</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멕시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캐비닛 어셈블리 <li style="width: 50%;">• 전원 제어 모듈 어셈블리 <li style="width: 50%;">• 가스 밸브 버너 어셈블리 <li style="width: 50%;">• 철제 선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냉각 유닛 어셈블리 <li style="width: 50%;">• 하단 도어용 플라스틱 선반 <li style="width: 50%;">• 통합 제어 배선 어셈블리 <li style="width: 50%;">•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li style="width: 50%;">• 핀 팩 어셈블리 <li style="width: 50%;">• LED 조명 어셈블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어 어셈블리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 호스 • 응결수 받이 • 보조 버너 하우징 및 플레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어 손잡이 어셈블리 • 중간 도어용 플라스틱 선반 • 야채 보관 서랍 및 덮개 |
| 폴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터 어셈블리 |
| 스웨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미스터 어셈블리 |
| 인도네시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플 어셈블리 |
| 대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 부품 |

2. 멕시코에서 각종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제품 생산
3. 테스트 및 포장
4. 미국 수출

시나리오 2

1. 여러 구성품을 멕시코로 수입 및 조달(멕시코산 69%, 중국산 29%, 미국산 0.07%, 기타 1.93%)

| | | |
|-------|---|---|
| 멕시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비닛 어셈블리 • 가스 밸브 버너 어셈블리 • 전원 제어 모듈 어셈블리 • 철제 선반 • 통합 제어 배선 어셈블리 • 핀 팩 어셈블리 • 도어 어셈블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단 도어용 플라스틱 선반 • 중간 도어용 플라스틱 선반 •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 배수 호스 • 응결수 받이 • 보조 버너 하우징 및 플레이트 • 도어 손잡이 어셈블리 • 야채 보관 서랍 및 덮개 |
| 중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 유닛 어셈블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조명 어셈블리 |
| 폴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터 어셈블리 | |
| 스웨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미스터 어셈블리 | |
| 인도네시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플 어셈블리 | |
| 대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 부품 | |

2. 멕시코에서 각종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제품 생산
3. 테스트 및 포장
4. 미국 수출

□ **쟁점사항**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㉚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681 F.2d 778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사례별로 이루어짐
- CBP는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을 ①상업적 명칭 또는 정체성의 변화, ②본질적 성질의 변화, ③상업적 용도의 변화를 겪은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행된 작업의 범위, 해당 부품 또는 자재들이

개별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요소로 통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CBP는 본 사안의 판정을 위해 냉동 장치와 관련된 다음의 판정 사례를 인용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9293* (2020.02.25.)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7836* (2019.12.17.)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5178* (2019.07.25.)

판정 결과

㉠ 냉장 및 냉동고의 냉각 기능을 발생시키는 핵심 구성요소는 콘덴서(condenser), 압축기(compressor), 팽창장치(expansion device), 증발기(evaporator)로, 이 구성요소들은 제어장치, 열원, 기타 보완 구성요소들과 결합될 때 비로소 냉각 유닛으로 완성되며, 본 사안에서 이러한 냉각 유닛은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중국에서 생산됨

㉡ 다만, 냉장 및 냉동고의 핵심 기능이 여전히 냉각 기능에 있다고는 하나, 냉장 및 냉동고로서의 외형 확보, 적정 온도 유지, 열 흡수 등 보조적인 기능들 또한 최종제품의 기능을 형성하는 주요 구성요소이므로, 총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나리오 1) 냉각 유닛 어셈블리, 통합 제어 배선 어셈블리, 핀 팩 어셈블리,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등 일체형 냉장·냉동고의 구조적·기능적 주요 요소들이 중국에서 제조되므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

- (시나리오 2) 냉각 유닛 어셈블리는 여전히 중국에서 제조되지만, 통합 제어 배선 어셈블리, 핀 팩 어셈블리,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등 일체형 냉장·냉동고의 전반적인 기능을 보조하는 일부 구성품의 제조가 멕시코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멕시코에서의 공정이 최종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압도적으로 높은 바,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 결론

✓ (시나리오 1)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중국으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

✓ (시나리오 2)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멕시코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Ⅲ. 시사점

• 본 사안과 같이 핵심 구성요소와 더불어 여러 어셈블리들이 결합되어 완성되는 물품의 경우, CBP는 총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핵심 구성요소의 원산지가 아닌 최종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높은 국가를 원산지로 고려하기도 함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4180 (2021.01.22.), <https://rulings.cbp.gov/ruling/H314180>

• CBP Ruling NY N309293 (2020.02.25.), <https://rulings.cbp.gov/ruling/N309293>

• CBP Ruling NY N307836 (2019.12.17.), <https://rulings.cbp.gov/ruling/N307836>

- CBP Ruling NY N305178 (2019.07.25.), <https://rulings.cbp.gov/ruling/N305178>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2. 팬 블로어 어셈블리

[요약]

| | |
|---------|---|
| 사례명 | [팬 블로어 어셈블리]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 사례번호 | HQ H318255 (2021.11.03.) |
| 사실관계 | 중국산 스테이터 코어, 샤프트, 리드 와이어 하니스, 일본산 하부 하우스링 쉘 등의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하여 스테이터 어셈블리, 로터 어셈블리 등의 하위 어셈블리를 제작한 뒤, 이를 조립하여 생산된 팬 블로어 어셈블리를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p>CBP Ruling NY N309707과 유사하게 하위 어셈블리 생산을 위해 수입된 중국 및 일본산 부품들은 멕시코에서 수행된 일련의 제조·조립 공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임펠러와 모터로 구성된 새로운 상업적 상품으로 변형되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p>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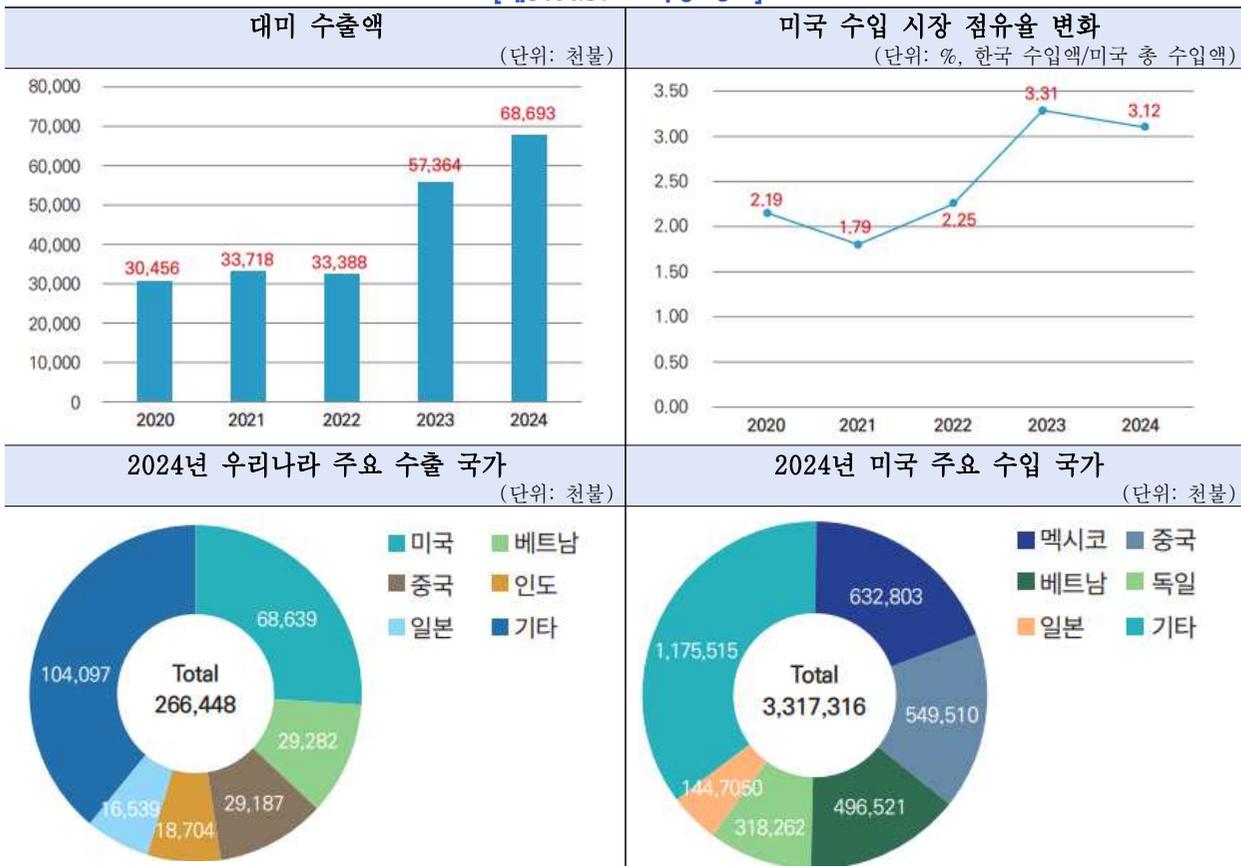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8414.59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2.3%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4.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시장 정보

[제8414.59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팬 블로어 어셈블리]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사례번호:** HQ H318255 (2021.11.03.)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Shinano Kenshi Corporation (대리인: TECMA Customs Solutions LLC) | |
| 제품 | 제품명 | • 팬 블로어 어셈블리 (부품번호 IDRF-3432-504-M) |
| | 구성 | • 중국산: 스테이터 코어, 인슐레이터, 자성 와이어, 리드 와이어 하니스, 하부 하우징, 베어링 하우징, 샤프트, 볼 베어링, 스톱 와셔, 자석, 로터 요크, 임펠러, 상단 하우징, 너트 • 일본산: 납, 납땀용 와이어, 하부 하우징 쉘, 웨이브 와셔, 접착제, 나사, 윤활제 • 미국 또는 멕시코산: PCBA, 절연 시트, 접착제, 스플릿 와셔 |
| | 용도 | • CPAP(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Machine)에 사용되는 공기 순환 장치 |
| | 완제품 HTSUS | • 8414.59.65 |
| 제조 공정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2 각종 하위 어셈블리 제조 후 최종 제품 생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3 미국 수출</p> </div>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 일본 등에서 멕시코로 부품 수입 2. 멕시코에서 아래 공정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테이터 어셈블리 생산 - 로터 어셈블리 생산 - 자성(magnet) 요크 어셈블리 생산 - 팬 어셈블리 생산 - 각 어셈블리를 조립하여 최종제품 생산 3.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부품이나 자재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지의 핵심 쟁점은 수행된 공정의 정도 및 개별 부품이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573 F. Supp. 1149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조립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이때, ①조립 공정의 성격, ②수행되는 개별 작업의 수와 종류, ③해당 조립 작업에 상당한 시간, 숙련도, 정밀도, 품질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참고 판정: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and C.S.D. 90-97*

-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경미하여 부품의 고유한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CBP는 판정을 위해 아래 사례들을 인용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864 (2019.12.26.)*

- 부품을 서로 끼워 맞추는 프레스 피팅(press fitting)과 같은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4126 (2020.02.13.)*

- 팬 또는 펌프 어셈블리의 경우, CBP는 일반적으로 모터가 제품에 본질을 부여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5251 (2019.08.01.)*

- CBP는 일반적으로 모터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필수 구성요소인 스테이터와 로터가 제조된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 특정 국가에서 수행된 조립 작업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할 만큼 충분히 복잡한지 여부는 하위 어셈블리 조립 과정을 포함해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작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9707 (2020.03.11.)*

(사례) 본 사안과 유사하게 중국, 일본, 미국 또는 멕시코에서 부품을 수입 및 조달하여 멕시코에서 스테이터 어셈블리, 로터 어셈블리, 자성(magnet) 요크 어셈블리, 팬 어셈블리를 생산한 후, 이를 조립하여 최종제품인 팬 블로어 어셈블리를 생산

(판정) 각 유닛의 공기 순환 및 모터 부품을 포함한 중국 및 일본산 부품들이 각각의 독립된 정체성을 상실하고 임펠러와 모터로 구성된 새로운 물품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판정 결과

- ☐ CBP Ruling NY N309707과 유사하게 하위 어셈블리 생산을 위해 수입된 중국 및 일본산 부품들은 멕시코에서 수행된 일련의 제조·조립 공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임펠러와 모터로 구성된 새로운 상업적 상품으로 변형되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멕시코이므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Ⅲ. 시사점

- 실질적 변형을 판단할 때,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부품의 성격, 해당 국가에서 행해진 전체 공정의 수준, 각 부품이 공정을 통해 독립적인 정체성을 상실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4180 (2021.01.22.), <https://rulings.cbp.gov/ruling/H314180>
- CBP Ruling HQ H303864 (2019.12.2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864>
- CBP Ruling HQ H304126 (2020.02.13.), <https://rulings.cbp.gov/ruling/H304126>
- CBP Ruling NY N305251 (2019.08.01.), <https://rulings.cbp.gov/ruling/N305251>
-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529>
- CBP Ruling NY N309707 (2020.03.11.), <https://rulings.cbp.gov/ruling/N309707>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3. 알루미늄 올타리 키트

[요약]

| | |
|---------|---|
| 사례명 | [알루미늄 올타리 키트]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 사례번호 | NY N334681 (2023.09.06.) |
| 사실관계 | 중국산 알루미늄 프로파일 및 기타 알루미늄 부품이 멕시코로 수입되어, 절단, 펀칭, 라우팅, 용접 및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올타리 키트 제조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p>멕시코 내에서 수행된 절단, 펀칭, 라우팅, 용접 및 조립 등의 공정을 통해 올타리 키트라는 새로운 상업적 상품이 탄생하였으므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멕시코이며,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p>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251)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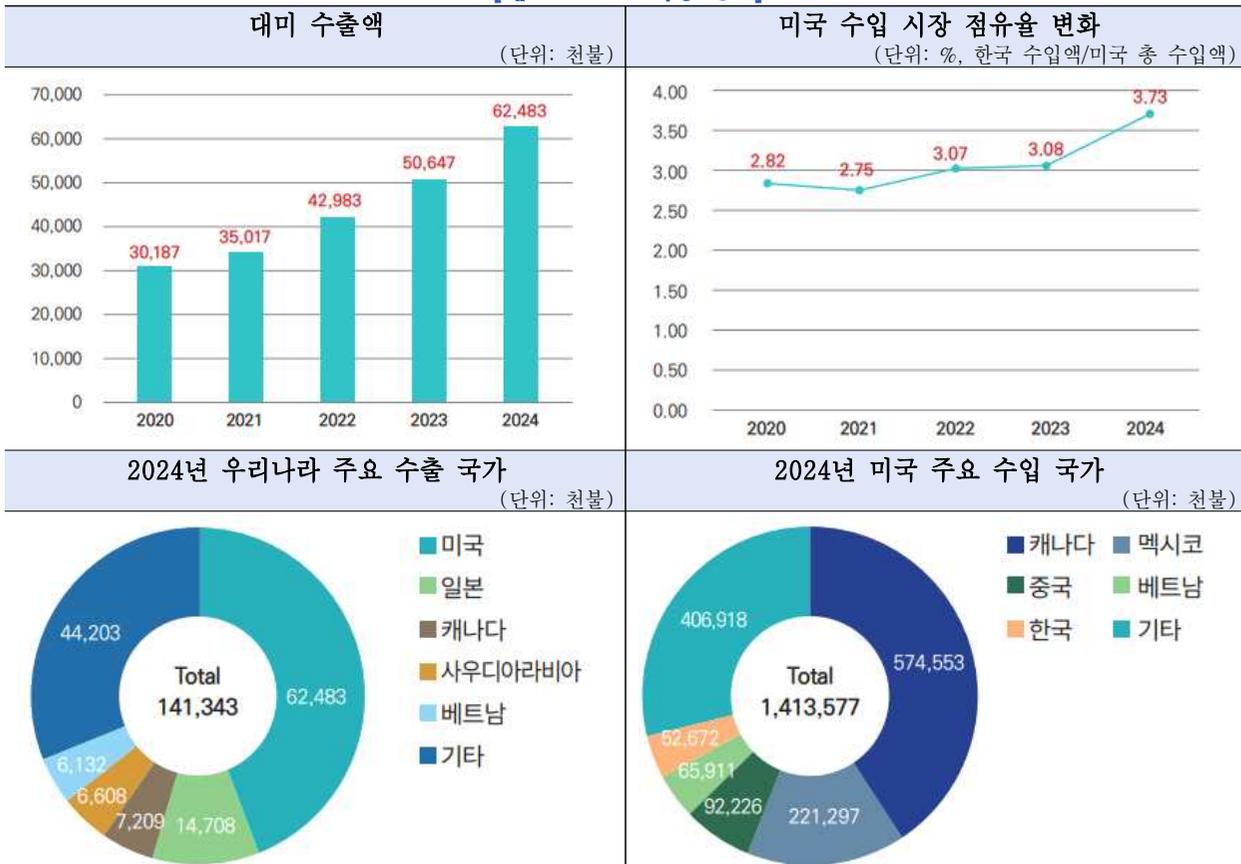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7610.9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5.7%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7610.9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알루미늄 울타리 키트]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사례번호:** NY N334681 (2023.09.06.)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Custom Home Goods, LLC | |
| 제품 | 제품명 | • 알루미늄 울타리 키트(소매용) |
| | 구성 | • 레일 탑 플랫(6'x5') 20개 • 라인 포스트(2"x2") 20개 • 게이트 포스트(2"x2") 2개 • 포스트 캡 22개 • 보행자용 용접 게이트(4'x5') 1개 • 나일론 게이트 경첩 2개 • 게이트 잠금장치 1개 |
| | 완제품 HTSUS | • 7610.90.0080 |
| 제조 공정 |  <p>01 중국산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p> <p>02 울타리 키트 제조</p> <p>03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알루미늄 프로파일, 알루미늄 포스트 캡, 알루미늄 게이트 및 연결용 하드웨어(나사, 힌지 등)를 멕시코로 수입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가공하여 레일 탑 플랫, 라인 포스트, 게이트 포스트 생산 구성품 조립 후 포장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제301조, 제232조, 제201조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이러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조립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이때, ①조립 공정의 성격, ②수행되는 개별 작업의 수와 종류, ③해당 조립 작업에 상당한 시간, 숙련도, 정밀도, 품질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참고 판정: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and C.S.D. 90-97*

-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경미하여 부품의 고유한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판정 결과

- 중국산 알루미늄 프로파일 및 기타 알루미늄 부품이 멕시코로 수입되어, 절단, 펀칭, 라우팅, 용접 및 조립 등 복합적인 가공 공정을 거쳐 울타리 키트라는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되므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됨
- 따라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멕시코이며, 멕시코산 제품은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됨

□ 결론

- ✓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정되며, 제232조에 따른 무역제제는 적용되지 않음

III. 시사점

- 알루미늄 프로파일 및 기타 부품을 가공·조립하여 울타리 키트를 제조하는 경우, 새로운 상업적 상품을 창출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4681 (2023.09.06.), <https://rulings.cbp.gov/ruling/N334681>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862&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4. 주방용 스테인리스강 싱크 키트

[요약]

| | |
|------------|--|
| 사례명 | [주방용 스테인리스강 싱크 키트]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및 원산지표시 |
| 사례번호 | NY N335300 (2023.09.29.) |
| 사실관계 | 중국산 그리드/디쉬 랙, 배수 조립품 및 캡, 풀다운 수전을 태국으로 수입하여 태국에서 생산한 싱크와 소매 포장한 뒤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싱크 키트의 본질은 태국에서 생산된 싱크에 의해 부여되므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태국이며, 이에 따라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
| | ② 부속품의 개별 원산지표시 의무 그리드/식기 랙, 배수 조립품 및 캡, 풀다운 수전은 세트 포장에도 불구하고 개별 독립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요소에 중국산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설치용 하드웨어는 최종 설치 시 싱크에 통합되어 독립적 정체성을 상실하므로, 별도 원산지표시가 요구되지 않음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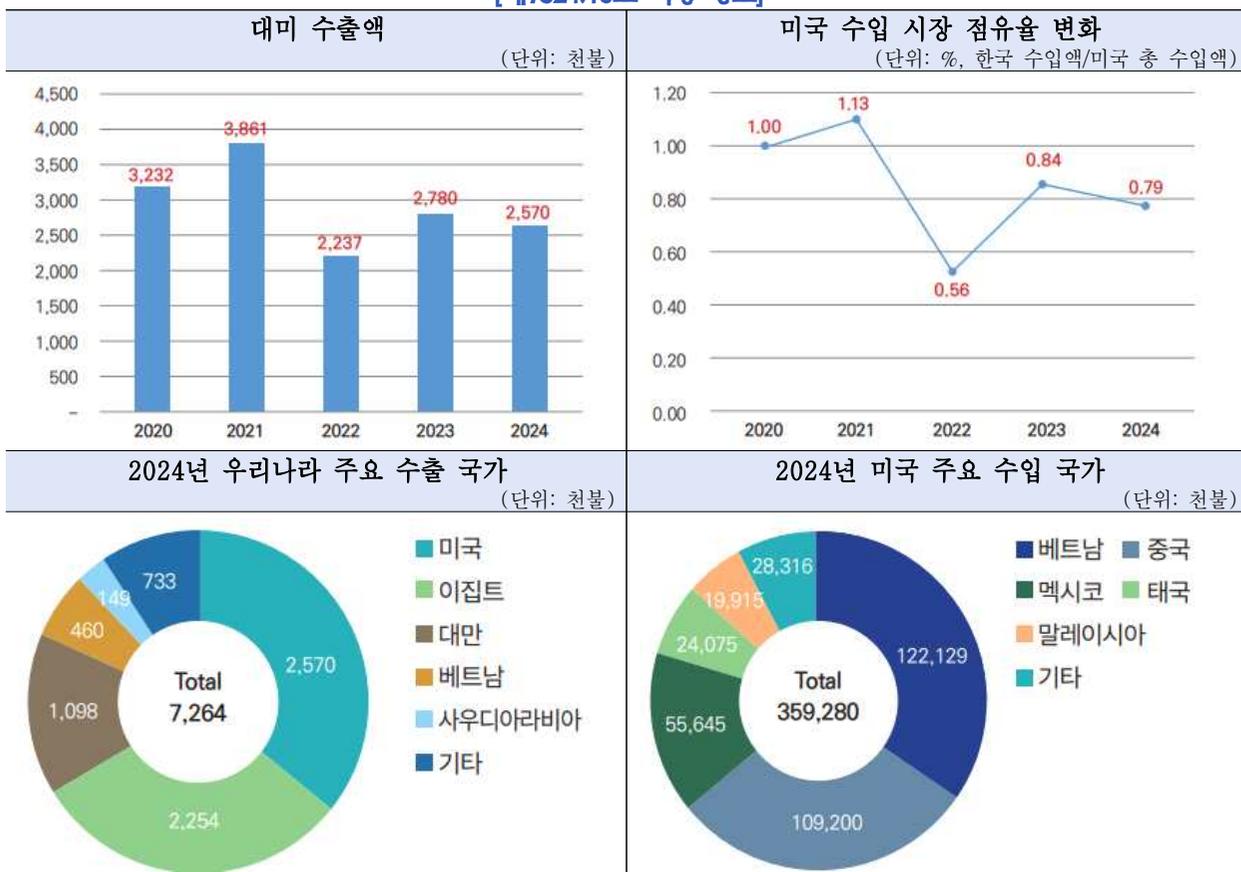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7324.1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3.4%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시장 정보

[제7324.1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주방용 스테인리스강 싱크 키트]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및 원산지표시
- 사례번호: NY N335300 (2023.09.29.)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raus Plumbing USA, LLC (대리인: Sonnenberg & Cunningham PA) | |
| 제품 |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용 스테인리스강 싱크 키트 2종 - 모델 번호: KHU100-27 - 모델 번호: KCH-1000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HU110-27 (Standart P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인치 언더마운트형 16게이지 스테인리스강 싱크(태국산) - 스테인리스강 그리드/디쉬 랙(중국산) -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배수 조립품 및 캡(중국산) - 설치용 하드웨어, 템플릿, 설명서 포함 • KCH-1000 (Loft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인치 드롭인/언더마운트 겸용 스테인리스강 싱크(태국산) - 스테인리스강 그리드/디쉬 랙(중국산) -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배수 조립품 및 캡(중국산) - 폴다운 수전(중국산) - 설치용 하드웨어, 템플릿, 설명서 포함 |
|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주방용 조리대(싱크대)에 설치되어 음식물 준비, 설거지, 배수처리를 위한 통합형 구성품 |
| | 완제품 HTSU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24.10.0050 |
| 제조 공정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중국산 부품 태국으로 수입</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2 태국에서 싱크 제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3 키트로 소매 포장</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4 미국 수출</p> </div>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부품을 태국으로 수입 2. 태국에서 싱크 제조 3. 중국산 부품 및 태국산 싱크를 키트로 소매 포장 4.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부속품의 개별 원산지표시 의무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가공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거나 경미하여 물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판정 결과

- 해당 사안에서 태국에서 제작된 싱크는 가치, 무게 및 기능 면에서 세트 전체의 본질을 결정하므로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품으로 간주되며, 여러 중국산 부품들이 결합되기는 하나, 싱크 자체를 이전과 다른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아님
- 일반해석규칙 3에 따라 세트로 구성된 상품 중, 세트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품목이 제301조 조치 대상일 경우 전체 세트가 제301조 적용 대상이 되나, 해당 사례의 경우, 핵심 구성품인 싱크가 태국산이므로, 제301조 적용 대상이 아님

② 부속품의 개별 원산지표시 의무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함
- CBP Treasury Decision 91-7에 따르면, 세트, 혼합물 또는 복합 물품에 포함된 구성품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경우, 각 구성품은 개별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판정 결과

- 본 사례에서, 그리드/식기 랙, 배수 조립품 및 캡, 폴다운 수전은 세트 포장에도 불구하고 개별 독립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요소에 중국산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설치용 하드웨어는 최종 설치 시 싱크에 통합되어 독립적 정체성을 상실하므로, 별도 원산지표시가 요구되지 않음

□ 결론

- ✓ 핵심 구성품인 싱크가 태국에서 제조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태국이며, 이에 따라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 ✓ 중국산 구성품(그리드/식기 랙, 배수 조립품 및 캡, 폴다운 수전)은 개별 독립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부품에 중국산임을 표시해야 함

Ⅲ. 시사점

- 싱크 키트의 경우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싱크가 제조된 국가가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원산지표시 목적상 세트, 혼합물 또는 복합 물품에 개별 정체성을 유지하는 외국산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함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5300 (2023.09.29), <https://rulings.cbp.gov/ruling/N335300>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5.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

[요약]

| | |
|---------|--|
| 사례명 |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 원산지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 사례번호 | NY N336183 (2023.11.22.) |
| 사실관계 | 중국산 기관, 네덜란드산 직물, 미국산 접착제·나사·브래킷·라벨, 캐나다산 클립을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생산한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을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안의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은 외국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되었으므로 『19 C.F.R. § 102.20』에 따라 제8708.29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원재료 중 하나인 기관의 HS Code가 제8708.29호에 해당하여 세번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19 C.F.R. § 102.11(b)』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해야 함 - 『19 C.F.R. § 102.11(b)』에 따르면 해당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단일 자재에 의해 원산지가 결정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최종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자재는 중국산 기관에 해당하므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임 <p>②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p>최종제품의 본질적 특성은 중국산 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으로 인해 이러한 기관의 명칭, 성질,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는 중국이며, 이에 따라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함</p>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02(19 C.F.R. § 102)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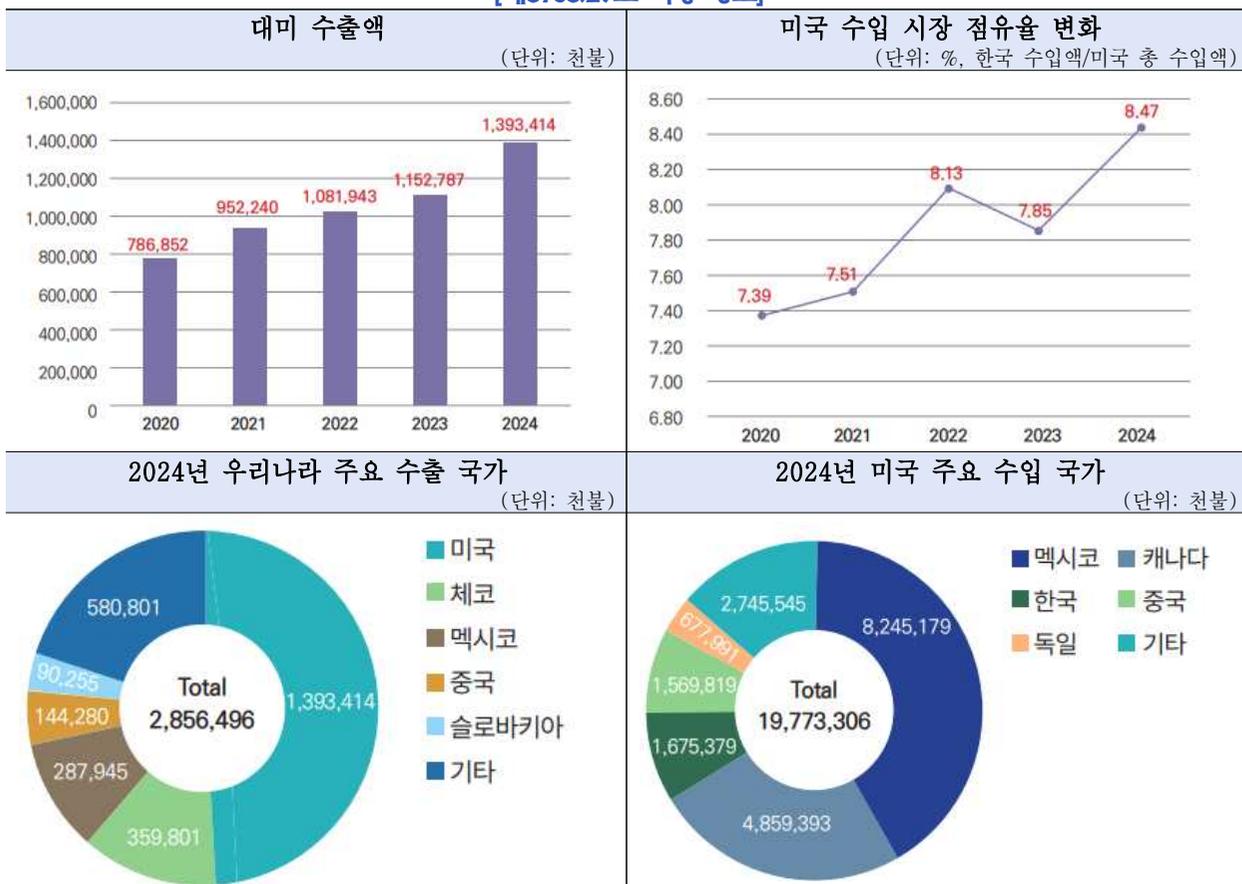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8708.29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2.5%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시장 정보

[제8708.29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 원산지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사례번호:** NY N336183 (2023.11.22.)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Grupo Antolin Silao, S.A. de C.V.(대리인: Victor Gonzalez LLC) | |
| 제품 | 제품명 | •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 |
| | 구성 | • 기관 (중국산) • 직물 (네덜란드산) • 접착제, 나사, 브래킷, 라벨 (미국산) • 클립 (캐나다산) 등 |
| | 용도 | • 자동차의 트렁크 하단에 위치하는 적재면 보강 패널 |
| | 원재료 HTSUS | • 중국산 기관: 8708.29 |
| | 완제품 HTSUS | • 8708.29.5160 |
| 제조 공정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여러 국가산 재료를 멕시코로 수입</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2 최종 제품 생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3 미국 수출</p> </div>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산 재료를 멕시코로 수입 2. 중국산 기관에 직물을 결합 3. 나사, 클립 브래킷, 라벨 등을 부착하여 완제품 제조 4.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ⅴ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단, NAFTA 또는 USMCA 물품에 대해서는 『19 C.F.R. § 102』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원산지표시 규정이 적용됨
 - 『19 C.F.R. § 102.11(a)』에 따르면,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판정은 다음에 따름
 - ①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그 국가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②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자국산 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
- ③ 해당 물품에 포함된 모든 외국산 재료가 『19 C.F.R. § 102.20』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고, 모든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Ⅴ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③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19 C.F.R. § 102.20』에 명시된 제8708.29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제8708.95호는 제외한다)
- Ⅴ 다만, 『19 C.F.R. § 102.11(a)』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19 C.F.R. § 102.11(b)』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이는 다음과 같음
 -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하는 단일 자재(single material)의 원산지로 간주된다.

판정 결과

- Ⅴ 본 사안의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은 외국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되었으므로 『19 C.F.R. § 102.20』에 따라 제8708.29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원재료 중 하나인 기관의 HS Code가 제8708.29호에 해당하여 세번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19 C.F.R. § 102.11(b)』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해야 함
- Ⅴ 『19 C.F.R. § 102.11(b)』에 따르면 해당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단일 자재에 의해 원산지가 결정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최종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자재는 중국산 기관에 해당하므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임

②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Ⅴ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Uniroyal*)

- 실질적 변형 여부에 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판정 결과

- Ⅴ 최종제품의 본질적 특성은 중국산 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으로 인해 이러한 기관의 명칭, 성질,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는 중국이며, 이에 따라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함

□ 결론

- ✓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중국임
- ✓ 제301조 적용을 위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중국이므로 해당 조치 대상에 해당함

Ⅲ. 시사점

-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시 우선적으로 『19 C.F.R. § 102.11(a)』 규정이 적용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19 C.F.R. § 102.11(b)』에 따라 최종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자재에 의해 원산지가 결정될 수 있음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6183 (2023.11.22.), <https://rulings.cbp.gov/ruling/N336183>
-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CBP 19 C.F.R. § 102,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02>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6. 절임 마늘

[요약]

| | |
|---------|---|
| 사례명 | [절임 마늘]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35545 (2024.04.11.) |
| 사실관계 | 중국에서 재배 및 수확된 마늘 구근을 일본으로 수입하여 세척, 염분 제거, 가열 및 냉각, 선별, 절임, 기타 재료와의 혼합, 고액 분리, 계량, 포장, 검사, 살균 등의 과정을 거쳐 절임 마늘을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중국에서 재배 및 수확된 마늘 구근이 일본에서 일련의 공정을 거쳐 절임 마늘로 가공되었으나, 이러한 공정은 마늘의 본질적인 성질과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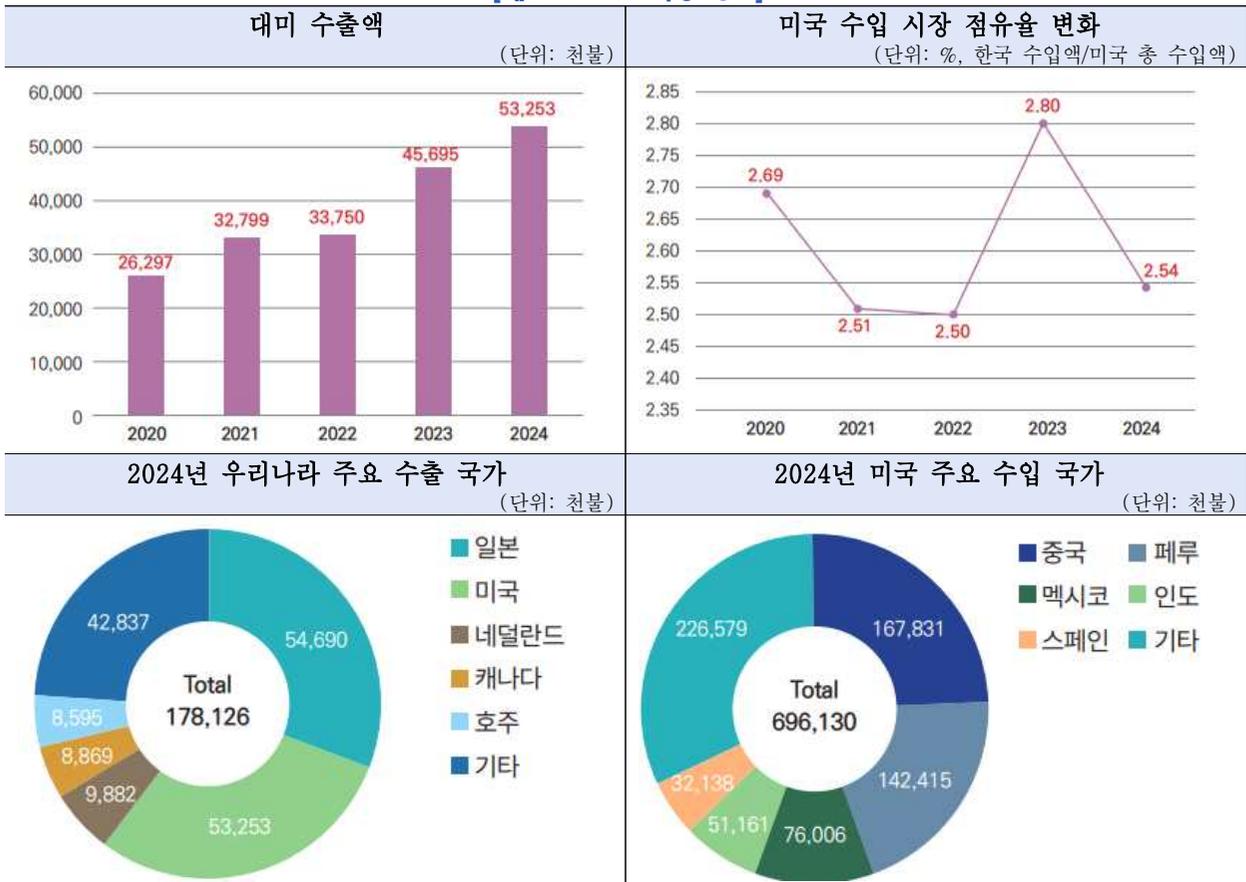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2005.99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20% |
| | 미국 기본세율 | 0~14.9% or 0.8¢/kg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0류의 주석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시장 정보

[제2005.99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절임 마늘]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35545 (2024.04.11.)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Wismettac Asian Foods, Inc. | |
| 제품 | 제품명 | • 절임 마늘 |
| | 구성 | • 마늘(67%), 고과당 액상당(8%), 단백질 가수분해물(8%), 간장(6%), 물(6%), 소금(2%), L-글루타민산나트륨(2%), 양조식초(1%) • 극소량의 캐러멜 색소, 젖산, 소르빈산칼륨, 구연산, 고추 등 함유 |
| | 용도 | • 식용 |
| | 완제품 HTSUS | • 2005.99.9700 |
| 제조 공정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중국산 마늘 일본으로 수입</p>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2 절임 마늘 생산</p>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3 미국 수출</p> </div>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에서 재배 및 수확한 마늘을 일본으로 수입 2. 일본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늘 세척 및 염분 제거 - 가열 및 냉각 - 선별 - 식초, 알코올, 간장 및 기타 성분이 포함된 염수에 절임 및 혼합 - 고체-액체 분리 후 계량 - 포장 및 검사 - 섭씨 90도 살균기에 넣고 25~30분 살균 3.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Ct. Int'l Trade 1986)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K81363* (2003.11.28.)

(사례) 중국, 스페인,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재배된 마늘 구근을 콜롬비아에서 마늘 쪽으로 분리한 후 껍질을 제거하고 소매용으로 포장 가공

(판정)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26044* (2022.06.08.)

(사례) 스페인에서 재배된 생마늘을 남아프리카로 수입하여 발효기에 넣고 토스트 처리한 후 소량의 쌀겨와 혼합하여 흑마늘 시즈닝 생산

(판정) 스페인산 마늘이 여전히 그 성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흑마늘 시즈닝의 원산지를 스페인으로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8973* (2020.02.24.)

(사례) 미국에서 재배, 수확, 탈각한 콩을 일본으로 수입한 후, 혼합, 세척, 소금과 식초를 넣은 물에 침지, 가열 및 증기처리 함

(판정) 실질적 변형 불인정

- CBP는 커피 제조를 위한 로스팅(roasting)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로스팅 및 이와 유사한 가공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008056* (2007.03.16.)

(사례) 껍질을 제거한 캐슈넛을 볶은 뒤 통조림 처리

(판정) 실질적 변형 불인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G89921* (2001.06.12.)

(사례) 건조된 콩과 병아리콩을 재수화, 통조림 처리, 180°F의 뜨거운 소금물에 담금, 밀봉, 260°F의 회전식 조리기에서 15분 이상 조리, 냉각, 라벨링, 포장함

(판정) 실질적 변형 불인정

판정 결과

- ☐ 중국에서 재배 및 수확된 마늘 구근이 일본으로 운송되어, 세척, 염분 제거, 가열 및 냉각, 선별, 절임, 기타 재료와의 혼합, 고액 분리, 계량, 포장, 검사, 살균 등의 일련의 가공 과정을 거쳤으나, 이러한 공정은 마늘의 본질적인 성질과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기타 의견

- ☐ 해당 제품은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42 U.S.C. § 262)』의 적용 대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길 권함

□ 결론

- ✓ 실질적 변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됨

Ⅲ. 시사점

- 가열, 절임 및 기타 재료와 혼합 등의 공정을 통해 마늘 구근을 절임 마늘로 변형시켰을지라도, CBP는 마늘이라는 명칭, 형태 및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음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5545 (2024.04.11.), <https://rulings.cbp.gov/ruling/N335545>
- CBP Ruling NY K81363 (2003.11.28.), <https://rulings.cbp.gov/ruling/K81363>
- CBP Ruling NY N326044 (2022.06.08.), <https://rulings.cbp.gov/ruling/N326044>
- CBP Ruling NY N308973 (2020.02.14.), <https://rulings.cbp.gov/ruling/N308973>
- CBP Ruling NY N008056 (2007.03.16.), <https://rulings.cbp.gov/ruling/N008056>
- CBP Ruling NY G89921 (2001.06.12.), <https://rulings.cbp.gov/ruling/G89921>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Juice Products Ass'n v. United States(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

Case 7. 합금강판

[요약]

| | |
|---------|--|
| 사례명 | [합금강판]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 사례번호 | NY N340819 (2024.06.26.) |
| 사실관계 | 프랑스에서 제조된 합금강판을 영국으로 운송하여 화학조성 확인 후 워터젯 절단 및 치수 절단된 합금강판을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강판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운송되는 시점에도 강판이었고 영국에서의 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시점에도 여전히 강판이며, 단순히 강판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고 절단하는 공정은 단순한 공정에 해당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프랑스임 |
| | ②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프랑스이며, 제232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일 수 있음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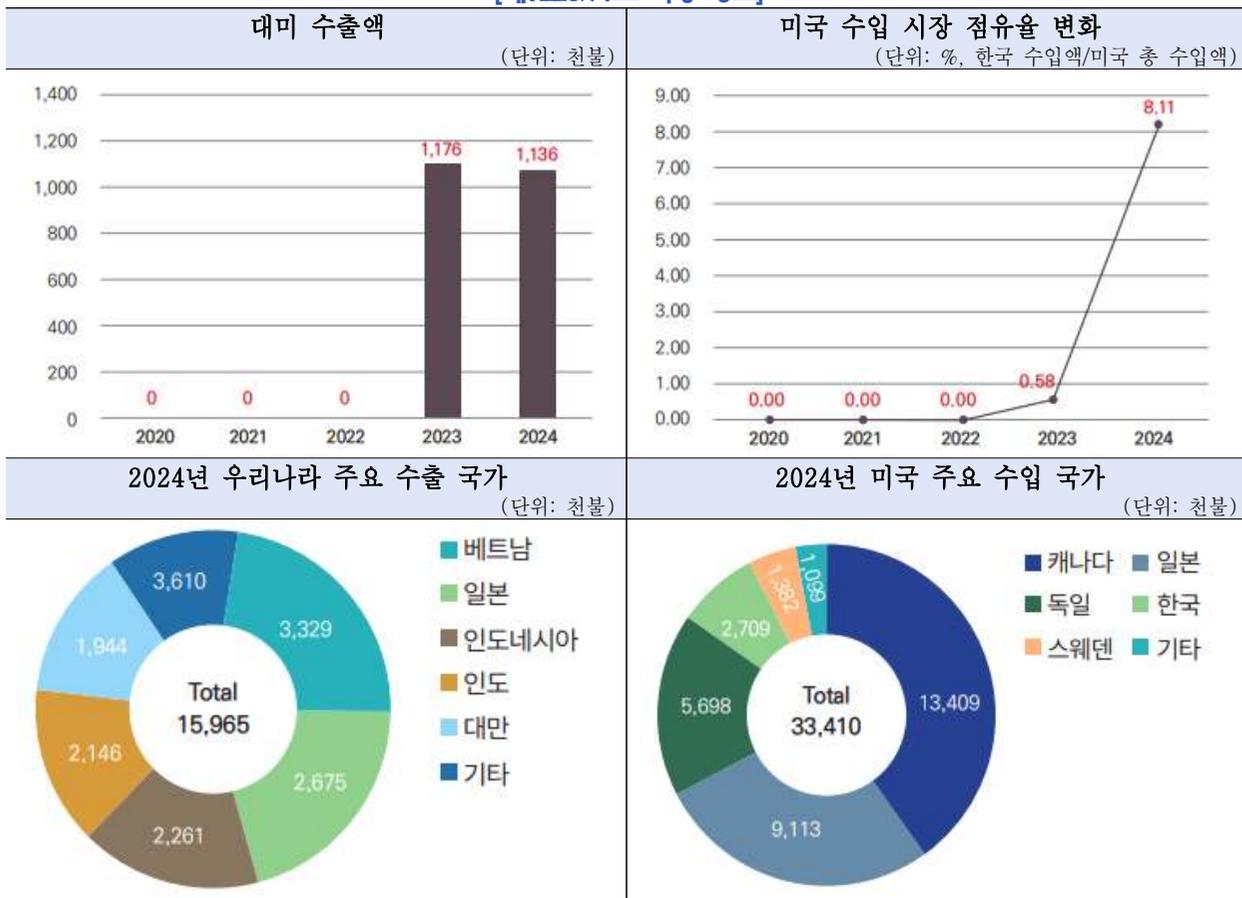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7226.91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7226.91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합금강판]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사례번호:** NY N340819 (2024.06.26.)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Align Precision Philadelphia, LLC (대리인: Trans-Border Global Freight Systems) | |
| 제품 | 제품명 | • Invar 36 합금강판 |
| | 용도 | • 반도체 산업에서 마이크로칩 제조 장비의 부품용으로 사용 |
| | 완제품 HTSUS | • 7226.91.5000 |
| 제조 공정 |  <p>01 프랑스에서 합금강판 생산</p> <p>02 영국으로 운송</p> <p>03 화학 분석 및 절단</p> <p>04 포장 후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산 철강 슬래브를 열간압연 - 어닐링 수행 - 쇼트 블라스트 처리하여 합금강판 생산 - 영국으로 운송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 성분 분석 - 워터젯을 통해 절단 - 목재 상자에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Ⅴ 강판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운송되는 시점에도 강판이었고 영국에서의 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시점에서도 여전히 강판이며, 단순히 강판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고 절단하는 공정은 단순한 공정에 해당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프랑스임

②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Ⅴ 제301조, 제232조, 제201조에 따른 무역구제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함
- Ⅴ 『대통령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됨

판정 결과

- Ⅴ 해당 제품(HTSUS 7226.91.5000)은 관세 또는 쿼터 대상일 수 있으며, 수입 시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본래 분류와 함께 Chapter 99(추가 관세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기타 의견

- Ⅴ 해당 물품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CBP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판정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에서 발행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하길 권고함

□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을 위해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프랑스임
- ✓ Section 232의 철강 추가 관세 판단 시에도 프랑스산으로 간주하며, 대상이 될 수 있음

Ⅲ. 시사점

- 단순 절단 및 화학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재료를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변경시키지 못함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0819 (2024.06.26.), <https://rulings.cbp.gov/ruling/N34081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862&num=0&edition=prelim>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8. 호스 클램프

[요약]

| | |
|---------|---|
| 사례명 | [호스 클램프] USMCA 원산지 및 무역제재 대상 여부 |
| 사례번호 | NY N341003 (2024.07.15.) |
| 사실관계 | 인도산 스테인리스강 슬리팅 스톱을 가공하여 밴드와 하우징을 생산한 뒤, 중국산 나사와 결합하여 최종제품인 클램프를 만들고 세척 및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USMCA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p> <p>최종제품 생산을 위해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었으므로 『19 C.F.R. § 102.20』에 기재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인도산 스테인리스강 코일은 제7219호 또는 제7220호에, 중국산 나사는 제7318호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캐나다로 판정됨</p> <p>② 제201조, 제232조,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에서 수행된 제조공정(절단, 성형, 천공, 세척 등)을 통해 인도산 슬리팅 스톱과 중국산 나사는 특정 표준에 적합한 클램프로 제조되고 이를 통해 실제 조임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캐나다에서 명칭, 성질, 용도 면에서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이 탄생한 것으로 판정함 - 이에 따라,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캐나다이며, 제201조, 제232조, 제301조에 따른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님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02(19 C.F.R. § 102)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251)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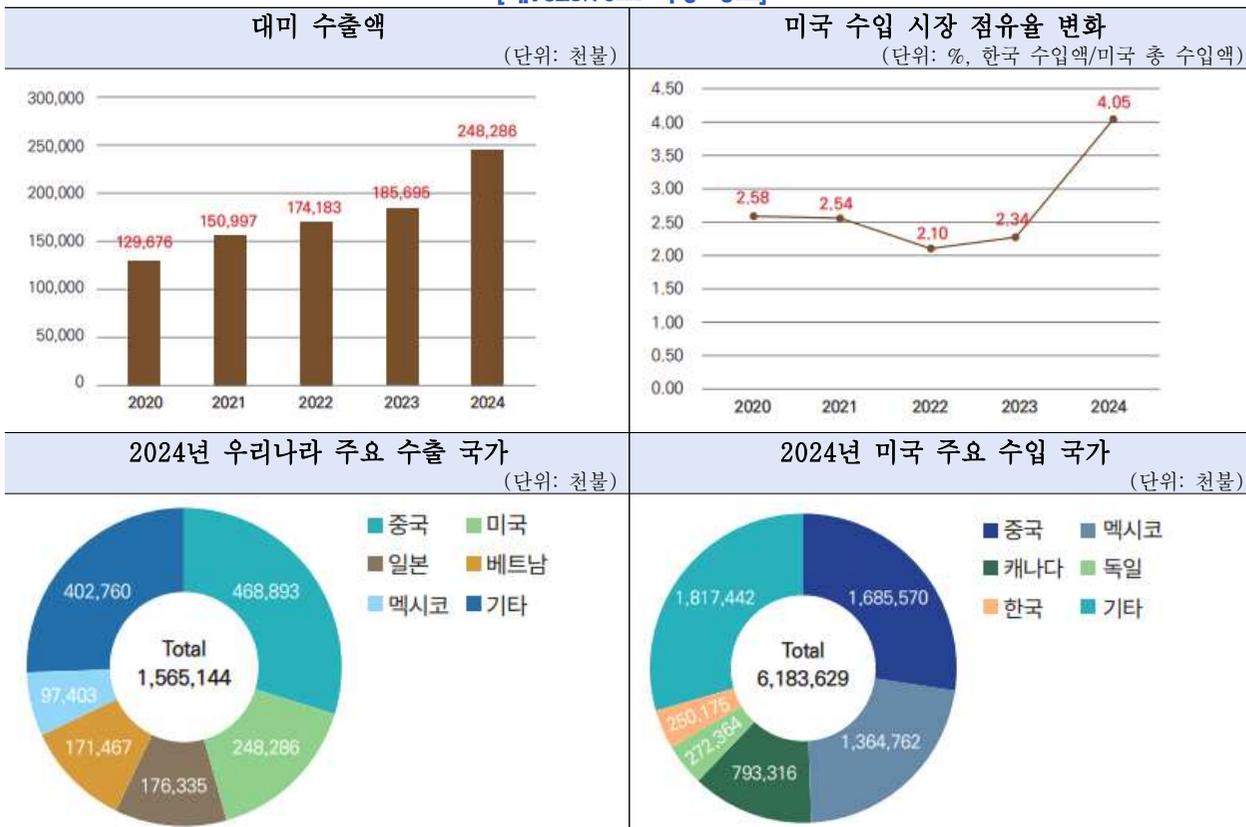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7326.9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8.6%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32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7326.9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호스 클램프] USMCA 원산지 및 무역제재 대상 여부

□ **사례번호:** NY N341003 (2024.07.15.)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Murray Corporation (대리인: Sandler, Travis & Rosenberg, P.A.) | |
| 제품 | 제품명 | • HSS 시리즈 스테인리스강 워드라이브 호스 클램프 |
| | 구성 | • 밴드 • 하우징 • 나사 |
| | 용도 | • 실내·외 호스 수리 및 이음, 누수 방지 고정용 |
| | 원재료 | • 인도산 스테인리스강 코일: 7219 or 7220 |
| | HTSUS | • 중국산 나사: 7318 |
| | 완제품 HTSUS | • 7326.90.8688 |
| 제조 공정 | | |
|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도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강 코일(슬리팅 스톡) 및 중국산 나사를 캐나다로 수입 2. 슬리팅 스톡 절단 3. SAE 호스 클램프 표준 J1508에 맞춰 밴드와 하우징 친공 및 성형 4. 제조된 밴드, 하우징 및 중국산 나사를 결합하여 최종제품 완성 5. 세척 후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USMCA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판정
- 제201조, 제232조,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USMCA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단, NAFTA 또는 USMCA 물품에 대해서는 『19 C.F.R. § 102』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원산지표시 규정이 적용됨
 - 『19 C.F.R. § 102.11(a)』에 따르면,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판정은 다음에 따름
 - ①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그 국가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②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자국산 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

- ③ 해당 물품에 포함된 모든 외국산 재료가 『19 C.F.R. § 102.20』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모든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㉔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③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19 C.F.R. § 102.20』에 명시된 제7326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이 상품군 이외의 다른 호에서 제7325호에서 제7326호까지의 물품으로 변경된 것

판정 결과

- ㉔ 최종제품 생산을 위해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었으므로 『19 C.F.R. § 102.20』에 기재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인도산 스테인리스강 코일은 제7219호 또는 제7220호에, 중국산 나사는 제7318호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캐나다로 판정됨

② 제201조, 제232조,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㉔ 제201조, 제232조, 제301조에 따른 무역정책 실행을 위한 원산지판정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름
 - 실질적 변형 여부 판단 기준: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획득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2)
-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2)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경미한 공정(minor process)에 불과하여 해당 물품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실질적 변형 여부에 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판정 결과

- ㉔ 캐나다에서 수행된 제조공정(절단, 성형, 천공, 세척 등)을 통해 인도산 슬리팅 스톱과 중국산 나사는 특정 표준에 적합한 클램프로 제조되고 이를 통해 실제 조임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캐나다에서 명칭, 성질, 용도 면에서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이 탄생한 것으로 판정함
- ㉔ 이에 따라,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캐나다이며, 제201조, 제232조, 제301조에 따른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님

□ 결론

- ✓ 호스 클램프의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칙에 따라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캐나다임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또한 캐나다로 제201조, 제232조 및 제301조 추가 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Ⅲ. 시사점

- 해당 제품의 경우 캐나다에서 절단, 천공 및 성형 등 비교적 단순한 공정이 수행되었으나, CBP는 최종제품의 용도 및 기능이 호스 수리, 누수 방지 등을 위한 고정 및 조임에 있으므로, 해당 공정을 통해 이러한 기능과 용도가 충분히 창출되었다고 판단함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1003 (2024.07.15.), <https://rulings.cbp.gov/ruling/N341003>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BP 19 C.F.R. § 102,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02/subpart-B/section-102.11>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9. 화분 받침용 이동대

[요약]

| | |
|---------|---|
| 사례명 | [화분 받침용 이동대]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42353 (2024.09.11.) |
| 사실관계 | 중국산 원형 상판, 캐스터, 사각 강철 튜브 등을 캄보디아로 수입하여 절곡, 절단, 용접, 연마, 도금, 조립 등의 공정을 통해 최종제품인 화분 받침용 이동대를 생산한 뒤,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원형 상판은 제품의 기능과 외관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으로 전체 자재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캄보디아로 수입될 당시부터 최종제품에 전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었음 - 캄보디아에서 수행된 공정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데 있어 비교적 단순한 공정으로 전체 제품 원가의 약 4분의 1 정도만을 차지하므로 중국산 부품에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킬 정도의 공정이 수행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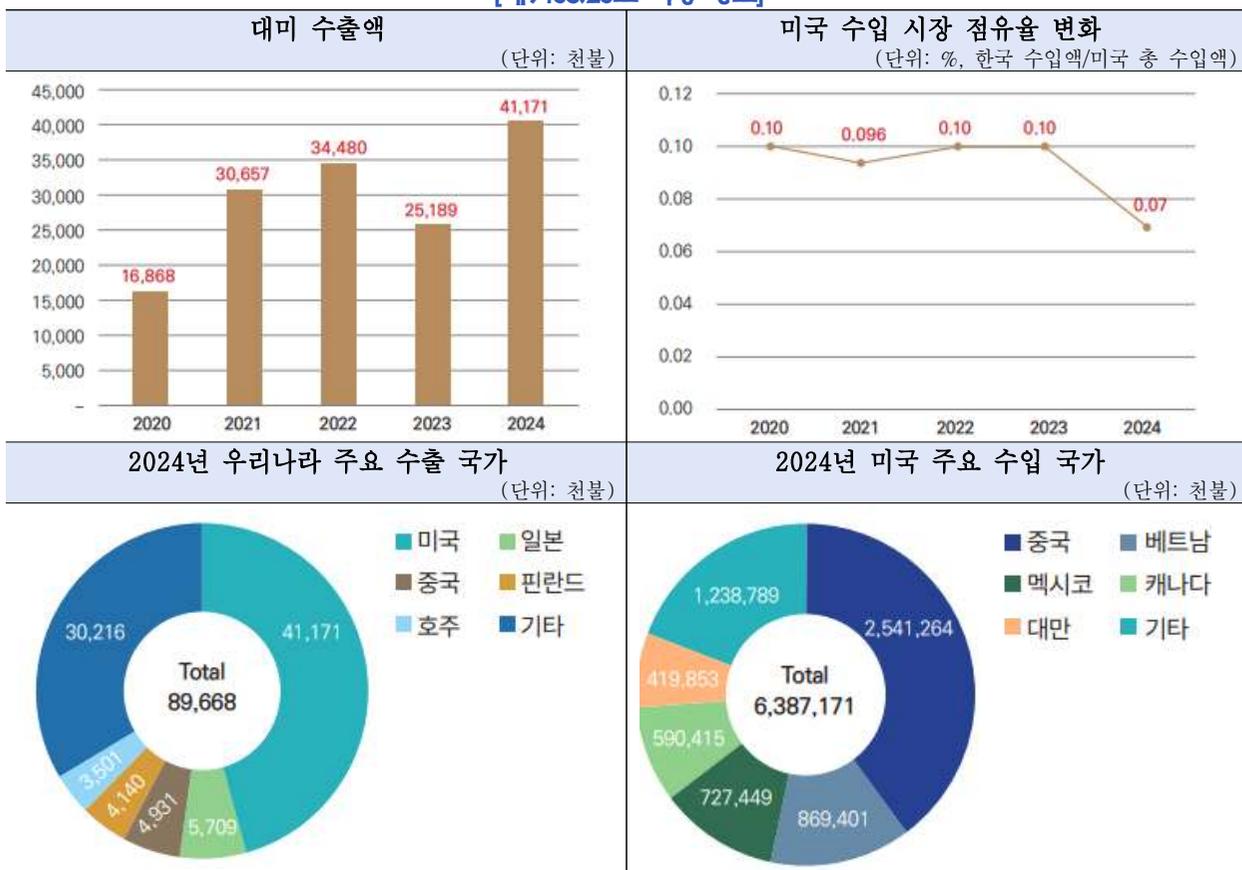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9403.2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9403.2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화분 받침용 이동대]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42353 (2024.09.11.)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Mullally International Inc. | |
| 제품 | 제품명 | • 화분 받침용 이동대(Planter dolly) (모델번호: 1807149) |
| | 구성 | • 원형 상판(중국산) • 사각 강철 튜브 롤(중국 혹은 베트남산) • 4개의 회전 캐스터(중국산) • 너트 4개(중국산) |
| | 용도 | • 화분을 올려놓고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정용 이동형 받침대 |
| | 완제품 HTSUS | • 9403.20.0050 |
| 제조 공정 |  | |
| | <p>01 중국, 베트남산 자재를 캄보디아로 수입 [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 및 베트남산 자재 캄보디아로 수입 2. 캄보디아 제조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 강철 튜브를 링 형태로 절곡, 절단, 용접, 연마, 드릴 작업 수행 - 원형 상판 연마 및 샌딩 - 상판과 링 용접 - 너트 4개를 상판에 용접 - 슬래그 및 거친 모서리 연마 - 화학 세척, 음극 전기 도금 및 분체도장 처리 - 캐스터를 용접된 너트에 부착 3. 검사 및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ⅴ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여부 판단 기준: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획득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만약,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사례) 여러 신발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조립

(판결) 완제품인 신발의 본질적 특성이 외국산 부품(갑피)에 의해 결정되므로 미국에서의 실질적 변형은 인정되지 않음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판정 결과

- CBP는 Uniroyal(1983) 사례를 인용하여 중국산 부품이 최종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신발 갑피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단함
 - 중국산 원형 상관은 제품의 기능과 외관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으로 전체 자재비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캄보디아로 수입될 당시부터 최종제품에 전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 더불어 중국산 캐스터는 자재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최종제품의 주요 기능인 이동성을 가능하게 하고 바닥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관을 들어 올리는 부가적 기능도 수행함
 - 캄보디아에서 제조되는 유일한 부품인 강철 링은 제품에 강성을 부여하지만 외관상 보이지 않으며,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공정도 단순하여 전문화된 장비나 기술이 거의 필요 없는 부품임
 - 또한 너트 용접, 금속 마감 작업 등 캄보디아에서 수행된 전체 공정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데 있어 비교적 단순한 공정으로 전체 제품 원가의 약 4분의 1 정도만을 차지하므로 캄보디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기타 의견

- 해당 제품은 HTSUS, Chapter 99, Subchapter III, Note 20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므로 수입 시 기본 세번 외에 Chapter 99에 따른 세번인 9903.88.03도 함께 신고해야함

□ 결론

- ✓ 중국산 원형 상관, 캐스터 등은 캄보디아에서 수행된 작업에 의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화분 받침용 이동대의 원산지는 중국임

Ⅲ. 시사점

-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 수입 시점에 이미 최종제품에 전용될 목적으로 상당 부분 가공된 경우, 실질적 변형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음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2353 (2024.09.11.), <https://rulings.cbp.gov/ruling/N342353>
-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10. 배추김치

[요약]

| | |
|---------|--|
| 사례명 |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및 한-미 FTA 적용 여부 |
| 사례번호 | NY N350768 (2025.07.28.) |
| 사실관계 | 중국산 절인 배추, 고춧가루, 냉동 마늘을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산 재료들과 속을 섞고 발효하여 완성된 양념 배추김치를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중국산 절인 배추는 한국으로 수입될 시점에도 배추였고 한국에서 가공을 거친 이후에도 여전히 배추이므로, 한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아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
| | ②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비원산지 재료인 중국산 배추, 고춧가루, 냉동 마늘은 모두 제20류 이외의 다른 류에 분류되어 세번변경요건이 충족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판정되며, 한-미 FTA에 따른 특혜 적용이 가능함 |
| 근거법령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HTSUS(19 U.S.C § 1202) General Note(GN) 33(o)/chapter 20/1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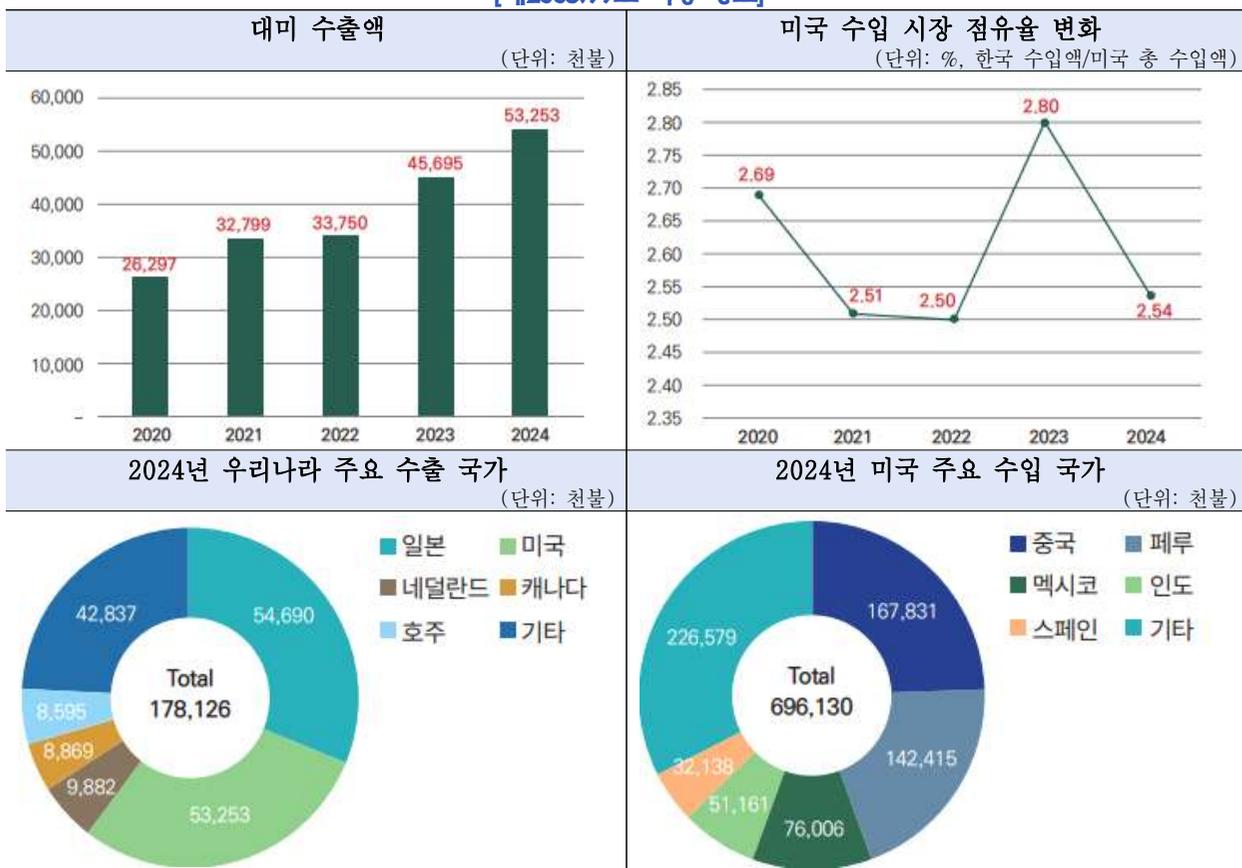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2005.99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20% |
| | 미국 기본세율 | 0~14.9% or 0.8¢/kg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0류의 주석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 |

□ 시장 정보

[제2005.99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및 한-미 FTA 적용 여부
- **사례번호:** NY N350768 (2025.07.28.)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Banchandanji Co., LTD. (대리인: JangBaek Customs Attorney) | |
| 제품 |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인 배추 (중국산) • 무 (한국산) • 멸치액젓 (한국산) • 고춧가루 (중국산) • 냉동 마늘 (중국산) • 설탕 (한국산) • 생강 (한국산) • 찹쌀가루 (한국산) • 정제 소금 (한국산) • 글루탐산나트륨 (한국산) |
| | 용도 | • 식용 |
| | 완제품 HTSUS | • 2005.99.9700 |
| 제조 과정 |  <p>01 중국산 재료 한국으로 수입</p> <p>02 김치 제조</p> <p>03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절인 배추, 고춧가루, 냉동 마늘을 한국으로 수입 2. 한국 제조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 마늘, 생강을 다져 물과 찹쌀가루를 넣고 끓인 후 식힘 - 고춧가루와 기타 재료를 넣어 양념 완성 -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림 - 밀봉 용기에 넣어 저장소에서 발효(0~10°C 온도에서 1~7일 발효) - 10kg 플라스틱 파우치에 포장 3.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ⅴ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㉔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C.A.D. 98) (1940)*

- CBP는 본 사안의 판정을 위해 아래 판정을 인용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48683 (2025.06.05.)*

(사례) 그리스산 올리브를 스페인에서 세척, 발효, 선별 및 씨 제거하고 피망이나 치즈와 같은 속재료를 넣은 후 병이나 캔에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

(판정) 그리스산 올리브는 수입 시점에도 올리브이고 스페인에서의 가공 후에도 올리브이므로 실질적 변형 불인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26044 (2022.06.08.)*

(사례) 스페인에서 재배된 생마늘을 남아프리카로 수입하여 발효기에 넣고 토스트 처리한 후 소량의 쌀겨와 혼합하여 흑마늘 시즈닝 생산

(판정) 스페인산 마늘이 여전히 그 성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흑마늘 시즈닝의 원산지를 스페인으로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8973 (2020.02.24.)*

(사례) 미국에서 재배, 수확, 탈각한 콩을 일본으로 수입한 후, 혼합, 세척, 소금과 식초를 넣은 물에 침지, 가열 및 증기처리 함

(판정) 실질적 변형 불인정

판정 결과

- ㉔ 중국산 배추는 한국으로 수입될 시점에도 배추였고 한국에서 가공을 거친 이후에도 여전히 배추이므로, 한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아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②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㉔ 제2005.99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 『HTSUS(19 U.S.C § 1202) GN 33(o)/chapter 20/1』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함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0류의 주석1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판정 결과

- ㉔ 비원산지 재료인 중국산 배추, 고춧가루, 냉동 마늘은 모두 제20류 이외의 다른 류에 분류되어 세번변경요건이 충족되므로 한국산으로 판정되며, 한-미 FTA에 따른 특혜 적용이 가능함

11) 제20류 주석: 냉동하거나, 물·간수 또는 천연 주스에 넣어 포장(캔 포장 포함)하거나, 또는 건조 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 묽아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냉동, 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포함한다) 제2001호 내지 제2008호에 해당하는 과실·견과류 및 채소 조제품은 신선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더욱이,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과실과 혼합되어 포함되어 있는 제2008호에 해당하는 과실 조제품은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기타 의견

- ▣ 해당 제품은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42 U.S.C. § 262)』의 적용 대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길 권함

□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이며,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는 한국임

Ⅲ. 시사점

- 미국 수출 물품의 경우 한-미 FTA와 같이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의 특혜원산지 기준과 제301조, 제232조, IEEPA 등에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 기준이 상이하여 이중 원산지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특혜원산지뿐만 아닌 비특혜원산지 목적의 원산지 관리도 필요함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0768 (2025.07.28.), <https://rulings.cbp.gov/ruling/N350768>
- CBP Ruling NY N348683 (2025.06.05.), <https://rulings.cbp.gov/ruling/N348683>
- CBP Ruling NY N326044 (2022.06.08.), <https://rulings.cbp.gov/ruling/N326044>
- CBP Ruling NY N308973 (2020.02.24.), <https://rulings.cbp.gov/ruling/N308973>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_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HTSUS(19 U.S.C § 1202) GN 33(o)/chapter 20/1, <https://hts.usitc.gov/>

Origin Case

Vol. 6

- Case 1 - 가솔린 (제2710호)
- Case 2 - 미완성 우편 요금기
- Case 3 - 자전거
- Case 4 - 낚시대-릴 세트 (제9507.30호)
- Case 5 - 스크루-너트 드라이버 (제8205.40호)
- Case 6 - 공기청정기
- Case 7 - 식료품용 저울
- Case 8 - 차량용 충전기
- Case 9 - 파인애플 및 바나나 껍데
- Case 10 - 피부용 연고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Case 1. 가솔린

[요약]

| | |
|---------|---|
| 사례명 | [가솔린]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
| 사례번호 | HQ 561986 (2001.08.21.) |
| 사실관계 | NAFTA 국가 외 A국에서 리포메이트(reformate)와 경질 나프타(Light Straight Run naphtha, LSR)를 각각 44.5%와 54.5%의 비율로 혼합하여 자동차 연료용 가솔린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p> <p>A국에서 이루어진 혼합은 각 원료의 기본적인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단순 혼합에 불과하고 단순 혼합 이외에 다른 가공이 수행되었다는 증거나 이 과정으로 인해 제품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는 증거 또한 없으며, 원재료와 최종제품이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되는 점 또한 고려하여 A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p>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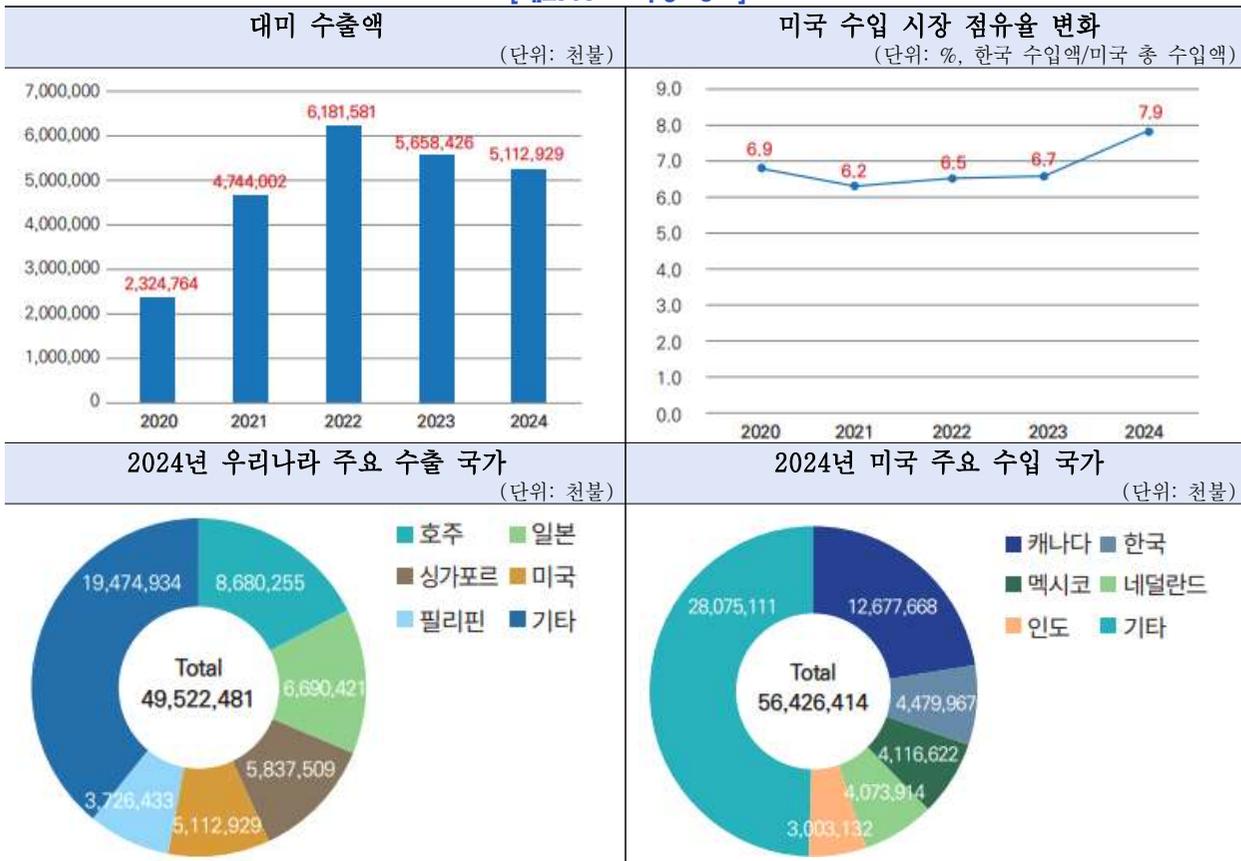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271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0~8% |
| | 미국 기본세율 | 각 하위 세번별로 상이함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같은 호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화학 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을 거친 것에 한정한다. 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2207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271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가솔린]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 **사례번호:** HQ 561986 (2001.08.21.)
- **사실관계**

| 요청자 | • Vitol S.A., Inc. (대리인: Collier, Shannon, Scott, PLL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품 | 제품명 | • 가솔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 | • 리포메이트 (reformate) • 경질 나프타 (Light Straight Run naphtha, LS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도 | • ASTM 규격 및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미국 내 가솔린 판매 요건을 충족하는 87 octane 일반 가솔린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재료 HTSUS | • 27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완제품 HTSUS | • 27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조 공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상세 공정]</p> <p>1. NAFTA 국가 외 A국에서 리포메이트와 경질 나프타를 각각 44.5%와 54.5%의 비율로 혼합</p> <p>- 혼합 작업으로 인한 물리적·화학적 특성 변화는 아래와 같음</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항목</th> <th>밀도</th> <th>API</th> <th>R+M/2</th> <th>RVP</th> <th>벤젠</th> <th>황</th> <th>올레핀</th> <th>방향족</th> </tr> </thead> <tbody> <tr> <td>리포메이트</td> <td>0.831</td> <td>38.8</td> <td>96.1</td> <td>2.64</td> <td>1.68</td> <td>10</td> <td>1.4</td> <td>78.6</td> </tr> <tr> <td>경질 나프타</td> <td>0.735</td> <td>61.1</td> <td>79.75</td> <td>10.45</td> <td>1.36</td> <td>288</td> <td>7.5</td> <td>21.0</td> </tr> <tr> <td>가솔린</td> <td>0.788</td> <td>51.1</td> <td>87.1</td> <td>6.94</td> <td>1.49</td> <td>163</td> <td>4.7</td> <td>46.9</td> </tr> <tr> <td>% 변화 (리포메이트 기준)</td> <td>-5.2</td> <td>+31.7</td> <td>-9.4</td> <td>+162.9</td> <td>-11.3</td> <td>+153 0</td> <td>+235.7</td> <td>-40.3</td> </tr> <tr> <td>% 변화 (경질 나프타 기준)</td> <td>+7.2</td> <td>-16.4</td> <td>+9.2</td> <td>-33.6</td> <td>+9.6</td> <td>-43.4</td> <td>-37.3</td> <td>+123.3</td> </tr> </tbody> </table> | | | | | | | | 항목 | 밀도 | API | R+M/2 | RVP | 벤젠 | 황 | 올레핀 | 방향족 | 리포메이트 | 0.831 | 38.8 | 96.1 | 2.64 | 1.68 | 10 | 1.4 | 78.6 | 경질 나프타 | 0.735 | 61.1 | 79.75 | 10.45 | 1.36 | 288 | 7.5 | 21.0 | 가솔린 | 0.788 | 51.1 | 87.1 | 6.94 | 1.49 | 163 | 4.7 | 46.9 | % 변화 (리포메이트 기준) | -5.2 | +31.7 | -9.4 | +162.9 | -11.3 | +153 0 | +235.7 | -40.3 | % 변화 (경질 나프타 기준) | +7.2 | -16.4 | +9.2 | -33.6 | +9.6 | -43.4 | -37.3 | +123.3 |
| | 항목 | 밀도 | API | R+M/2 | RVP | 벤젠 | 황 | 올레핀 | 방향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리포메이트 | 0.831 | 38.8 | 96.1 | 2.64 | 1.68 | 10 | 1.4 | 78.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질 나프타 | 0.735 | 61.1 | 79.75 | 10.45 | 1.36 | 288 | 7.5 | 2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솔린 | 0.788 | 51.1 | 87.1 | 6.94 | 1.49 | 163 | 4.7 | 46.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화 (리포메이트 기준) | -5.2 | +31.7 | -9.4 | +162.9 | -11.3 | +153 0 | +235.7 | -4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화 (경질 나프타 기준) | +7.2 | -16.4 | +9.2 | -33.6 | +9.6 | -43.4 | -37.3 | +12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완성된 가솔린을 미국으로 수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쟁점사항**
-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CBP는 화학제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화학적 반응을 수반하지 않고 추가적인 가공도 없는 단순한 두 물질의 혼합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55989 (1991.06.24.)*

(사례) 바하마에서 여러 화합물을 혼합하여 세 가지 종류의 항산화제를 생산

(판정) 개별 화합물이 서로 혼합되면서 서로 다른 물질을 형성하고 각 성분의 개별적 특성이 더 이상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 참고 판례: *Coastal States Marketing, Inc. v. United States, 646 F. Supp. 255 (CIT 1986)*

(사례) 소련산 가스 오일과 이탈리아산 연료유를 혼합하여 연료유 생산

(판결) 혼합을 통해 생산된 최종제품은 단순히 혼합하여 섞은 것에 불과하며, 외관, 성질(character), 동일성(identity) 또는 용도(use)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판정 결과

- Ⅴ A국에서 이루어진 혼합은 각 원료의 기본적인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단순 혼합에 불과하고 단순 혼합 이외에 다른 가공이 수행되었다는 증거나 이 과정으로 인해 제품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는 증거 또한 없으며, 원재료와 최종제품이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되는 점 또한 고려하여 A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

□ 결론

- ✓ A국에서 이루어진 혼합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Ⅲ. 시사점

- CBP는 화학물질의 혼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고 화학적 반응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혼합만 수행된 경우,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함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HQ 561986 (2001.08.21.), <https://rulings.cbp.gov/ruling/561986>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oastal States Marketing, Inc. v. United States, 646 F. Supp. 255 (CIT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750030/coastal-states-marketing-inc-v-united-states/?q=Coastal+States+Marketing%2C+Inc.+v.+United+States%2C+646+F.+Supp.+255+%28CIT+1986%29>

Case 2. 미완성 우편 요금기

[요약]

| | |
|---------|--|
| 사례명 | [미완성 우편 요금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03529 (2019.06.06.) |
| 사실관계 |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프린트 축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입되며,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중국 내에서 제조된 후 말레이시아산 프린트 축과 최종 조립되어 미완성 우편 요금기가 완성됨(프린트 축은 전체 부품 비용의 약 63% 차지)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다음의 이유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미완성 우편 요금기의 원산지는 중국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린트 축의 가치가 다른 구성요소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는 부차적인 고려 사항임 - 프린트 축은 중국에서 다른 구성요소들과 결합되면서 미완성 우편 요금기의 일부로 흡수되어 그 일부가 되며, 프린트 축이 봉투 및 우편 요금 테이프에 우편 요금 표시를 인쇄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할지라도, 중국에서 결합되는 다른 구성요소들 없이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 반면, 프린트 축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는 대부분 중국산 부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되며, 최종 조립 역시 중국에서 이루어지므로 총체적인 상황을 고려 했을 때, 중국에서 광범위하고 복잡한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¹²⁾

□ **사례명:** [미완성 우편 요금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03529 (2019.06.06.)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Brother Industries (USA), Inc. (대리인: Barnes, Richardson & Colburn, LLP) | |
| 제품 | 제품명 | • 미완성 우편 요금기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린트 축(Print Axis): 말레이시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 PCBA, 인쇄 헤드 카트리지, 와이핑 스테이션, 프라이밍 스테이션, 잉크 공급 시스템 등으로 구성됨 기타 서브 어셈블리: 중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린터 모듈 베이스 어셈블리 (Printer module base assembly) - 이송 어셈블리 (Transport assembly) - 폐잉크 트레이 (Waste ink tray) - 커터 어셈블리 (Cutter assembly) - 테이프 이송 어셈블리 (Tape transport assembly) - 커버 어셈블리 (Cover Assembly) |
| | 용도 | • 우편 처리 시스템에서 우편 요금 표시를 물리적으로 인쇄하는 프린터로 기능 |
| 제조 공정 |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말레이시아산 프린트 축을 중국으로 수입</p> <p>02 중국에서 여러 서브 어셈블리 제조</p> <p>03 최종 조립</p> <p>04 미국 수출</p>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레이시아산 프린트 축을 중국으로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린트 축 생산을 위한 부품 중 약 11%만이 중국산이며, 나머지는 여러 국가에서 수입 중국 제조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서브 어셈블리 제조 (대부분 중국산 부품 사용) - 프린트 축과 중국에서 생산된 여러 서브 어셈블리를 너트와 볼트로 결합 * 프린터 축은 전체 부품 비용의 약 63% 차지 최종제품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ⅴ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ⅴ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12)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1982)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었을 경우,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이때, 부품들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후 실시되는 검사 및 테스트 절차의 범위와 성격, 실제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 등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요소만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판정이 이루어짐

판정 결과

- Ⅳ 신청인은 프린트 축이 전체 부품 비용의 약 63%를 차지하며, 프린트 축이 수행하는 인쇄 기능은 미완성 우편 요금기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하기 때문에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프린트 축의 원산지인 말레이시아산이라고 주장함
- Ⅴ 하지만 CBP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미완성 우편 요금기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함
 - 프린트 축의 가치가 다른 구성요소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는 부차적인 고려 사항임
 - 프린트 축은 중국에서 다른 구성요소들과 결합되면서 미완성 우편 요금기의 일부로 흡수되어 그 일부가 되며, 프린트 축이 봉투 및 우편 요금 테이프에 우편 요금 표시를 인쇄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할지라도, 중국에서 결합되는 다른 구성요소들 없이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 반면, 프린트 축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는 대부분 중국산 부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되며, 최종 조립 역시 중국에서 이루어지므로 총체적인 상황을 고려 했을 때, 중국에서 광범위하고 복잡한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결론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미완성 우편 요금기의 원산지는 중국임

II. 시사점

- CBP는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정 시 총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므로, 특정 구성요소가 본질적인 기능을 부여하더라도, 여러 서브 어셈블리 제조, 최종 조립 등이 한 국가에서 수행되어 해당 국가에서 최종제품 생산에 기여한 바가 더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기도 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52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Case 3. 자전거

[요약]

| | |
|---------|---|
| 사례명 | [자전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02358 (2020.01.23.) |
| 사실관계 | 중국산 카본 프레임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 수입 및 조달된 부품을 대만에서 조립하여 최종제품인 자전거 완성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프레임은 자전거에 전체적인 형태, 크기, 특성을 부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며, 바퀴, 구동계, 핸들바, 안장 등과 같은 개별 부품은 프레임에 부착되면서 개별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명칭, 성격 및 용도가 변화하므로 완성된 자전거의 원산지는 프레임의 원산지인 중국임</p>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¹³⁾

- **사례명:** [자전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02358 (2020.01.23.)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미공개 (대리인: Denise Basilio, Supervisory Import Specialist) | |
| 제품 | 제품명 | • 자전거 |
| | 구성 | • 카본 프레임: 중국산 • 바퀴, 구동계, 핸들바, 스템 등 부품: 대만산 • 기타 부품: 중국, 일본, 미국산 |
| 제조 공정 |  <p>01 여러 국가산 부품을 대만으로 수입</p> <p>02 자전거 생산</p> <p>03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에서 자전거 프레임 제작 후 대만으로 수입 2. 여타 부품들은 중국, 일본 및 미국에서 수입 3. 대만에서 자전거 완성품으로 조립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 <p>* 최종제품 생산을 위한 총비용에서 중국산 프레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40%임</p>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ⅴ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ⅴ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었을 경우,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이때, 부품들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후 실시되는 검사 및 테스트 절차의 범위와 성격, 실제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 등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요소만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판정이 이루어짐
- National Hand Tool(1993) 사건에서 국제무역법원("CIT")은 수공구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것은 동일 공정을 통해 생산된 수입품을 서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수입업자들에게 불일치하는 표시 요건을 초래할 수 있다고

13)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지적합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사례) 플렉스 소켓(flex sockets), 스피더 핸들(speeder handles), 플렉스 핸들(flex handles) 제작용 특정 수공구 부품들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열처리, 표면 세척, 녹 및 부식 방지 처리 등 수행

(판결) 해당 부품들이 대부분 수입 전에 냉간성형(cold-formed) 또는 열간단조(hot-forged) 방식으로 최종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었으며, 미국으로 수입 후에 수행된 가공(강도를 높이기 위한 열처리, 표면 세척을 위한 샌드블라스트 처리, 녹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전기 도금 처리 등)은 수입 부품의 명칭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가공 후 물품의 성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해당 물품의 용도는 수입 시점에 이미 정해졌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 이와 더불어 CIT는 Energizer Battery(2016) 판례에서도 실질적 변형 기준의 의미를 상술하고 있음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기준을 검토
- 수입 후 공정이 조립에 불과한 경우, 특히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성질(character)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음
- 수입 시점에서 최종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도(use)의 변화가 없다고 봄
- 조립이 단순한 수준인지 아니면 복잡하여 개별 부품이 독립된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물품의 구성요소로 전환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함

- 조립 또는 가공을 통해 물품의 정체성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물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 역시 고려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수입된 신발의 갑피가 미국 내에서 밀착과 결합하는 공정을 거칠 경우, 해당 갑피가 완성된 신발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제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0 C.I.T. 48, 61, 628 F. Supp. 978, 991 (1986)

-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으로 미국 내에서 완제품 오렌지 주스를 생산하는 경우, 완제품 오렌지 주스의 본질적 특성은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에 있으므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고 판결

- CBP는 아래 판정 사례를 인용하면서 자전거의 본질적 특성은 프레임에 의해 부여된다고 주장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5368 (1994.06.30.)*

(사례) 자전거 튜브와 프레임은 대만산, 바퀴 립은 프랑스산, 안장은 이탈리아산이고 최종 조립은 대만에서 이루어짐

(판정) 프레임을 제외한 기타 부품들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었을지라도 해당 부품들이 프레임에 부착되면 개별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전거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프레임의 원산지인 대만임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53522 (2015.02.05)*

(내용) 중국산 자전거 부품들을 미국산 프레임에 부착하여 자전거 완성

(판정) 중국산 부품들은 프레임과 결합될 때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로 충분히 변형되었다고 보고, 프레임의 원산지인 미국이 완성된 자전거의 원산지라고 판정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2992 (2019.03.27.)*

(내용) 부품들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등 여러 국가에서 생산되었고, 프레임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대만에서 완성차로 조립됨

(판정) 프레임이 제작된 중국을 원산지로 판정함

판정 결과

- ㉒ 신청인은 프레임이 자전거의 필수 부품이긴 하나 다른 부품들과 함께 복잡한 조립 공정을 거쳐 새로운 상품인 자전거로 탈바꿈되었으며, 프레임 보다 그 외 부품들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들어 기타 부품 제조 및 최종 조립국인 대만을 원산지로 주장함
- ㉓ 하지만 CBP는 HQ 735368, HQ H253522, 그리고 NY N302992 사례와 마찬가지로, 프레임은 자전거에 전체적인 형태, 크기, 특성을 부여하는 가장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며, 바퀴, 구동계, 핸들바, 안장 등과 같은 개별 부품은 프레임에 부착되면서 개별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명칭, 성격 및 용도가 변화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대만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부품의 조립 작업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완성된 자전거의 원산지를 자전거 프레임의 원산지인 중국산으로 판정함

□ 결론

✓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자전거 프레임의 원산지인 중국임

II. 시사점

- CBP는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자전거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프레임이 완성된 자전거의 형태, 크기와 특성을 결정하는 본질적 구성요소라고 판단하며, 기타 부품들은 프레임과 결합되면서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한다고 봄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2358 (2020.01.23.), <https://rulings.cbp.gov/ruling/H302358>
- CBP Ruling HQ 735368 (1994.06.30.), <https://rulings.cbp.gov/ruling/735368>
- CBP Ruling HQ H253522 (2015.02.05.), <https://rulings.cbp.gov/ruling/H253522>
- CBP Ruling NY N302992 (2019.03.27.), <https://rulings.cbp.gov/ruling/N302992>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_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ional Juice Products Ass'n v. United States(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

Case 4. 낚시대-릴 세트

[요약]

| | |
|---------|--|
| 사례명 | [낚시대-릴 세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10250 (2020.03.17.) |
| 사실관계 | 한국산 릴을 중국으로 수입한 후 중국에서 생산된 낚시대와 조립하여 완성된 낚시대-릴 세트를 소매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한국에서 수입한 한국산 릴을 중국에서 생산된 낚시대와 결합하는 것은 단순 조립에 해당하여 한국산 릴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원산지표시 목적상 구성품별로 각각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해야 함</p>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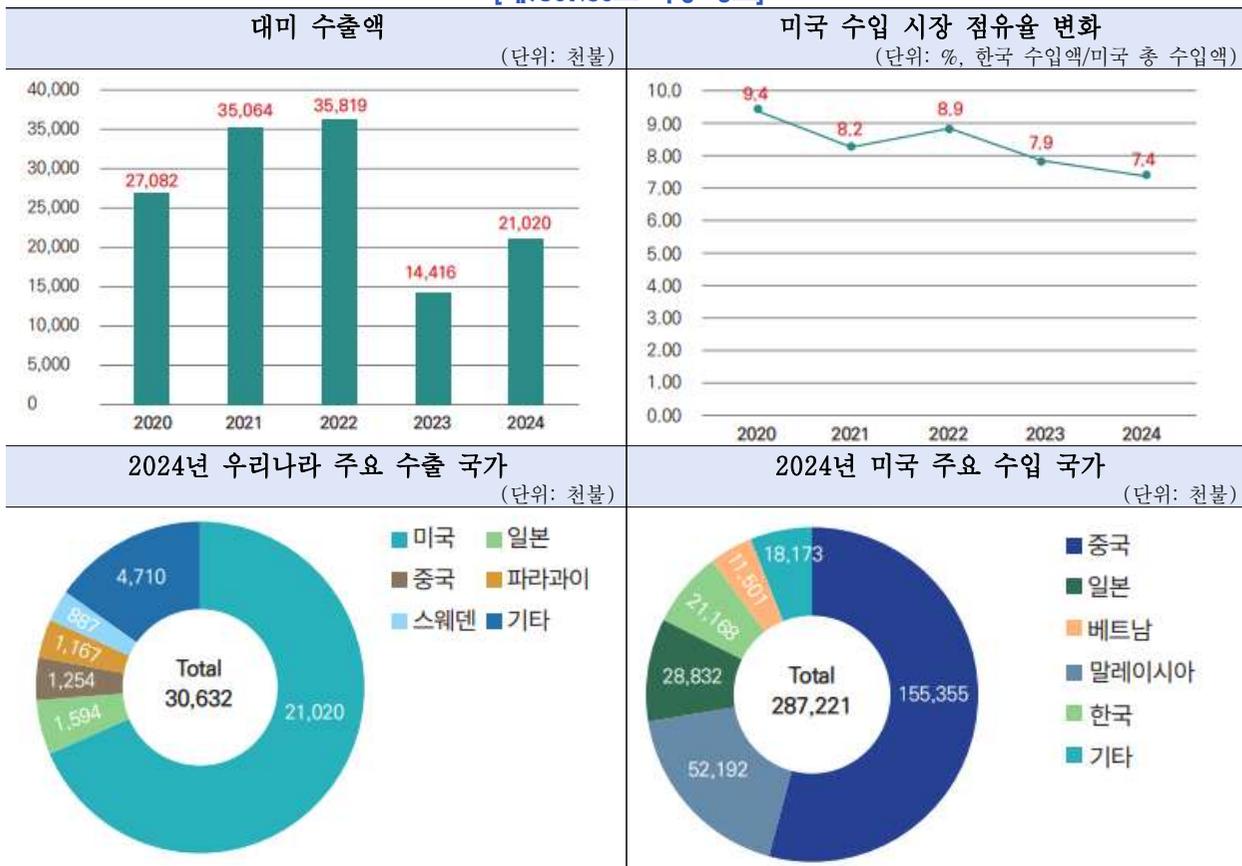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9507.3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3.9~9.2% or 24¢ each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9507.3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낚시대-릴 세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10250 (2020.03.17.)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Pure Fishing, Inc. | |
| 제품 |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낚시대-릴 세트 • 낚시대 (중국산)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섬유 또는 흑연, 스테인리스강, 티타늄, 세라믹, 알루미늄, 플라스틱, EVE 폼, 코르크 등으로 구성 • 릴 (한국산) - 플라스틱,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아연, 마그네슘, 황동 등으로 구성 |
| | 완제품 HTSUS | • 9507.30 |
| 제조 공정 | <p>01 한국에서 릴 제작</p> <p>02 중국으로 수출</p> <p>03 중국산 낚시대와 함께 조립</p> <p>04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에서 릴 제작 후 중국 수출 2. 중국에서 중국산 낚시대와 함께 조립하여 낚시대-릴 세트로 완성 3. 소매용으로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다만, 물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순한 제조 또는 결합 공정만 거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전체적인 정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이때, 각 구성 부품의 원산지, 특정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공 정도, 해당 가공이 해당 물품에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부여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고려 사항임

판정 결과

- ☐ 한국에서 수입한 한국산 릴을 중국에서 생산된 낚시대와 결합하는 것은 단순 조립에 해당하여 한국산 릴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원산지표시 목적상 구성품별로 각각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해야 함

기타 의견

- ▣ 해당 제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안한 소매 포장 상의 문구인 “Reels Made in Korea, Rods Made in China”는 동일한 크기의 글꼴로 표시되는 경우 적절한 원산지 표기로 인정됨

□ 결론

- ✓ 최종제품인 낚싯대-릴 세트의 원산지는 각각의 구성요소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이에 따라 릴의 원산지는 한국, 낚싯대의 원산지는 중국임

Ⅲ. 시사점

- 세트로 구성된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타국산 세트 구성품을 자국에서 생산한 다른 구성품과 단순히 결합하고 소매 포장하는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10250 (2020.03.17.), <https://rulings.cbp.gov/ruling/N310250>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Case 5. 스크루·너트 드라이버

[요약]

| | |
|---------|---|
| 사례명 | [스크루·너트 드라이버]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05966 (2020.04.16.) |
| 사실관계 | 중국에서 강철을 가공하여 제조된 샤프트와 칼라를 대만으로 수입한 후, 대만에서 제조된 두 가지 비트 및 플라스틱 손잡이와 결합하여 다기능 수공구인 스크루·너트 드라이버 완성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atNeck 6-in-1 Screwdriver는 제품의 명칭상 스크루 드라이버로 표기되나, 실제로는 교체 가능한 비트를 통해 스크루 드라이버와 너트 드라이버의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수공구로, 핵심 부품인 샤프트를 손잡이에 결합함으로써 양 기능이 모두 구현됨 • 동 물품은 교체 가능한 비트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분리 및 제조됨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때 비트와 결합되는 샤프트는 완제품의 최종 형상과 핵심 구조를 형성하고 제품이 완전히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주요 부품에 해당하여, 완제품의 성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판단됨 • 핵심 부품인 샤프트는 기능이 완성된 상태로 중국에서 제조되었으며, 대만에서의 조립 과정은 실질적인 가공 없는 단순 결합에 불과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샤프트의 원산지인 중국임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¹⁴⁾

- **사례명:** [스크루·너트 드라이버]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05966 (2020.04.16.)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Great Neck (대리인: Mallory Alexander International Logistics) | |
| 제품 |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atNeck 6-in-1 Screwdriver (모델명: SKU SD4B)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손잡이 • 강철제 원통형 샤프트 • 교체 가능한 양면 비트 2개 |
| | 용도 | • 다기능 수공구로서 너트 드라이버로 사용하거나 두 가지 교체 가능한 비트를 장착하여 스크루 드라이버로 사용 |
| | 완제품 HTSUS | • 8205.40.00 |
| 제조 공정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에서 강철을 가공하여 샤프트(shaft) 및 칼라(collar) 제조 2. 중국산 샤프트 및 칼라를 벌크 형태로 대만 수출 3. 대만 제조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가지 비트 및 플라스틱 손잡이 제조 - 손잡이에 칼라 압입 - 샤프트에 비트 삽입 후 손잡이에 결합 - 제품 라벨 부착 및 포장 4.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14) 해당 HS Code에 따른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품목 개요 미제공

- ㉔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부품이나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지 판단할 때 핵심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 해당 부품이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573 F. Supp. 1149 (Ct. Int'l Trade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반면,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지며, 이때, 부품들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 등을 주요 고려 요소로 삼음
- 조립 또는 가공을 통해 물품의 정체성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판단할 때, 물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 역시 고려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수입된 신발의 갑피가 미국 내에서 밀창과 결합하는 공정을 거칠 경우, 해당 갑피가 완성된 신발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제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0 C.I.T. 48, 61, 628 F. Supp. 978, 991 (1986)

-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으로 미국 내에서 완제품 오렌지 주스를 생산하는 경우, 완제품 오렌지 주스의 본질적 특성은 수입된 오렌지 농축액에 있으므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고 판결
 - 신청인은 NY N024981 사례를 근거로, 비트는 손잡이와 샤프트 없이도 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스크루 드라이버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은 대만에서 제조한 비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024981 (2008.03.20.)*

(사례) 대만에서 제조된 날(blade)을 중국으로 수출한 후, 중국에서 중국산 손잡이와 조립하여 스크루 드라이버 완성

(판정) 손잡이가 중국에서 부착되었다라도 해당 스크루 드라이버가 새로운 명칭, 성질 및 용도를 갖는 물품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원산지표시 목적상 완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임

- CBP는 N024981 사례가 본질적 특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본 사안의 스크루·너트 드라이버는 너트 드라이버와 스크루 드라이버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수공구라는 점에서 N024981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1460 (1989.05.26.)*

(사례) 양면 사용이 가능한 스크루 드라이버 비트가 벌크 상태로 미국에 수입되어 나사(screws) 및 무선 스크루 드라이버와 함께 세트로 재포장 됨

(판정) 비트가 수입 시점에 완제품으로 조립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미국에서의 재포장은 단순한 제조 과정에 불과하여 물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판단

판정 결과

- GreatNeck 6-in-1 Screwdriver는 제품의 명칭상 스크루 드라이버로 표기되나, 실제로는 교체 가능한 비트를 통해 스크루 드라이버와 너트 드라이버의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수공구로, 핵심 부품인 샤프트를 손잡이에 결합함으로써 양 기능이 모두 구현됨
- 동 물품은 교체 가능한 비트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분리 및 제조됨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때 비트와 결합되는 샤프트는 완제품의 최종 형상과 핵심 구조를 형성하고 제품이 완전히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주요 부품에 해당하여 완제품의 성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판단됨
- 핵심 부품인 샤프트는 기능이 완성된 상태로 중국에서 제조되었으며, 대만에서의 조립 과정은 실질적인 가공 없는 단순 결합에 불과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샤프트의 원산지인 중국임

□ 결론

√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핵심 부품인 샤프트의 원산지인 중국임

II. 시사점

- 본 사안 및 N024981 사례와 같이 최종제품의 명칭이 스크루 드라이버로 동일할지라도 실제로 최종제품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부품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판정 또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5966 (2020.04.16.), <https://rulings.cbp.gov/ruling/H305966>
- CBP Ruling NY N024981 (2008.03.20.), <https://rulings.cbp.gov/ruling/N024981>
- CBP Ruling HQ 731460 (1989.05.26.), <https://rulings.cbp.gov/ruling/731460>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ional Juice Products Ass'n v. United States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

Case 6. 공기청정기

[요약]

| | |
|---------|---|
| 사례명 | [공기청정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03177 (2020.05.04.) |
| 사실관계 | <p>(시나리오 1) 멕시코산 부품(탄소 전처리 필터, 해파 필터) 및 중국산 부품(팬 블레이드, 모터, 소형 전기부품 등)을 인도네시아로 수입한 후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된 플라스틱 부품, 실리콘 부품, 금속 부품, 포장 부품과 함께 다음의 공정을 수행하여 공기청정기 생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형 부품 부분 조립 2) 외국산 재료 추가 가공 3) 19단계에 걸쳐 서브 어셈블리 조립 및 완성품 최종 조립 4) 테스트 및 포장 <p>(시나리오 2) 시나리오 1과 제조 과정 및 부품 수입 후 조립 과정은 동일하나 플라스틱 부품을 인도네시아가 아닌 중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함</p>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시나리오 1)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플라스틱 부품의 사출 성형, 주요 부품 및 서브 어셈블리 조립, 테스트 및 포장이 수입된 구성요소들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킬 만큼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는 공정이라 판단하여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판정함</p> <p>(시나리오 2) 주요 부품(플라스틱 부품, 팬, 모터, 전자 부품)이 중국에서 제조되지만, 인도네시아에서의 전체 생산 공정에는 50명 이상의 근로자 및 감독자가 투입되며, 최종제품 완성을 위해 150개 이상의 전기 및 비전기 부품을 조립하는 데 약 60분이 소요되는 등 광범위하고 복잡한 공정이 수행되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p>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¹⁵⁾

- 사례명: [공기청정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03177 (2020.05.04.)
- 사실관계

| 요청자 | • Sunbeam Products, Inc (대리인: Sandler, Travis & Rosenberg, P.A.) | | | | | | | | | | | | | |
|--|---|---|-----|-----|--------------------|-----|--|----|--|-------|---------------------|-------------------------------------|------------------------------------|--|
| 제품 | 제품명 | • Holmes® True HEPA Allergen Remover (모델 번호: HAP8650) | | | | | | | | | | | |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 • 탄소 전처리 필터(carbon pre-filter) • 3개의 헤파 필터 • 플라스틱 부품 등 | | | | | | | | | | | | |
| | 용도 | • 가정용 먼지, 연기, 곰팡이 등과 같은 공기 중 알레르겐 및 오염 물질의 제거나 냄새 감소용 | | | | | | | | | | | | |
| 제조 공정 |  <p>[시나리오 1 상세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요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부품명</th> <th style="width: 30%;">제조국</th> </tr> </thead> <tbody> <tr> <td>✓ 탄소 전처리 필터, 헤파 필터</td> <td>멕시코</td> </tr> <tr> <td>✓ 소형 전기부품, 전원 코드, 하우스징 자석, 금속 브래킷, 튜브 클립, 패스너, 인쇄회로기판(PCB), 팬 블레이드, 모터, 3M 테이프, 박스, 발포 포장재 등</td> <td>중국</td> </tr> <tr> <td>✓ 플라스틱 부품(하우스징 구성품, 제어판, 스위치 커버, 스위치 박스, 손잡이, 브래킷 등)</td> <td rowspan="3">인도네시아</td> </tr> <tr> <td>✓ 실리콘 부품(절연재, 와셔 등)</td> </tr> <tr> <td>✓ 금속 부품(나사 및 너트, 단자 캡, 무연 납땜 와이어 등)</td> </tr> <tr> <td>✓ 포장 부품(인쇄 스티커, 라벨, 제품 설명서, 포장재 등)</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제조 공정 (50명 이상의 근로자 및 감독자가 약 60분에 걸쳐 150개 이상의 부품을 가공 및 조립) 1. 플라스틱 부품, 실리콘 부품, 금속 부품, 포장 부품 제조 2. 소형 부품 부분 조립 3. 외국산 재료 추가 가공 4. 19단계에 걸쳐 서브 어셈블리 조립 및 완성품 최종 조립 수행(단계별 테스트 수행) 5. 완성품 미국 수출 <p>[시나리오 2 상세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1과 제조 과정 및 부품 수입 후 조립 과정 동일 • 다만, 플라스틱 부품의 사출 성형이 중국에서 수행되고 이를 인도네시아로 수입함 | | 부품명 | 제조국 | ✓ 탄소 전처리 필터, 헤파 필터 | 멕시코 | ✓ 소형 전기부품, 전원 코드, 하우스징 자석, 금속 브래킷, 튜브 클립, 패스너, 인쇄회로기판(PCB), 팬 블레이드, 모터, 3M 테이프, 박스, 발포 포장재 등 | 중국 | ✓ 플라스틱 부품(하우스징 구성품, 제어판, 스위치 커버, 스위치 박스, 손잡이, 브래킷 등) | 인도네시아 | ✓ 실리콘 부품(절연재, 와셔 등) | ✓ 금속 부품(나사 및 너트, 단자 캡, 무연 납땜 와이어 등) | ✓ 포장 부품(인쇄 스티커, 라벨, 제품 설명서, 포장재 등) | |
| | 부품명 | 제조국 | | | | | | | | | | | | |
| ✓ 탄소 전처리 필터, 헤파 필터 | 멕시코 | | | | | | | | | | | | | |
| ✓ 소형 전기부품, 전원 코드, 하우스징 자석, 금속 브래킷, 튜브 클립, 패스너, 인쇄회로기판(PCB), 팬 블레이드, 모터, 3M 테이프, 박스, 발포 포장재 등 | 중국 | | | | | | | | | | | | | |
| ✓ 플라스틱 부품(하우스징 구성품, 제어판, 스위치 커버, 스위치 박스, 손잡이, 브래킷 등) | 인도네시아 | | | | | | | | | | | | | |
| ✓ 실리콘 부품(절연재, 와셔 등) | | | | | | | | | | | | | | |
| ✓ 금속 부품(나사 및 너트, 단자 캡, 무연 납땜 와이어 등) | | | | | | | | | | | | | | |
| ✓ 포장 부품(인쇄 스티커, 라벨, 제품 설명서, 포장재 등) | | | | | | | | | | | | | | |
| 쟁점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 | | | | | | | | | | |

15)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㉞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㉞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부품이나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지 판단할 때 핵심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 해당 부품이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573 F. Supp. 1149 (Ct. Int'l Trade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반면,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지며, 이때, 부품들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 등을 주요 고려 요소로 삼음
- 신청인은 소형 부품 부분 조립, 특정 부품 추가 가공, 최종제품 조립 등의 공정이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라고 주장하면서 HQ 557331, HQ 962528, NY 227976, NY N301616 사례를 인용하였으며, CBP는 해당 사례들을 검토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57331 (1993.09.09.)*

(사례) 커피메이커의 GSP 무관세 자격 판정 사례로서, 미국산 플라스틱 펠릿을 멕시코에서 부품으로 사출 성형한 후, 이 부품들을 미국산 구성요소와 함께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최종제품 생산

(판정) 멕시코에서 사출 성형 과정에서 열 사출이 발생한다는 점과 여러 구성요소가 멕시코에서 조립된다는 점을 근거로, 중간재에서 최종재로 조립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지 않을지라도 총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함 (멕시코산)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962528 (2020.02.18.)*

(사례) 정전 표시등(power failure light)의 GSP 무관세 자격 판정 사례로서, PCB를 포함한 여러 태국산 부품과 기타 외국산 부품을 태국에서 조립하여 완성함

(판정) 여러 부품을 조립하여 PCB를 만드는 과정과 PCB를 전구 홀더 어셈블리, 플러그 블레이드 어셈블리, 상·하부 하우징 어셈블리와 결합하여 최종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킨다고 판정함 (태국산)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227976 (2012.08.22.)*

(사례) 독일산 다결정 태양전지, 일본산 전면 시트, 기타 중국산 부품을 중국에서 조립하여 태양광 패널을 생산

* 본 판정은 HQ H298653 (2018.11.19.) 결정에 의해 실질적 변형 분석과 원산지판정 부분이 수정됨

(판정) 수정된 결정(HQ 298653)에서 CBP는 독일산 태양전지가 태양광 패널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고 중국에서 다른 부품과 결합되는 과정에서 그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태양전지의 원산지인 독일로 판정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1616 (2018.12.04.)*

(사례) 전구 및 전선을 포함하는 중국산 부품을 캄보디아로 수입한 후 기타 캄보디아산 부품과 조립하여 스트링 조명 세트로 완성

[캄보디아 제조 공정]

| | |
|---|---------------------------------------|
| 1 | 중국산 플라스틱 펠릿을 램프 홀더와 램프 하우징으로 성형 |
| 2 | 전구를 연결하고 완성된 램프 조립 기계에서 램프를 제작 |
| 3 | 전선 절단 |
| 4 | 램프 소켓, 플러그 및 커넥터 조립 |
| 5 | 모든 부품을 연결하여 스트링 제작 |
| 6 | 전선을 절단 및 피복 제거한 후 단자에 고정하고 시험 및 포장 수행 |

(판정) 개별 부품들이 캄보디아에서의 조립 과정을 통해 각각의 부품에는 내재되어 있지 않았던 뚜렷한 성격과 용도를 가진 새로운 상업적 물품이 창출되었으므로, 캄보디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캄보디아산)

- CBP는 신청인이 인용한 사례 검토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아래의 판례 및 판정 사례를 인용함

◆ 참고 판례: *Uniden America Corporation v. United States, 24 CIT 1191, 120 F. Supp. 2d 1091 (2000)*

(사례) 무선 전화기를 생산하기 위해 여러 기타 부품들을 조립하는 작업과 탈착식 교류(AC) 어댑터를 설치하는 작업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판결) CIT는 '성질(character)'이라는 용어를 개별 물품을 구성하고 일반적으로 구별하는 구조, 형태, 재료 또는 기능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로 정의하면서, 전화기의 본질은 본체와 수화기에 있으며, 소비자는 AC 어댑터의 특정 기능 때문에 그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수화기와 본체가 제공하는 통신 기능 때문에 구입하므로, 수화기와 본체 조립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만 AC 어댑터 설치의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사례) 미완성 우편 요금계기 생산을 위한 주요 서브 어셈블리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었으나, 나머지 서브 어셈블리들은 중국에서 제조되었고, 이들 서브 어셈블리를 연결하여 최종 조립하는 과정 역시 중국에서 이루어짐

(판정) 중국에서 조립 공정뿐만 아니라 일부 서브 어셈블리 또한 제조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에서 행해진 공정이 충분히 광범위하며 복잡한 것으로 판정하여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함

판정 결과

- (시나리오 1)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플라스틱 부품의 사출 성형, 주요 부품 및 서브 어셈블리 조립, 테스트 및 포장에 수입된 구성요소들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킬 만큼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는 공정이라 판단하여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판정함
 -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공정들은 HQ 557331 및 NY N301616 사례와 유사하게, 플라스틱 성형과 조립이 단일 국가 내에서 수행됨
 - 특히 플라스틱 부품은 완성된 장치의 구조와 외관을 형성하므로 완제품의 성격과 용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하우징과 외부 요소가 없다면 수입된 부품들은 가정용 공기청정기로 식별되거나 사용될 수

없음

- 팬과 필터가 공기청정기의 주요 구성요소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팬, 모터, 전자 부품, 하우징, 외부 요소로 구성된 콘솔은 필터가 삽입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Holmes® True HEPA Allergen Remover로 식별 가능하며, 콘솔만으로도 최종제품의 기본적인 구조, 외관, 작동 능력이 제공됨
 - 일부 중요한 부품들이 중국산일지라도, 이러한 부품들이 멕시코산 필터 및 인도네시아산 부품들과 조립되면서 개별 부품들의 개별적 정체성은 상실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적 부분으로 변형된다고 판단함
- ☐ (시나리오 2) 콘솔의 주요 부품(플라스틱 부품, 팬, 모터, 전자 부품)이 중국에서 제조되지만, 인도네시아에서의 전체 생산 공정에는 50명 이상의 근로자 및 감독자가 투입되며, 최종제품 완성을 위해 150개 이상의 전기 및 비전기 부품을 조립하는 데 약 60분이 소요되는 등 광범위하고 복잡한 공정이 수행되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 결론

- ✓ 시나리오 1: 주요 부품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부품이 인도네시아산이고 인도네시아에서의 조립 과정이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으므로 공기청정기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임
- ✓ 시나리오 2: 대부분 주요 부품이 중국산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조립 과정이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으므로 공기청정기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임

II. 시사점

- ✓ 본 사안의 공기청정기와 같이 여러 부품 및 공정이 수반되는 경우, CBP는 주요 부품의 원산지 같은 개별 요소만으로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주요 부품의 성격, 전체 공정의 복잡성, 노동 투입 정도 등의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제품의 본질이 어디에서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3177 (2020.05.04.), <https://rulings.cbp.gov/ruling/H303177>
- CBP Ruling HQ 557331 (1993.09.09.), <https://rulings.cbp.gov/ruling/557331>
- CBP Ruling HQ 962528 (2020.02.18.), <https://rulings.cbp.gov/ruling/962528>
- CBP Ruling NY 227976 (2012.08.22.), <https://rulings.cbp.gov/ruling/227976>
- CBP Ruling HQ H298653 (2018.11.19.), <https://rulings.cbp.gov/ruling/H298653>
- CBP Ruling NY N301616 (2018.12.04.), <https://rulings.cbp.gov/ruling/N301616>
-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52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Uniden America Corporation v. United States (200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819429/uniden-america-corp-v-united-states/>

Case 7. 식료품용 저울

[요약]

| | |
|---------|---|
| 사례명 | [식료품용 저울]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11705 (2020.05.27.) |
| 사실관계 | 대만, 스위스, 중국, 독일에서 생산된 159개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하여 네 가지 주요 어셈블리(작업자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고객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프린터 어셈블리, 베이스 유닛)를 만들고 이를 최종 조립하여 식료품용 저울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p>CBP는 메인 PCBA 및 기타 계량용 구성요소(예: 계량 플래터, 로드셀 등)를 포함하는 베이스 유닛이 식료품용 저울에 본질을 부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베이스 유닛 생산을 위한 대부분의 재료가 중국산이고,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이러한 중국산 부품을 단순히 조립한 것에 해당하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함</p>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판정사례16)

□ **사례명:** [식료품용 저울]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11705 (2020.05.27.)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Mettler-Toledo, LLC (대리인: Sidley Austin LLP) | |
| 제품 | 제품명 | • 식료품용 저울 |
| | 구성 | • 대만, 스위스, 중국 및 독일에서 생산된 159개의 부품(대부분 중국산)으로 제조되며, 아래와 같은 주요 서브 어셈블리로 구성 - 작업자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 고객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 프린터 어셈블리 - 베이스 유닛 |
| | 용도 | • 식료품의 무게를 측정하고 중량 기준으로 가격을 계산하여, 이를 고객에서 표시하는 기능 및 가격 라벨을 인쇄하는 기능 수행 |

| | | | | |
|----------|--|--|--|--|
| 제조 공정 | | | | |
|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자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대만산 LCD 터치스크린을 포함하여 총 22개의 개별 구성요소(보조 PCBA, 케이블, 내·외부 커버, 어댑터, 실링 링, 타이 및 나사 등 모두 중국산)를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제조(총 15단계로 구성) 고객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대만산 LCD 스크린을 포함한 총 28개의 개별 구성요소를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제조(총 14단계로 구성되며, 작업자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제조 공정과 유사) 프린터 어셈블리: 50개의 중국산 개별 구성요소를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제조(총 60단계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린터 헤드, 커버 패널, 용지 재활용 모듈, 하단 모듈의 네 가지 서브 어셈블리 제조 - 네 가지 서브 어셈블리를 결합하여 프린터 어셈블리를 제조한 후, 프린트 기능 확인을 위해 특수 장비를 사용한 테스트 수행 베이스 유닛: 메인 PCBA와 2개의 보조 PCBA, 파워 컴포넌트, 계량 플레터와 로드셀(load cell)을 포함하여 73개의 계량용 구성요소가 포함되며(대부분 중국산), 이 구성요소들을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제조(총 16단계 55개의 공정으로 구성) 최종 조립: 각각의 어셈블리를 결합하여 최종제품 완성 최종 테스트: 멕시코에서 미국산 및 독일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기능테스트 수행 미국 수출 | | | |

□ **쟁점사항**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16)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계가 부정확하여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었을 경우,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된 구성요소, 제조 공정 등 모든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음
- 조립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판정 결과

- CBP는 메인 PCBA 및 기타 계량용 구성요소(예: 계량 플래터, 로드셀 등)를 포함하는 베이스 유닛이 식료품용 저울에 본질을 부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베이스 유닛 생산을 위한 대부분의 재료가 중국산이고,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이러한 중국산 부품을 단순히 조립한 것에 해당하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함

□ 결론

- ✓ 제301조 무역제재 적용을 위한 원산지판정 결과,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II. 시사점

- 본 사안에서 제시된 저울의 경우, 4가지의 서브 어셈블리를 통해 계량, 라벨 인쇄, 디스플레이 표시 등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나, CBP는 저울의 핵심이 계량 기능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베이스 유닛의 원산지를 최종제품의 원산지로 판정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11705 (2020.05.27.), <https://rulings.cbp.gov/ruling/N311705>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_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8. 차량용 충전기

[요약]

| | |
|---------|---|
| 사례명 | [차량용 충전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13137 (2020.07.29.) |
| 사실관계 | 중국산 부품을 필리핀으로 수입한 후, SMT 및 솔더링 공정을 통해 PCBA를 생산하고 생산된 PCBA와 기타 부품을 결합하여 차량용 충전기 생산 |
| 쟁점 및 판정 |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전기를 변환하고 이를 USB 소켓을 통해 연결된 개인 전자기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PCBA에 의해 부여되며, 본 사안에서 PCBA는 SMT 및 솔더링 공정을 통해 필리핀에서 생산되므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필리핀임 |
| 근거법령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¹⁷⁾

□ **사례명:** [차량용 충전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13137 (2020.07.29.)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D and S Industries (Philippines) Corporation | |
| 제품 | 제품명 | • 3.4A 차량용 충전기 (모델 번호: DC-204E) |
| | 구성 | • 인쇄회로기판 어셈블리(PCBA) • 전선 • 플러그 단자 • 플라스틱 성형 하우징 |
| | 용도 | • 차량 내 개인 전자기기 충전용 |
| 제조 공정 |  <p>01 중국산 부품을 필리핀으로 수입 [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부품 필리핀으로 수입 및 일부 부품 필리핀 자국 내 조달 필리핀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SMT 및 솔더링 공정을 통해 빈 인쇄회로기판에 집적회로, 저항기 등을 부착하여 PCBA 생산 플러그 단자 부착 및 전선 납땀 플라스틱 하우징 내 조립 초음파 용접을 통해 밀봉 검사 및 테스트 실시 포장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17)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판정 결과

- ㉔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전기를 변환하고 이를 USB 소켓을 통해 연결된 개인 전자기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PCBA에 의해 부여됨
- ㉕ 본 사안에서 PCBA는 SMT 및 솔더링 공정을 통해 필리핀에서 생산되므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필리핀임

□ 결론

- ✓ 필리핀에서 수행된 공정이 PCBA를 생산하기 위한 실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과정이므로 3.4A 차량용 충전기의 원산지는 필리핀임

II. 시사점

- CBP는 PCBA가 최종제품에 본질을 부여하는 핵심 부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PCBA 제조를 위해 SMT, 솔더링 공정이나 이에 준하는 공정이 행해진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13137 (2020.07.29.), <https://rulings.cbp.gov/ruling/N313137>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_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9. 파인애플 및 바나나 껄레

[요약]

| | |
|---------|--|
| 사례명 | [파인애플 및 바나나 껄레]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50517 (2025.07.22.) |
| 사실관계 | (파인애플 껄레) 코스타리카산 냉동 파인애플 조각을 프랑스로 수입한 후 균질화, 혼합, 저온살균, 급속 냉동 등의 과정을 거쳐 파인애플 껄레 생산 (바나나 껄레) 과테말라산 바나나를 과테말라에서 껄질 벗기기, 으깨기, 여과하여 껄레 베이스를 생산한 후 이를 프랑스로 수입하여 균질화, 혼합, 저온살균, 급속 냉동 등의 과정을 통해 바나나 껄레 생산 |
| 쟁점 및 판정 |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파인애플 껄레) 수입된 파인애플 조각과 프랑스에서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껄레는 외관, 점성 및 사용 목적이 상이하므로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파인애플 껄레의 원산지는 프랑스임 (바나나 껄레) 과테말라에서 이루어진 가공을 통해 바나나는 최종제품의 성질과 용도를 가진 껄레 베이스로 변형되며,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추가 공정은 이러한 껄레 베이스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킬 만큼 복잡하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과테말라임 |
| 근거법령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¹⁸⁾

- **사례명:** [파인애플 및 바나나 퓌레]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50517 (2025.07.22.)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European Imports INC | |
| 제품 |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인애플 퓌레 • 바나나 퓌레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인애플 (코스타리카산) • 바나나 (과테말라산) |
| 제조 공정 | <p>[파인애플 퓌레]</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01 코스타리카산 냉동 파인애플 조각을 프랑스로 수출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02 퓌레 생산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03 미국 수출 </div>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코스타리카산 냉동 파인애플 조각을 프랑스로 수입 2. 프랑스에서 균질화, 혼합, 저온살균, 급속 냉동 등의 과정을 거쳐 퓌레 생산 3. 1kg 용기 단위로 포장하여 미국 수출 | |
| | <p>[바나나 퓌레]</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01 과테말라에서 퓌레 베이스 생산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02 프랑스로 수출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03 퓌레 생산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04 미국 수출 </div>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테말라산 바나나를 과테말라에서 껍질 벗기기, 으깨기, 여과 등의 공정을 거쳐 퓌레 베이스 생산 2. 프랑스로 퓌레 베이스 수출 3. 프랑스에서 퓌레 균질화, 혼합, 저온살균, 급속 냉동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제품 생산 4. 1kg 용기 단위로 포장하여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18)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CBP는 본 사안의 판정을 위해 아래 판정을 인용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55062 (1990.02.23.)*

(사례) 아르헨티나산 생땅콩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로 수입하여 땅콩버터로 가공

(판정) 땅콩버터가 땅콩으로 만들어지고 땅콩의 맛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두 제품의 외관, 점성 및 사용 목적이 상이하므로 버진아일랜드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정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558733 (1994.12.02.)*

(사례) 미국에서 칠레산 아보카도와 기타 미국산 원재료로 과카몰리를 제조

(판정) 과카몰리가 아보카도로 만들어지고 아보카도의 맛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두 제품의 외관, 점성 및 사용 목적이 상이하므로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정함

판정 결과

- (파인애플 쥬레) HQ 555062 및 HQ W558733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입된 파인애플 조각과 프랑스에서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쥬레는 외관, 점성 및 사용 목적이 상이하므로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파인애플 쥬레의 원산지는 프랑스임
- (바나나 쥬레) 과테말라에서 이루어진 가공을 통해 바나나는 최종제품의 성질과 용도를 가진 쥬레 베이스로 변형되며,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추가 공정은 이러한 쥬레 베이스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킬 만큼 복잡하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과테말라임

□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파인애플 쥬레의 원산지는 프랑스이며, 바나나 쥬레의 원산지는 과테말라임

II. 시사점

- 식품의 경우, 파인애플, 바나나 등의 원재료를 갈거나 균질화하여 점성이 있는 쥬레, 잼 등으로 가공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0517 (2025.07.22.), <https://rulings.cbp.gov/ruling/N350517>
- CBP Ruling HQ 555062 (1990.02.23.), <https://rulings.cbp.gov/ruling/555062>
- CBP Ruling HQ W558733 (1994.12.02.), <https://rulings.cbp.gov/ruling/W558733>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Case 10. 피부용 연고

[요약]

| | |
|---------|--|
| 사례명 | [피부용 연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50643 (2025.07.24.) |
| 사실관계 | 주요 유효 의약 성분(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인 Nystatin(이탈리아산)과 Triamcinolone Acetonide(인도산)을 인도에서 기타 비활성 성분들과 혼합하여 피부 칸디다증용 연고를 생산 |
| 쟁점 및 판정 |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항진균제인 Nystatin은 효모를 제거하여 감염을 없애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인 Triamcinolone Acetonide은 항염 작용을 통해 감염과 관련된 염증, 가려움 및 발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각각의 API를 단독으로 복용할 때보다 추가적인 의학적 이점을 제공하므로, 인도에서 수행된 혼합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정됨 (인도산)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¹⁹⁾

- **사례명:** [피부용 연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50643 (2025.07.24.)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Viona Pharmaceuticals, Inc | |
| 제품 | 제품명 | • 피부 칸디다증용 연고 |
| | 구성 | • 두 가지 주요 유효 의약 성분(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로 구성 - Nystatin - Triamcinolone Acetonide |
| | 용도 | • 피부 칸디다증(피부의 효모 감염)의 국소 치료에 사용되는 연고 |
| 제조 공정 |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이탈리아산 Nystatin을 인도로 수입 → 02 인도에서 Triamcinolone Acetonide 제조 → 03 혼합을 통해 연고 생산 → 04 미국 수출</p>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탈리아에서 Nystatin 제조 인도에서 Triamcinolone Acetonide 제조 이탈리아산 Nystatin과 인도산 Triamcinolone Acetonide를 인도에서 비활성 성분들과 혼합하여 최종 국소 연고 생산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Ct. Int'l Trade 1986)

- 의약품과 같은 화학제품 제조에서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경우, CBP는 일관되게 가공 공정의 복잡성과 최종 물품이 원재료의 본질적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는지를 검토해 옴
- 이와 관련하여 CBP는 의약품을 벌크 형태(bulk form)에서 정량화된 투여 형태(measured doses)로 가공하는 것은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61975 (2002.04.03.)*, *HQ 561544 (2000.05.01.)*, *HQ 735146 (1993.11.15.)*, *HQ H267177 (2016.11.05.)*, *HQ H233356 (2012.12.26.)* 및 *HQ 561975 (2002.04.03.)*

19)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다만, 이러한 가공이 두 개 이상의 유효 의약 성분(API)의 결합을 수반하고, 그 결합의 결과 각 API를 단독으로 복용할 때보다 추가적인 의학적 이점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63207 (2005.06.01.)*

판정 결과

- ⅴ 항진균제인 Nystatin은 효모를 제거하여 감염을 없애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인 Triamcinolone Acetonide은 항염 작용을 통해 감염과 관련된 염증, 가려움 및 발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각각의 API를 단독으로 복용할 때보다 추가적인 의학적 이점을 제공하므로, 인도에서 수행된 혼합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정됨 (인도산)

□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인도임

II. 시사점

- CBP는 연고와 같은 의약품의 실질적 변형을 판단할 때 여러 유효 의약 성분(API)을 혼합하여 최종제품이 생산되는 경우, 혼합된 제품이 각각의 API를 단독 복용할 때보다 추가적인 의학적 이점을 제공한다면 단순 혼합 공정도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0643 (2025.07.24.), <https://rulings.cbp.gov/ruling/N350643>
- CBP Ruling HQ 561975 (2002.04.03.), <https://rulings.cbp.gov/ruling/561975>
- CBP Ruling HQ 561544 (2000.05.01.), <https://rulings.cbp.gov/ruling/561544>
- CBP Ruling HQ 735146 (1993.11.15.), <https://rulings.cbp.gov/ruling/735146>
- CBP Ruling HQ H267177 (2016.11.05.), <https://rulings.cbp.gov/ruling/H267177>
- CBP Ruling HQ H233356 (2012.12.26.), <https://rulings.cbp.gov/ruling/H233356>
- CBP Ruling HQ 561975 (2002.04.03.), <https://rulings.cbp.gov/ruling/561975>
- CBP Ruling HQ 563207 (2005.06.01.), <https://rulings.cbp.gov/ruling/563207>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Juice Products Ass'n v. United States.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

Origin Case

Vol. 7

- Case 1 - 알루미늄 포일
- Case 2 - 수직 펌프의 펌프 엔드 (제8413.91호)
- Case 3 - F-클램프
- Case 4 - 가솔린 구동 수평축 엔진 (제8407.90호)
- Case 5 - 변속기용 볼 베어링 (제8482.10호)
- Case 6 - 자동차용 선쉐이드 & 시트커버 (제8708.29호 및 제8708.99호)
- Case 7 - 펌프 부분품-Fluid ends
- Case 8 - 에어컨 실외기
- Case 9 - 멀티슈
- Case 10 - 자동차 에어백 시스템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Case 1. 알루미늄 포일

[요약]

| | |
|---------|---|
| 사례명 | [알루미늄 포일]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02201 (2020.04.06.) |
| 사실관계 | 중국산 포일스톡을 독일로 수입한 후, 냉간 압연, 어닐링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알루미늄 포일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CBP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국산 포일스톡이 완전히 다른 상업적 제품인 알루미늄 포일로 변형되었으므로 독일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간 압연 공정을 통해 알루미늄의 두께가 최대 98%까지 감소함 - Ferrostaal(1987) 판례와 유사하게 어닐링 공정은 화학적 조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원자재의 연성과 연질성을 회복시키고, 포일의 원자 구조를 재구성하여 기계적 특성을 추가로 변화시킴 - 알루미늄 포일은 포일스톡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며, 식품, 의약품 등 제품의 포장재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그 용도 또한 상이함 - 더불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독일에서의 공정이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제품 생산을 위한 비용 및 시간 또한 독일에서의 공정이 더욱 높음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

- **사례명:** [알루미늄 포일]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02201 (2020.04.06.)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Amcor Flexibles Singen GmbH (대리인: Drinker Biddle & Reath LLP) | |
| 제품 | 제품명 | • 알루미늄 포일 |
| | 구성 | • 포일 스톡 |
| | 용도 | • 식품, 의약품 등 제품의 포장재 |
| 제조 공정 |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포일스톡(foil stock)를 독일로 수입 2. 독일 제조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연 작업을 위해 어닐링 공정 수행 - 냉간 압연 공정을 통해 두께 감소(3~4mm에서 0.25~2mm로 두께 감소) - 추가 어닐링 공정 수행(연화 및 표면 윤활유 제거) - 필요한 경우 코팅, 래커 처리 또는 적층 공정 수행 3.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42, 681 F.2d 778 (1982)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아래의 판례 및 사전심사 결정문을 인용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664 F. Supp. 535 (Ct. Intl. Trade 1987)

- 어닐링 공정이란 강철 제품의 냉간 압연 후 연성(ductility)을 복원하기 위해 고온으로 가열한 후, 물 또는 기타 수단으로 급속 냉각하는 공정임
- CIT(Court of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법원)는 어닐링 공정이 실제 화학적 조성이나 물리적 치수를 변화시키지는 않으나, 강철 내 탄소와 질소의 분포에 영향을 미쳐 냉간 압연된 강철의 변형 에너지를 제거하고, 강도는 낮추는 대신 연성과 성형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
- CIT는 연성과 강도가 강철의 중요한 특성이며, 어닐링 공정은 강철의 성질(character)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다고 판단하였고, 이 공정을 통해 새롭게 부여된 강도와 연성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용도가 전용되었다고 판단
- 비슷한 맥락에서 CIT는 판유리를 가열한 뒤 급속 냉각하여 강도를 증가시키는[일반적으로 템퍼링(tempering) 이라 불림] 공정 또한 새로운 상업적 제품을 창출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Guardian Industries Corp. v. United States*, 3 CIT 9, 16 (1982) 인용]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H84171 (2001.08.10.)*

(사례)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코일을 가공(냉간 압연을 통한 두께 감소 및 성형성 부여를 위한 어닐링 공정 수행)하여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판 생산

(판정)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42034 (2013.08.12.)*

(사례) 중국에서 냉간 인발 공정을 통해 생산된 green pipe를 일본으로 수입하여, 1차 어닐링, 냉간 인발, 2차 어닐링, 교정을 포함한 여러 단계의 공정 수행

(판정) 반가공 제품이 ASTM A312 규격 요건을 충족하는 완제품으로 전환되었기에 일본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Ferrostaal* 판례에 부합하게 어닐링 공정이 초기 green pipe에 새로운 명칭, 특성, 용도를 부여한다고 판단함

판정 결과

- CBP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국산 포일스톡이 완전히 다른 상업적 제품인 알루미늄 포일로 변형되었으므로, 독일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 냉간 압연 공정을 통해 알루미늄의 두께가 최대 98%까지 감소함
 - *Ferrostaal*(1987) 판례와 유사하게 어닐링 공정은 화학적 조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원자재의 연성과 연질성을 회복시키고, 포일의 원자 구조를 재구성하여 기계적 특성을 추가로 변화시킴
 - 알루미늄 포일은 포일스톡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며, 식품, 의약품 등 제품의 포장재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그 용도 또한 상이함
 - 더불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독일에서의 공정이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제품 생산을 위한 비용 및 시간 또한 독일에서의 공정이 더욱 높음

□ 결론

✓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독일임

II. 시사점

- CBP는 포일스톡을 가공하여 알루미늄 포일을 만드는 경우, 냉간 압연 및 어닐링 공정이 포일 스톡의 화학적 조성을 변형시키지는 않으나, 연성, 연질성 및 기계적 특성이 변화하고 두께가 현저히 감소하여 전혀 다른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하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Ⅲ.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2201 (2020.04.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2201>
- CBP Ruling NY H84171 (2001.08.10.), <https://rulings.cbp.gov/ruling/H84171>
- CBP Ruling HQ H242034 (2013.08.12.), <https://rulings.cbp.gov/ruling/H2420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2. 수직 펌프의 펌프 엔드

[요약]

| | |
|---------|--|
| 사례명 | [수직 펌프의 펌프 엔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13089 (2021.02.16.) |
| 사실관계 | 중국산 부품(임펠러, 흡입 벨, 흡입 볼)을 캐나다로 수입한 뒤, 캐나다산 결합 부품(샤프트, 볼 베어링 등)과 함께 최종 조립하여 펌프 엔드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부품은 중국산 임펠러이며, 캐나다에서 트리밍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기능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이므로 캐나다에서 공정을 통해 명칭, 성질 및 용도가 변화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최종제품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국산 임펠러, 흡입 벨, 흡입 볼은 실제 유체를 이동시키는 주요 기능에 관여하나, 캐나다산 부품은 이러한 주요 부품을 단지 밀봉하고 결합하는데 주로 사용되므로 중국산 부품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결과적으로 기능적 측면에서 중국산 부품이 최종제품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더욱 높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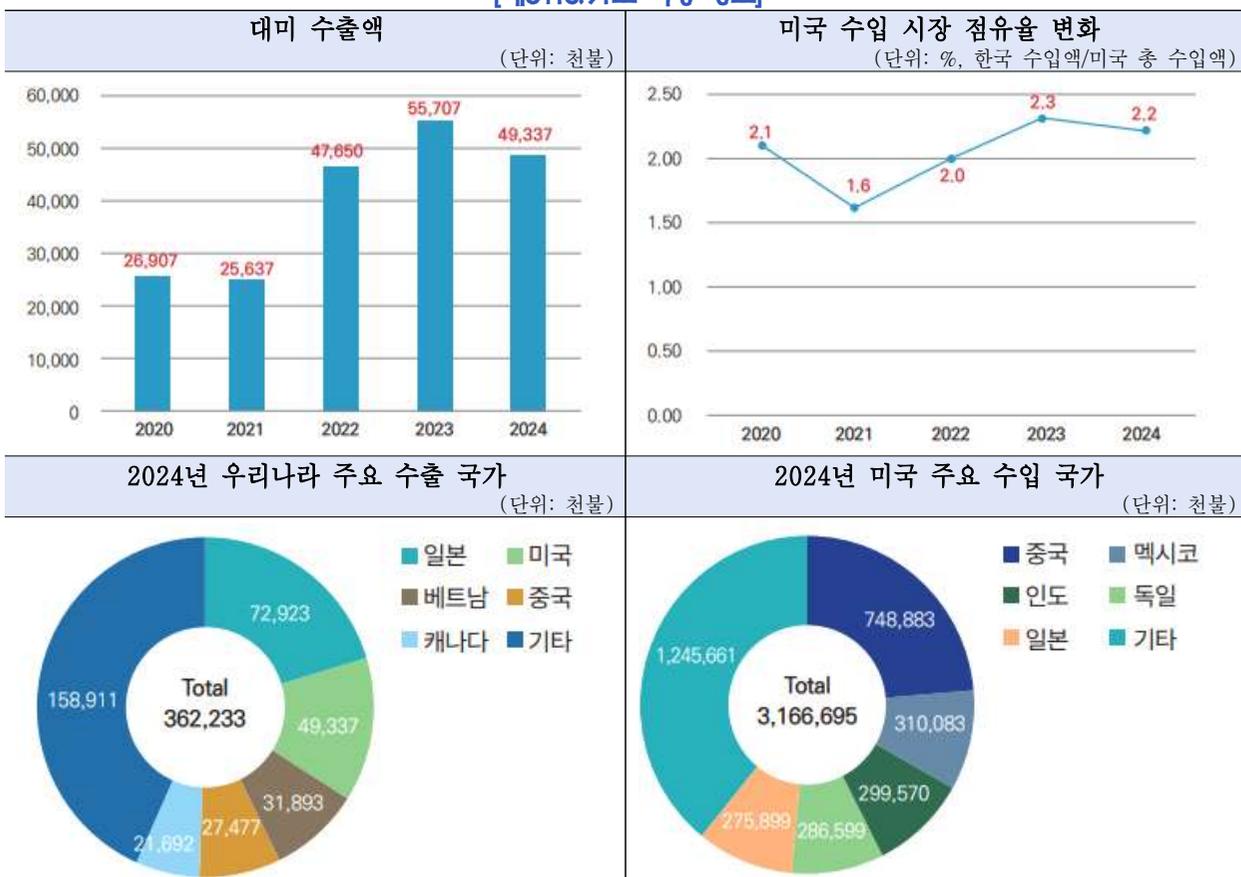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8413.91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 or 2.5%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8413.91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수직 펌프의 펌프 엔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13089 (2021.02.16.)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Sulzer Pump Solutions, Inc. (대리인: Kelley Drye & Warren LLP) | |
| 제품 |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펌프의 펌프 엔드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입 벨 (중국산) • 펌프 샤프트 (캐나다산) • 임펠러 (중국산) • 흡입 볼 (중국산) • 잠금 콜릿 (캐나다산) • 어댑터 플랜지 (캐나다산) • 흡입 스트레이너 (캐나다산) • 볼 베어링, 흡입 벨 베어링 (캐나다산) • 임펠러 마모 링, 고정 마모 링, 스러스트 링 (캐나다산) • 스러스트 링 리테이너 (캐나다산) |
| | 용도 | • 액체 이동용 |
| | 완제품 HTSUS | • 8413.91.90 |
| 제조 공정 |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중국산 부품을 캐나다로 수입</p> <p>02 조립, 결함을 통해 펌프 엔드 생산</p> <p>03 미국 수출</p>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부품을 캐나다로 수입 2. 캐나다 제조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사양에 맞게 임펠러 트리밍 - 흡입 벨을 생산 테이블에 장착 및 안정화 - 펌프 엔드가 식수용으로 사용될 경우 임펠러를 제외한 모든 주조품에 내부 코팅 - 흡입 볼을 흡입 벨에 볼트로 고정 - 펌프 샤프트를 흡입 벨 내부에 삽입 - 임펠러를 샤프트 안으로 밀어 넣고 잠금 콜릿으로 고정 - 어댑터 플랜지를 샤프트 위에 끼우고 상단 볼에 볼트로 고정하여 임시 펌프 엔드 완성 - 테스트 후 균형 조정, 트리밍, 연마 등 추가 가공 수행 - 펌프 엔드 외부에 페인트 코팅 3.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사례별로 이루어짐
- CBP는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을 ①상업적 명칭 또는 정체성의 변화, ②본질적 성질의 변화, ③상업적 용도의 변화를 겪은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행된 작업의 범위, 해당 부품 또는 자재들이 개별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요소로 통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소한 공정인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제조 또는 조립 과정이 단순한 공정(minor process)으로서 원재료가 공정 후에도 본질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864 (2019.12.26.)*

(사례) 중국산 전기 모터를 멕시코로 수입하여 멕시코산 부품(펌프 하우징, 쉘, 터미널 커넥터 하우징 등)과 같은 부품을 압입하여 펌프 어셈블리를 생산하였으며, 후에 성능 및 누출 테스트를 거친 후 세척, 라벨링 및 육안 검사 수행

(판정) 완성된 펌프 어셈블리의 본질은 전기 모터에 있으며 나머지 부품을 조립하고 검수하는 과정은 전기 모터를 새로운 물품으로 변형시킬 만큼 복잡한 공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3043 (2019.04.18.)*

(사례)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제조된 부품을 세르비아로 수입하여 스탬핑, 경화, 권선, 크럼핑 등과 같은 공정을 거쳐 스테이터 서브 어셈블리 제조.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된 부품을 사용하여 로터 하우징의 자화 및 성형, 세르비아산 임펠러를 로터에 압입하여 로터 서브 어셈블리를 제작하였으며, 이후 스테이터 서브 어셈블리와 모터 서브 어셈블리를 조립하여 전기모터 형성. 형성된 전기모터는 세르비아산 볼류트에 부착

(판정) CBP는 세르비아산 임펠러와 볼류트가 펌프 어셈블리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면서, 대부분의 외국산 구성요소가 스탬핑, 자화, 압입 등의 복잡한 공정을 통해 임펠러 및 볼류트와 결합하여 펌프 어셈블리로 변형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세르비아로 판정함

판정 결과

- 최종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부품은 중국산 임펠러이며, 캐나다에서 트리밍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기능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이므로 캐나다에서 공정을 통해 명칭, 성질 및 용도가 변화했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최종제품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국산 임펠러, 흡입 벨, 흡입 볼은 실제 유체를 이동시키는 주요

기능에 관여하나, 캐나다산 부품은 이러한 주요 부품을 단지 밀봉하고 결합하는데 주로 사용되므로 중국산 부품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㉓ 결과적으로 기능적 측면에서 중국산 부품이 최종제품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더욱 높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 결론

- ✓ 캐나다에서의 공정은 주요 부품인 중국산 임펠러, 흡입 벨, 흡입 볼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고 최종제품의 본질적 특성은 중국산 임펠러에 의해 부여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Ⅲ. 시사점

- 본 사례에서 펌프 엔드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부품은 임펠러이며, 외국인 임펠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해당 가공이 단순한 조립 및 결합 등에 해당한다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3089 (2021.02.16.), <https://rulings.cbp.gov/ruling/H313089>
- CBP Ruling HQ H303864 (2019.12.2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864>
- CBP Ruling NY N303043 (2019.04.18.), <https://rulings.cbp.gov/ruling/N303043>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3. F-클램프

[요약]

| | |
|---------|--|
| 사례명 | [F-클램프]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12674 (2021.02.24.) |
| 사실관계 | 한국에서 중국산 강철 막대로 만든 클램프 본체와 수직 암을 중국으로 수출한 뒤, 중국에서 추가 가공, 연마, 기타 부품 조립을 통해 최종제품인 F-클램프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제품인 F-클램프의 핵심 기능은 한국에서 생산된 클램프 본체에 의해서 부여되며, 클램프 본체를 생산하기 위해 중국산 강철 막대에 행해진 한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클램프 본체의 원산지는 한국임 클램프 본체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입될 당시 이미 그 형태와 외관이 최종제품인 F-클램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반면, 중국에서 수행된 표면 처리 및 부품 결합 공정은 단순 공정으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킬 만큼 복잡하고 의미 있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에 대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클램프 본체의 원산지인 한국임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판정사례

- **사례명:** [F-클램프]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12674 (2021.02.24.)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Tractor Supply Company (대리인: Lowenstein Sandler LLP) | |
| 제품 |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클램프 • 클램프 본체 • 조절 가능한 수직 암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사 • 바/손잡이 • 회전 패드 |
| | 용도 | • 목공 작업에서 목재를 임시로 고정할 때 사용되는 수공구 |
| 제조 공정 | | |
|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강철 막대를 한국으로 수입 2. 한국에서 중국산 강철 막대 이용하여 고정 조를 포함한 L자 형태의 클램프 본체 및 직선 형태의 조절 가능한 수직 암 제조 3. 클램프 본체 및 수직 암 중국으로 수출 4. 중국 제조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램프 본체 및 수직 암에 대해 추가 가공, 연마, 열처리 및 도금 공정 수행 - 중국산 나사, 바/손잡이, 회전 패드를 조립하여 최종제품 생산 5.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1982)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었을 경우,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이때, 부품들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후 실시되는 검사 및 테스트 절차의 범위와 성격, 실제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 등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요소만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판정이 이루어짐

- 단순한 조립 작업은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음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사례) 플렉스 소켓(flex sockets), 스피더 핸들(speeder handles), 플렉스 핸들(flex handles) 제작용 특정 수공구 부품들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열처리, 표면 세척, 녹 및 부식 방지 처리 등 수행

(판결) 해당 부품들이 대부분 수입 전에 냉간성형(cold-formed) 또는 열간단조(hot-forged) 방식으로 최종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었으며, 미국으로 수입 후에 수행된 가공(강도를 높이기 위한 열처리, 표면 세척을 위한 샌드블라스트 처리, 녹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전기 도금 처리 등)은 수입 부품의 명칭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가공 후 물품의 성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해당 물품의 용도는 수입 시점에 이미 정해졌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 CBP는 해당 사례에서 실질적 변형의 판단을 위해 HQ H309984 사례를 인용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9984 (2020.09.11.)*

(사례) 중국으로 수입된 베트남산 알루미늄 클램프 헤드를 열처리, 코팅한 후 중국산 수평 금속 바, 디스크 클러치, 스프링과 함께 조립하여 바 클램프를 생산함. 이때, 클램프 헤드는 수입될 시점에서 이미 완성된 바 클램프와 거의 동일한 모양, 형태 및 크기를 유지함

(판정) 실제 목재 조각을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은 클램프 헤드이며, 중국산 수평 금속 바, 디스크 클러치, 스프링은 헤드가 목재를 고정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만을 담당함. 특히 베트남산 클램프 헤드는 중국에서의 추가 가공을 거치면서 형태, 구조, 크기에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판정

판정 결과

- CBP HQ H309984 사례와 마찬가지로 최종제품인 F-클램프의 핵심 기능은 한국에서 생산된 클램프 본체에 의해서 부여되며, 클램프 본체를 생산하기 위해 중국산 강철 막대에 행해진 한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클램프 본체의 원산지는 한국임
- 또한 클램프 본체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입될 당시 이미 그 형태와 외관이 최종제품인 F-클램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중국에서 수행된 표면 처리 및 부품 결합 공정은 단순 공정으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킬 만큼 복잡하고 의미 있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에 대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클램프 본체의 원산지인 한국임

□ 결론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핵심 구성요소가 생산된 한국임

II. 시사점

- 공구와 같은 물품의 경우,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요소(외국산)가 가공국으로 수입될 시점에 이미 최종제품의 형태와 크기 및 모양 등을 가지고 있고, 가공 후에도 이러한 형태, 크기 및 모양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2674 (2021.02.24.), <https://rulings.cbp.gov/ruling/H312674>
- CBP Ruling HQ H309984 (2020.09.11.), <https://rulings.cbp.gov/ruling/H30998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

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4. 가솔린 구동 수평축 엔진

[요약]

| | |
|---------|--|
| 사례명 | [가솔린 구동 수평축 엔진]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12432 (2021.03.24.) |
| 사실관계 | 중국으로부터 엔진 생산을 위한 100개 이상의 모든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한 뒤, 이를 조립하여 서브 어셈블리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서브 어셈블리를 조립하여 엔진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P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판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제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부품은 중국산이며, 이러한 부품들은 이미 여러 서브 어셈블리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도록 ‘사전에 정해진 용도(pre-determined end-use)’를 가지고 있음 -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중국산 개별 부품들을 장착(mounting)하거나 용접(welding)하는 등의 복잡하고 의미 있는 조립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사전에 정해진 용도를 가지고 수입된 부품들을 조립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맞추어 끼우는 것(fitting together of parts and ... imported with a pre-determined end-use and ... ready for assembly)’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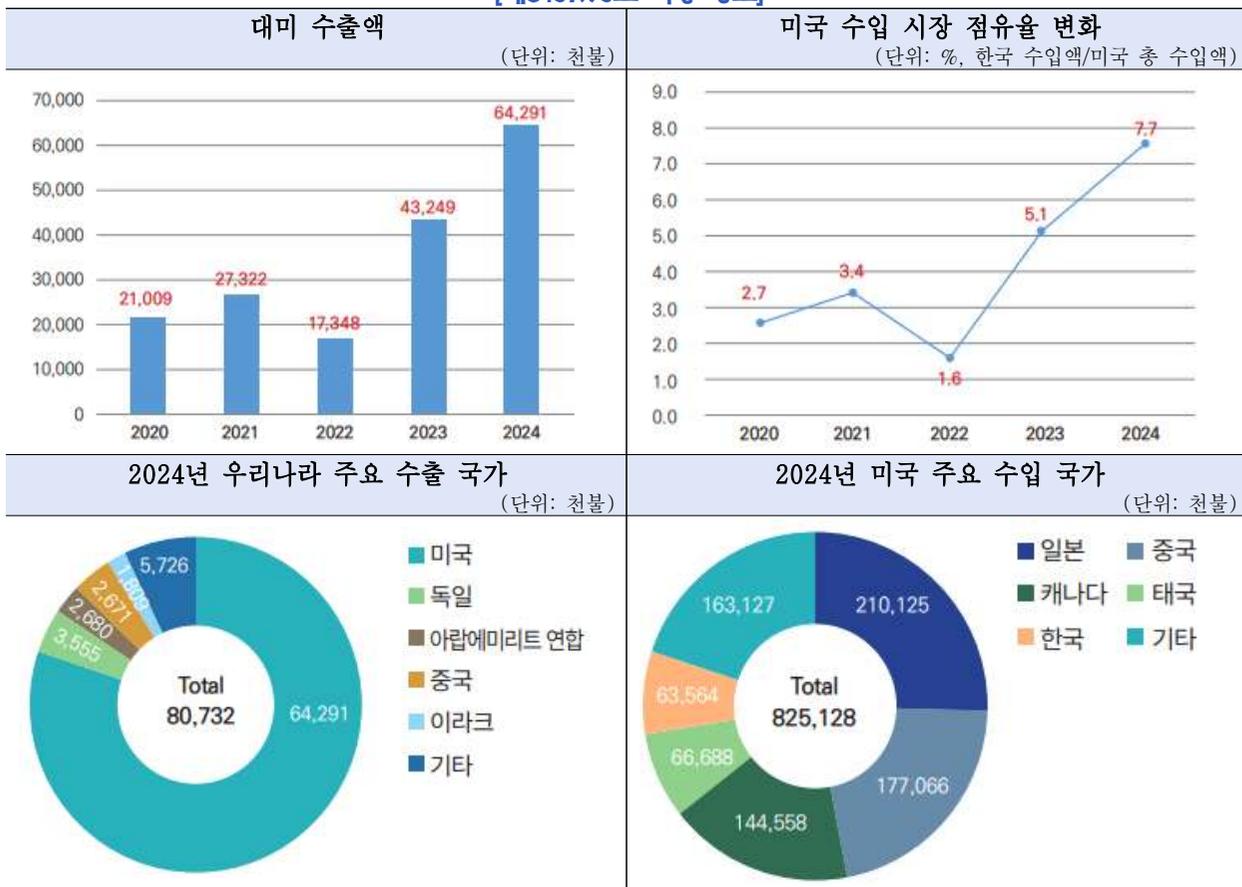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8407.9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8407.9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가솔린 구동 수평축 엔진]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12432 (2021.03.24.)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MTD Products, Inc. (대리인: Adrienne Braumiller, Braumiller Law Group PLLC) | |
| 제품 | 제품명 | • 가솔린 구동 수평축 엔진 (gasoline-powered horizontal shaft engine) |
| | 구성 | • 크랭크케이스, 크랭크샤프트, 캠샤프트, 실린더, 피스톤, 연료 시스템, 시동 시스템, 윤활 시스템, 배기 시스템, 스타터, 제어 장치 등 |
| | 용도 | • 모든 구성품은 중국에서 전량 수입됨(모두 중국산) |
| | 완제품 HTSUS | • 8407.90.90 |
| 제조 공정 |  <p>01 중국산 부품 멕시코로 수입</p> <p>02 서브 어셈블리 조립</p> <p>03 최종 엔진 조립</p> <p>04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부품 멕시코로 수입 2. 멕시코 제조 공정(100개 이상의 부품 개별 조립, 교정, 시험 공정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부품 세척 - 여러 부품을 주요 서브 어셈블리로 조립 (ex. 크랭크케이스, 커버, 크랭크 샤프트를 조립하여 크랭크 케이스 어셈블리를 만들고 이를 다시 실린더 헤드 어셈블리와 조립하여 블록 어셈블리 형성) - 최종 엔진 조립 3.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681 F.2d 778 (1982)
-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573 F. Supp. 1149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 요소로는 조립 작업의 성격(예: 조립되는 부품 수), 수행 작업 공정의 다양성, 작업 소요 시간, 숙련도, 세부 작업,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이 있음

◆ 참고 판정: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and C.S.D. 90-97*

- 만약,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CBP는 조립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복잡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공정과 포함되는 서브 어셈블리 제조 공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866 (2020.02.13.)*

(사례) 약 절반에 해당하는 외국산 부품들이 멕시코로 수입되어, 멕시코산 부품들과 함께 서브 어셈블리로 결합되고 이들을 플라스틱 펌프 부품들과 결합하여 원심형 와서 펌프 생산함. 이때, 멕시코 내에서 납땜, 용접, 기계가공, 플라스틱 사출 성형, 압착 등을 포함한 복잡한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특히 스테이터와 로터가 멕시코에서 제조됨

(판정) 멕시코 내 작업의 범위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산임

- 반면, 조립 공정이 단순하거나 경미하고 사전에 정해진 용도를 가진 부품을 그대로 결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864 (2019.12.26.)*

(사례) 중국산 모터에 임펠러, 쉘, 플라스틱 하우징을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펌프 어셈블리 완성

(판정) 멕시코에서 행해진 조립은 단순히 부품들을 서로 압입하는 것으로, 이러한 단순 조립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2821 (2019.07.26.)*

(사례) 중국산 다섯 개의 서브 어셈블리와 기타 부품을 스웨덴에서 여객용 차량으로 조립

(판정) 조립 공정이 복잡하지 않고 개별 부품들의 용도가 수입 시점에서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사례) 중국에서 제조된 스테이터 또는 후면 하우징, 로터 또는 아마추어 어셈블리, 엔드캡 어셈블리를 멕시코에서 전동 모터로 조립

(판정) 이들 부품은 이미 전동 모터 부품으로서 용도가 정해져 있었고 멕시코에서의 생산은 단순 조립이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126155 (2010.10.29.)*

(사례) 스웨덴산 부품을 독일로 수입하여, 해당 부품들에 대한 도색, 건조, 세척 등의 공정을 수행한 후 독일산 제품들과 조립하여, 선박의 프로펠러와 엔진 사이의 기계적 결합 역할을 담당하는 마린 스트러스 어셈블리 생산

(판정) 스웨덴산 부품은 최종 어셈블리 내에서 기계적 결합이라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최종제품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독일에서 수행된 공정은 제한된 작업에 불과하여 스웨덴산 부품들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독일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판정 결과

- CBP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판정함
 - 최종제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부품은 중국산이며, 이러한 부품들은 이미 여러 서브 어셈블리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도록 '사전에 정해진 용도(pre-determined end-use)'를 가지고 있음

-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중국산 개별 부품들을 장착(mounting)하거나 용접(welding)하는 등의 복잡하고 의미 있는 조립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사전에 정해진 용도를 가지고 수입된 부품들을 조립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맞추어 끼우는 것(fitting together of parts and ... imported with a pre-determined end-use and ... ready for assembly)'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 결론

✓ 최종제품에 대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임

Ⅲ. 시사점

- CBP는 조립 공정과 관련하여 최종제품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요소가 수입 시점에 이미 최종제품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이 되고, 조립이 단순히 끼워 맞추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2432 (2021.03.24.), <https://rulings.cbp.gov/ruling/H312432>
- CBP Ruling HQ H309984 (2020.09.11.), <https://rulings.cbp.gov/ruling/H309984>
- CBP Ruling HQ H303866 (2020.02.13.), <https://rulings.cbp.gov/ruling/H303866>
- CBP Ruling HQ H303864 (2019.12.2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864>
- CBP Ruling HQ H302821 (2019.07.26.), <https://rulings.cbp.gov/ruling/H302821>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CBP Ruling NY N126155 (2010.10.29.), <https://rulings.cbp.gov/ruling/N126155>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5. 변속기용 볼 베어링

[요약]

| | |
|---------|--|
| 사례명 | [변속기용 볼 베어링]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18162 (2021.04.07.) |
| 사실관계 | 중국 또는 일본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내륜 및 외륜을 선삭 및 열처리하여 링 모양으로 만든 뒤, 멕시코에서 정밀 레이스웨이 가공 및 최종 조립을 통해 자동차 변속기용 볼 베어링 완성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p>CBP는 베어링의 원산지판정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정밀 레이스웨이가 가공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해오고 있으며, 본 사안의 경우, 멕시코에서의 최종 연삭 및 호닝 공정을 거쳐 이러한 정밀 레이스웨이가 형성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정밀 레이스웨이 가공이 이루어진 멕시코임</p>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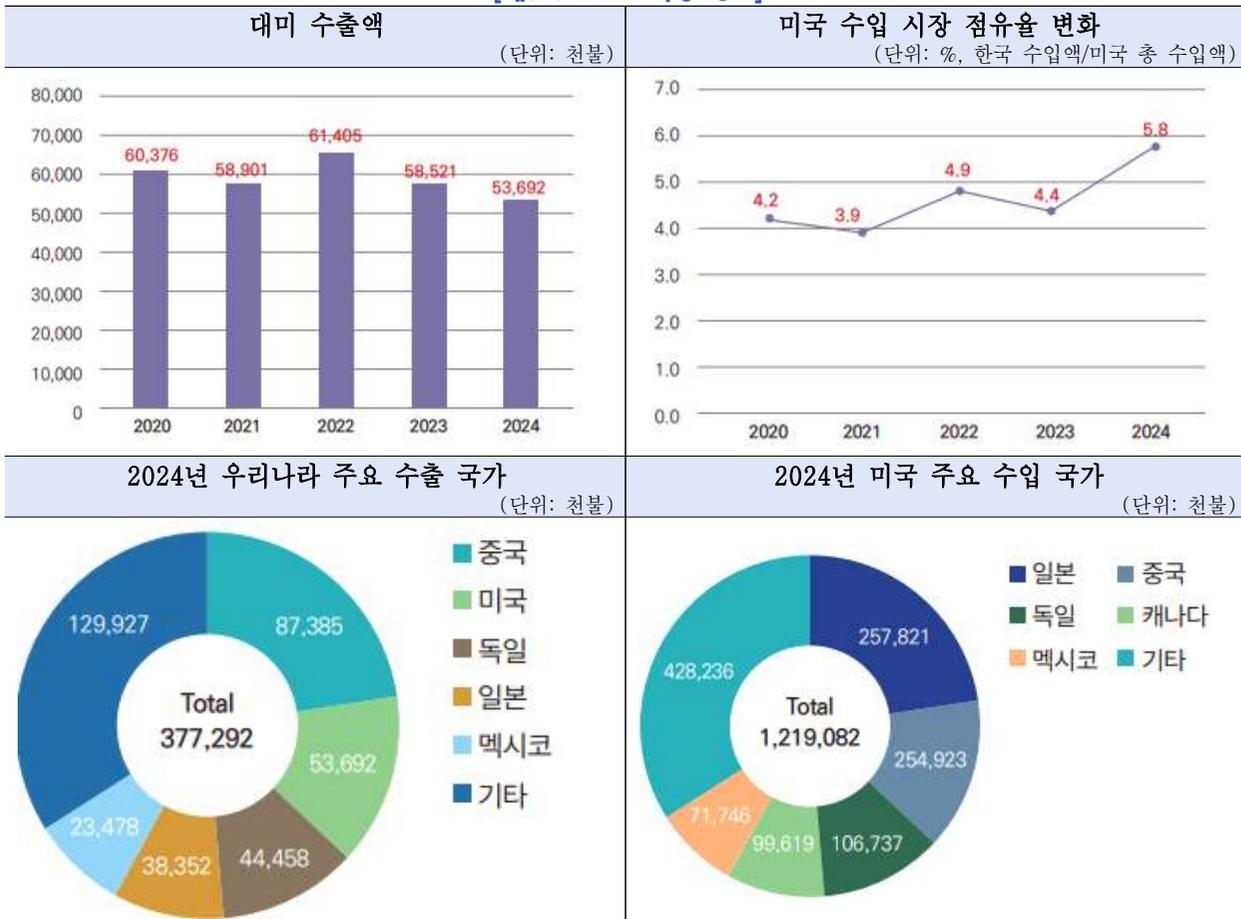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8482.1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or 13% |
| | 미국 기본세율 | 2.4% or 9%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8482.10호부터 제8482.8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82.9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82.9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 시장 정보

[제8482.1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변속기용 볼 베어링]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18162 (2021.04.07.)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Nachi America Inc. | |
| 제품 | 제품명 | • 33BC 및 50BC 변속기용 볼 베어링 |
| | 구성 | • 내륜, 외륜, 리테이닝 케이지 어셈블리, 단일 볼로 구성 - 33BC 볼 베어링: 외경 48mm, 폭 7mm - 50BC 볼 베어링: 외경 68mm, 폭 7mm |
| | 용도 | • 자동차 변속기용 |
| | 완제품 HTSUS | • 8482.10 |
| 제조 공정 |  <p>01 중국에서 외륜과 내륜 제조</p> <p>02 중국 또는 일본에서 선삭 및 열처리 공정 수행</p> <p>03 멕시코에서 정밀 레이스웨이 가공 및 최종 조립</p> <p>04 미국 수출</p> | |
|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에서 냉간 압연, 조 연삭 공정 등을 통해 강봉을 가공하여 외륜과 내륜 제조 중국 또는 일본에서 선삭 공정을 통해 링 모양으로 가공 후 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1: 중국에서 레이스 선삭 및 열처리 공정 수행 - 시나리오 2: 중국에서 레이스 선삭 공정 수행 후 일본에서 열처리 수행 - 시나리오 3: 일본에서 레이스 선삭 및 열처리 공정 수행 멕시코로 수출 멕시코 제조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륜과 외륜 표면 연삭 수행 - 호닝 공정과 최종 연삭 공정을 통해 정밀 레이스웨이 가공 - 인도네시아 또는 중국에서 제조된 볼을 내륜과 외륜에 삽입 - 일본산 리테이닝 케이지 설치 - 완성된 볼 베어링에 탈자, 세정, 탈지, 검사 공정 등을 수행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제품으로 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의 판단은 사용된 부품과 그 부품들이 거친 제조 공정을 모두 고려하여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를 고려하며, 어느 하나의 요인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 CBP는 볼 베어링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본질적 요소인 레이스의 원산지를 고려해 옴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62528* (2002.12.10.)

- 베어링의 본질적인 성격과 용도는 강철 링이 연삭 및 마무리 공정을 거쳐 정밀 레이스웨이를 갖춘 레이스가 되고, 더 이상 강철 링으로 간주 되지 않게 되었을 때 결정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1968 및 731969* (1990.03.19.)

- 한 국가에서 링이 열처리 및 연마(polishing)되고 다른 국가에서 레이스 형성 및 초정밀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 베어링의 원산지는 정밀 레이스웨이가 가공된 국가로 결정됨

판정 결과

- Ⅴ CBP는 베어링의 원산지판정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정밀 레이스웨이가 가공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해오고 있으며, 본 사안의 경우, 멕시코에서의 최종 연삭 및 호닝 공정을 거쳐 이러한 정밀 레이스웨이가 형성되므로, 3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정밀 레이스웨이 가공이 이루어진 멕시코임

□ 결론

- ✓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임

Ⅲ. 시사점

- CBP는 볼 베어링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정밀 레이스웨이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로 판정함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18162 (2021.04.07.), <https://rulings.cbp.gov/ruling/N318162>
- CBP Ruling HQ 562528 (2002.12.10.), <https://rulings.cbp.gov/ruling/562528>
- CBP Ruling HQ 731968 (1990.03.19.), <https://rulings.cbp.gov/ruling/731968>
- CBP Ruling HQ 731969 (1990.03.19.), <https://rulings.cbp.gov/ruling/73196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6. 자동차용 선쉐이드 & 시트커버

[요약]

| | |
|---------|--|
| 사례명 | [자동차용 선쉐이드 & 시트커버]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44131 (2024.12.19.) |
| 사실관계 | <p>[선쉐이드] 캄보디아에서 중국산 알루미늄 필름과 캄보디아산 플라스틱 입자를 함께 적층한 후, 절단, 봉제, 기타 공정을 수행하여 자동차 전면 유리 가림막용 선쉐이드 생산</p> <p>[시트커버] 캄보디아에서 중국산 직물과 캄보디아산 폼을 함께 적층한 후, 절단, 봉제, 기타 공정을 수행하여 시트커버 생산</p>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중국산 필름 및 직물을 캄보디아로 수입한 뒤,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 적층, 절단 및 봉제 공정은 중국산 재료를 식별 가능한 새로운 상업적 물품인 선쉐이드 및 시트커버로 변형시키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캄보디아임</p>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품목개요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8708.29호 및 제8708.99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 or 2.5%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

□ 시장 정보

[제8708.29호 및 제8708.99호 시장 정보]

| 대미 수출액 (단위: 천불) | |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 변화 (단위: %, 한국 수입액/미국 총 수입액) | |
|---------------------------------|-----------|---|-----------|
| 제8708.29호 | 제8708.99호 | 제8708.29호 | 제8708.99호 |
| | | | |
| 2024년 우리나라 주요 수출 국가 (단위: 천불) | | 2024년 미국 주요 수입 국가 (단위: 천불) | |
| 제8708.29호 | 제8708.99호 | 제8708.29호 | 제8708.99호 |
| | | |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자동차용 선쉐이드 & 시트커버]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44131 (2024.12.19.)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Higher Technology (Cambodia) Co., Ltd. | |
| 제품 |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쉐이드 (부품 번호: B01DH3687001.4) • 애틀랜타 블랙 시트커버 (부품 번호: B01SH3668001)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쉐이드: 알루미늄 필름, 플라스틱 입자 • 애틀랜타 블랙 시트커버: 폼, 직물 |
| | 용도 | • 자외선 차단용 및 시트 보호용 |
| | 완제품 HTSU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쉐이드: 8708.29.5160 • 애틀랜타 블랙 시트커버: 8708.99.8180 |
| 제조 공정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중국산 알루미늄 필름 캄보디아로 수입</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2 적층 공정 수행</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3 절단 및 봉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4 미국 수출</p> </div> </div> <p>[선쉐이드 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롤 형태의 중국산 알루미늄 필름을 캄보디아로 수입 2. 캄보디아산 플라스틱 입자와 함께 적층 공정 수행 3. 절단 및 봉제 4. 기타 공정(검사, 접기, 포장 등) 수행 5. 미국 수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중국산 직물 캄보디아로 수입</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2 적층 공정 수행</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3 절단 및 봉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4 미국 수출</p> </div> </div> <p>[시트커버 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직물을 캄보디아로 수입 2. 캄보디아산 폼과 함께 적층 공정 수행 3. 절단 및 봉제 4. 기타 공정(검사 및 포장) 수행 5.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ⅴ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Ⅳ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제301조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이 활용됨

판정 결과

Ⅳ 중국산 필름 및 직물을 캄보디아로 수입한 뒤,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 적층, 절단 및 봉제 공정은 중국산 재료를 식별 가능한 새로운 상업적 물품인 선셰이드 및 시트커버로 변형시키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캄보디아임

□ 결론

✓ 두 가지 물품 모두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캄보디아임

Ⅲ. 시사점

• 필름, 직물 등의 원재료를 적층하고 절단 및 봉제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여 해당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로 판정됨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4131 (2024.12.19.), <https://rulings.cbp.gov/ruling/N344131>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Case 7. 펌프 부분품-Fluid ends

[요약]

| | |
|---------|---|
| 사례명 | [펌프 부분품-Fluid ends]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51810 (2025.08.27.) |
| 사실관계 | <p>[시나리오 1] 중국에서 제조된 직사각형 모양의 강철 블록 및 기타 부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에서 블록을 하우징으로 가공하고 기타 부품과 함께 최종 조립하여 Fluid ends 생산</p> <p>[시나리오 2] 한국에서 제조된 직사각형 모양의 강철 블록을 중국으로 수출한 후, 중국에서 블록을 하우징으로 가공하고 기타 부품과 함께 최종 조립하여 Fluid ends 생산</p>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우징은 가압 과정에 기여하고 내부 부품을 감싸는 역할을 담당하며, 완제품 가치의 90%를 차지하므로 최종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요소임 • 반면, 하우징에 기타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은 단순히 기타 부품을 삽입하고 결합하는 단순 조립 과정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최종 물품의 원산지는 하우징이 제작된 국가이며, 이에 따라 시나리오 1에 따른 원산지는 한국, 시나리오 2에 따른 원산지는 중국임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판정사례

- **사례명:** [펌프 부분품-Fluid ends]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51810 (2025.08.27.)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Jereh Energy Equipment and Technologies Corporation (대리인: TradeLaw PC) | |
| 제품 | 제품명 | • Fluid ends |
| | 구성 | • 하우징, 밸브, 플랜지, O-링 등 |
| | 용도 | • 유압 파쇄 및 석유·가스 산업에서 사용되는 피스톤 펌프의 구성품 |
| 제조 과정 | <p>01 직사각형 모형의 강철 블록 제작 [시나리오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에서 제강, 전기슬래그 재용해, 단조 공정을 통해 직사각형 모양의 블록 제작 블록 및 기타 중국산 부품을 한국으로 수입 표면 성형, 실린더 드릴링, 열처리, 밀링, 보링 등의 공정을 통해 최종제품의 설계 및 치수에 맞도록 블록을 하우징으로 가공 기타 중국산 부품과 함께 최종 조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밸브, 플랜지, O-링 및 스프링 등의 기타 부품을 하우징에 조립 미국 수출 <p>[시나리오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1의 1번 공정이 한국에서 수행되며, 나머지 공정은 모두 중국에서 수행 | |

- **쟁점사항**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1982)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CBP는 제조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이를 만큼 복잡한지 여부는 해당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함

판정 결과

- 하우징은 가압 과정에 기여하고 내부 부품을 감싸는 역할을 담당하며, 완제품 가치의 90%를 차지하므로 최종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요소임

- ㉔ 반면, 하우징에 기타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은 단순히 기타 부품을 삽입하고 결합하는 단순 조립 과정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 ㉕ 따라서, 최종 물품의 원산지는 하우징이 제작된 국가이며, 이에 따라 시나리오 1에 따른 원산지는 한국, 시나리오 2에 따른 원산지는 중국임

□ 결론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시나리오 1의 경우 한국, 시나리오 2의 경우 중국임

II. 시사점

- 본 사례에서 Fluid ends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요소는 하우징이며, 하우징에 기타 부품들을 결합하고 조립하는 과정은 단순한 공정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1810 (2025.08.27.), <https://rulings.cbp.gov/ruling/N351810>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8. 에어컨 실외기

[요약]

| | |
|---------|--|
| 사례명 | [에어컨 실외기]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52477 (2025.08.29.) |
| 사실관계 | 중국산 응축기, 압축기, 구리 튜브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산 부품을 태국으로 수입한 뒤, PCBA 및 여러 서브 어셈블리를 생산하고, 이를 최종 조립하여 에어컨 실외기 완성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p>본 사안의 경우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산 부품들이 태국에서 서로 조립되어 실외기가 생산되나, 태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대체적으로 나사 체결, 볼트 체결, 용접 작업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공정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정은 난방 및 냉방 공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국산 부품(압축기, 응축기 등)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p>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판정사례

- **사례명:** [에어컨 실외기]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52477 (2025.08.29.)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Hisense USA Corporation | |
| 제품 | 제품명 | • 에어컨 실외기 (모델명: HD PRO, HD ULTRA, HD EDGE, HI UNI) |
| | 구성 | • 압축기, 응축기, 모터, 팬, PCBA, 밸브가 내장된 새시 |
| | 용도 | • 실내기와 결합하여 공간을 냉난방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설계 |
| 제조 공정 |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원재료 및 부품 캐나다로 수입 [상세 공정] 1. 중국산 응축기, 압축기, 구리 튜브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산 부품을 태국으로 수입 2. 태국 제조 공정 (1) PCBA 생산 - 여러 국가산 부품을 사용해 태국에서 표면 실장, 납땜 공정 등을 수행 (2) 팬 서브 어셈블리 생산 - 여러 국가산 플라스틱 펠릿을 사용해 팬 허브와 블레이드 제작 - 팬 허브, 블레이드를 중국산 부싱 및 베어링과 초음파 용접 및 열처리하여 결합 (3) 응축기 서브 어셈블리 생산 - 알루미늄 포일을 핀 형태로 성형 및 프레스 처리 - 중국산 구리 튜브를 절단하여 U자 형태로 굽힘 - U자형 튜브, 핀, 커넥터, 조인트 및 플러그 등을 중국산 응축기에 브레이징 - 응축기에 질소 충전 후 테스트 수행 (4) 압축기 서브 어셈블리 생산 - 중국산 압축기에 태국에서 생산된 금속 패널, 판, 브래킷 등 부착 (5) 최종 조립 - 나사 및 볼트 체결, 용접 등 비교적 단순한 공정 수행</p> <p>02 PCBA 및 각종 서브 어셈블리 생산</p> <p>03 최종 조립</p> <p>04 미국 수출</p> </div> <p>3. 미국 수출</p> | |

- **쟁점사항**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ⅴ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1982)*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본 사안의 경우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산 부품들이 태국에서 서로 조립되어 실외기가 생산되나, 태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대체적으로 나사 체결, 볼트 체결, 용접 작업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공정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정은 난방 및 냉방 공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국산 부품(압축기, 응축기 등)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 결론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임

II. 시사점

- 압축기, 응축기와 같이 최종 물품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요소를 수입한 뒤, 단순히 나사 체결, 볼트 체결, 용접 등과 같은 작업만이 수행된 경우, 실질적 변형을 인정받기 어려움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2477 (2025.08.29.), <https://rulings.cbp.gov/ruling/N352477>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9. 물티슈

[요약]

| | |
|---------|--|
| 사례명 | [물티슈]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52216 (2025.09.08.) |
| 사실관계 | 중국산 부직포 롤을 한국으로 수입한 뒤, 베이스 시트 생산 및 한국산 독점 세정 용액을 함침하여 생산한 물티슈를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최종제품에 본질적 성격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한국산 독점 세정 용액이며, 중국산 부직포 롤은 단순히 이를 운반하는 운반체 역할을 담당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p> |
| 근거법령 | - |

I. 판정사례

- **사례명:** [물티슈]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52216 (2025.09.08.)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Kimberly-Clark Global Sales, LLC (대리인: Sidley Austin LLP) | |
| 제품 | 제품명 | • Cottonelle® 플러셔블 물티슈 |
| | 구성 | • 독점 세정 용액 • 부직포 |
| | 용도 | • 개인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습윤 처리된 일회용 물티슈 |
| 제조 공정 |  <p>01 중국산 부직포 롤 한국수입 02 물티슈 생산 03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부직포 롤을 한국으로 수입 2. 한국 제조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직포 롤을 절단하여 베이스 시트 생산 - 한국산 독점 세정 용액을 베이스 시트에 함침 - 절단, 압축 등의 공정 수행 후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 3.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ⅴ 무역 구제 조치 및 추가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판정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1982)*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ⅴ 최종제품에 본질적 성격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한국산 독점 세정 용액이며, 중국산 부직포 롤은 단순히 이를 운반하는 운반체 역할을 담당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II. 시사점

- 세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의 경우, 최종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요소는 세정 용액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해당 용액이 제조된 국가가 원산지국으로 판정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2216 (2025.09.08.), <https://rulings.cbp.gov/ruling/N352216>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10. 자동차 에어백 시스템

[요약]

| | |
|---------|--|
| 사례명 | [자동차 에어백 시스템]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52543 (2025.09.09.) |
| 사실관계 | 미국산 인플레이터, 태국산 에어백 쿠션, 중국산 하드웨어 등을 한국으로 수입한 뒤, 이를 최종 조립하여 생산한 자동차용 에어백을 미국으로 수출 |
| 쟁점 및 판정 | <p>①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은 인플레이터가 최종제품의 주요 구성품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에서의 최종 조립 공정은 단순한 부품 결합에 불과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인플레이터의 원산지인 미국이라고 주장함 - 인플레이터는 화학 추진제를 포함하고 있어 에어백 제어 장치의 명령에 따라 급격한 화학 반응을 통해 가스를 발생시켜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동력원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 • 하지만, CBP는 인플레이터가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으며, 충돌 시 운전자를 잠재적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쿠션을 제공하는 것은 팽창된 에어백이므로, 에어백이 전체 모듈의 성격(character)을 결정하는 주요 부품이라고 판단 • 이에 따라, 무역 구제 조치, 추가 관세 적용 및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에어백의 원산지인 태국임 |
| 근거법령 | - |

I. 판정사례

□ **사례명:** [자동차 에어백 시스템]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52543 (2025.09.09.)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ZF Passive Safety Korea Co., Ltd (대리인: Daeyu Customs Brokerage Corp) | |
| 제품 | 제품명 | • 자동차 에어백 시스템 (부품 번호: A0055U2616J A) |
| | 구성 | • 인플레이터 (미국산) • 에어백 쿠션 및 플레이트 (태국산) • 하드웨어 (중국산) • 커버 (한국산) • 기타 부품 |
| | 용도 | • 충돌 감지 시 승객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용도 |
| 제조 공정 |  <p>01 외국산 부품 한국 수입</p> <p>02 최종 조립</p> <p>03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산 부품 한국으로 수입 한국에서 최종 조립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품 삽입, 나사 체결, 기능 테스트 등 수행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무역 구제 조치 및 추가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판정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1982)*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 신청인은 인플레이터가 최종제품의 주요 구성품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에서의 최종 조립 공정은 단순한 부품 결합에 불과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인플레이터의 원산지인 미국이라고 주장함
 - 인플레이터는 화학 추진제를 포함하고 있어 에어백 제어 장치의 명령에 따라 급격한 화학 반응을 통해 가스를 발생시켜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동력원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
- ☐ 하지만, CBP는 인플레이터가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으며, 충돌 시 운전자를 잠재적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쿠션을 제공하는 것은 팽창된 에어백이므로, 에어백이 전체 모듈의 성격(character)을 결정하는 주요 부품이라고 판단

㉔ 이에 따라, 무역 구제 조치, 추가 관세 적용 및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에어백의 원산지인 태국임

□ 결론

√ 무역 구제 조치, 추가 관세 적용 및 원산지표시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에어백의 원산지인 태국임

II. 시사점

- 자동차용 에어백의 경우,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에어백이 전체 모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요소로 판단되며, 본 사례의 경우 에어백이 생산된 국가가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로 판정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2543 (2025.09.09.), <https://rulings.cbp.gov/ruling/N352543>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Origin Case

Vol. 8

- Case 1 - 드로잉 태블릿
- Case 2 - 와이퍼 블레이드 (제8512.90호)
- Case 3 - 캐놀라에 삽입된 봉합사
- Case 4 - TFT-LCD 모듈
- Case 5 - 고압 세척기
- Case 6 - 리튬이온 배터리 팩
- Case 7 - 망치
- Case 8 - 정수기 필터 (제8421.21호)
- Case 9 - 집적 회로
- Case 10 - 소형 드론 세트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Case 1. 드로잉 태블릿

[요약]

| | |
|---------|---|
| 사례명 | [드로잉 태블릿]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11606 (2021.06.16.) |
| 사실관계 | 전면·후면 커버 모듈, 전자기 공명 보드, blank PCB, 스타일러스 펜 등의 중국산 부품을 대만으로 수입한 뒤, SMT 공정을 통한 3가지 PCBA(키패드 보드, 스케일러 보드, 센서 제어 보드) 제조, 일본 및 대만산 펌웨어 설치, 최종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드로잉 태블릿 완성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P는 SMT 공정을 이용해 다양한 기관에 마이크로 전자 부품을 실장하는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만에서 생산된 세 개의 개별 PCBA(SCB, 스케일러 보드, 키패드 보드)의 원산지는 대만이라고 판정함 • 대만산 PCBA와 중국산 부품 및 구성요소는 각 부품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 하므로 해당 장치에 본질적 기능을 부여하는 지배적인 부품을 특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함 • 결과적으로 대만에서 수행되는 여러 공정(PCBA 제조,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각 부품 조립 등)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공정인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에서 수행되는 작업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하므로 대만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판정사례²⁰⁾

- **사례명:** [드로잉 태블릿]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11606 (2021.06.16.)
- **사실관계**

| | | | |
|--------------|--|---|----|
| 요청자 | • Wacom Technology Corporation (대리인: Damon V. Pike, Esq.) | | |
| 제품 | 제품명 | • Wacom Cintiq 16 with Pro Pen 2 |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CD 디스플레이 모듈 • 전면·후면 커버 모듈 • 4가지 종류의 PC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기 공명 보드 (EMRB, Electro-Magnetic Resonance Board) - 키패드 보드 (Keypad Board) - 스케일러 보드 (Scaler Board) - 센서 제어 보드 (SCB, Sensor Control Board) • 전원 어댑터, 전원 케이블, 스타일러스 펜 등 | |
|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해 드로잉 및 이미지 작업을 수행 •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자동 자료 처리 장치에 연결하여 사용 | |
| | 기능 | 부품 | 기능 |
| | EMR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센서 코일이 부착된 단순한 PCB 보드로서 LCD 화면 뒤에 부착되어 센서 코일이 자기장을 통해 각 펜 스트로크를 캡처할 수 있도록 설계됨 | |
| | 키패드 보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블릿 내 전류 흐름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며, 기본적으로 전원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담당 | |
| | 스케일러 보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CD 화면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출력 장치로 4개의 PCBA 중 가장 많은 수의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 |
| | SC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RB에 부착된 센서 코일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여 펜의 위치, 압력, 속도를 인식하고, 이를 해석하여 디지털화된 입력 신호로 변환한 후 스케일러 보드로 전송 • SCB가 존재하지 않으면, EMR 보드는 센서로 기능하지 못함 | |
| | 스타일러스 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CD 화면 위에 이미지를 그리는 장치 | |
| | LCD 디스플레이 모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CD 화면을 통해 이미지를 표시하는 출력 장치 | |
| 제조 공정 |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01 중국에서 커버 모듈, EMRB 등 제조 02 중국산 부품 대만 수출 03 대만에서 PCBA 제조, 펌웨어 설치 등 공정 수행 04 최종 제품 완성 05 미국 수출 </p>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전면·후면 커버 모듈, EMRB, 스타일러스 펜, 펜 홀더, 전원 어댑터, 전원 케이블, blank PCB를 대만으로 수입 2. 대만 제조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T 공정을 통해 SCB, 스케일러 보드, 키패드 보드 제조 - 일본산 WTC 태블릿 펌웨어 및 대만산 스케일러 보드 펌웨어를 SCB 및 스케일러 보드에 설치 - 스케일러 보드 및 키패드 보드를 프론트 커버 모듈에 부착 - SCB를 프론트 커버 모듈 내 LCD 패널에 부착 - 백커버 모듈과 프론트 커버 모듈을 나사를 이용해 결합 3. 미국 수출 | | |

20)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쟁점사항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해당 부품들이 그 개별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요소가 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573 F. Supp. 1149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 요소로는 조립 작업의 성격(예: 조립되는 부품 수), 수행 작업 공정의 다양성, 작업 소요 시간, 숙련도, 세부 작업,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이 있음

◆ 참고 판정: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and *C.S.D. 90-97*

- 이 외에도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이후 수행되는 검사 및 시험 절차의 범위와 성격, 제조 과정에서 요구되는 작업자의 숙련도와 같은 요소들도 고려될 수 있음
- CBP는 PCBA와 관련하여 SMT(Surface Mount Technology, 표면 실장 기술)를 이용해 기판에 다양한 마이크로 전자 부품을 실장하는 작업은 반 기판(blank PCB) 및 해당 부품들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수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C.S.D. 19 Cust. Bull. 844 (1985)*

- CBP는 본 사안과 동일한 제품인 Cintiq 16의 원산지에 대해 사전판정 결정문을 발표한 바 있으나, 본 사안과는 제조 공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8714 (2020.01.23.)*

(사례) 대부분의 제조 공정은 본 사례와 비슷하나 네 개의 PCBA 중 EMRB, 키패드 보드, 스케일러 보드가 중국에서 제조되었고 대만에서는 SCB 제조 및 각 부품들의 부착, 고정, 테이핑, 접착 등의 작업만 이루어짐

(판정) 중국에서 제조되어 대만으로 수입된 세 개의 PCBA 및 개별 서브 어셈블리들은 Cintiq 16에 사용되기 위해 전용 제작된 것으로, 대만에서의 조립 작업을 통해 물리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는 중국인 것으로 판정

- CBP는 여러 개의 PCBA를 포함한 장치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 해당 장치에 포함된 PCBA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해당 장치에 본질을 부여하는 지배적인 부품이 무엇인지, 완성품 내에서 각 부품 및 서브 어셈블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등을 고려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8544 (2020.01.15.)*

(사례) 대만산 주요 PCBA 2개와 중국산 보조 PCBA 2개를 포함한 여러 부품을 중국에서 가공하여 위성 텔레비전 수신기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생산

(판정) 대만산 주요 PCBA가 완제품의 본질을 부여하며, 중국에서 수행된 조립 공정이 이러한 주요 PCBA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을 원산지로 판정

- 다만, 어떤 부품이 더 중요한지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 각 국가에서 수행된 가공 공정의 성격을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 수행된 장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015324 (2008.04.23.)*

(사례) 중국 또는 대만산 LCD 모니터 2개, 특별한 빔스플리터 미러 및 맞춤형 스탠드로 구성된 입체(스테레오스코픽) 디스플레이로서, 이들 모니터 중 하나는 미국으로 수입된 후 광학 변환(optical transformation) 공정 및 조립, 정렬, 시험을 거치고 미국에서 조립을 통해 최종제품이 생산됨

(판정) 미국에서 수행된 편광(polarization) 공정이 LCD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고 전체 시스템에 입체 디스플레이 기능을 부여하며, 디스플레이의 조립, 시험, 정렬에는 숙련된 기술자의 상당한 시간과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므로 광범위한 가공 작업이 수행된 미국을 원산지로 판정

판정 결과

- Ⅴ CBP는 SMT 공정을 이용해 다양한 기관에 마이크로 전자 부품을 실장하는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만에서 생산된 세 개의 개별 PCBA(SCB, 스케일러 보드, 키패드 보드)의 원산지는 대만이라고 판정함
- Ⅴ 신청인은 대만에서 생산된 3개의 PCBA가 Cintiq 16 드로잉 태블릿에 본질적인 기능을 부여하며, 특히 SCB는 태블릿 내부에서 압력 감지 기술을 제공하는 핵심 부품으로, 단순히 스타일러스를 이용해 LCD 화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반 태블릿(Apple iPad, Microsoft Surface)과 Cintiq 16을 구분 짓는 요소라고 주장
 - 또한 대만산 PCBA들이 중국산 부품 및 서브 어셈블리보다 훨씬 정교하며, 포함된 개별 부품 수 역시 훨씬 많다고 주장함
- Ⅴ 대리인의 주장에 대해 CBP는 대만산 PCBA와 중국산 부품 및 구성요소는 각 부품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 하므로 해당 장치에 본질적 기능을 부여하는 지배적인 부품을 특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함
- Ⅴ 결과적으로 대만에서 수행되는 여러 공정(PCBA 제조,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각 부품 조립 등)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공정인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에서 수행되는 작업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하므로 대만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 결론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으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II. 시사점

- 여러 개의 PCBA로 구성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장치에 포함된 여러 PCBA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며, 어떤 부품이 더 중요한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핵심적인 작업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1606 (2021.06.16.), <https://rulings.cbp.gov/ruling/H311606>
- CBP Ruling NY N308714 (2020.01.23), <https://rulings.cbp.gov/ruling/N308714>
- CBP Ruling NY N308544 (2020.01.15), <https://rulings.cbp.gov/ruling/N308544>
- CBP Ruling HQ H015324 (2008.04.23), <https://rulings.cbp.gov/ruling/H01532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

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Case 2. 와이퍼 블레이드

[요약]

| | |
|---------|---|
| 사례명 | [와이퍼 블레이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14566 (2021.06.17.) |
| 사실관계 | 멕시코에서 중국산 강철 코일을 절단, 절곡, 펀칭하여 플랫 블레이드 버테브라(flat blade vertebra)를 제조하고 중국, 코소보 등에서 수입된 부품들과 최종 조립하여 와이퍼 블레이드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강철 코일은 멕시코에서의 절단, 절곡 공정 등을 통해 특정 제품 사양을 충족하도록 제조되며, 완성된 플랫 블레이드 버테브라의 정밀한 굽힘은 와이퍼 성능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강철 코일은 멕시코에서의 공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판단됨 이후 행해진 조립 공정은 크게 복잡하진 않으나, 전반적인 조립 공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멕시코에서 수행된 가공은 수입된 원자재들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변형시켰다고 판단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임(제301조 무역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품목개요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8512.9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2.5%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8512.9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와이퍼 블레이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14566 (2021.06.17.)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Robert Bosch LLC | |
| 제품 | 제품명 | • FB3 와이퍼 블레이드 |
| | 구성 | • 강철 코일, 후크 커넥터, 홀딩 스프링, 플라스틱 커버 (중국산) • 고무 와이퍼 블레이드 엘리먼트 (유럽산) • 기본 어댑터, 스포일러, 엔드 캡 (코소보산) |
| | 용도 | • 차량 앞 유리의 물, 이물질, 먼지를 제거하는 용도 |
| | 원재료 HTSUS | • 강철 코일 : 7217.90.50 • 고무 와이퍼 블레이드 엘리먼트 : 4016.99.60 • 기본 어댑터, 스포일러, 엔드 캡 : 8512.90.90 • 후크 커넥터, 홀딩 스프링, 플라스틱 커버 : 8512.90.90 |
| | 완제품 HTSUS | • 8512.90.90 |
| 제조 공정 | <p>01 여러 국가산 재료 멕시코로 수입 → 02 멕시코에서 중국산 강철 코일 가공 → 03 최종 조립 → 04 미국 수출</p> | |
|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 코소보 등의 국가에서 멕시코로 부품 수입 2. 중국산 강철 코일을 절단, 절곡, 펀칭하여 플랫 블레이드 버테브라 제조 3. 중국, 코소보 등에서 수입된 부품들과 조립하여 최종제품 생산 4.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해당 부품들이 그 개별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요소가 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573 F. Supp. 1149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

요소로는 조립 작업의 성격(예: 조립되는 부품 수), 수행 작업 공정의 다양성, 작업 소요 시간, 숙련도, 세부 작업,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이 있음

◆ 참고 판정: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and C.S.D. 90-97*

- 만약,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사례) 플렉스 소켓(flex sockets), 스피더 핸들(speeder handles), 플렉스 핸들(flex handles) 제작용 특정 수공구 부품들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열처리, 표면 세척, 녹 및 부식 방지 처리 등 수행

(판결) 해당 부품들이 대부분 수입 전에 냉간성형(cold-formed) 또는 열간단조(hot-forged) 방식으로 최종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었으며, 미국으로 수입 후에 수행된 가공(강도를 높이기 위한 열처리, 표면 세척을 위한 샌드블라스트 처리, 녹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전기 도금 처리 등)은 수입 부품의 명칭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가공 후 물품의 성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해당 물품의 용도는 수입 시점에 이미 정해졌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 수입 후 가공이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 물리적 변형(physical change)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성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제품의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서 이미 사전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CBP는 금속 가공 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단순히 길이나 폭을 자르는 작업과 달리 완제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합한 형태나 패턴으로 절단하거나 절곡하는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구성한다고 판단해 옴

◆ 참고 판례: *CBP Ruling HQ 055684 (1979.08.14.)*

• 수입된 강철 튜브를 길이에 맞게 자르고 세척하고 절곡하여 구성 부품의 형상 및 구조로 가공한 경우 또는 강철 튜브를 길이에 맞게 절단하고 평탄화한 후 구멍을 뚫는 가공을 거친 경우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판정함

◆ 참고 판례: *CBP Ruling HQ 555811 (1992.03.20.)*

• 알루미늄 평판에 대해 다이 컷, 프레스, 특정 모양으로 성형 등의 공정을 거쳐 그릴을 생산한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함

◆ 참고 판례: *CBP Ruling HQ 555265 (1989.07.03.) 및 HQ 557159 (1994.01.11.)*

• 알루미늄 스트립에 크라우닝, 절단, 천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베네치아 블라인드를 생산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

- 반면, CBP는 주로 조립으로 이루어진 공정에 대해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임

◆ 참고 판례: *CBP Ruling HQ H290528 (2018.02.21.)*

(사례) 이탈리아에서 제조된 케이싱, 코어, 장착 브래킷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케이싱과 코어에 천공하고 장착용 블레이드를 압출·기계 가공·굽힘·크기에 맞게 절단한 후, 코어를 케이싱에 삽입하고 장착 블레이드를 패널에 고정하여 알루미늄 패널을 생산함

(판정) 미국 내 공정은 완제품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처리에 불과하여 케이싱과 코어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며, 수입 전 이탈리아에서 행해진 가공이 훨씬 더 복잡하고 본질적이므로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판정 결과

- 중국산 강철 코일은 멕시코에서의 절단, 절곡 공정 등을 통해 특정 제품 사양을 충족하도록 제조되며, 완성된 플랫 블레이드 베테브라의 정밀한 굽힘은 와이퍼 성능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강철 코일은 멕시코에서의 공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판단됨
- 이후 행해진 조립 공정은 크게 복잡하진 않으나, 전반적인 조립 공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멕시코에서 수행된 가공은 수입된 원자재들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변형시켰다고 판단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임(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III. 시사점

- 특정 사양 및 기능이 최종제품의 본질을 구성하는 경우, 이러한 사양 및 기능을 충족시키는 공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원산지판정에 중요 판단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

IV.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4566 (2021.06.17.), <https://rulings.cbp.gov/ruling/H314566>
- CBP Ruling HQ 555811 (1992.03.20), <https://rulings.cbp.gov/ruling/555811>
- CBP Ruling HQ 555265 (1989.07.03), <https://rulings.cbp.gov/ruling/555265>
- CBP Ruling HQ 557159 (1994.01.11), <https://rulings.cbp.gov/ruling/557159>
- CBP Ruling HQ H290528 (2018.02.21), <https://rulings.cbp.gov/ruling/H290528>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3. 캐놀라에 삽입된 봉합사

[요약]

| | |
|---------|--|
| 사례명 | [캐놀라에 삽입된 봉합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18838 (2021.07.29.) |
| 사실관계 | 한국에서 제작 및 절단한 봉합사를 미국으로 수출하여 미국에서 봉합사를 미국산 캐놀라 내부에 삽입하고 투명 플라스틱 슬리브(clear plastic slip-on piece) 및 필팩(peel pack) 포장 후 멸균 처리하여 최종제품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에서 수행된 공정은 수입된 봉합사의 명칭, 성질, 용도를 변경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고 봉합사가 해당 의료기기에 본질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요소이므로 원산지는 한국임 - (명칭) 봉합사라는 명칭은 캐놀라에 삽입되고 멸균 처리되더라도 동일하게 유지됨 - (성질) 완성된 의료기기의 본질은 봉합사에 의해 부여되고 캐놀라는 단지 봉합사를 피부 속에 삽입하기 위한 수단일 뿐 시술 이후 캐놀라는 제거되고 봉합사만이 피부 아래 남아 조직을 리프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봉합사는 미국 내 가공 이후에도 형태와 재질 구성이 유지되므로 성질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 (용도) 봉합사는 수입 시점에 이미 피부를 봉합하거나 고정하는 용도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캐놀라에 삽입된 이후에도 미용적 시술에 사용되어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였고, 멸균 공정 또한 봉합사의 성질이나 용도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²¹⁾

- **사례명:** [캐놀라에 삽입된 봉합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18838 (2021.07.29.)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Regen Suppliers | |
| 제품 | 제품명 | • 캐놀라에 삽입된 봉합사 |
| | 구성 | • 폴리디옥사논(PDO)으로 된 흡수성 봉합사(suture) • 의료용 등급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속이 빈 캐놀라(cannula) |
| | 용도 | • 연조직의 근접 봉합에 사용 • 캐놀라를 사용해 봉합사가 피하에 삽입되며, 삽입 후 캐놀라는 제거되고 봉합사는 남아 연조직을 리프팅하는 역할을 담당 |
| 제조 공정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한국에서 봉합사 생산 및 미국 수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2 미국에서 봉합사를 캐놀라 내부에 삽입</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3 멸균 및 포장</p> </div>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에서 제조 및 절단된 봉합사를 미국으로 수출 2. 미국에서 캐놀라 생산 3. 봉합사를 캐놀라 내부에 삽입 4. 캐놀라와 봉합사를 투명 플라스틱 슬리브에 포장 후 필팩으로 감싸 멸균 처리 5. 공인된 의료 전문가에게 개별 포장 단위 또는 대량 포장 형태로 판매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정: *Texas Instruments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1982)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해당 부품들이 그 개별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요소가 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573 F. Supp. 1149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21)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만약,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CBP는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 정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고려해 사례별(case-by-case)로 판정을 내리며, 이때 핵심 판단 요소는 수행된 작업의 범위, 원재료가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 구성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사례) 플렉스 소켓(flex sockets), 스피더 핸들(speeder handles), 플렉스 핸들(flex handles) 제작용 특정 수공구 부품들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열처리, 표면 세척, 녹 및 부식 방지 처리 등 수행

(판결) 해당 부품들이 대부분 수입 전에 냉간성형(cold-formed) 또는 열간단조(hot-forged) 방식으로 최종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었으며, 미국으로 수입 후에 수행된 가공(강도를 높이기 위한 열처리, 표면 세척을 위한 샌드블라스트 처리, 녹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전기 도금 처리 등)은 수입 부품의 명칭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가공 후 물품의 성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해당 물품의 용도는 수입 시점에 이미 정해졌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 성질의 변화와 관련하여,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품이나 구성품의 성질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야 하며, 구성 부품의 형태(form)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성질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때 성질의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 완성품의 본질(essence)을 검토함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1318 (2016)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at 225

• 수입된 신발의 갑피가 미국 내에서 밀창과 결합하는 공정을 거칠 경우, 해당 갑피가 완성된 신발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제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용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수입된 제품의 용도가 가공 후 생산된 최종제품의 용도와 호환되지 않을 정도로 변경되어야 하며, 수입 시점에 이미 최종 용도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1318 (2016)

판정 결과

- 미국 내에서 수행된 공정은 수입된 봉합사의 명칭, 성질, 용도를 변경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고 봉합사가 해당 의료기기에 본질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요소이므로 원산지는 한국임
 - (명칭) 봉합사라는 명칭은 캐놀라에 삽입되고 멸균 처리되더라도 동일하게 유지됨
 - (성질) 완성된 의료기기의 본질은 봉합사에 의해 부여되고 캐놀라는 단지 봉합사를 피부 속에 삽입하기 위한 수단일 뿐 시술 이후 캐놀라는 제거되고 봉합사만이 피부 아래 남아 조직을 리프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봉합사는 미국 내 가공 이후에도 형태와 재질 구성이 유지되므로 성질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 (용도) 봉합사는 수입 시점에 이미 피부를 봉합하거나 고정하는 용도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캐놀라에 삽입된 이후에도 미용적 시술에 사용되어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였고, 멸균 공정 또한 봉합사의 성질이나 용도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캐놀라에 삽입된 봉합사의 원산지는 한국임

II. 시사점

- 특정 공정 수행 후에도 부품의 형태나 사전에 결정된 용도가 유지될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으며, 어느 요소가 제품의 본질을 부여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8838 (2021.07.29.), <https://rulings.cbp.gov/ruling/N320557>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4. TFT-LCD 모듈

[요약]

| | |
|---------|---|
| 사례명 | [TFT-LCD 모듈]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20557 (2021.08.04.) |
| 사실관계 | 일본에서 TFT-LCD 셀 시트를 제작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에서 셀 시트를 개별 셀로 절단하고 부품들에 부착하는 등 최종 조립하여 TFT-LCD 모듈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FT-LCD 셀은 절단 시점과 관계없이 완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요소이며, 이를 생산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행된 복잡한 제조 공정은 해당 셀이 디스플레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최종 용도를 미리 결정함 반면, 중국에서의 공정은 해당 셀을 최종제품과 명칭, 성질, 용도 면에서 구별되는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일본임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²²⁾

- **사례명:** [TFT-LCD 모듈]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20557 (2021.08.04.)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JDI Display America, Inc. (대리인: Toshiba Logistics America, Inc.) | |
| 제품 | 제품명 | • TFT-LCD 모듈 |
| | 구성 | • TFT-LCD 셀 • 편광판 • 백라이트 • 구동 및 제어용 인쇄회로기판 • 연결용 플렉시블 PCBA |
| | 용도 | • 다양한 소비자용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 |
| 제조 공정 |  <p>01 일본에서 제조된 TFT-LCD 셀 시트 중국으로 수출</p> <p>02 중국에서 셀 절단 및 최종 제품 조립</p> <p>03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에서 TFT-LCD 셀 시트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기상증착법(CVD)을 통해 기판 위에 트랜지스터 형성 - 컬러 매트릭스를 유리 기판 위에 제작하여 컬러 필터 제조 - 컬러 필터와 TFT 사이에 액정 층을 주입한 후 접합하여 TFT-LCD 셀 시트 제조 중국으로 TFT-LCD 셀 시트 수출 중국 제조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셀 시트를 개별 셀로 절단 - 절단된 셀을 제어 회로가 포함된 PCBA에 부착 - 편광판, 백라이트, 연결용 플렉시블 PCBA 부착 완성된 최종제품 포장 후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22)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수입 후 가공이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 물리적 변형(physical change)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성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226, 542 F. Supp. 1026, 1031,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제품의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서 이미 사전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또한 조립과 관련하여 단순 조립인지 또는 보다 복잡한 조립인지 여부를 평가하며, 개별 부품들이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는지를 검토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판정 결과

- TFT-LCD 셀은 절단 시점과 관계없이 완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요소이며, 이를 생산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행된 복잡한 제조 공정은 해당 셀이 디스플레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최종 용도를 미리 결정함
- 반면, 중국에서의 공정은 해당 셀을 최종제품과 명칭, 성질, 용도 면에서 구별되는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일본임

□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최종제품인 TFT-LCD 모듈의 원산지는 일본임

II. 시사점

- 제품에 핵심 기능을 부여하는 단일 구성요소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요소를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될 수 있으며, 단순 조립이나 절단 등의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0557 (2021.08.04.), <https://rulings.cbp.gov/ruling/N320557>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5. 고압 세척기

[요약]

| | |
|---------|---|
| 사례명 | [고압 세척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21429 (2021.09.23.) |
| 사실관계 | 중국에서 펌프 어셈블리, 로터 코어, 스테이터 코어, 모터 코어 등을 제작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베트남에서 해당 부품들에 대한 추가 조립 및 최종 조립 과정을 거쳐 고압 세척기 생산 (사용된 자재의 81%는 중국산이며, 나머지 19%는 베트남산임)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된 고압 세척기의 본질은 압력을 이용해 강력한 워터 제트를 분사함으로써 세척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모터와 펌프의 능력에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모터와 펌프의 본질은 각각 중국산 펌프, 스테이터 및 로터 코어, 모터 코어에 의해 제공됨 베트남에서의 작업(압입, 나사 조립, 절단, 도색 등)은 대부분 단순 작업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정을 통해 펌프, 스테이터, 로터 및 모터 코어의 본질이 변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결과적으로, 최종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부품들이 모두 중국산에 해당하고 베트남에서 해당 부품들의 목적과 기능이 변화하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²³⁾

- **사례명:** [고압 세척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21429 (2021.09.23.)
- **사실관계**

| 요청자 | • Central Purchasing, LLC | | | | | | | | | | | |
|-------------|--|--|------|----|---------|--|-------|---|-------|---|-------------|---|
| 제품 | 제품명 | • 휴대용 전기식 고압 세척기 (모델 번호: 56877) | | | | | | | | | | |
| | 구성 | • 중국산 부품: 펌프 어셈블리, 스테이터 코어, 로터 코어, 모터 코어, 세제 탱크, 내장 호스 릴, 고압 호스, 분사 건 등 • 베트남산 부품: 손잡이, 프레임, 하우징, 포장재 등 • 사용된 자재의 81%는 중국산이며, 나머지 19%는 베트남산임 | | | | | | | | | | |
| | 용도 | • 모터를 이용해 펌프를 구동하여 호스와 노즐을 통해 물을 강하게 분사하여 다양한 표면을 청소 | | | | | | | | | | |
| 제조 공정 |  <p>01 중국산 부품 베트남으로 수입 → 02 베트남에서 최종 조립 → 03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펌프 어셈블리, 스테이터 코어, 로터 코어, 모터 코어 등 중국산 부품을 베트남으로 수입 2. 베트남 제조공정 <table border="1" data-bbox="341 1125 1339 1446"> <thead> <tr> <th>제조공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스테이터 조립</td> <td>중국산 스테이터 코어에 절연지 삽입, 권선, 테이핑, 도색, 튜브 및 전선 절단, 단자 설치 등의 공정 수행</td> </tr> <tr> <td>로터 조립</td> <td>중국산 로터 코어에 샤프트, 플레이트 및 정류자 압입, 절연지 삽입, 권선 및 용접 등의 공정 수행</td> </tr> <tr> <td>모터 조립</td> <td>베트남에서 추가 공정을 통해 제조된 스테이터와 로터를 중국산 모터 코어와 결합하여 최종 모터 어셈블리 생산</td> </tr> <tr> <td>최종 고압세척기 조립</td> <td>모터 어셈블리, 펌프 어셈블리, 세제 탱크, 내장 호스 릴, 고압 호스, 분사 건 등을 조립하여 최종제품 생산</td> </tr> </tbody>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미국 수출 | | 제조공정 | 내용 | 스테이터 조립 | 중국산 스테이터 코어에 절연지 삽입, 권선, 테이핑, 도색, 튜브 및 전선 절단, 단자 설치 등의 공정 수행 | 로터 조립 | 중국산 로터 코어에 샤프트, 플레이트 및 정류자 압입, 절연지 삽입, 권선 및 용접 등의 공정 수행 | 모터 조립 | 베트남에서 추가 공정을 통해 제조된 스테이터와 로터를 중국산 모터 코어와 결합하여 최종 모터 어셈블리 생산 | 최종 고압세척기 조립 | 모터 어셈블리, 펌프 어셈블리, 세제 탱크, 내장 호스 릴, 고압 호스, 분사 건 등을 조립하여 최종제품 생산 |
| | 제조공정 | 내용 | | | | | | | | | | |
| | 스테이터 조립 | 중국산 스테이터 코어에 절연지 삽입, 권선, 테이핑, 도색, 튜브 및 전선 절단, 단자 설치 등의 공정 수행 | | | | | | | | | | |
| 로터 조립 | 중국산 로터 코어에 샤프트, 플레이트 및 정류자 압입, 절연지 삽입, 권선 및 용접 등의 공정 수행 | | | | | | | | | | | |
| 모터 조립 | 베트남에서 추가 공정을 통해 제조된 스테이터와 로터를 중국산 모터 코어와 결합하여 최종 모터 어셈블리 생산 | | | | | | | | | | | |
| 최종 고압세척기 조립 | 모터 어셈블리, 펌프 어셈블리, 세제 탱크, 내장 호스 릴, 고압 호스, 분사 건 등을 조립하여 최종제품 생산 | | | | | | | | | |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23)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수입 후 가공이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 물리적 변형(physical change)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성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226, 542 F. Supp. 1026, 1031,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제품의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서 이미 사전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또한 조립과 관련하여 단순 조립인지 또는 보다 복잡한 조립인지 여부를 평가하며, 개별 부품들이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는지를 검토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판정 결과

- ㉑ 완성된 고압 세척기의 본질은 압력을 이용해 강력한 워터 제트를 분사함으로써 세척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모터와 펌프의 능력에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모터와 펌프의 본질은 각각 중국산 펌프, 스테이터 및 로터 코어, 모터 코어에 의해 제공됨
- ㉒ 베트남에서의 작업(압입, 나사 조립, 절단, 도색 등)은 대부분 단순 작업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정을 통해 펌프, 스테이터, 로터 및 모터 코어의 본질이 변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㉓ 결과적으로, 최종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부품들이 모두 중국산에 해당하고 베트남에서 해당 부품들의 목적과 기능이 변화하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 결론

✓ 원산지표시 목적상 최종제품인 고압 세척기의 원산지는 중국임

II. 시사점

- 특정 부품이 완제품에 본질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핵심 부품의 생산국이 최종제품의 원산지가 될 수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1429 (2021.09.23.), <https://rulings.cbp.gov/ruling/N321429>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6. 리튬이온 배터리 팩

[요약]

| | |
|---------|--|
| 사례명 | [리튬이온 배터리 팩]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29847 (2023.01.10.) |
| 사실관계 | 배터리 셀(중국, 일본 혹은 한국에서 제조)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부품을 캐나다로 수입한 후, 가압, 경화, 표면 처리, 결합 등의 공정을 거쳐 배터리 팩 제조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최종제품인 배터리 팩의 본질은 전력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은 중국, 일본 혹은 한국에서 수입된 배터리 셀에 의해 부여되는 바, 캐나다에서의 공정을 통해 핵심 구성요소인 배터리 셀의 기능 및 용도가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배터리 셀의 제조국이 원산지로 판정됨</p>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²⁴⁾

- **사례명:** [리튬이온 배터리 팩]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29847 (2023.01.10.)
- **사실관계**

| 요청자 | • Hexagon Purus Systems USA LLC | | | | | | | |
|------------------|---------------------------------|---|------------------|--|--------------|-------|------------|-------------|
| 제품 | 제품명 | • 리튬이온 배터리 팩 (부품 번호: 40007000) | | | | | | |
| | 구성 | • 배터리 팩 -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2">리튬이온 배터리 모듈 구성요소</th> </tr> <tr> <td>- 리튬이온 배터리 셀</td> <td>- 냉각판</td> </tr> <tr> <td>- 상·하부 하우징</td> <td>- 배터리 관리 보드</td> </tr> <tr> <td colspan="2">- 셀 홀더 및 전류 집전체</td> </tr> </table> |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 구성요소 | | - 리튬이온 배터리 셀 | - 냉각판 | - 상·하부 하우징 | - 배터리 관리 보드 |
|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 구성요소 | | | | | | | | |
| - 리튬이온 배터리 셀 | - 냉각판 | | | | | | | |
| - 상·하부 하우징 | - 배터리 관리 보드 | | | | | | | |
| - 셀 홀더 및 전류 집전체 | | | | | | | | |
| 용도 | • 다양한 전기 배터리 시스템에서 사용 | | | | | | | |

| | | | |
|----------|---|--|--|
| 제조 공정 | <p style="text-align: center;"> 01 여러 국가의 부품을 캐나다로 수입 02 캐나다에서 배터리 모듈 및 배터리 팩 조립 03 미국 수출 </p> | | |
|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터리 셀(중국, 일본 혹은 한국에서 제조)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부품을 캐나다로 수입 2. 캐나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셀 홀더와 전류 집전체에 배치 - 접착제를 배터리 셀에 도포한 후, 셀을 정렬, 가압, 경화 - 서미스터(thermistor)를 추가한 후 분진·이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플라즈마 세정 - 냉각판에 고정시킨 후, 와이어 본딩 전 거친 표면 형성을 위해 레이저 어블레이션 장비에 통과 - 배터리 관리 보드, 상·하부 하우징 설치 - 각 배터리 모듈에 포팅 재료를 주입하여 경화시킨 후 여러 테스트 수행 3. 캐나다에서 배터리 팩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터리 모듈을 금속 프레임에 배치, 전기 하네스를 이용해 배선 - 냉각 매니폴드 추가, 고전압 버스바 설치 - 상부 모듈(고전압 커넥터, 퓨즈, 배터리 관리 보드로 구성됨) 설치 - 상부 커버와 장착 브래킷을 볼트로 고정 4. 완성품 미국 수출 | | |

- **쟁점사항**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24)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㉔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5009 (1993.07.30.)*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수입 후 가공이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 물리적 변형(physical change)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성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226, 542 F. Supp. 1026, 1031,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제품의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서 이미 사전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또한 조립과 관련하여 단순 조립인지 또는 보다 복잡한 조립인지 여부를 평가하며, 개별 부품들이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는지를 검토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CBP는 배터리 셀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함께 배치하여 배터리 팩을 제조하는 경우, 배터리 셀에 대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바 있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63045 (2004.08.09.)* 및 *CBP Ruling HQ 734393 (1992.03.20.)*

판정 결과

- ㉔ 최종제품인 배터리 팩의 본질은 전력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은 중국, 일본 혹은 한국에서 수입된 배터리 셀에 의해 부여되는 바, 캐나다에서의 공정을 통해 핵심 구성요소인 배터리 셀의 기능 및 용도가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배터리 셀의 제조국이 원산지로 판정됨

□ 결론

- ✓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배터리 셀이 제조된 국가인 중국, 일본 또는 한국임

II. 시사점

- 배터리 셀을 단순히 배터리 팩, 모듈 등으로 가공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Ⅲ.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9847 (2023.01.10.), <https://rulings.cbp.gov/ruling/N329847>
- CBP Ruling HQ 735009 (1993.07.30.), <https://rulings.cbp.gov/ruling/735009>
- CBP Ruling HQ 563045 (2004.08.09.), <https://rulings.cbp.gov/ruling/563045>
- CBP Ruling HQ 734393 (1992.03.20.), <https://rulings.cbp.gov/ruling/734393>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7. 망치

[요약]

| | |
|---------|---|
| 사례명 | [망치]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33361 (2023.06.21.) |
| 사실관계 | 베트남에서 탄소강을 가공하여 만든 망치 헤드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에서 헤드를 다듬고 플라스틱 캡 및 목재 손잡이와 최종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서 탄소강을 가공하여 생산한 망치 헤드가 최종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며, 중국으로 수입될 시점에 이미 최종제품의 형태, 크기 및 모양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중국에서의 공정은 단순 마무리 및 보강 공정에 해당하여 베트남산 부품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는 베트남임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²⁵⁾

- **사례명:** [망치]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33361 (2023.06.21.)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Shanghai Thor Industrial Co., Ltd. | |
| 제품 |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sky 12-ounce 2-Sided Soft Face Mallet • Husky 24-ounce 2-Sided Soft Face Mallet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강 헤드 • 목재 손잡이 • 플라스틱 캡 |
| 제조 공정 |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베트남에서 헤드 제조 및 중국으로 수출</p> <p>02 중국에서 최종 조립</p> <p>03 미국 수출</p>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베트남 제조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강을 금형에 넣어 망치 헤드 형태로 압착 - 헤드에 손잡이 장착용 구멍 친공 2. 망치 헤드를 중국으로 수출 3. 중국 제조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드에 디버링, 챔퍼링, 연마 작업 수행 - 부식 방지를 위해 헤드에 코팅 작업 수행 - 사출 성형으로 플라스틱 캡 제조 및 헤드 부분에 영구적으로 접착 - 완성된 헤드에 제품 정보 인쇄 - 헤드와 목재 손잡이 결합 4. 완제품 포장 후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ⅴ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25)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로 완성품을 조립하는 경우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구성 부품, 부품들이 거친 가공 공정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함
- 단일 요소는 결정적이지 않으며 단순한 수준의 조립 작업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판정 결과

- Ⅴ 베트남에서 탄소강을 가공하여 생산한 망치 헤드가 최종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며, 중국으로 수입될 시점에 이미 최종제품의 형태, 크기 및 모양을 유지하고 있음
- Ⅵ 반면, 중국에서의 공정은 단순 마무리 및 보강 공정에 해당하여 베트남산 부품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는 베트남임

□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최종제품인 망치의 원산지는 베트남임

II. 시사점

- 공구 등의 실질적 변형 판정과 관련하여, 최종제품에 본질을 부여하는 주요 작업 부위가 타국에서 이미 최종제품의 형태로 제작되고, 이를 수입하여 연마, 코팅, 기타 부분품 조립 등의 단순한 작업만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3361 (2023.06.21.), <https://rulings.cbp.gov/ruling/N333361>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8. 정수기 필터

[요약]

| | |
|---------|---|
| 사례명 | [정수기 필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35575 (2023.10.27.) |
| 사실관계 | 한국에서 탄소 블록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에서 한국산 탄소 블록과 중국산 부품들을 최종 조립하여 정수기 필터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 블록 생산에는 높은 비용과 고도의 기술, 이를 위한 맞춤형 장비가 필요하며, 해당 부품은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최종제품의 핵심 기능인 물 여과 기능을 수행하는 본질적 구성요소로 판단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탄소 블록의 원산지인 한국임 중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주로 접착, 용접, 압착으로 이루어져 복잡하지 않고 개별 부품들에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서의 명칭, 성질, 용도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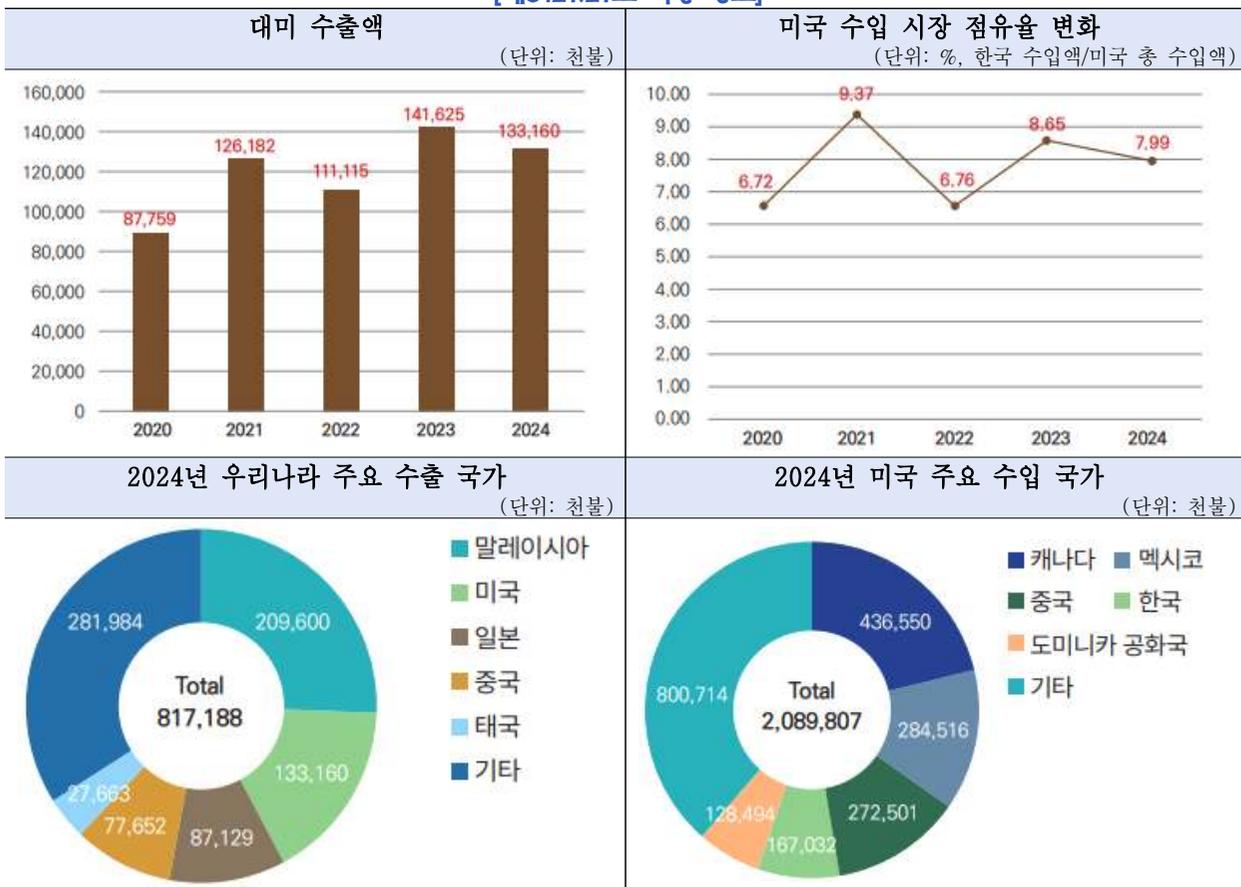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8421.21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8421.21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정수기 필터]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35575 (2023.10.27.)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Qingdao Ecopure Filter Co., Ltd. (대리인: Calfee, Harter & Griswold LLP) | |
| 제품 | 제품명 | • 교체용 냉장고 정수기 필터 (모델 번호: EFF-6011, EFF-6020) |
| | 구성 | • O-링 (중국산) • 상부·중간·하부 커버 (중국산) • 섬프 (중국산) • 투명 보호 필름 (중국산) • 탄소 블록 (한국산) |
| | 용도 | • 무연 필터를 통해 염소, 오염물질, 냄새를 줄여 물의 맛을 개선 |
| | 완제품 HTSUS | • 8421.21.0000 |
| 제조 공정 |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한국에서 생산된 탄소 블록을 중국으로 수출</p> <p>02 중국에서 중국산 부품들과 최종 조립</p> <p>03 미국 수출</p>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에서 탄소 블록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 2. 중국에서 중간 또는 상부 커버에 O-링 부착 후 흡집, 오염, 색상 차이 등 육안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FF-6011: 상부 커버에만 2개의 실링(sealing) 링 부착 - EFF-6020: 중간 커버와 상부 커버에 각각 실링 링 부착 3. 접착제 도포 장비를 사용해 중간 커버, 탄소 블록, 하부 커버 접착 및 수직 압착 4. 회전 용접기를 사용해 상부 커버, 접착 처리된 탄소 블록, 섬프를 용접 및 결합 5. 오염, 접착제 넘침, 균열 등 자체 검사 수행 6. 기밀성 시험, 라벨 부착 및 최종 포장 7.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Ⅳ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실질적 변형에 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판정 결과

- 탄소 블록 생산에는 높은 비용과 고도의 기술, 이를 위한 맞춤형 장비가 필요하며, 해당 부품은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최종제품의 핵심 기능인 물 여과 기능을 수행하는 본질적 구성요소로 판단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탄소 블록의 원산지인 한국임
- 중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주로 접착, 용접, 압착으로 이루어져 복잡하지 않고 개별 부품들에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서의 명칭, 성질, 용도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핵심 구성요소인 탄소 블록의 원산지인 한국임

Ⅲ. 시사점

- 단순 조립지가 아니라 제품에서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의 생산지가 최종제품의 원산지로 결정됨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5575 (2023.10.27.), <https://rulings.cbp.gov/ruling/N335575>
-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9. 집적 회로

[요약]

| | |
|---------|--|
| 사례명 | [집적 회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52561 (2025.09.10.) |
| 사실관계 | 웨이퍼 제조 공정(Fabrication Process)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제조된 웨이퍼가 대만에서의 프론트엔드 공정, 필리핀에서의 백엔드 공정을 통해 집적 회로로 변형됨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만에서 수행된 프론트엔드 공정을 통해 IC 다이의 전기적 연결이 가능해지며, 이를 위해 수행된 다수의 공정은 충분히 의미있고 복잡한 공정으로 판단되므로 대만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는 실질적인 변형을 겪은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에서의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 집적 회로의 주요 특성이 상당 부분 부여되지만, 필수적 요소인 전기회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제품은 완전한 상태가 아님 반면, 필리핀에서의 백엔드 공정 이후에도 IC 다이는 대만에서의 프론트엔드 공정에서 이미 확립된 정체성과 사전 결정된 용도를 유지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임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²⁶⁾

- **사례명:** [집적 회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52561 (2025.09.10.)
- **사실관계**

| 요청자 | • Analog Devices, In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품 | 제품명 | • AZ33A Device (Integrated Circuit, I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도 | • 24비트 델타-시그마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로서, 아날로그 입력 전압을 측정하고 이를 디지털 형태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조 공정 | <p>01 싱가포르에서 웨이퍼 제조 후 대만으로 수출</p> <p>02 대만에서 WLP 프론트엔드 공정</p> <p>03 필리핀에서 WLP 백엔드 공정</p> <p>04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p>1. 싱가포르에서 웨이퍼 제조 공정(Fabrication Process) 후 대만으로 운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h colspan="2">세부 공정</th></tr> <tr><td>1. 실리콘 웨이퍼 (bare silicon wafer) 제조</td><td>7. 습식 식각 (Wet Etch)</td></tr> <tr><td>2. 에피택셜 성장 (Epitaxial Growth)</td><td>8. 이온 주입 (Ion Implantation)</td></tr> <tr><td>3. 산화 (Oxidation)</td><td>9. 확산 (Diffusion by Furnace)</td></tr> <tr><td>4. 박막 증착 (Thin-Film Deposition)</td><td>10. 화학 세정 (Chemical Cleaning)</td></tr> <tr><td>5. 리소그래피 (Lithography)</td><td>11. 금속 배선 공정 / 금속화 (Metal Wiring Process / Metallization)</td></tr> <tr><td>6. 플라즈마 건식 식각 (Dry Etch by Plasma)</td><td>12. 검사 (Wafer Acceptance Test)</td></tr> </table> <p>2. 대만에서 WLP 프론트엔드 공정 (WLP FRONT-END)</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h colspan="2">세부 공정</th></tr> <tr><td>1. 폴리머 코팅 (Polymer coating)</td><td>6. 구리 금속 도금 (Copper metal plating)</td></tr> <tr><td>2. 열처리 / 경화 (Annealing, Curing)</td><td>7. 화학 세정 (Chemical cleaning)</td></tr> <tr><td>3. 리소그래피 (Lithography)</td><td>8. 솔더볼 부착 (Solder ball mounting)</td></tr> <tr><td>4. 습식 식각 (Wet etch)</td><td>9. 솔더볼 리플로우 (Solder ball reflows)</td></tr> <tr><td>5. 구리 금속 증착 (Copper metal deposition)</td><td>10. 최종 외관검사 (Final Visual Inspection)</td></tr> </table> <p>3. 필리핀에서 WLP 백엔드 공정 (WLP BACK-END)</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h colspan="2">세부 공정</th></tr> <tr><td>1. 웨이퍼 레벨 테스트 (Wafer level testing)</td><td>5. 레이저 마킹 (Laser marking)</td></tr> <tr><td>2. 트리밍 (Trim)</td><td>6. 웨이퍼 장착 및 절단 (Wafer mount and sawing)</td></tr> <tr><td>3. 웨이퍼 후면 연마, 실리콘 박화 (Wafer backside grinding, silicon thinning)</td><td>7. 테이프 및 릴 포장 (Tape and reel)</td></tr> <tr><td>4. 후면 라미네이션 (Backside lamination)</td><td></td></tr> </table> <p>4. 미국 수출</p> | | 세부 공정 | | 1. 실리콘 웨이퍼 (bare silicon wafer) 제조 | 7. 습식 식각 (Wet Etch) | 2. 에피택셜 성장 (Epitaxial Growth) | 8. 이온 주입 (Ion Implantation) | 3. 산화 (Oxidation) | 9. 확산 (Diffusion by Furnace) | 4. 박막 증착 (Thin-Film Deposition) | 10. 화학 세정 (Chemical Cleaning) | 5. 리소그래피 (Lithography) | 11. 금속 배선 공정 / 금속화 (Metal Wiring Process / Metallization) | 6. 플라즈마 건식 식각 (Dry Etch by Plasma) | 12. 검사 (Wafer Acceptance Test) | 세부 공정 | | 1. 폴리머 코팅 (Polymer coating) | 6. 구리 금속 도금 (Copper metal plating) | 2. 열처리 / 경화 (Annealing, Curing) | 7. 화학 세정 (Chemical cleaning) | 3. 리소그래피 (Lithography) | 8. 솔더볼 부착 (Solder ball mounting) | 4. 습식 식각 (Wet etch) | 9. 솔더볼 리플로우 (Solder ball reflows) | 5. 구리 금속 증착 (Copper metal deposition) | 10. 최종 외관검사 (Final Visual Inspection) | 세부 공정 | | 1. 웨이퍼 레벨 테스트 (Wafer level testing) | 5. 레이저 마킹 (Laser marking) | 2. 트리밍 (Trim) | 6. 웨이퍼 장착 및 절단 (Wafer mount and sawing) | 3. 웨이퍼 후면 연마, 실리콘 박화 (Wafer backside grinding, silicon thinning) | 7. 테이프 및 릴 포장 (Tape and reel) | 4. 후면 라미네이션 (Backside lamination) | |
| | 세부 공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실리콘 웨이퍼 (bare silicon wafer) 제조 | 7. 습식 식각 (Wet Etc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에피택셜 성장 (Epitaxial Growth) | 8. 이온 주입 (Ion Implant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산화 (Oxidation) | 9. 확산 (Diffusion by Furnac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박막 증착 (Thin-Film Deposition) | 10. 화학 세정 (Chemical Cleani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리소그래피 (Lithography) | 11. 금속 배선 공정 / 금속화 (Metal Wiring Process / Metalliz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플라즈마 건식 식각 (Dry Etch by Plasma) | 12. 검사 (Wafer Acceptance Tes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 공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폴리머 코팅 (Polymer coating) | 6. 구리 금속 도금 (Copper metal plati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열처리 / 경화 (Annealing, Curing) | 7. 화학 세정 (Chemical cleani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리소그래피 (Lithography) | 8. 솔더볼 부착 (Solder ball mounti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습식 식각 (Wet etch) | 9. 솔더볼 리플로우 (Solder ball reflow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구리 금속 증착 (Copper metal deposition) | 10. 최종 외관검사 (Final Visual Inspec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 공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웨이퍼 레벨 테스트 (Wafer level testing) | 5. 레이저 마킹 (Laser marki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트리밍 (Trim) | 6. 웨이퍼 장착 및 절단 (Wafer mount and sawi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웨이퍼 후면 연마, 실리콘 박화 (Wafer backside grinding, silicon thinning) | 7. 테이프 및 릴 포장 (Tape and ree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후면 라미네이션 (Backside lamin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26)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㉔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㉕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판정 결과

- ㉖ 대만에서 수행된 프론트엔드 공정을 통해 IC 다이의 전기적 연결이 가능해지며, 이를 위해 수행된 다수의 공정은 충분히 의미있고 복잡한 공정으로 판단되므로 대만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는 실질적인 변형을 겪은 것으로 판단됨
 - 싱가포르에서의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 집적 회로의 주요 특성이 상당 부분 부여되지만, 필수적 요소인 전기회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제품은 완전한 상태가 아님
- ㉗ 반면, 필리핀에서의 백엔드 공정 이후에도 IC 다이는 대만에서의 프론트엔드 공정에서 이미 확립된 정체성과 사전 결정된 용도를 유지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임

□ 결론

✓ 원산지표시 목적상 집적 회로의 원산지는 대만임

II. 시사점

- 제품의 본질인 전기회로 기능을 부여하는 프론트엔드 공정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며 백엔드 공정은 기능을 향상시킬 뿐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2561 (2025.09.10.), <https://rulings.cbp.gov/ruling/N352561>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Case 10. 소형 드론 세트

[요약]

| | |
|---------|---|
| 사례명 | [소형 드론 세트]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52538 (2025.10.03.) |
| 사실관계 | 중국산 구동 모터, 진동 모터를 포함해서 베트남, 일본,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부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에서 SMT 공정을 통해 제조된 PCBA 및 소프트웨어를 결합·탑재하여 소형 드론 세트 완성 |
| 쟁점 및 판정 | <p>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은 한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드론의 상승, 하강, 방향 전환 등의 핵심 기능이 수행되므로, 해당 소프트웨어가 외국산 구성요소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 하지만, CBP는 드론에 장착된 구동 모터가 드론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고 완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요소이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함 |
| 근거법령 | - |

I. 판정사례²⁷⁾

- **사례명:** [소형 드론 세트]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52538 (2025.10.03.)
- **사실관계**

| 요청자 | • ALUX Co., Ltd. (대리인: Passwin Customs Service, Inc.) | | | | | | | |
|--|--|--|----|-----|--------------------------|----|--|----------------------|
| 제품 | 제품명 | • CoDrone EDU (JROTC edition) | | | | | | |
| | 구성 | • 드론, 무선 컨트롤러,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제품 설명서 - 드론의 크기는 138.8mm x 138.5mm x 34.8mm이며, 무게는 54.8g | | | | | | |
| | 용도 | • 교육 혹은 일반 소비자 레크리에이션용 | | | | | | |
| | 완제품 HTSUS | • 9503.00.0090 | | | | | | |
| 제조 공정 | <p>01 여러 부품을 한국으로 수입 → 02 한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탑재 및 최종 조립 → 03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p>1. 다음의 구성요소를 한국으로 수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명칭</th> <th style="width: 40%;">수출국</th> </tr> </thead> <tbody> <tr> <td>구동 모터(드론용), 진동 모터(컨트롤러용)</td> <td>중국</td> </tr> <tr> <td>콘덴서, 인덕터, 저항, 트랜지스터, 센서, 커넥터, 배터리, 충전기, 플라스틱 케이스 등</td> <td>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등</td> </tr> </tbody> </table> <p>2. 한국 제조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내에서 PCB 조달 - 표면실장기술(SMT)을 사용하여 각종 전자부품을 PCB에 장착 - 완성된 PCBA를 추가 부품과 함께 드론 및 컨트롤러 케이스에 조립 - 구동 모터 및 진동 모터를 각각 드론 및 컨트롤러에 조립 - 비행, 방향 제어 및 코딩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품 탑재 - 소매용 박스에 포장 <p>3. 미국 수출</p> | | 명칭 | 수출국 | 구동 모터(드론용), 진동 모터(컨트롤러용) | 중국 | 콘덴서, 인덕터, 저항, 트랜지스터, 센서, 커넥터, 배터리, 충전기, 플라스틱 케이스 등 |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등 |
| | 명칭 | 수출국 | | | | | | |
| 구동 모터(드론용), 진동 모터(컨트롤러용) | 중국 | | | | | | | |
| 콘덴서, 인덕터, 저항, 트랜지스터, 센서, 커넥터, 배터리, 충전기, 플라스틱 케이스 등 |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등 | | | | | | | |

□ 쟁점사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무역 구제 조치 및 추가 관세 적용 등을 위한 원산지판정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27) 해당 HS Code에 따른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품목 개요 미제공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신청인은 한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드론의 상승, 하강, 방향 전환 등의 핵심 기능이 수행되므로, 해당 소프트웨어가 외국산 구성요소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 하지만, CBP는 드론에 장착된 구동 모터가 드론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고 완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요소이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함

□ 결론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소형 드론 세트의 원산지는 중국임

II. 시사점

- 일반적으로 레크리에이션용으로 사용되는 소형 드론의 경우, 비행 능력을 제공하는 구동 모터가 핵심 구성요소로 판단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2538 (2025.10.03.), <https://rulings.cbp.gov/ruling/N352538>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Origin Case

Vol. 9

- Case 1 - 이동식 에어컨
- Case 2 - 스마트 워치
- Case 3 - 영상 관리·감시 시스템
- Case 4 - 프린터
- Case 5 - 블라인드
- Case 6 - 합금 알루미늄 빌렛 (제7601.20호)
- Case 7 - 음식물 처리기 (제8509.80호)
- Case 8 - 금속 머리피
- Case 9 - 대나무 선반 패널 (제9403.99호)
- Case 10 -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 (제3005.10호)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Case 1. 이동식 에어컨

[요약]

| | |
|---------|---|
| 사례명 | [이동식 에어컨]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22263 (2021.11.12.) |
| 사실관계 | 중국에서 제작한 미완성 콘덴서, 증발기 등의 부품을 태국으로 수입한 뒤, 태국에서 태국산 부품들과 함께 냉각 유닛을 완성하고 다른 부품들과 최종 조립하여 이동식 에어컨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완성 상태로 수입된 중국산 콘덴서와 증발기는 태국에서 입·출구 튜브와 용접되는 공정을 통해 완전한 냉각 유닛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며, 태국에서 생산된 냉각 유닛이 이동식 에어컨의 본질을 부여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태국임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²⁸⁾

□ **사례명:** [이동식 에어컨]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22263 (2021.11.12.)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Hisense USA Corporation (대리인: Wiczer Sheldon & Jacobs, LLC) | |
| 제품 | 제품명 | • 이동식 에어컨 장치 AP 시리즈 (모델명: AP0522R1W, PAC06, MAP06, AP0722CW1W, AP1022CW1G) |
| | 구성 | • 팬 서브 어셈블리, 새시 및 금속 부품, 디스플레이 패널, 콘덴서, 증발기, 필터, 바퀴 등 |
| | 용도 | • 중앙 냉방이 없는 가정, 아파트 및 기타 건물에서의 냉방에 사용 |
| 제조 공정 |  <p>01 중국산 일부 부품을 태국으로 수입</p> <p>02 태국에서 일부 부품 제조 및 최종 조립</p> <p>03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콘덴서, 증발기, 모터 등 일부 부품들을 태국으로 수입 태국 제조공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팬 서브 어셈블리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라스틱 사출 공정을 통해 루버, 공기 배출구, 필터 프레임 등을 제조 팬 허브와 블레이드 용접 후, 다른 부품들과 결합하여 팬 서브 어셈블리 완성 팬 서브 어셈블리를 중국산 모터에 연결 새시 및 기타 금속 부품, 기타 플라스틱 부품 제작 구리 튜브를 절단, 절곡, 리밍, 성형하여 입·출구 튜브 제작 후 중국산 콘덴서 및 증발기에 용접 각 장치 최종 조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덴서, 증발기, 바퀴, 모터 커버, 수위 스위치 등을 새시에 결합 후 나사로 고정 중국산 토출·흡입 튜브 용접 후 절소 주입 상·하부 팬, 보호망, 공기 배출구 설치 및 배선 연결 전기 박스, PCBA, 디스플레이, 필터, 리시버 설치 후 진공 및 냉매 충전 디스플레이 패널을 PCBA 및 전면 패널에 배선 연결 태국에서 제조된 패널, 상·하부 필터, 필터 커버 설치 및 나사로 고정 시험 및 검사 후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ⅴ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28)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5009 (1993.07.30.)*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로 완성품을 조립하는 경우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구성 부품, 부품들이 거친 가공 공정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함. 단일 요소는 결정적이지 않으며 단순한 수준의 조립 작업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다음의 사례를 참고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16843 (2021.02.05.)*

(사례) 콘텐츠와 증발기를 중국에서 제조한 후 태국으로 수출하여 입·출구 배관과 연결함. 입·출구 배관은 구리 튜브를 절단, 절곡, 리밍, 성형한 후 브레이징으로 증발기와 콘텐츠의 끝단에 접합하여 형성됨. 증발기는 새시에 맞도록 장착하기 위해 밴딩 기계에 투입됨.

(판정) 중국산 컴프레서와 미완성 콘텐츠 및 증발기로 구성된 냉방 유닛은 태국에 수입될 당시 미완성 상태이므로 에어컨의 본질로 간주 될 수 없다고 판정함.

판정 결과

- 중국산 부품과 태국산 부품을 이동식 에어컨으로 최종 조립하는 공정은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함.
- 다만, 에어컨에 본질을 부여하는 것은 냉각 유닛으로 부품의 상당수가 태국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태국에서 입·출구 튜브와 용접하는 공정으로 미완성 상태의 중국산 콘텐츠와 증발기가 실질적으로 변형되므로 현행 제301조 적용을 위한 이동식 에어컨의 원산지는 태국임.

□ 결론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태국으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II. 시사점

- 에어컨의 핵심 구성요소는 냉방 유닛이며 콘텐츠 및 증발기는 냉방 유닛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나, 해당 부품들이 미완성 상태로 수입되어 다른 부품들과 함께 냉방 유닛으로 완성되는 경우, 최종 냉방 유닛이 생산된 국가가 원산지로 판정될 수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2263 (2021.11.12.), <https://rulings.cbp.gov/ruling/N322263>
- CBP Ruling HQ 735009 (1993.07.30.), <https://rulings.cbp.gov/ruling/735009>
- CBP Ruling NY N316843 (2021.02.05.), <https://rulings.cbp.gov/ruling/N316843>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2. 스마트 워치

[요약]

| | |
|---------|--|
| 사례명 | [스마트 워치]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22417 (2022.02.23.) |
| 사실관계 | 대만에서 SMT 공정을 통해 생산된 2개의 PCBA를 중국으로 수입한 뒤, 중국에서 PCBA와 다른 부품들을 최종 조립,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로드, 시험, 포장하여 최종제품인 스마트 워치 생산 *SMT 공정: 전자부품을 인쇄회로기판(PCB) 표면에 실장·접합하는 표면실장 공정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P는 다음을 이유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이루어진 최종 조립은 비교적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수입된 물품에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로드에 대해 CBP는 일반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펌웨어의 개발 및 업로드가 동일한 국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최종제품의 기능은 스마트 워치의 본질을 구성하는 PCBA에 의해 부여되며, 이러한 PCBA를 생산하기 위해 대만에서 수행된 공정은 명칭, 성질 및 용도 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발생시킬 만큼 복잡하고 의미있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임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²⁹⁾

□ **사례명:** [스마트 워치]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22417 (2022.02.23.)

□ **사실관계**

| 요청자 | • 비공개 (대리인: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품 | 제품명 | • 스마트 워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 | • 메인 로직 보드(MLB), 센서 보드, 디스플레이, 마이크, 스피커, 햅틱 모듈, 배터리, 실리콘 손목밴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도 | • 광범위한 무선 통신 기능을 갖춘 손목 착용형 스마트 통신 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조 공정 | <p>01 여러 국가산 부품을 대만으로 수입</p> <p>02 대만에서 PCBA 생산 후 중국 수출</p> <p>03 중국에서 최종 조립</p> <p>04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p>1. 대만 제조공정</p> <p>(1) 2개의 PCBA(메인 로직 보드, 센서 보드) 생산을 위해 대만, 독일, 필리핀, 몰타,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들을 대만으로 수입 및 조달</p> <p>(2) SMT 공정을 통해 메인 로직 보드 생산(약 3시간 소요)</p> <p>- CPU, 플래시 메모리 칩, Wi-Fi 및 블루투스 통합 회로, 고도계, 관성 측정 장치, 다양한 저항기, 서미스터, 커패시터, 인덕터, 집적 회로를 포함한 약 680~700개 부품으로 구성(대만, 독일, 필리핀, 몰타, 중국산)</p> <p>(3) SMT 공정을 통해 센서 보드 생산(약 1~2시간 소요)</p> <p>- 심박수 모니터, 저항기, 커패시터, 다이오드를 포함한 약 50~60개 부품으로 구성(대만, 독일, 필리핀, 중국산)</p> <p>2. 완성된 2개의 PCBA를 포장하여 중국으로 수출</p> <p>3. 중국 제조 공정</p> <p>(1)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중국으로 수입</p> <table border="1"> <thead> <tr> <th>부품명</th> <th>원산지</th> <th>부품명</th> <th>원산지</th> </tr> </thead> <tbody> <tr> <td>마이크 부품</td> <td>중국산</td> <td>AMOLED 셀패널</td> <td>대만산</td> </tr> <tr> <td>햅틱 모듈</td> <td>중국산</td> <td>터치 컨트롤러</td> <td>대만산</td> </tr> <tr> <td>리튬이온 배터리</td> <td>중국산</td> <td>기타 터치스크린</td> <td rowspan="2">중국 및 말레이시아산</td> </tr> <tr> <td>본체 외장</td> <td>중국산</td> <td>디스플레이 부품</td> </tr> <tr> <td>크래들</td> <td>중국산</td> <td>스피커</td> <td>독일, 몰타, 중국산 부품으로 구성</td> </tr> <tr> <td>실리콘 손목밴드</td> <td>중국산</td> <td>PCBA</td> <td>대만산</td> </tr> </tbody> </table> <p>(2) 최종 조립,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로드, 시험 및 포장(FATP) 수행(약 2~3시간 소요)</p> <p>- 특정 모듈의 조립 및 이러한 모듈을 사전에 조립 및 제작된 부품과 결합</p> <p>- 운영 체제가 포함된 펌웨어 업로드(미국 및 중국이 아닌 제3국산 사용)</p> <p>4. 미국 수출</p> | | | 부품명 | 원산지 | 부품명 | 원산지 | 마이크 부품 | 중국산 | AMOLED 셀패널 | 대만산 | 햅틱 모듈 | 중국산 | 터치 컨트롤러 | 대만산 | 리튬이온 배터리 | 중국산 | 기타 터치스크린 | 중국 및 말레이시아산 | 본체 외장 | 중국산 | 디스플레이 부품 | 크래들 | 중국산 | 스피커 | 독일, 몰타, 중국산 부품으로 구성 | 실리콘 손목밴드 | 중국산 | PCBA | 대만산 |
| | 부품명 | 원산지 | 부품명 | 원산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이크 부품 | 중국산 | AMOLED 셀패널 | 대만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햅틱 모듈 | 중국산 | 터치 컨트롤러 | 대만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리튬이온 배터리 | 중국산 | 기타 터치스크린 | 중국 및 말레이시아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체 외장 | 중국산 | 디스플레이 부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크래들 | 중국산 | 스피커 | 독일, 몰타, 중국산 부품으로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리콘 손목밴드 | 중국산 | PCBA | 대만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쟁점사항**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29)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㉑ 『Section 304(a)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a))』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㉒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029 (Ct. Int'l Trade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었을 경우,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이때, 부품들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후 실시되는 검사 및 테스트 절차의 범위와 성격, 실제 제조공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 등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요소만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판정이 이루어짐

◆ 참고 판례: *CBP Ruling HQ H311606 (2021.06.16.)* 및 *CBP Ruling HQ H302801 (2019.10.03.)*

- 성질의 변화와 관련하여,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품이나 구성품의 성질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야 하며, 이때 성질의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 완성품의 본질(essence)을 검토함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1318 (2016)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029-30 (Ct. Int'l Trade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다음의 사례를 참고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2801 (2019.10.03.)*

(사례) Fitbit 웨어러블 전자 스마트 기기 사례

(판정) Fitbit 기기의 고유하고 완전한 기능은 여러 전자부품이 PCBA에 통합 및 탑재된 후에야 비로소 완성되며, 개별 전자부품들은 SMT 공정을 통해 PCBA에 통합되면 더 이상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이와 더불어 진동 모터, 디스플레이, 손목 밴드 등이 포함된 하우징에 PCBA를 부착하는 최종 조립 공정은 PCBA의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SMT 공정이 수행된 국가가 원산지임

- 기기의 프로그래밍이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국가와 동일한 국가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8234 (2020.06.03.)*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139 (2020.01.14.)*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58868 (1995.02.23.)*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5027 (1993.09.07.)*

판정 결과

- ㉔ CBP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최종 조립,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로드, 시험 및 포장(FATP) 공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함
 - (최종 조립) 중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나사 조임, 접착, 가열, 롤링, 프레스, 고정 등 비교적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정 시간 또한 대만에서의 PCBA 제조 공정에 비해 짧으며, 특히, 마이크, 스피커, PCBA와 같은 구성품은 조립 후에도 여전히 고유한 명칭 및 용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로드) CBP는 일반적으로 기기의 소프트웨어/펌웨어의 업로드는 해당 소프트웨어/펌웨어가 개발된 국가와 동일한 국가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본 사안의 경우 펌웨어가 미국 및 중국이 아닌 제3국산이므로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음
- ㉕ 이와 더불어, HQ H302801 사례를 인용하면서 최종 제품의 기능은 스마트 위치의 본질을 구성하는 PCBA에 의해 부여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만에서 PCBA가 생산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대만이라고 판정함
 - (명칭) 대만에서는 약 700개 이상의 부품이 SMT 공정을 통해 두 개의 PCBA에 통합되고 이 과정에서 개별 전자부품들의 명칭은 메인 로직 보드 혹은 센서 보드로 변경됨
 - (성질) 개별 전자부품들은 PCBA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물품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며, 데이터 수집 및 교환, 사용자 운동 및 활동 추적 등 스마트 위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성질의 변화가 발생함
 - (용도) 개별 전자부품들은 PCBA로 통합되기 전에는 독립적이며 일반적인 용도의 품목으로 여러 장치에 사용될 수 있으나, 2개의 PCBA로 통합되면서 스마트 위치에 전용될 수 있는 부품으로 전환되므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함

판정 결과

- ㉖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SMT 공정을 통해 PCBA를 생산한 대만이므로 제301조 무역제재 적용 대상이 아님

□ 결론

- ✓ 최종제품의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대만임

II. 시사점

- CBP는 최종제품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PCBA를 스마트 위치의 핵심 부품으로 판단하므로, PCBA가 하나의 국가에서 생산되는 경우, 해당 국가가 최종제품의 원산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22417 (2022.02.23.), <https://rulings.cbp.gov/ruling/H322417>
- CBP Ruling HQ H311606 (2021.06.16.), <https://rulings.cbp.gov/ruling/H311606>
- CBP Ruling HQ H302801 (2019.10.03.), <https://rulings.cbp.gov/ruling/H302801>
- CBP Ruling HQ H308234 (2020.06.03.), <https://rulings.cbp.gov/ruling/H308234>
- CBP Ruling HQ H303139 (2020.01.14.), <https://rulings.cbp.gov/ruling/H303139>
- CBP Ruling HQ 558868 (1995.02.23.), <https://rulings.cbp.gov/ruling/558868>
- CBP Ruling HQ 735027 (1993.09.07.), <https://rulings.cbp.gov/ruling/735027>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

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3. 영상 관리·감시 시스템

[요약]

| | |
|---------|--|
| 사례명 | [영상 관리·감시 시스템] 정부조달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27997 (2023.04.10.) |
| 사실관계 | 여러 국가로부터 부품들을 미국으로 수입한 후 미국에서 주문 관리, 하드웨어 제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운영체제 및 시스템 설치, 품질 관리 및 보증, 주문·시스템 마감 및 최종 점검하여 최종 제품인 영상 관리·감시 시스템(Video Management System and Surveillance System, VMS)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정부조달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국가에서 주요 부품들이 조달되고 조립이 이루어졌으나 어느 조립 공정도 지배적이지 않았음 미국에서 서브 어셈블리들과 부품들을 VMS로 조립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최종 조립 공정에서 비로소 VMS가 완성되었으므로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정함 |
| 근거법령 | - Title III of the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19 U.S.C. §§ 2511-2518) |

I. 판정사례30)

- **사례명:** [영상 관리·감시 시스템] 정부조달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27997 (2023.04.10.)
- **사실관계**

| | | | |
|-------|---|--|---|
| 요청자 | • Security Lab Inc. (대리인: Geme Rosen Law Group) | | |
| 제품 | 제품명 | • 영상 관리·감시 시스템(Video Management System and Surveillance System, VMS) | |
| | 구성 | 구분 | 부품명(원산지) |
| | | 하드웨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시(대만) • 마더보드(중국산) • 중앙처리장치(CPU)(코스타리카, 베트남 또는 말레이시아산) •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싱가포르 또는 태국산) • 광학 드라이브(중국산) • 메모리 모듈(중국산) • 그래픽 카드(중국산) • 알람 보드(중국산) • 직렬 ATA 컨트롤러(ATA Controller)(대만산) • 복수 배열 독립 디스크 컨트롤러(RAID Controller)(싱가포르산) • 전원공급장치(PSU)(중국산) • 컴퓨터 팬(중국산)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대만산) • 네트워크 카메라(대만, 한국 또는 중국산) •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중국산) |
| | | 소프트웨어 | Security Lab, Microsoft Window 등(미국산) |
| | | 기타 부품 | 케이블, 브래킷, 베젤, 나사, 스트랩 등(다국적) |
| 용도 | • 영상 감시 작업 수행 및 관리용 | | |
| 제조 공정 |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여러 국가로부터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p>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2 미국에서 최종제품 생산</p> </div>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양한 국가산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 2. 미국 제조공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주문을 접수 후 작업 지시서를 발행, 필요한 자재명세서(BOM)를 식별 (2) 하드웨어 제조(최대 30단계의 공정, 60-90분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 드라이버, 글루, 타이 스트립 등을 사용해 하드웨어, 서브 어셈블리, 부품 조립 (3)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및 시스템 설치, 구성 및 관리(18단계의 공정, 60-90분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래머, 개발자, 테스터,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주문자 맞춤(build-to-order)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설계, 개발 및 코딩하여 완성된 하드웨어에 이 소프트웨어를 통합, 설치 및 구성 (4) 품질 관리 및 보증(14단계의 공정, 약 60분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오디오 성능과 네트워크 기능 검사를 포함한 품질 점검과 시험을 수행 (5) 주문·시스템 마감 및 최종 점검(6단계의 공정, 약 15분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된 VMS의 사진 촬영, 새시에 위조 방지 스티 부착 등 마감 공정 수행 | | |

30)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쟁점사항

- 정부조달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Trade Agreements Act of 1979(19 U.S.C. § 2511~2518)』에 따르면, 물품이 특정 국가 또는 기관의 제품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또는 기관에서 전적으로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되었거나 전체 또는 일부가 다른 국가 또는 기관에서 유래한 자재로 구성된 경우, 해당 물품이 상업상 새로운 명칭, 성질 또는 용도를 가진 전혀 다른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었을 경우,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이때, 부품들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후 실시되는 검사 및 테스트 절차의 범위와 성격, 실제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 등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요소만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판정이 이루어짐
 -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이란 상업적 명칭 또는 정체성, 본질적 성질, 상업적 용도에 변화를 겪은 물품을 의미하며, 핵심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정도와 자재가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 요소로 통합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Nat'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성질의 변화를 인정할 시에는 일반적으로 물품 또는 구성 부품의 특성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어야 함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1318 (Ct. Int'l Trade 2016)

- CBP는 부품의 생산 또는 조립이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어느 한 국가의 작업도 제조 공정을 지배하지 않는 경우, 최종 조립이 이루어진 장소를 고려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170315 (2011.07.28.)*

(사례) 말레이시아산 회로기판과 영국산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으며 싱가포르에서 최종 조립 및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진 위성전화기의 원산지판정

(판정) 말레이시아산 회로기판과 영국산 소프트웨어가 장치의 기능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으나 싱가포르에서 마지막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 판단하여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판정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03555 (2012.04.23.)*

(사례) 말레이시아산 회로기판을 포함한 오실로스코프가 싱가포르에서 조립되고 미국산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된 경우 원산지판정

(판정) 어느 한 국가의 작업이 제조 공정을 지배하지 않았으나 싱가포르에서의 최종 조립이 제품을 완성시켰기에 마지막 실질적 변형이 싱가포르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판정함

판정 결과

- ▽ 주요 부품들이 하나의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되고 VMS 제조 과정에서 어느 한 국가의 작업이 지배적이지 않으며, 미국에서의 조립을 통해 개별 부품들이 VMS로 최종 완성되므로 최종적인 실질적 변형이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 결론

- ✓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국가의 작업이 지배적이지 않으며, 미국에서의 최종 조립을 통해 VMS가 완성되므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미국임

II. 시사점

- 어느 한 국가의 제조공정이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 최종 조립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정할 수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27997 (2023.04.10.), <https://rulings.cbp.gov/ruling/H327997>
- CBP Ruling HQ H170315 (2011.07.28.), <https://rulings.cbp.gov/ruling/H170315>
- CBP Ruling HQ H203555 (2012.04.23.), <https://rulings.cbp.gov/ruling/H203555>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4. 프린터

[요약]

| | |
|---------|--|
| 사례명 | [프린터]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04677 (2023.04.21.) |
| 사실관계 | 중국에서 제작된 프린터 트랜스포트를 멕시코로 수입한 후, 멕시코에서 PCBA 생산, 미국에서 설계된 펌웨어(필리핀 자회사에서 개발) 설치, 최종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인 프린터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산 PCBA를 유일한 핵심 기능 부품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PCBA와 펌웨어가 동일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펌웨어 또한 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기에 멕시코 내 작업 과정의 기여도가 낮다 판단됨 • 최종제품의 주요 특성은 프린터 트랜스포트에 의해 부여된다고 판단하여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임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판정사례³¹⁾

□ **사례명:** [프린터]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04677 (2023.04.21.)

□ 사실관계

| | | | |
|----------|--|---|--|
| 요청자 | • Lexmark International, Inc. (대리인: Thompson & Associates, PLLC) | | |
| 제품 | 제품명 | • Lexmark's MS/MX and CS/CX series printers | |
| | 구성 | 프린터 트랜스포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임 • 커버 • 퓨저(fuser) • 레이저 스캐닝 유닛(LSU) • 조작 패널(operator panel) • 스캐너(scanner) • 전원 공급 장치(PSU) • 토너 카트리지 |
| | | PCB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B • 트랜지스터(transistor) • 저항기(resistor) • 집적회로(IC) • 커패시터 • 펌웨어 • 시스템 온 칩(SOC) |
| | | 기타 부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블 • 팬 • 센서 • 모터 등 |
| 용도 | • 흑백 및 컬러 복합기와 프린트용 | | |
| 제조 공정 |  <p>01 중국에서 프린터 트랜스포트 제작 후 멕시코로 수출</p> <p>02 멕시코에서 PCBA 생산 및 최종 조립</p> <p>03 미국 수출</p> | | |
|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에서 여러 부품들을 조립하여 프린터 트랜스포트(printer transport) 제작 후 멕시코로 수출 2. 멕시코에서 Surface Mount Technology(SMT) 및 Pin Through Hole Technology(PTH)를 활용하여 PCBA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얇은 유리섬유나 복합 에폭시 등으로 제작된 PCB에 전도 경도가 에칭 및 인쇄되고 중국,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에서 생산된 트랜지스터, 저항기, 집적 회로 등을 부착 - 미국에서 설계(필리핀 자회사에서 개발)된 펌웨어를 PCBA에 설치 3.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블을 사용하여 PCBA와 프린터의 다른 부품들을 연결 - 토너 카트리지 설치 - 일부 고급형 프린터는 기계식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수행 4. 포장 및 팔레타이징 후 미국 수출 | | |

31)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쟁점사항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CBP는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 정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고려해 사례별(case-by-case)로 판정을 내리며, 이때 핵심 판단 요소는 수행된 작업의 범위, 원재료가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 구성 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경미하거나 간단한 조립 작업은 복잡하고 의미 있는 조립 작업과 달리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때 관련되는 요소들로는 ①작업의 성격(조립되는 부품의 수 포함), ②작업 단계의 다양성, ③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④숙련된 기술, ⑤작업의 디테일, ⑥품질 관리 등이 있음

◆ 참고 판정: *C.S.D. 80-111, 85-25, 89-110, 89-118, 90-51, 90-97*

-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내용) 신발 갑피를 밑창에 부착하는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갑피는 완성된 신발의 본질적 요소(the very essence of the completed shoe)라고 판시함

- CBP는 본 사안의 판정을 위해 아래 판례 및 판정을 인용함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018467 (2008)*

(사례) 프린터를 만들기 위해 필리핀에서 다국적 부품을 사용하여 18개의 유닛 제작, 이후 해당 유닛을 일본으로 수출한 뒤, 일본에서 시스템 제어 보드, 엔진 제어 보드, OPC 드럼, 토너 카트리지를 자체 생산하여 해당 유닛에 장착, 일본산 펌웨어 탑재

(판정) 핵심 부품과 펌웨어가 일본산이며 일본에서 수행된 제조 작업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켰다 판단, 프린터의 원산지는 일본으로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19519 (2013)*

(사례) 멕시코에서 중국산 부품을 포함한 모든 부품을 최종 조립하여 레이저젯 프린터와 팩스 제조

(판정) 멕시코에서의 조립이 충분히 복잡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87548 (2018)*

(사례) 흑백 레이저 프린터를 만들기 위해 일본산 메인 PCBA와 펌웨어, 베트남산 용지 공급장치, 퓨저, 감광체, 토너 카트리지, 조작 패널을 미국에서 조립 및 설치

(판정) 베트남과 미국에서 수행된 비교적 단순 작업과 달리 일본산 PCBA와 펌웨어가 프린터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판단하여 흑백 레이저 프린터의 원산지를 일본으로 판정

판정 결과

- 멕시코산 PCBA를 유일한 핵심 기능 부품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PCBA와 펌웨어가 동일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펌웨어 또한 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기에 멕시코 내 작업 과정의 기여도가 낮다 판단됨
- 최종제품의 주요 특성은 프린터 트랜스포트에 의해 부여된다고 판단하여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임

□ 결론

- ✓ 중국산 프린터 트랜스포트가 프린터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요소라 판단되기에 프린터의 원산지는 중국임

II. 시사점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프린터의 원산지를 판정한 CBP의 인용 사례를 종합해보면, PCBA와 펌웨어가 동일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는 대체로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구성요소별로 각각 생산국이 다른 경우에는 완제품의 본질적 성질을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원산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4677 (2023.04.21.), <https://rulings.cbp.gov/ruling/H304677>
- CBP Ruling HQ H018467 (2008.01.04.), <https://rulings.cbp.gov/ruling/H018467>
- CBP Ruling HQ H219519 (2013.08.03.), <https://rulings.cbp.gov/ruling/H219519>
- CBP Ruling HQ H287548 (2018.03.23.), <https://rulings.cbp.gov/ruling/H287548>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5. 블라인드

[요약]

| | |
|---------|--|
| 사례명 | [블라인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35242 (2023.09.27.) |
| 사실관계 | 중국에서 일부 생산 및 가공한 부품(슬리팅 및 도장 작업한 대만산 알루미늄, 플라스틱 박스 및 기타 부품)을 대만으로 수입한 후, 대만에서 알루미늄 슬랫, 상단 및 하단 레일, 코드리스 매커니즘, 마운팅 하드웨어를 제작한 뒤 최종 조립하여 블라인드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만에서의 제조공정으로 슬랫, 상단 및 하단 레일, 코드리스 메커니즘, 마운팅 하드웨어가 제작되고 블라인드로 최종 조립되어 명칭, 성질, 용도가 변한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으므로 블라인드의 원산지는 대만임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³²⁾

- **사례명:** [블라인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35242 (2023.09.27.)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All Strong Industry USA, Inc. | |
| 제품 | 제품명 | • 베네시안 블라인드 |
| | 구성 | • 알루미늄 슬랫 • 상단 및 하단 레일 • 코드리스 메커니즘 • 마운팅 하드웨어 세트 |
| 제조 공정 |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중국에서 일부 부품 제작 및 가공 후 대만 수출</p> <p>02 대만에서 부품 가공 및 최종 조립</p> <p>03 미국 수출</p>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 제조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산 알루미늄 코일을 슬리팅 및 도장 - 플라스틱 박스 및 기타 부품 생산 2. 대만으로 부품 수입 3. 대만 제조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루미늄을 절단 및 성형하여 슬랫 제작 -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상단 및 하단 레일 제작 - 중국산 플라스틱 박스 및 부품을 대만산 금속 스프링과 조립하여 코드리스 매커니즘 제조 - 대만산 금속 브래킷 및 알루미늄 나사와 중국산 플라스틱 손잡이를 포함하여 마운팅 하드웨어 세트 제작 - 모든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 제품 생산 4. 대만산 골판지 상자에 포장 후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32)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참고 판례: *Nat'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로 완성품을 조립하는 경우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구성 부품, 부품들이 거친 가공 공정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함. 단일 요소는 결정적이지 않으며 단순한 수준의 조립 작업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판정 결과

- 대만에서의 제조공정으로 슬랫, 상단 및 하단 레일, 코드리스 메커니즘, 마운팅 하드웨어가 제작되고 블라인드로 최종 조립되어 명칭, 성질, 용도가 변한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으므로 블라인드의 원산지는 대만임

□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표시 목적상 블라인드의 원산지는 대만임

II. 시사점

- 일반적으로 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를 가공하여 블라인드와 같은 특정 상업적 제품으로 가공하는 작업이 한 국가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5242 (2023.09.27.), <https://rulings.cbp.gov/ruling/N335242>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6. 합금 알루미늄 빌렛

[요약]

| | | | | | | | |
|---------|---|--------------------------|--------------------------|-------|---|-------|---|
| 사례명 | [합금 알루미늄 빌렛] 제301조 및 제232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 | | | |
| 사례번호 | HQ H332638 (2024.05.13.) | | | | | | |
| 사실관계 | 멕시코에서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알루미늄 스크랩 등 다국적산 원재료를 수입하여 용해하고 합금 첨가제를 혼합하여 합금화를 수행한 후 주조, 균질화 등 여러 제조 공정을 수행하여 최종 제품인 알루미늄 빌렛 생산 | | | | | | |
| 쟁점 및 판정 | ① 제301조 및 제232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P는 명칭, 성질 용도 면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제품은 제301조 및 제23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힘 | | | | | | |
| | <table border="1"> <tr> <td>명칭 변화</td> <td>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 합금 알루미늄 빌렛</td> </tr> <tr> <td>성질 변화</td> <td>HQ 071341, NY N301439에 근거하여 합금화 공정은 알루미늄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킴</td> </tr> <tr> <td>용도 변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금 알루미늄 빌렛: 건축용 자재, 트럭 및 트레일러, 군용 차량 제조용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판금, 전선, 튜빙 등의 용도로 사용 </td> </tr> </table> | 명칭 변화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 합금 알루미늄 빌렛 | 성질 변화 | HQ 071341, NY N301439에 근거하여 합금화 공정은 알루미늄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킴 | 용도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금 알루미늄 빌렛: 건축용 자재, 트럭 및 트레일러, 군용 차량 제조용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판금, 전선, 튜빙 등의 용도로 사용 |
| | 명칭 변화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 합금 알루미늄 빌렛 | | | | | |
| 성질 변화 | HQ 071341, NY N301439에 근거하여 합금화 공정은 알루미늄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킴 | | | | | | |
| 용도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금 알루미늄 빌렛: 건축용 자재, 트럭 및 트레일러, 군용 차량 제조용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판금, 전선, 튜빙 등의 용도로 사용 | | | | | | |
| | | | | | | |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 | | | | | |

I. 판정사례³³⁾

- **사례명:** [합금 알루미늄 빌렛] 제301조 및 제232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32638 (2024.05.13.)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HMA, Inc. (대리인: Barnes, Richardson & Colburn LLP) | |
| 제품 | 제품명 | • 합금 알루미늄 빌렛 |
| | 구성 |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 알루미늄 스크랩 |
| | 용도 | • 합금 첨가제(실리콘, 구리, 철, 마그네슘, 망간, 티타늄, 크롬) • 상업용 건축·건설, 트럭·트레일러·군용 차량 제조 등에 사용 |
| | 원재료 HTSUS |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제7601.10호) • 알루미늄 스크랩 (제7602.00호) • 실리콘 (제2804호), 구리 (제7404호), 철 (제7205호), 마그네슘 (제8104호), 망간 (제8111호), 티타늄 (제8108호), 크롬 (제8112호) |
| | 완제품 HTSUS | • 7601.20 |

| 제조 공정 | | | | | | | | | | | | | | | | | |
|----------|---|----------|---|----------|--------|---|-----------------------|---|---|---|-------------------------------------|---|---|-------------------------------|----------|--|--|
|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멕시코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용해 2. 예열오븐(pre-heat oven)과 전자 포트(electronic pot)를 사용한 교반 3. 탈가스 포트(degassing pot)를 사용한 불순물 및 수소 가스 제거 4. 주조기에서 빌렛 성형 5. 연속식 및 배치형 균질로(homogenizing furnace) 구역에서 응력 제거 열처리 6. 빌렛 절단기로 절단 및 표면 연삭 7. 초음파 결함 검사 및 분광 분석 8. 최종 균질성 검사 후 포장 9. 미국 수출 | | | | | | | | | | | | | | | | |
| | <p>[시나리오별 원재료 투입 현황]</p>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시나리오</th> <th style="width: 35%;">비합금 알루미늄 잉곳</th> <th style="width: 15%;">알루미늄 스크랩</th> <th style="width: 35%;">합금 첨가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멕시코산, 캐나다산 혹은 양국 혼합</td>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top;"> -(한국산) 실리콘, 구리 -(중국산) 철, 마그네슘, 망간, 티타늄, 크롬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중국산 60% - 한국산 20% - 호주산 20%</td> <td style="text-align: center;">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한국 또는 호주산 60% - 캐나다산 10%</td> <td style="text-align: center;">멕시코산 30%</td> </tr> </tbody> </table> | 시나리오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 알루미늄 스크랩 | 합금 첨가제 | 1 | - 멕시코산, 캐나다산 혹은 양국 혼합 | X | -(한국산) 실리콘, 구리 -(중국산) 철, 마그네슘, 망간, 티타늄, 크롬 | 2 | - 중국산 60% - 한국산 20% - 호주산 20% | X | 3 | - 한국 또는 호주산 60% - 캐나다산 10% | 멕시코산 30% | | |
| 시나리오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 알루미늄 스크랩 | 합금 첨가제 | | | | | | | | | | | | | | |
| 1 | - 멕시코산, 캐나다산 혹은 양국 혼합 | X | -(한국산) 실리콘, 구리 -(중국산) 철, 마그네슘, 망간, 티타늄, 크롬 | | | | | | | | | | | | | | |
| 2 | - 중국산 60% - 한국산 20% - 호주산 20% | X | | | | | | | | | | | | | | | |
| 3 | - 한국 또는 호주산 60% - 캐나다산 10% | 멕시코산 30% | | | | | | | | | | | | | | | |

□ 쟁점사항

33) 해당 HS Code에 따른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품목 개요 미제공

• 제301조 및 제232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 및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에 따른 무역구제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분석이 적용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681 F.2d 778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이란 상업적 명칭 또는 정체성, 본질적 성질, 또는 상업적 용도에 변화를 겪은 물품을 의미하며, 핵심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원재료가 본래의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Nat'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CBP는 비합금 알루미늄과 합금 첨가제를 용융 및 혼합하여 합금 알루미늄 빌렛을 생성하는 합금화 공정을 원재료의 본질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충분히 의미 있는 공정으로 판단하고 있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071341 (1983.08.24.)*

(사례) 수입된 비합금 알루미늄 원재료를 변형시켜 생성된 용융 알루미늄에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함

(판정) 최종 제품인 알루미늄 합금은 비합금 알루미늄 원재료와는 다른 특성과 용도를 가지며, 관련 업계에서도 원재료와 최종 제품을 별개의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금 첨가물의 추가에 의해 용융 알루미늄이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1439 (2018.11.21.)*

(사례) 호주산 비합금 알루미늄 주괴를 미국산 알루미늄 합금 스크랩과 함께 한국에서 용융 및 혼합하여 알루미늄 빌렛을 생산

(판정) 합금화 공정을 원재료의 본질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충분히 의미있는 공정으로 판단

판정 결과

- ▽ CBP는 명칭, 성질 용도 면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301조 및 제23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힘

| | |
|-------|---|
| 명칭 변화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 합금 알루미늄 빌렛 |
| 성질 변화 | HQ 071341, NY N301439에 근거하여 합금화 공정은 알루미늄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킴 |
| 용도 변화 | - 합금 알루미늄 빌렛: 건축용 자재, 트럭 및 트레일러, 군용 차량 제조용 - 비합금 알루미늄 잉곳: 판금, 전선, 튜빙 등의 용도로 사용 |

□ 결론

- ✓ 실질적 변형의 기준에 따라 시나리오 1, 2, 3에서 알루미늄 빌렛의 원산지는 멕시코이므로 제232조 및 제301조 무역구제조치 대상이 아님

II. 시사점

- CBP는 비합금 알루미늄과 합금 첨가제를 용융 및 혼합하여 합금 알루미늄 빌렛을 생성하는 합금화 공정을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주요 공정으로 보고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32638 (2024.05.13.), <https://rulings.cbp.gov/ruling/H332638>
- CBP Ruling NY N301439 (2018.11.21.), <https://rulings.cbp.gov/ruling/N30143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862&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7. 음식물 처리기

[요약]

| | |
|---------|---|
| 사례명 | [음식물 처리기]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33319 (2024.05.15.) |
| 사실관계 | 미국산, 중국산 부품들을 멕시코로 수입한 후 멕시코에서 멕시코산 부품들과 결합하여 서브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등 10단계의 공정을 수행하여 최종제품인 음식물 처리기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에서의 제조공정에서 중국산, 미국산 부품들이 멕시코산 부품들과 결합되어 서브 어셈블리로 변환되고, 이를 조립하여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음식물 처리기가 생산되는 바,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하여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판정사례³⁴⁾

- **사례명:** [음식물 처리기]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33319 (2024.05.15.)
- **사실관계**

| | | | | |
|--------------|--|---|---|--------------|
| 요청자 | • Whirlpool Corporation (대리인: Cassidy Levy Kent USA (LLP)) | | | |
| 제품 | 제품명 | • 전기 구동식 음식물 처리기 4종 (모델명: SKU 80499A-ISE, 80500A-ISE, 80499-ISE, 80500-ISE) | | |
| | 구성 | 원산지 | 구성 요소 | 총비용 대비 구성 비율 |
| | | 중국 | 모터, 관통볼트, 컨테이너 본체 쉘, 배플이 포함된 마운팅 개스킷, 리벳, 테일 파이프 나사, SKU 80499A-ISE 및 80500A-ISE용 전원 코드 등 | 45~49% |
| | | 멕시코 | 컨테이너 바디/분쇄 챔버, 모터 커버, 회전식 분쇄 서브 어셈블리 등 | 29~31% |
| | | 미국 | 마운팅 서브 어셈블리, 배수 서브 어셈블리, 바디 플랜지, 플라스틱 마감, 실란트, 고정식 분쇄 링 등 | 22~24% |
| 용도 | • 음식물 처리용 | | | |
| 완제품 HTSUS | • 8509.80.20 | | | |

| | | | |
|----------|---|--|--|
| 제조 과정 | | | |
|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산, 중국산 부품들을 멕시코로 수입 및 조달 멕시코에서 플라스틱 부품 성형, 프레스 가공, 고정, 나사 체결, 검사 등 10단계의 공정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강도 플라스틱 수지를 사출 성형하여 컨테이너 바디와 모터 커버 제작 - 회전식 분쇄 플레이트 서브 어셈블리 제작 및 모터의 샤프트에 부착 - 모터와 회전식 분쇄 플레이트 서브 어셈블리를 모터 커버에 삽입 - 고정식 분쇄 장치를 컨테이너 바디에 부착 및 통합 - 회전식 분쇄부, 모터 서브 어셈블리, 컨테이너 바디, 고정식 분쇄 서브 어셈블리를 조립 - 조립된 서브 어셈블리에 진공, 누출, 전기 테스트 - 바디 플랜지와 마운팅 서브 어셈블리 조립 - 마운팅 서브 어셈블리, 컨테이너 바디/고정식 분쇄 서브 어셈블리, 모터/회전식 분쇄 서브 어셈블리, 배관 키트를 함께 조립 - 완성된 음식물 처리기에 대해 제품 및 안전 테스트 미국으로 수출 | | |

- **쟁점사항**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34) 해당 HS Code에 따른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품목 개요 미제공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㉔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해당 부품들이 그 개별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음
- 이에 대한 판단 요소로는 조립 작업의 성격(예: 조립되는 부품 수), 수행 작업 공정의 다양성, 작업 소요 시간, 숙련도, 세부 작업,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이 있음

◆ 참고 판정: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C.S.D. 90-57*

-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사례) 여러 신발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조립

(판결) 완제품인 신발의 본질적 특성이 외국산 부품(갑피)에 의해 결정되므로 미국에서의 실질적 변형은 인정되지 않음

- 조립 공정을 검토함에 있어, CBP는 조립의 성격뿐만 아니라 완제품에 본질(very essence)을 부여하는 부품의 원산지를 함께 고려함
- 일반적으로 본 사안과 같은 제품에서는 모터가 완제품에 본질을 부여하며, 모터의 원산지는 모터의 핵심 부품인 스테이터와 로터가 제조된 국가에 따라 결정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13371 (2021.03.30.)* 및 *NY N305251 (2019.08.01.)*

- 더불어, CBP는 조립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할 만큼 충분히 복잡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국가에서 수행되는 서브 어셈블리 공정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사례) 미완성 우편 요금계기 생산을 위한 주요 서브 어셈블리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었으나, 나머지 서브 어셈블리들은 중국에서 제조되었고, 이들 서브 어셈블리를 연결하여 최종 조립하는 과정 역시 중국에서 이루어짐

(판정) 중국에서 조립 공정뿐만 아니라 일부 서브 어셈블리 또한 제조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에서 행해진 공정이 충분히 광범위하며 복잡한 것으로 판정하여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함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다음의 사례들을 참고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16794 (2021.02.02.)*

(사례) 미국산, 중국산 부품을 캄보디아로 수입하여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산 부품들과 다양한 부품 또는 서브 어셈블리로 가공된 뒤, 최종적으로 음식물 처리기로 조립됨

| 원산지 | 구성 요소 | 총비용 대비 구성 비율 |
|------|---|--------------|
| 중국 | 배수 하우징, 모터 스테이터, 엔드 벨, 아마추어, 턴테이블, 엘라스톰어, O-링, 너트, 각종 라벨, 플라스틱 절연체, 검사 플레이트 | 50% |
| 미국 | 보어 베어링, 카본 브러시, 와이어 캡, 파이버 오일, 턴테이블 접촉제 | 4% |
| 캄보디아 | 배수 서브 어셈블리, 스냅 및 락 마운트, 싱크 플랜지, 스냅 지지 링, 스플래시 가드, 지지 마운트 링, 스톱퍼 및 스톱퍼 쉘, 호퍼, 하부 쉘, 포장재, 일부 라벨 등 | 45% |

(판정) 여러 하위 조립품 및 부품들은 모두 정밀하게 제조되고 조립되기 전까지는, 음식물 처리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으며, 조립 과정에서 결합되면서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상업적 물품인 음식물 처리기로 완성된다고 판정함

판정 결과

- HQ H303529 사례 및 NY N316794 사례와 유사하게 본 사안에서 중국산 모터는 멕시코에서의 조립 과정을 거치는 동안 멕시코 및 미국에서 제작된 여러 서브 어셈블리들과 결합되어 음식물 처리기로 변형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명칭, 특성 및 용도를 갖는 상이한 상업적 물품이 되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 결론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멕시코이므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II. 시사점

- 일부 주요 부품이 다른 국가의 제품이어도 여러 부품들을 결합하여 서브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흡수되어 실질적으로 변형되고, 서브 어셈블리들을 조립하여 새로운 제품이 완성되는 경우 해당 공정이 수행되는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할 수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33319 (2024.05.15.), <https://rulings.cbp.gov/ruling/H333319>
- CBP Ruling HQ H313371 (2021.03.30.), <https://rulings.cbp.gov/ruling/H313371>
- CBP Ruling NY N305251 (2019.08.01.), <https://rulings.cbp.gov/ruling/N305251>
-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529>
- CBP Ruling NY N316794 (2021.02.02.), <https://rulings.cbp.gov/ruling/N31679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_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

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8. 금속 머리띠

[요약]

| | |
|---------|--|
| 사례명 | [금속 머리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53597 (2025.10.09.) |
| 사실관계 | 중국산 금속 티아라 본체, 아크릴 보석, 리본을 캄보디아로 수출하고, 캄보디아에서 중국산 부품들을 캄보디아산 헤드밴드, 빗과 나사로 체결하는 등 최종 조립하여 금속 티아라 머리띠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 티아라 머리띠에 기본적인 성질을 형성하는 것은 캄보디아산 금속 헤드밴드와 플라스틱 빗이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헤드밴드와 빗의 생산국인 캄보디아임 • 중국산 금속 티아라 본체, 아크릴 보석이 캄보디아에서 부착되더라도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새로운 제품이 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³⁵⁾

- **사례명:** [금속 머리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53597 (2025.10.09.)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Moimui Creations Limited | |
| 제품 | 제품명 | • 금속 티아라 머리띠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 티아라 본체 (중국산) • 아크릴 보석 (중국산) • 리본 (중국산) • 헤드밴드 (캄보디아산) • 플라스틱 빗 (캄보디아산) • 나사 (캄보디아산) |
| 제조 공정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중국산 부품들을 캄보디아로 수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2 캄보디아에서 최종 조립 및 포장</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3 미국 수출</p> </div>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금속 티아라 본체, 아크릴 보석, 리본을 캄보디아로 수출 2. 캄보디아에서 라인스톤(rhinestones) 선별하여 지정된 위치에 접착 3. 티아라 본체의 홈/패턴에 컬러 에폭시 도포 4. 티아라 본체 부품을 헤드밴드에 나사로 체결 5. 빗살을 머리띠 끝부분에 접착한 후 리본으로 감아 추가 고정 6. 품질 검사 후 필요 시 수정 7. 티아라 헤드밴드 포장 및 라벨 부착 8. 선적용 박스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35)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로 완성품을 조립하는 경우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구성 부품, 부품들이 거친 가공 공정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함. 단일 요소는 결정적이지 않으며 단순한 수준의 조립/제조 작업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판정 결과

- ▣ 캄보디아산 금속 헤드밴드와 플라스틱 빗이 완성된 티아라 머리띠의 기본적인 성질을 형성하고, 중국산 부품이 캄보디아에서 부착되더라도 새로운 명칭, 성질, 또는 용도를 가진 새로운 제품이 되지 않으므로 금속 티아라 머리띠의 원산지는 캄보디아임

□ 결론

- ✓ 완제품에 본질을 부여하는 부품의 생산국인 캄보디아가 금속 머리띠의 원산지임

II. 시사점

- 머리띠와 같은 액세서리의 경우, 인체에 착용 가능하도록 하는 장착부가 주요 핵심 구성 요소로 판단될 수 있으며, 해당 구성 요소가 생산된 국가가 원산지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3597 (2025.10.09.), <https://rulings.cbp.gov/ruling/N353597>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9. 대나무 선반 패널

[요약]

| | |
|---------|--|
| 사례명 | [대나무 선반 패널]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54280 (2025.10.21.) |
| 사실관계 | 중국에서 제작한 대나무 블랭크 데크와 말레이시아산 금속 나사 인서트를 베트남으로 수출한 후, 베트남에서 현지 조달된 재료들과 함께 절단, 연마, 코팅 등의 조립 공정을 수행하여 대나무 선반 패널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에서의 제조 및 조립 공정을 통해 중국산 및 말레이시아산 개별 부품들이 대나무 선반 패널로서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지게 되므로 해당 공정이 수행된 베트남을 원산지로 판정함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³⁶⁾

- **사례명:** [대나무 선반 패널]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54280 (2025.10.21.)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Forest Products Distributors | |
| 제품 | 제품명 | • 대나무 선반 패널 (품목번호: BAMB30125MI) |
| | 구성 | • 대나무 블랭크 데크 (중국산) • 금속 나사 인서트 (말레이시아산) |
| | 용도 | • 컴퓨터 모니터 받침대, 책장 구성품 및 기타 가구용 |
| | 완제품 HTSUS | • 9403.99.2080 |
| 제조 공정 | | |
|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에서 대나무 블랭크 데크 제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나무 줄기 수확 (2) 대나무 줄기를 얇은 조각으로 절단 후 가압실에서 건조하고 품질 및 색상별 분류 (3) 대나무 조각 압착 및 접착하여 얇은 패널 제작 (4) 여러 얇은 패널을 압착 및 접착하여 더 커다란 대나무 블랭크 데크 제작 2. 중국산 대나무 데크, 말레이시아산 금속 나사 인서트 베트남으로 선적 및 수출 3. 베트남에서 폴리우레탄 목재 실러, 목재 스테인, 접착제, 에폭시 수지, 포장재 현지 조달 4. 베트남에서 미완성·미조립·미마감 상태 목재 가구 부품으로 제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대형 대나무 블랭크 데크 하나를 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CNC)를 사용하여 여러 선반 부품으로 치수 절단, 성형, 연마, 옛지 프로파일링 (2) CNC 기계로 6개의 구멍을 뚫고 금속 나사 인서트 설치 (3) 대나무 패널 선반 모서리와 가장자리를 수작업으로 연마 (4) 대나무 패널 선반의 앞면과 뒷면 검사 후 추가 연마로 결함 제거 (5) 자외선 폴리우레탄 목재 실러 분사 후 대나무 패널 선반 공기 건조 (6) 대나무 패널 선반 앞면과 뒷면에 갈색, 진한 갈색, 또는 검정색 착색 코팅 도포 (7) 대나무 패널 선반 앞면과 뒷면에 최종 폴리우레탄 탑코트 도포 (8) 도포 불량이나 기포가 발견될 경우 수리 및 추가 폴리우레탄 도포 5. 세척, 포장, 라벨링 후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36) 해당 HS Code에 따른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품목 개요 미제공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중국산 및 말레이시아산 개별 부품들은 베트남에서의 제조 및 조립 공정에서 정체성을 잃고 완성된 목재 가구 선반 패널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갖게 되므로 대나무 선반 패널의 원산지는 베트남임

□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대나무 선반 패널의 원산지는 베트남임

II. 시사점

- 블랭크 데크는 그 자체로 선반 용도의 패널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반가공품을 가공하여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 실질적 변형을 인정받을 수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4280 (2025.10.21.), <https://rulings.cbp.gov/ruling/N354280>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10.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

[요약]

| | |
|---------|--|
| 사례명 |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54160 (2025.10.21.) |
| 사실관계 | 중국 또는 독일에서 생산된 소재(폴리우레탄 필름, 초흡수성 섬유, 부직포, 폴리우레탄 폼, 실리콘 메쉬, 이형 필름)을 베트남으로 수입한 뒤, 라미네이팅, 절단, 멸균, 소독, 라벨 부착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최종제품인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에서 중국산 또는 독일산 소재를 라미네이팅하여 드레싱 코어를 제작하고 각 층을 결합할 때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므로 제조공정의 수행국인 베트남이 원산지임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251)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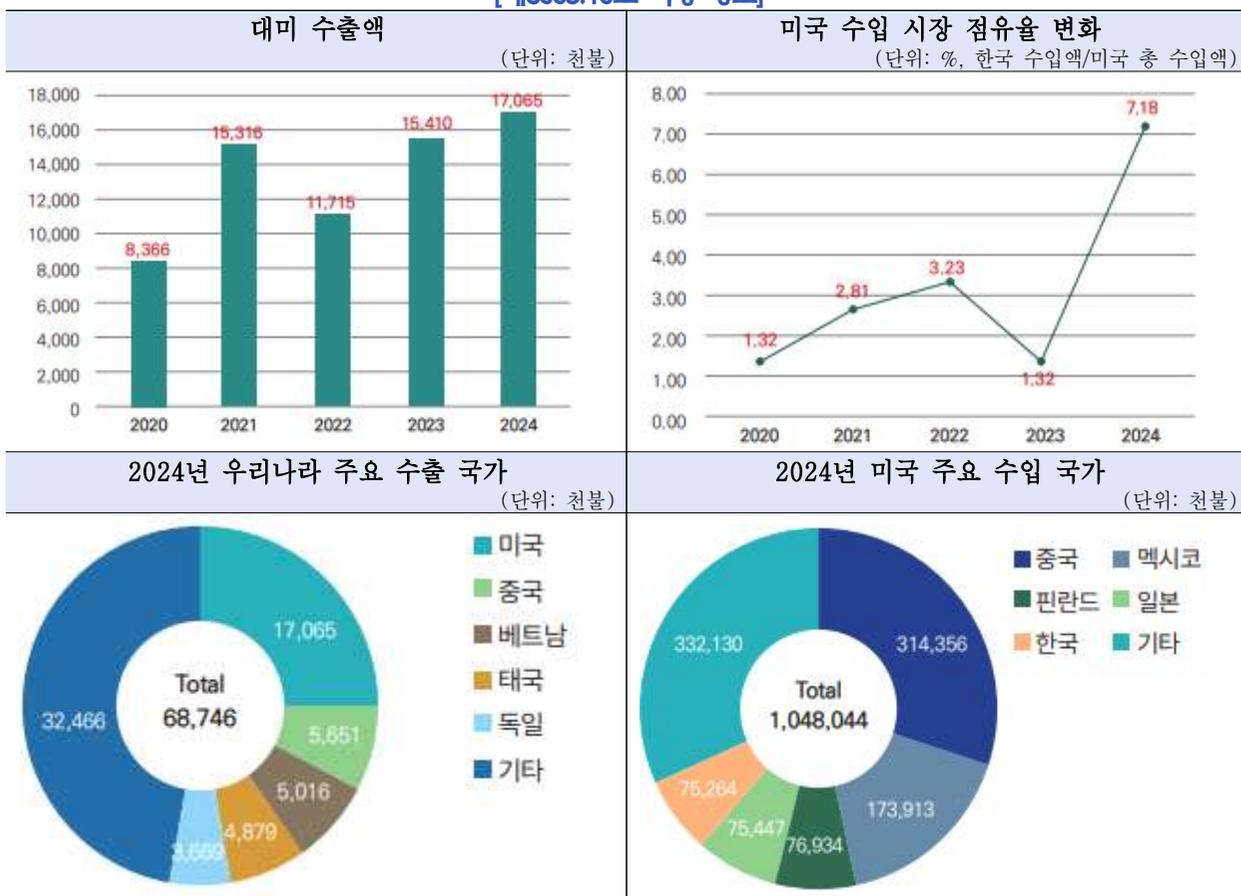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3005.10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3005.10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54160 (2025.10.21.)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Winner Medical (대리인: Liang + Mooney, PLLC) | |
| 제품 | 제품명 | • 테두리 부착형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우레탄 필름 • 초흡수성 섬유(SAF) 층 • 부직포 층 • 폴리우레탄 폼 • 실리콘 메쉬 층 • 이형 필름 |
| | 용도 | • 상처를 덮고 습윤 치유 환경 제공 |
| | 완제품 HTSUS | • 3005.10.5000 |
| 제조 공정 |  <p>01 중국산 또는 독일산 구성품들 베트남으로 수출</p> <p>02 베트남에서 제품 생산</p> <p>03 미국 수출</p>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에서 폴리우레탄 필름, SAF 층, 부직포 층, 폴리우레탄 폼, 이형 필름 제조 2. 중국 또는 독일에서 실리콘 메쉬 제조 3. 6개 층 모두 베트남으로 운송 후 최종 조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AF 층, 부직포 층, 폴리우레탄 폼 층을 풀고 열 라미네이팅하여 드레싱 코어 제작 (2) TPU, 드레싱 코어, 실리콘 메쉬 층, PE 이형 필름을 풀고 라미네이팅 (3) 규격에 맞는 길이와 폭으로 절단 (4) 멸균, 소독, 라벨 부착 및 소매용 라벨과 함께 포장 4. 미국으로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현행 무역구제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분석이 적용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중국산 또는 독일산 원자재는 베트남에서 결합될 때 테두리가 있는 자가 접착식 실리콘 폼 드레싱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므로 해당 제조공정을 수행한 베트남을 원산지로 판정함

□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베트남임

III. 시사점

- 다층 소재로 이루어진 폼 드레싱의 경우, 각 층의 소재가 각각 다른 국가에서 생산될지라도 이를 라미네이팅하여 결합하는 등의 제조공정이 단일 국가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 국가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4160 (2025.10.21.), <https://rulings.cbp.gov/ruling/N354160>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Origin Case

Vol. 10

- Case 1 - 톱날
- Case 2 - 임신 진단키트
- Case 3 - 승용차
- Case 4 - PBAT 컴파운드 (제3907.99호)
- Case 5 - 글리신 (제2922.49호)
- Case 6 - 회전의자 (제9401.39호)
- Case 7 - 가습기
- Case 8 - 저전압 케이블
- Case 9 - 베어링 셀
- Case 10 - 래칫 타이 다운 (제8479.89호)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Case 1. 톱날

[요약]

| | |
|---------|--|
| 사례명 | [톱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735086 (1993.10.20.) |
| 사실관계 | 중국에서 중국산 톱날 블랭크에 미국산 카바이드 팁, 은납을 납땜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후, 미국에서 카바이드 팁을 연마하여 최종 제품인 톱날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서 팁을 연마하는 공정은 톱날의 명칭, 성질, 용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며, 이를 위해 복잡한 기술이나 작업이 수행된 것도 아니므로,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명칭) 수입 당시 팁이 연마되지 않은 상태여도 여전히 톱날이라고 불리며 미국 내 가공으로 물품의 명칭이 변경되지 않음 - (성질) 수입 당시 이미 톱날의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공정을 통해 제품이 정제될 뿐 성질이 바뀌지 않음 - (용도) 수입된 톱날은 쉽게 회전식 톱날로 인식되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가공 후에도 크기와 형태가 변하지 않음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³⁷⁾

- **사례명:** [톱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735086 (1993.10.20.)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Dalex | |
| 제품 | 제품명 | • rotary steel saw blades |
| | 구성 | • 톱날 블랭크 (중국산) • 카바이드 팁 (미국산) • 은납 (미국산) |
| | 용도 | • 절삭 공구용 |
| 제조 공정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미국산 카바이드 팁, 은납을 중국으로 수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2 중국산 톱날 블랭크에 납땜 후 미국 수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3 미국에서 마무리 공정</p> </div>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에서 절삭용 카바이드 팁, 은납을 제조하여 중국으로 수출 2. 중국에서 톱날 블랭크 제작 3. 중국에서 톱날 블랭크에 카바이드 팁을 납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 4. 미국에서 톱날을 샌드블라스트, 연마 후 상단 및 측면 연삭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a)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a))』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다음의 사례들을 참고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40134 (1987.02.06.)*

(사례) 톱날 블랭크에 톱니 연삭 및 기타 사소한 공정 수행

(판정) 톱니가 최종 제품의 본질적 성질을 결정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므로 톱날 블랭크는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3837 (1991.02.05.)*

37)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사례) 미국에서 톱날 블랭크에 톱니를 연삭하는 유사한 공정 수행

(판정) 해당 공정으로 톱날 블랭크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

- 일정 국가에서 행해진 공정으로 인해 물품의 가치 증가했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Slip Op. 96-61 (April 27, 1992) *aff'd* 989 F.2d 1201 (1993)

판정 결과

- ⅴ 미국에서 톱날의 카바이드 팁을 연마하는 공정은 톱날의 명칭, 성질, 용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며, 이를 위해 복잡한 기술이나 작업이 수행된 것도 아니므로,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명칭) 수입 당시 팁이 연마되지 않은 상태여도 여전히 톱날이라고 불리며 미국 내 가공으로 물품의 명칭이 변경되지 않음
 - (성질) HQ 740134, HQ 733837과 달리 수입 당시 이미 톱날의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공정을 통해 제품이 정제될 뿐 성질이 바뀌지 않음
 - (용도) 수입된 톱날은 쉽게 회전식 톱날로 인식되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가공 후에도 크기와 형태가 변하지 않음
- ⅴ 신청자는 톱날 제조 비용의 대부분이 미국산 부품이나 미국 내 작업에 기인하므로 미국산이라고 주장하나 *National Hand Tool Corp.* 사례와 같이 물품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미국 내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도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 미국 내 작업 비용과 부품 비용이 톱날 제조 총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사업 운용 비용이 중국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중국에서 행해진 공정보다 중요하다거나 더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미국에서의 가공이 중국에서의 작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미국에서의 공정 이후에도 톱날은 여전히 중국산임

□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톱날의 원산지는 중국임

II. 시사점

- 이미 톱날로서의 성질이 형성된 경우, 팁을 연삭하는 단순한 공정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735086 (1993.10.20.), <https://rulings.cbp.gov/ruling/735086>
- CBP Ruling HQ 733837 (1991.02.05.), <https://rulings.cbp.gov/ruling/733837>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2. 임신 진단키트

[요약]

| | |
|---------|--|
| 사례명 | [임신 진단키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560613 (1997.10.28.) |
| 사실관계 | 미국산 및 독일산 구성품들을 아일랜드로 수입한 후, 아일랜드에서 미국산 항체를 고체 물질에 부착하고 아일랜드산 부품을 추가하여 조립하는 등 최종 조립하여 임신 진단키트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진단키트의 본질적 특성은 특정 호르몬과 반응하여 임신 여부를 감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산 항체에 의해 부여되고, 아일랜드에서 항체를 고체 물질에 부착하고 하우징에 단순 조립하는 공정은 사용자 편의를 높일 뿐 항체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임신 진단키트의 원산지는 항체의 원산지인 미국임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³⁸⁾

- **사례명:** [임신 진단키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560613 (1997.10.28.)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Selfcare, Inc. | |
| 제품 | 제품명 | • early pregnancy test kit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부 하우징, 하부 하우징, 캡, 위크, 939지, 901지, 단일클론 항체 107("MAb 107"), 단일클론 항체 105 ("MAb 105"), 대조 항체, 라미네이트, 니트로셀룰로오스(nitrocellulose), 테트라클로로금산 수화물(hydrogen tetra chlorauric hydrate): 미국산 • 스플래시 가드: 아일랜드산 • 8mm 레이온: 독일산 |
| | 용도 | • 소변 샘플과 접촉할 때 일으키는 반응으로 임신 여부 진단 (소매용) |
| 제조 공정 |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다국적산 구성품들을 아일랜드로 수입</p> <p>02 아일랜드에서 최종 조립 및 포장</p> <p>03 미국 수출</p>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산, 독일산 구성품 아일랜드로 수입 2. 아일랜드 제조 공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액상 상태로 수입된 미국산 항체를 고체 재질 위에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b 105와 대조 항체를 니트로셀룰로오스에 얇게 두 줄로 분사 후 건조 - 테트라클로로금산 수화물을 물에 희석하여 클로로금산으로 만들고 이를 물과 구연산나트륨과 함께 끓여 분홍/보라색 금 용액을 생산 - MAb 107과 금 용액으로 레이온 막에 코팅 후 건조 (2) 니트로셀룰로오스와 레이온을 세제 용액에 담갔다가 건조된 901지·939지와 함께 라미네이트 종이에 부착 (3) 완성된 라미네이트는 6.9mm의 스트립으로 절단 후 상부, 하부, 캡으로 구성된 하우징에 조립 및 위크 추가 (4) 완성된 스틱은 아일랜드산 제습제와 함께 포일 파우치에 넣어 밀봉 3.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38)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㉔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다음의 사례들을 참고함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CIT 1986)

(사례) 제조용 농축액을 사용하여 냉동 농축 오렌지 주스와 재구성된 오렌지 주스를 생산

(판결) 제조용 농축액은 “비용, 가치 또는 수량으로 측정할 때 최종 제품의 주요 부분”이며 미국 내에서 냉동 농축 오렌지 주스로 만드는 추가 공정은 단순한 제조 공정에 불과함. 수입된 제조용 농축액이 소매 제품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미국에서 물, 오렌지 에센스 및 오일을 추가하여 소매 판매에 적합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근본적인 성질은 변하지 않음. 따라서 제조용 농축액은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3248 (1990.08.22.)*

(사례) 미국 기증자로부터 채혈된 인체 혈액에 대해 여러 번의 침전, 원심분리 및 여과 과정을 거치며 단백질이 제거되고 시약이 혈장에 첨가되어 Immune Globulin (Human) Fraction II paste이 제조됨. 이 상태에서 희석제를 첨가하면 환자에게 근육주사로 사용할 수 있음. 이후 Fraction II는 벨기에로 보내져 추가적인 여과, 완충 및 기타 공정을 거쳐 대량 형태에서 복용 가능한 제형으로 전환되어 “IGIV”(Immune Serum Globulin Intravenous, 면역혈청글로불린 정맥주사용)가 정맥주사에 적합하게 됨

(판정) 벨기에에서의 공정들이 제품을 정맥주사 형태로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긴 했지만, Fraction II 자체가 최종 제품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벨기에의 공정들이 제품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꾸지는 않았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음

판정 결과

- ㉔ 항체는 아일랜드로 수입되기 전에 이미 임신 진단키트의 핵심 기능인 임신 호르몬의 감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아일랜드에서의 공정을 통해 이러한 기능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신 진단키트의 원산지는 항체의 원산지인 미국임
- ㉔ 아일랜드에서 생산된 금 용액이 판정 결과를 식별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도 있겠으나, 여전히 소변 샘플과 반응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미국산 항체이며, 이러한 항체를 고체 물질에 부착하고 하우스징에 단순 조립하는 등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결론

✓ 원산지표시 목적상 임신 진단키트의 원산지는 미국임

II. 시사점

- 임신 진단키트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 요소는 항체이며, 항체를 종이에 분사하거나 하우스징에 결합하는 등의 공정은 소비자의 편의를 높일 뿐 항체의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항체의 생산국이 키트의 원산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Ⅲ. 참고자료

- CBP Ruling HQ 560613 (1997.10.28.), <https://rulings.cbp.gov/ruling/560613>
- CBP Ruling HQ 733248 (1990.08.22.), <https://rulings.cbp.gov/ruling/733248>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3. 승용차

[요약]

| | |
|---------|--|
| 사례명 | [승용차]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HQ H302821 (2019.07.26.) |
| 사실관계 | 중국에서 다국적산 부품들을 사용하여 제작된 주요 서브어셈블리 3개(차체 어셈블리, 엔진 모듈, 후륜 서스펜션 모듈)와 기타 중국산 부품 및 유럽산 부품을 스웨덴으로 수입한 후, 스웨덴에서 최종 조립 과정을 거쳐 승용차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에서 복잡한 조립 공정을 통해 최종 용도가 사전에 결정된 핵심 서브어셈블리가 생산되며, 스웨덴에서 이를 다른 부품들과 조립하여 승용차를 만드는 공정은 비교적 단순하여 서브어셈블리의 용도를 변경시키지 못하므로 보다 복잡한 공정이 수행된 중국이 원산지임 |
| 근거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판정사례³⁹⁾

- **사례명:** [승용차]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HQ H302821 (2019.07.26.)
- **사실관계**

| | | | |
|-------|--|--|--|
| 요청자 | • Volvo Car U.S. Operations Inc. | | |
| 제품 | 제품명 | • passenger vehicles | |
| | 구성 | 구분 | 부품명(원산지) |
| | | 차체 어셈블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디사이드, 도어, 리어선반, 테일게이트(이탈리아산) • 사이드미러(영국산) • 헤드램프(슬로바키아산) • 사이드 마커등(프랑스산) • A패널, C패널, 파노라마 루프(중국산) |
| | | 엔진 모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유 엔진, 서브프레임(스웨덴산) • 기어박스, 프론트 서스펜션(일본산) • 전륜 브레이크(미국산) • 라디에이터, 스티어링 시스템(중국산) |
| | | 후륜 서스펜션 모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륜 서브프레임, 후륜 전기모터(스웨덴산) • 후륜 서스펜션(일본산) • 후륜 브레이크(독일산) |
| | 기타 주요 부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드, 범퍼, 배터리 모듈, 온보드 충전기 및 인버터, 연료탱크 및 연료 필터 파이프, 배기 시스템, 호스 및 연료 라인, 언더바디 패널 및 히트 실드, 계기판, 터널 콘솔, 시트(중국산) • 고전압 케이블, 바퀴 (유럽산) | |
| 제조 공정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00a09a; border-radius: 50%; width: 60px; height: 6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div style="font-weight: bold; color: #00a09a; font-size: 24px;">01</div> <div style="color: #00a09a; font-size: 12px;">중국산 및 유럽산 부품들 스웨덴으로 수입</div> <div style="font-size: 24px; 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0056b3; border-radius: 50%; width: 60px; height: 6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div style="font-weight: bold; color: #0056b3; font-size: 24px;">02</div> <div style="color: #0056b3; font-size: 12px;">스웨덴에서 최종 조립</div> <div style="font-size: 24px; 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d98025; border-radius: 50%; width: 60px; height: 6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div style="font-weight: bold; color: #d98025; font-size: 24px;">03</div> <div style="color: #d98025; font-size: 12px;">미국 수출</div>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에서 다국적산 부품들을 사용하여 주요 서브어셈블리 생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체 어셈블리 조립 및 도장 (2) 엔진 모듈 조립 (3) 후륜 서스펜션 모듈 조립 2. 중국산 서브어셈블리 및 기타 부품, 유럽산 일부 부품을 스웨덴으로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대의 차량 제작에 필요한 구성품들을 컨테이너 두 개에 포장하여 단일 선적물로 또는 생산 계획상 전체 차량 제작에 필요한 구성품들을 분리된 선적물로 운송 3. 스웨덴에서 최종 조립 4. 미국 수출 | | |

39)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쟁점사항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현행 무역구제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분석이 적용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해당 부품들이 그 개별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573 F. Supp. 1149 (Ct. Int'l Trade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음

◆ 참고 판정: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and C.S.D. 90-97*

-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702 F. 2d 1022 (Fed. Cir. 1983)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각 구성 부품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공 정도, 해당 가공이 해당 물품에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부여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고려 사항임
- 이 외에도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이후의 검사 및 시험 절차의 범위와 성격, 제조 과정에서 요구되는 작업자의 숙련도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단일 요소는 결정적이지 않음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수입 후 가공이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 물리적 변형(physical change)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성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at 226, 542 F. Supp. at 1031,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제품의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서 이미 사전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다음의 사례들을 참고함

◆ 참고 판례: *CBP Ruling HQ H155115 (2011.05.24.)*

(사례) 전기차는 14개의 미국산 구성 요소를 포함한 총 31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종 제품의 조립은 미국에서 수행됨

(판정) 미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품과 노동력 모두에서 상당한 기여가 필요하며, 미국 내에서 수행된 공정으로 인해 부품들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전기차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으므로 원산지를 미국으로 판정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118435 (2010.10.13.)*

(사례) 골프 및 레저용 전기차는 약 53개에서 62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그 중 12개에서 17개는 미국산이고 새시, 플라스틱 차체 부품 등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하여 미국산 배터리 팩, 모터 등과 조립함

(판정) 수입 부품 모두가 다른 미국산 부품과 조립해야 전기차로 기능할 수 있고 핵심 부품인 배터리 팩, 모터, 전자장치, 배선 어셈블리, 충전기가 모두 미국산이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조 공정으로 부품들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으므로 원산지를 미국으로 판정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022169 (2008.05.02.)*

(사례) 인도에서 생산된 미니트럭 글라이더(엔진, 변속기, 구동축, 배기·연료 시스템 등 내연 기관 차량의 일반적인 핵심 구성 요소는 포함되지 않음)를 미국으로 수입한 후, 모터, 배터리 팩, 기타 전자 장치 등의 구성 요소를 추가하여 전기 미니트럭을 생산함. 해당 제품은 약 87개의 서로 다른 구성품으로 조립되며, 이 중 68개가 미국산이고 미국산 구성품이 총 비용의 51%를 차지함

(판정) 상당수의 주요 부품이 미국산이고, 미국에서의 조립 공정을 통해 수입 글라이더의 고유의 정체성이 상실되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전기 미니트럭이 생산되므로 원산지를 미국으로 판정함

판정 결과

- HQ H155115, HQ H118435, HQ H022169와 달리 중국에서 3개의 주요 서브어셈블리를 생산하는 공정은 스웨덴에서 수행된 공정보다 복잡하며, 스웨덴에서의 공정을 통해 사전에 정해진 용도가 변경되지도 않으므로 승용차의 원산지는 주요 서브어셈블 리가 생산된 중국임

□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승용차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함

II. 시사점

-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제품의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보다 복잡한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어디인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Ⅲ.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2821 (2019.07.26.), <https://rulings.cbp.gov/ruling/H302821>
- CBP Ruling HQ H155115 (2011.05.24.), <https://rulings.cbp.gov/ruling/H155115>
- CBP Ruling HQ H118435 (2010.10.13.), <https://rulings.cbp.gov/ruling/H118435>
- CBP Ruling HQ H022169 (2008.05.02.), <https://rulings.cbp.gov/ruling/H02216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4. PBAT 컴파운드

[요약]

| | |
|---------|--|
| 사례명 | [PBAT 컴파운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41500 (2024.08.14.) |
| 사실관계 | 중국산 PBAT, 태국산 PLA, 인도 또는 파키스탄산 Talc를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에서 한국산 CaCO ₃ 와 혼합, 냉각, 절단, 제습, 건조하여 PBAT 컴파운드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PBAT가 PBAT 컴파운드의 70%를 구성하는 핵심 재료이며, 한국에서 다른 재료들과 혼합된 이후에도 그 기능이나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등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PBAT 컴파운드의 원산지를 핵심 재료인 PBAT의 원산지인 중국으로 판정함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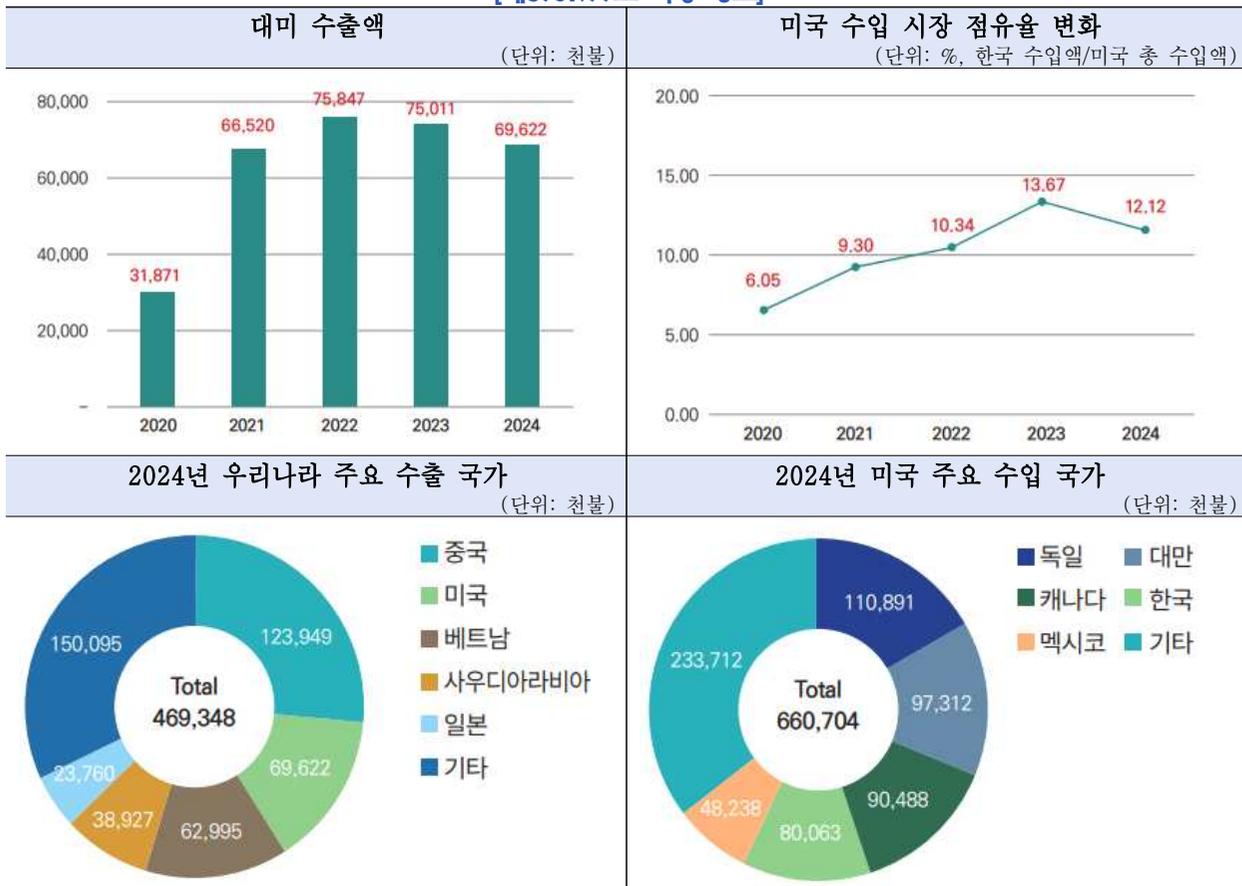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3907.99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 or 6.5%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

□ 시장 정보

[제3907.99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PBAT 컴파운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41500 (2024.08.14.)
- **사실관계**

| | | | | |
|--------------|---|--|--------------|-----|
| 요청자 | • LG Chem | | | |
| 제품 | 제품명 | • 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PBAT) Compound | | |
| | 구성 | 구성요소 | 구성비율 | 원산지 |
| | | PBAT | 70% | 중국산 |
| | | PLA | 10% | 태국산 |
| | | CaCO ₃ | 15% | 한국산 |
| | Talc | 5% | 인도산 또는 파키스탄산 | |
| 용도 | • 비닐봉투, 멀칭필름(농업용), 식품 포장용 | | | |
| 원재료 HTSUS | • 3907.99 (PBAT Neat) | | | |
| 완제품 HTSUS | • 3907.99.5050 | | | |
| 제조 공정 | <p style="text-align: center;"> 01 02 03 </p> <p style="text-align: center;"> 다국적산 원재료를 한국으로 수입 한국에서 혼합하여 최종 생산 및 포장 미국 수출 </p> | | | |
|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태국산, 인도산 또는 파키스탄산 원재료를 한국으로 수입 2. 한국 제조공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 원재료들과 기타 첨가제를 계량 후 믹서로 혼합 (2) 한국산 CaCO₃를 계량하여 별도의 사이드 호퍼에 투입 (3) 혼합물은 압출기의 메인 피더로, 한국산 CaCO₃는 사이드 피더로 넣고 지정된 온도와 압력 하에서 균일하게 혼합 (4) 결과물 냉각 후 균일한 크기의 펠릿으로 절단 (5) 채습 및 건조 (6) 검사 후 지정된 중량 단위로 포장 3. 미국 수출 | |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판정 결과

- ☑ 중국산 PBAT가 PBAT 컴파운드의 70%를 구성하며, 한국에서의 공정 이후에도 HTSUS나 CAS 번호가 유지되고, 다른 재료들과 혼합되어 기능이 향상될 뿐 기능도 용도도 변경되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음
- ☑ PBAT 컴파운드의 원산지는 PBAT의 원산지인 중국임

기타 의견

- ☑ 해당 제품은 HTSUS, Chapter 99, Subchapter III, Note 20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므로 수입 시 기본 세번 외에 Chapter 99에 따른 세번인 9903.88.02도 함께 신고해야함

□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PBAT 컴파운드의 원산지는 중국임

III. 시사점

- 혼합 공정이 화학적 반응을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 혼합 공정에 해당하고, 해당 사례와 같이 특정 구성 요소의 비중이 크고 그 성질이 핵심적일 경우, 해당 구성 요소의 원산지가 최종 제품의 원산지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음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1500 (2024.08.14.), <https://rulings.cbp.gov/ruling/N341500>
-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

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y-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
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5. 글리신

[요약]

| | |
|---------|--|
| 사례명 | [글리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40424 (2024.09.10.) |
| 사실관계 | 중국산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를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에서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수용액에 한국산 염산을 첨가하여 산성화되며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 글리신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리신은 산성화되며 발생하는 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별개의 화학물질로서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또는 염산과 CAS 번호가 다르며 명칭, 성질, 용도가 변화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므로 산성화 등의 공정을 수행한 한국을 원산지로 판정함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⁴⁰⁾

- **사례명:** [글리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40424 (2024.09.10.)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U.S. Pharmatech Inc. (대리인: D and A Customs Services Inc.) | |
| 제품 | 제품명 | • Glycine (CAS No. 56-40-6) |
| | 구성 | •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중국산) • 염산 (한국산) |
| | 용도 | • 감미료로 사용 |
| | 완제품 HTSUS | • 2922.49.4300 |
| 제조 공정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중국산 재료 한국으로 수입</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2 한국에서 최종 생산</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3 미국 수출</p> </div>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magnesium bisglycinate, CAS No. 14783-68-7)를 한국으로 수입 2. 한국에서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수용액에 한국산 염산(hydrochloric acid, CAS No. 7647-01-0)을 첨가하여 산성화되며 발생하는 화학 반응으로 글리신 생산 3.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판정 결과

- ☐ 글리신은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수용액에 염산을 첨가하여 발생한 화학 반응으로 생성된 별개의 화학물질로서 원재료들과 CAS 번호가 다르고 감미료로 사용되는 등 명칭, 성질, 용도가 변화하였으므로 해당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공정을 수행한 한국이 원산지임

40) 해당 HS Code에 따른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품목 개요 미제공

□ 결론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표시 목적상 글리신의 원산지는 한국임

II. 시사점

- 화학 반응을 통해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경우, 단순한 혼합이 아닌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어 해당 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로 판정될 수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0424 (2024.09.10.), <https://rulings.cbp.gov/ruling/N34042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Case 6. 회전의자

[요약]

| | |
|---------|--|
| 사례명 | [회전의자]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45246 (2025.01.31) |
| 사실관계 | 플라스틱 팔걸이, 캐스터 등 중국산 부품들을 멕시코로 수입한 후, 멕시코에서 재단, 봉제, 조립 등의 공정을 통해 회전의자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에서 행해진 공정으로 인해 중국산 개별 부품들은 상위의 구성 요소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전혀 다른 상업적 물품인 회전의자로 변경되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판정사례⁴¹⁾

- **사례명:** [회전의자]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45246 (2025.01.31)
- **사실관계**

| 요청자 | • Veyer LLC | | | | | | | |
|-----------|--|--|------|------|-----|--|------|---|
| 제품 | 제품명 | • WP1000 Mesh Chair (SKU# 604924) | | | | | | |
| | 구성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30%;">원산지</th> <th>구성요소</th> </tr> </thead> <tbody> <tr> <td>중국산</td> <td>메쉬 직물(폴리에스터), 플라스틱 폼(폴리우레탄), 플라스틱 팔걸이, 플라스틱 캐스터, 금속 시트 플레이트, 금속 가스리프트, 금속 볼트, 금속 조립 하드웨어</td> </tr> <tr> <td>멕시코산</td> <td>플라스틱 등받이 프레임, 시트 프레임, 플라스틱 스위블 베이스, 라벨, 포장재</td> </tr> </tbody> </table> | 원산지 | 구성요소 | 중국산 | 메쉬 직물(폴리에스터), 플라스틱 폼(폴리우레탄), 플라스틱 팔걸이, 플라스틱 캐스터, 금속 시트 플레이트, 금속 가스리프트, 금속 볼트, 금속 조립 하드웨어 | 멕시코산 | 플라스틱 등받이 프레임, 시트 프레임, 플라스틱 스위블 베이스, 라벨, 포장재 |
| | | 원산지 | 구성요소 | | | | | |
| | 중국산 | 메쉬 직물(폴리에스터), 플라스틱 폼(폴리우레탄), 플라스틱 팔걸이, 플라스틱 캐스터, 금속 시트 플레이트, 금속 가스리프트, 금속 볼트, 금속 조립 하드웨어 | | | | | | |
| 멕시코산 | 플라스틱 등받이 프레임, 시트 프레임, 플라스틱 스위블 베이스, 라벨, 포장재 | | | | | | | |
| 용도 | • 높이 조절이 가능한 1인용 회전의자 | | | | | | | |
| 완제품 HTSUS | • 9401.39.0010 | | | | | | | |
| 제조 공정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중국산 부품들을 멕시코로 수출 [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부품들을 멕시코로 수출 2. 멕시코 제조 공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출성형 기계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등받이 프레임 등 추가 부품들 제작 (2) 중국산 메쉬 직물을 재단 및 봉제하여 의자 등받이 및 기초 부품으로 제작 (3) 네일 건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추가 부품 조립 (4) 추가 제조, 검사 후 미조립 상태로 포장 3. 미국 수출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2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 및 포장</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3 미국 수출</p> </div> </div> | | | | | | | |

- **쟁점사항**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41) 해당 HS Code에 따른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품목 개요 미제공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중국산 개별 부품들은 멕시코에서 결합, 압착, 형상 절단, 봉제 및 조립 등의 공정을 통해 더욱 상위의 구성 요소로 통합되며, 이를 통해 기존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상업 물품인 회전의자로 명칭, 성질 및 용도가 변경되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 결론

✓ 제301조 적용 목적상 원산지는 멕시코이므로 제301조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II. 시사점

- 최종 제품 생산을 위해 하위 구성 요소들이 여러 공정을 거치며 통합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5246 (2025.01.31), <https://rulings.cbp.gov/ruling/N345246>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7. 가습기

[요약]

| | |
|---------|--|
| 사례명 | [가습기] 무역구제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52841 (2025.09.23.) |
| 사실관계 | 한국에서 생산된 초음파 네블라이저와 컨트롤러를 중국으로 수입한 후, 중국에서 다른 중국산 부품들과 최종 조립하여 가습기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무역구제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블라이저와 컨트롤러는 가습기에 성질을 부여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한국에서 SMT 등 복잡한 공정을 통해 제작되었고, 중국에서의 공정 이후에도 사전에 결정된 용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가습기의 원산지를 핵심 부품의 생산국인 한국으로 판정함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판정사례⁴²⁾

- **사례명:** [가습기] 무역구제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52841 (2025.09.23.)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Crane USA Inc., (대리인: Jo-Anne Daniels DBA Trade Resources & Associates) | |
| 제품 | 제품명 | • Cool Mist Humidifier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음파식 네블라이저 (한국산) • 컨트롤러 (한국산) • 손잡이, 물탱크, 밸브 나사, 팬, 너트, 어댑터 등 (중국산) • 상부 커버 어셈블리 • 최소/최대 조절 장치 • 녹색 LED 작동 표시등 • 적색 LED 저수위 표시등 |
| 제조 공정 |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한국산 네블라이저와 컨트롤러 중국 수입</p> <p>02 중국에서 최종 조립 및 포장</p> <p>03 미국 수출</p>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에서 초음파 네블라이저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한 환경 하에서 안정적 공진, 물방울 크기 제어 등을 위한 가공 공정 및 표면 처리 공정, 품질 관리 및 테스트 등의 공정이 수행됨 2. 한국에서 컨트롤러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T를 활용한 정밀 부품 장착, 기능 및 안전 테스트, 표면 코팅 등의 공정 수행 3. 한국산 초음파 네블라이저 및 컨트롤러 중국으로 수입 4. 중국 제조공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커버, 손잡이, 물탱크, 탱크 커버, 콕, 밸브 나사 등 나머지 구성 부품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부품 사출성형, 성형품 검사, 플라스틱 표면에 실크스크린 또는 레이저 프린트 적용 공정 포함 (2) PCB 제어판, 금속 나사 어셈블리, 팬, 초음파식 네블라이저를 베이스 유닛에 조립 (3) 베이스 유닛 및 전원 어댑터에 대한 고전압 절연 시험 (4) 조립된 유닛에 대한 기능 품질 검사 (5) 물탱크 상부와 하부의 초음파 용접 및 완전 조립된 물탱크에 대한 누수 검사 (6) 모든 부품 최종 세척 및 완전 조립 후, 소매용 박스와 운송용 마스터 카톤에 포장 5.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무역구제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42)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 및 기타 현행 무역구제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분석이 적용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요청자에 따르면 네블라이저는 전기 에너지를 초음파를 통한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고 정밀한 공진 조율을 통해 미세한 물방울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컨트롤러는 고주파 구동 신호 및 시스템 제어를 통해 안정적인 초음파 발진, 전력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함

▽ 가습기에 제품의 성질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품은 네블라이저와 컨트롤러로 한국에서 SMT 공정을 포함한 복잡하고 의미 있는 수준의 제조·조립 공정을 통해 제작되며, 중국으로 수입되기 이전부터 사전 결정된 용도는 중국에서의 공정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 결론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가습기의 원산지는 한국임

II. 시사점

• 복잡한 공정을 통해 타국에서 제조된 핵심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및 기타 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할지라도, 수입된 핵심 부품의 명칭, 기능 및 용도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2841 (2025.09.23.), <https://rulings.cbp.gov/ruling/N352841>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8. 저전압 케이블

[요약]

| | |
|---------|---|
| 사례명 | [저전압 케이블]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53664 (2025.09.30.) |
| 사실관계 | 중국에서 인발, 어닐링, 연선 공정으로 제작한 알루미늄 와이어 도체를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에서 압출, 번들링, 절연 처리 등의 공정을 통해 3종의 저전압 케이블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도체는 저전압 케이블이 전기 전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구성 요소로서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고, 한국에서 행해진 절연 처리 및 기타 공정은 단순 공정으로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전압 케이블의 원산지는 도체의 원산지인 중국임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판정사례⁴³⁾

- **사례명:** [저전압 케이블]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53664 (2025.09.30.)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Korea Customs Service (Busan Regional Customs) | |
| 제품 | 제품명 | • low voltage power cables (품목명: XHHW, SER, MC) |
| | 구성 | • 알루미늄 와이어 도체, 섬유 테이프, 알루미늄 테이프 실드 등 |
| | 용도 | • XHHW 케이블: 변전소,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산업 및 상업용 전력 공급 • SER 케이블: 주거 및 상업용 건물 내부 전력 공급 • MC 케이블: 상업용 건물 및 산업 시설 내 전기 배선 |
| 제조 과정 |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중국산 알루미늄 도체 한국으로 수입</p> <p>02 한국에서 가공 및 최종 조립</p> <p>03 미국 수출</p>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에서 인발, 어닐링, 연선 공정으로 생산된 알루미늄 와이어 도체를 한국으로 수입 2. 한국 제조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HHW 케이블: 압출 공정을 통해 가교 폴리에틸렌(XPLE) 절연 처리하여 완성 - SER 케이블: 2~4개의 XHHW 케이블 코어를 절연 압출, 번들링한 후 섬유 테이프로 감싸고 PVC 절연 압출 공정을 통해 완성 - MC 케이블: 2개 이상의 XHHW 케이블 코어를 절연 압출, 번들링한 후 알루미늄 테이프 실드로 감싸 완성 3. 완성된 케이블 검사 후 포장 4.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및 추가 관세에 따른 현행 무역구제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분석이 적용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43)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중국산 도체는 저전압 케이블이 전기 전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구성 요소로서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고, 한국에서 행해진 절연 처리 및 기타 공정은 단순 공정으로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전압 케이블의 원산지는 도체의 원산지인 중국임

□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저전압 케이블의 원산지는 중국임

II. 시사점

- 전기 케이블의 경우 절연 공정은 단순한 공정으로 파악되며, 본질적 성질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 요소인 도체의 생산국이 원산지로 판정될 수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3664 (2025.09.30.), <https://rulings.cbp.gov/ruling/N353664>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9. 베어링 셸

[요약]

| | |
|---------|---|
| 사례명 | [베어링 셸]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55135 (2025.11.10.) |
| 사실관계 | 중국산 강관을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에서 절단, 가공, 그루빙 등의 공정을 통해 최종 제품인 베어링 셸을 생산(필요한 경우 한국산 하우징에 삽입) |
| 쟁점 및 판정 |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강관은 한국에서의 절단, 가공, 그루빙, 드릴링 공정을 통해 평축 베어링으로 기능하는 셸로 명칭, 성질 및 용도가 모두 변화하므로 한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 베어링 셸이 하우징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셸을 하우징에 삽입하는 것은 단순 공정에 불과하나, 하우징의 원산지 또한 한국이므로, 하우징이 포함된 베어링 셸의 원산지 또한 한국임 |
| 근거법령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I. 판정사례⁴⁴⁾

- **사례명:** [베어링 셸]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55135 (2025.11.10.)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Hansung Co., Ltd. | |
| 제품 | 제품명 | • Bearing shells (부품 번호: HFZLQ18-200, HFNLK22-225, HFNLB28-280) |
| | 구성 | • 각 셸은 두 개의 반원통형 구조(상부 및 하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샤프트 또는 액슬이 셸의 중심 보어에 삽입되면 그 표면을 따라 오일이 순환하는 구조임 |
| | 용도 | • 전동기, 발전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
| 제조 공정 | | |
| |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강판을 한국으로 수입 2. 한국 제조 공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형으로 레이저 절단 (2) 측면, 내부, 외부 표면이 동심 정렬을 이루도록 기계 가공 (3) 그루빙 공정을 통해 윤활유 경로 형성 (4) 드릴링 공정을 통해 상·하부 섹션을 고정할 수 있는 구조 형성 (5) 완성된 상·하부 섹션에 도금 처리 (6) 다웰 핀과 볼트를 사용하여 상·하부 체결 (7) (하우징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 하우징에 베어링 셸 삽입 및 회전 방지 핀으로 고정 3. 각 베어링 셸 검사 후 포장 | |

□ 쟁점사항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및 추가 관세에 따른 현행 무역구제조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44)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ⅴ 중국산 강관은 한국에서의 절단, 가공, 그루빙, 드릴링 공정을 통해 평축 베어링으로 기능하는 셀로 명칭, 성질 및 용도가 모두 변화하므로 한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
- ⅴ 베어링 셀이 하우징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셀을 하우징에 삽입하는 것은 단순 공정에 불과하나, 하우징의 원산지 또한 한국이므로, 하우징이 포함된 베어링 셀의 원산지 또한 한국임

□ 결론

✓ 원산지표시 목적상 베어링 셀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한국임

II. 시사점

- 강관과 같은 반제품을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산업용 혹은 공업용 제품으로 가공하는 공정이 일국에서 수행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가능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5135 (2025.11.10.), <https://rulings.cbp.gov/ruling/N355135>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10. 래칫 타이 다운

[요약]

| | |
|---------|--|
| 사례명 | [래칫 타이 다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사례번호 | NY N355742 (2025.11.14.) |
| 사실관계 | 한국산 폴리에스터 원사, 중국산 래칫 메커니즘 및 후크를 뉴질랜드로 수입한 후, 원사를 직조 및 절단하여 웨빙 스트랩을 만들고, 이를 래칫 메커니즘 및 후크와 조립하여 래칫 타이 다운 생산 |
| 쟁점 및 판정 |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래칫 타이 다운에 본질적 성질을 부여하는 웨빙 스트랩은 한국산 원사를 사용하여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며 중국산 래칫 메커니즘과 후크를 단순 조립한 이후에도 웨빙 스트랩으로서의 명칭, 성질, 용도를 유지하므로 래칫 타이 다운의 원산지는 웨빙 스트랩의 원산지인 뉴질랜드임 |
| 근거법령 |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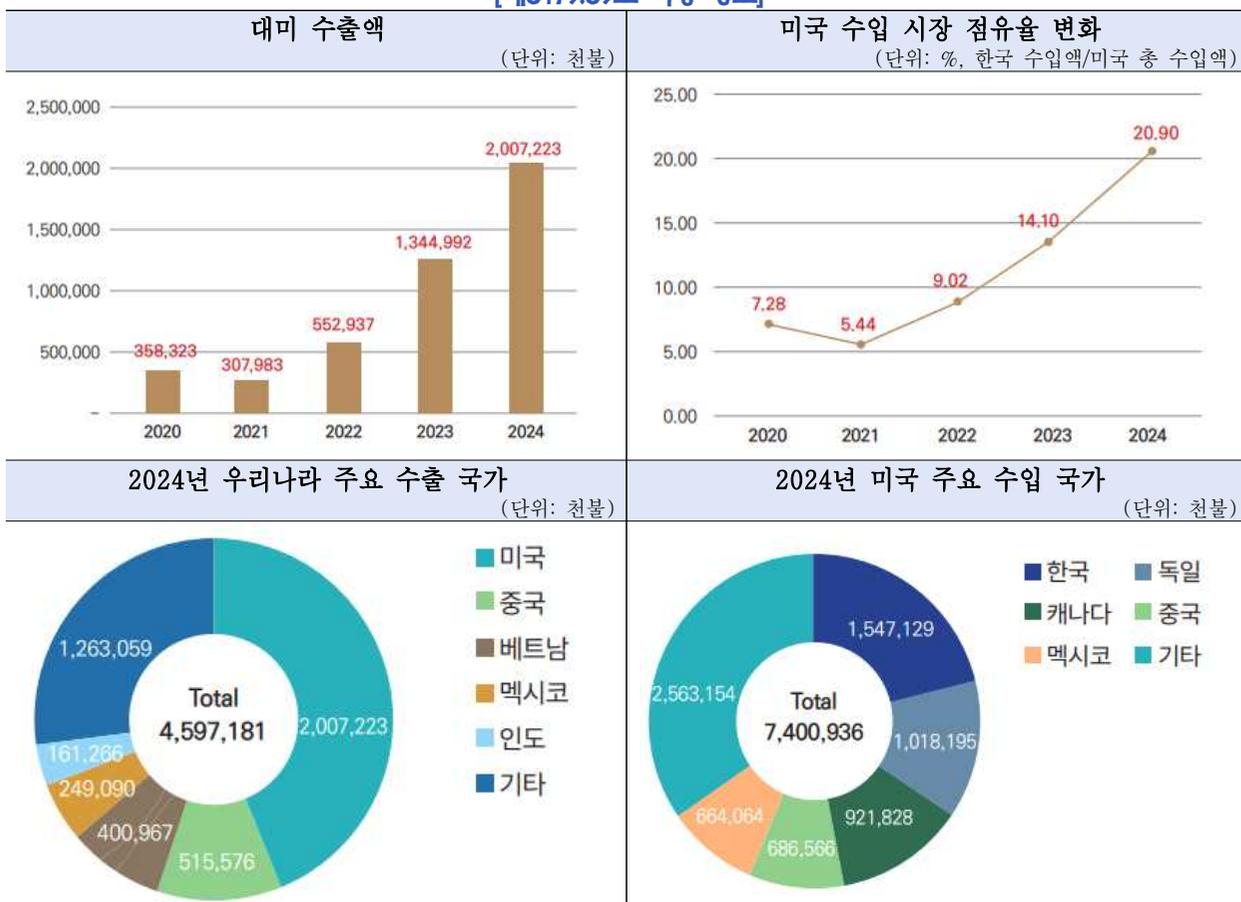
□ 품목 정보

[품목 정보]

| | | |
|--------------------|-------------------------|-------------------|
| HS Code | 제8479.89호 | |
| 세율 | 한국 기본세율 | 8% |
| | 미국 기본세율 | 0 or 2.5% or 2.8% |
| | 한-미 FTA 협정세율 | 0%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

□ 시장 정보

[제8479.89호 시장 정보]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 **사례명:** [래치 타이 다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사례번호:** NY N355742 (2025.11.14.)
- **사실관계**

| | | |
|----------|---|---|
| 요청자 | • Aerofast Tiedowns Ltd. | |
| 제품 | 제품명 | • a pair of two marine transom tie down straps (품목번호: TRHH-1.5-4) |
| | 구성 | • 레버 핸들이 포함된 기어 및 폴 타입의 래치 메커니즘 •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직조 웨빙 스트랩 2개 • 고무 코팅된 금속 S-후크 2개 |
| | 용도 | • 보트를 트레일러에 고정 |
| | 완제품 HTSUS | • 8479.89.9599 |
| 제조 공정 | <div style="text-align: center;">  <p>01 한국산 및 중국산 부품을 뉴질랜드로 수입</p> <p>02 뉴질랜드에서 최종 조립 및 포장</p> <p>03 미국 수출</p> </div>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산 폴리에스터 원사, 중국산 래치 메커니즘 및 후크를 뉴질랜드로 수입 2. 뉴질랜드 제조 공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조기를 사용해 한국산 폴리프로필렌 원사를 웨빙 스트랩으로 직조한 후 일정 길이로 절단 및 단부 봉합 처리 (2) 재봉기를 사용해 중국산 래치 메커니즘과 후크를 웨빙 스트랩에 조립 (3) 최종 제품을 수출용 상자에 포장 3. 미국 수출 | |

-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관련 법령 검토

ⅴ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CBP는 유사한 원산지판정 사례에서 래칫 타이 다운 스트랩과 같은 제품의 본질적 성질은 웨빙 스트랩에 의해 부여된다고 판단함

-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5503 (2020.02.20.)*
-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43501 (2024.11.22.)*
-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16901 (2021.02.04.)*

판정 결과

- 래칫 타이 다운에 본질적 성질을 부여하는 웨빙 스트랩은 한국산 원사를 사용하여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며 중국산 래칫 메커니즘과 후크를 단순 조립한 이후에도 웨빙 스트랩으로서의 명칭, 성질, 용도를 유지하므로 래칫 타이 다운의 원산지는 웨빙 스트랩의 원산지인 뉴질랜드임

□ 결론

- ✓ 래칫 타이 다운의 원산지는 제품에 본질적 성질을 부여하는 웨빙 스트랩을 생산한 뉴질랜드임

Ⅲ. 시사점

- 래칫 타이 다운과 같이 특정 섬유로 제작되어 물건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물품을 고정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스트랩이 생산된 국가가 원산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5742 (2025.11.14.), <https://rulings.cbp.gov/ruling/N355742>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CBP Ruling HQ H305503 (2020.02.20.), <https://rulings.cbp.gov/ruling/H305503>
- CBP Ruling NY N343501 (2024.11.22.), <https://rulings.cbp.gov/ruling/N343501>
- CBP Ruling NY N316901 (2021.02.04.), <https://rulings.cbp.gov/ruling/N316901>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